

2. 뷰 차

( 광공업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 < 광공업 동태 조사 >

1.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
2. 광공업동태조사 지침
3. 지역별광공업지수 개발편제결과
4. 광공업 동태 조사표
5. 제조업 생산예측조사표
6. 제조업생산예측조사 지침서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

(개정판)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

(개정판)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차 례

I. 조사개요 .....	3
1. 조사목적 .....	3
2. 조사의 법적 근거 .....	3
3. 조사대상기간 .....	3
4. 조사시기 .....	3
5. 조사대상 .....	3
6. 조사단위 .....	3
7. 조사사항 .....	4
8. 조사방법 .....	5
9. 집계 및 공표 .....	5
II. 조사표 기입요령 .....	6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6
2. 일반사항란 기재요령 .....	7
3. 제품생산, 출하·재고란 기재요령 .....	13
4. 품목수주·진척사항란 기재요령 .....	25
5. 제품의 증감내용란 기재요령 .....	26
6.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란 기재요령 .....	27
7.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	30
III.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36
1. 조사착오 유형 .....	36

2. 중점검토사항 .....	37
3. 수시확인 점검사항 .....	38
4. 조사표 제출 .....	38
IV.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	40
V. 사례연구 및 중점 강조사항 .....	44
VI. 사업체 관리요령 .....	61
VII.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77
VIII. 지정원재료 분류표 .....	346
부 록 .....	358
1. 주요단위 해설 .....	358
2. 도량형 환산표 .....	360

# I. 조 사 개 요

## 1. 조사목적

- 산업 생산, 출하, 재고, 재고율 지수등 편제, 전국 및 지역별 경기동향 분석
- 국내총생산(GDP) 및 지역소득(GRP) 추계자료
- 품목별 물량통계 작성 이용
- 고용, 급여동향 파악으로 경기동향분석 및 노동생산성추계자료로 이용
- 원재료 사용 및 재고수준 파악으로 단기간의 경기전망 자료로 이용

## 2.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111-11-12)

## 3.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을 대상

## 4. 조사시기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전월실적분을 조사

## 5.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한 광업,제조업 및 전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광공업동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체

## 6. 조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 단위로 조사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 본사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별도로 작성

## 7. 조사사항

### 가. 제품생산·출하·재고에 관한 사항

-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산업분류 382, 383 업종)  
지정품목별 생산량·생산액, 구입량, 동일공장내 재투입량, 국내시판량·시판액, 수출량·수출액,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량, 월말재고량, 재고액
- 선박 및 철도차량 제조업(산업분류 384 중 일부)  
지정품목별 당월수주량(국내용, 수출용), 당월진척량(국내용, 수출용), 수주잔량(국내용, 수출용), 당월 완성품 인도량(톤수, 척 또는 대)
- 일반업종(산업분류 2. 31 ~ 37, 381, 384 중 일부, 385, 39, 4)  
지정품목별 생산량, 구입량(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공장), 동일공장내 재투입량, 국내시판량, 수출량,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 나. 원재료 및 연료 사용, 재고에 관한 사항(공통)

- 원재료 및 연료별 생산지 구분(국산, 수입), 월중 사용량, 월말재고량

### 다. 고용·급여 및 조업사항(공통)

- 종업원 구분별 월말 종업원수,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월중 종업원 연근무시간수, 월중 입직자 및 이직자, 조업일수, 조업시간, 급여총액, 정액급여액, 특별급여액

## 8.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他計式) 방법과 자계식(自計式) 방법의 병행

## 9. 집계 및 공표

-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집계, 분석등을 거쳐 「생산·출하·재고동향」(월간), 「한국통계월보」(월간), 「산업생산연보」(연간), 「한국통계연감」(연간)에 게재·공표

## Ⅱ. 조사표 기입요령

###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한자나 영문병기)로 기재
-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시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위에 다시 기재
- 조사표상에 정해진 자리수 문자와 조사단위와의 차이에 유의

※ 잘못기입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고 사항	단 위	생 산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2140500	자 수 직 물		천 m <sup>2</sup>			3	1	0	0	0
9040100	인 형 및 장 난 감		백만원	4	0	0	0	0	0	0
5220100	의 약 품		백만원	5						

※ 바른기입

품 목 번 호	품 목 명	유고 사항	단 위	생 산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2140500	자 수 직 물		천 m <sup>2</sup>						3	1
9040100	인 형 및 장 난 감		백만원							4
5220100	의 약 품		백만원							5

- 조사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사용단위와 다를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기입
- 지정단위 미만의 수치는 각 항목별로 별도 주석이 없는 한 반올림함. 다만 생산·출하량(또는 액)에 있어 월별로는 반올림 규정에

따라 「 0 」이 될지라도 누계를 감안하여야 함.

※ 잘못기입 (천㎡로 지정된 어떤 품목의 생산이 극소한 경우)

	1	2	3	4	5	6	7	8 월
실 생산 (㎡)	380	290	430	420	480	350	400	350
조사표기재	0	0	0	0	0	0	0	0

※ 바른기입

	1	2	3	4	5	6	7	8 월
실 생산 (㎡)	380	290	430	420	480	350	400	350
생산 누계 (천㎡)	0.380	0.670	1.100	1.520	2.000	2.350	2.750	3.100
조사표기재	0	1	0	1	0	0	1	0

## 2. 일반사항란 기재요령

가. 년월분 및 잠정, 확정자료 구분

- 년은 1 자리, 월은 2 자리 숫자로 기입하고, 잠정자료인지, 확정자료인지 ○표시

※ 기입예 :

( 198 년  월분 )     잠정자료     확정자료

- 전월 신고된 잠정자료를 확정자료로 다시 보고하는 경우는 위 요령에 따라 붉은 싸인펜으로 기재
- 과거 2개월 이상의 자료를 소급하여 수정보고하는 경우는 조사표 왼쪽 상단에 붉은 싸인펜으로 “소급조사표”라 기입하고, 품목별, 연별로 조사표를 달리하여 조사보고, 이때 조사표의 일련번호는 “월”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일련번호 바로앞에 “년”(뒤 2 자리숫자만)을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함.

※ 기입예 : ('88년 3월부터 12월분까지를 소급조사 보고한다고 가정)

	일련번호	품 목 번 호						품 목 명	
	88	01							
	02								
88	03	1	1	2	0	3	0	0	아 이 스 크 림
	⋮								⋮
88	12	1	1	2	0	3	0	0	아 이 스 크 림

- 해당없는 달은 사선
- 해당되는 달부터는 연도를 명기하고 품목번호, 품목명등 필요사항을 기재
- 다만, 조사표Ⅲ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부호, 품목명, 단위를 원종이로 붙인후 위의 요령과 같이함

나. 사업체 고유번호

- 지정된 사업체 고유번호(7단위)를 기재하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다. 산업분류

- 지정품목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가장 큰 품목이 해당하는 산업세세분류(5단위)기입
- 지정품목이 여러가지가 있어 조사표를 달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들의 연간 출하액 크기를 비교하여 조사표마다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세분류를 기입
- 조사중인 사업체에서 새로이 어떤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 새로운 품목이 주종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신품목의 산업분류를 기입
- 위 기준은 전국 지수 지정품목과 지역특성품목을 함께 생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입예

① 동일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만 생산하는 경우

품목번호	품 목 명	연간출하액 (백만원)
2110600	합 성 섬 유 사	4,520
2120500	합 성 섬 유 직 물	9,850
2220100	남자용기성정장복	2,031
5140400	아 크 릴 릭 섬 유	1,060

- 지정품목이 모두 조사표 I 사용품목임
- 합성섬유직물이 주종품목임  
→ 산업분류 32123

② 조사표를 달리하는 지정품목들을 생산하는 경우

품목부호	품 목 명	연간출하액 (백만원)
8310100	전 동 기	420
8342400	소 형 모 터	1,130

- 조사표 II를 사용하는 품목
- 소형모터가 주종품목임  
→ 산업분류 38349

품목부호	품 목 명	연간출하액 (백만원)
8190800	나 사 제 품	250

- 나사제품은 조립금속제품으로 조사표 I 사용
- 별도로 조사표 I을 사용  
→ 산업분류 38195

③ 기초사중인 품목외에 신규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 동일 조사표 사용품목인 경우는 위 ①에 따라, 조사표를 달리하는 품목인 경우는 ②의 방법에 따라 산업분류를 기입 (이때는 월간출하액을 기준)
- 다만, 신규품목 생산이 6월이내의 일시적 생산에 그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부호를 바꾸지 않음.

※ 전수조사업체만 해당함. 표본업체(승수가 있는 업체)는 신규로 지정품목이 생산되더라도 별도지시가 없는 한 조사않음.

라. 행정구역번호

- 지정된 행정구역번호(시도, 구시군, 동읍면)를 기입
- 특별시, 직할시가 아니면 “구”가 있는 “시”는 “시”부호(00)는 생략하고 “도, 구, 동”부호만 기입

마. 조사구 번호

- 본부 또는 통계사무소에서 지정한 조사구 번호를 기입
- 시, 도자체에서 조사하는 사업체는 행정구역 분류부호중 시, 도 부호 다음에 A를 추가하고 그 이하는 공란으로 둬.

기입 예 :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경우

1	1	A	-		
---	---	---	---	--	--

바. 사업체(본사)명 및 소재지

-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현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 예 :

사 업 체 명	소 재 지
광동산업(주) 마산공장	경남 마산시 회성동 13-6
서울공업(주) 제 2 공장	서울 구로구 구로제 3 동 66

- 본사나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입

사.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실제대표자명 및 조사표 작성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입

아. 사업체 규모

- 종업원수(임시 및 일고 포함)를 기준으로 대규모업체, 중소기업체로 구분하여 ○표시 함.

- 사업체규모는 사업체별로 기지정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신규업체인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

중소규모업체 기준

산 업 분 류	중 소 규 모 업 체
2. 광 업	
○ 21 석 탄 광 업	• 500 인 미 만
○ 23 금 속 광 업	} • 300 인 미 만
○ 29 기 타 광 업	
3. 제 조 업	
○ 31 음 식 료 품 및 담 배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 32 섬 유, 의 복, 가 죽, 신 발	
• 322 의 복	• 500 인 미 만
• 기 타 업 종	• 300 인 미 만
○ 33 나 무 및 나 무 제 품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 34 종 이 · 인 쇄 · 출 판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 35 화 합 물, 석 유, 석 탄, 고 무, 플 라 스틱	
• 356 기 타 플 라 스틱	• 500 인 미 만
• 기 타 업 종	• 300 인 미 만
○ 36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산 업 분 류	중 소 규 모 업 체
• 361 도기, 자기, 토기	• 500 인 미 만
• 362 유리, 유리 제품	
• 36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 37 제 1 차 금 속 산 업	• 300 인 미 만
• 3713 주 조 업	• 500 인 미 만
• 기 타 업 종	• 300 인 미 만
○ 38 조립금속제품, 기계및장비	
• 3811 날붙이, 수공구, 철물	• 500 인 미 만
• 3822 농 업 용 기 계	
• 3825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 383 전 기 · 전 자 기 기	
• 38432 자 동 차 부 품	
• 3852 사 진 및 광 학 용 품	
• 3853 시 계	
• 기 타 업 종	
○ 39 기 타 제 조 업	
• 전 업 종	
4. 전 기 업	• 500 인 미 만
• 전 업 종	• 300 인 미 만

자. 종업원 규모

-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란의 월말종업원수(임시 및 일고포함)를

기준으로 해당번호에 ○표시함.

차. 유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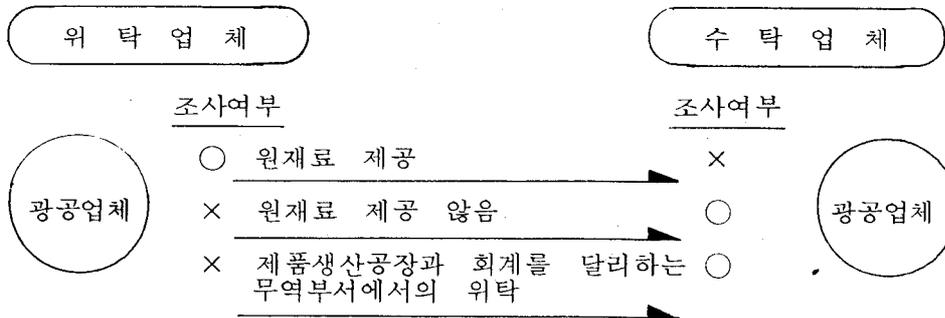
- 사업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번호에 ○표시함.
- 유고내용
  - 1. 전 입 : 타사무소 (또는 시·도) 관할이던 사업체가 이전 되어 온 경우
  - 2. 휴 업 : 사업체가 휴업중인 경우 (조사표는 계속 제출)
  - 3. 사업체 흡수 : 동일기업내 타공장 또는 다른기업체의 공장을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 4. 사업체 분리 : 1개사업체가 경영 및 회계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사업체로 분할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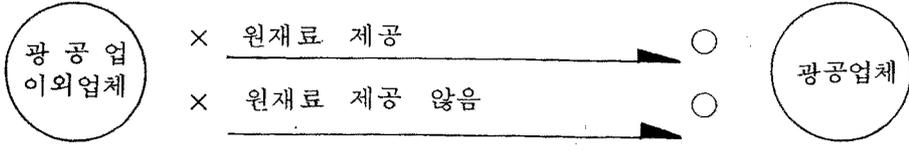
3. **제품생산·출하·재고**란 기재요령 [ 조사표 I, II ]

가. 조사대상 제품

-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중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제품명칭이 다르더라도 품목 포괄범위에 해당되면 조사)
-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 생산한 제품은 위탁업체의 생산제품으로 간주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체의 생산제품으로 간주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이를 구입으로 처리)

※ 위·수탁 관련품목의 조사여부





- 중간제품과 최종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이 출하 (외부출하, 동일기업내 공장간 출하)되고 있거나, 다른제품의 연료, 촉매,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때, 당해 중간제품이 지정품목이면 조사

나. 품목부호 및 품목명

- 「지정품목분류표」에 게재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기입
- 품목부호 체계 (7 단위부호)

품 목 명	품 목 부 호							
○ 생 사	2	1	1	0	1	0	0	
○ 면 사	2	1	1	0	2	0	0	
• 순 면 사	2	1	1	0	2	1	0	
• 혼 방 면 사	2	1	1	0	2	2	0	
○ 남자용마춤양복	2	2	1	0	1	0	9	

- ↓ 산업세분류 (4 단위부호)를 의미하나 대분류부호는 생략하였음 (211은 3211분류를 나타냄. 단, 석탄광업은 010, 금속광업은 030, 기타광업은 090, 전기업은 999로 함)
- ↓ 산업세분류내에서 채택된 품목의 일련번호 (전기업은 99)
- ↓ 지수는 통합하여 편제하나 물량통계를 위하여 세분되는 품목의 일련번호, (지수는 면사 211020으로 하여 편제하나 물량통계는 순면사 211021과 혼방면사 211022로 구분하여 작성)
- ↓ 전국지수 품목으로 채택된 품목은 "0", 어느 특정 1개 시·도 또는 수개 시·도지수를 위하여 채택된 품목은 "9"로 함 (단, 전국품목은 반드시 1개 시·도이상에 포함됨)

- 물량통계를 위한 세분품목의 기입방법
- 지수품목의 품목부호, 품목명은 기입하지 않고, 세분품목으로만 기입

※ 기입 예 : 면사의 경우

- ① 순면사만 생산하는 사업체

2	1	1	0	2	1	0	순	면	사
---	---	---	---	---	---	---	---	---	---

- ② 혼방면사만 생산하는 사업체

2	1	1	0	2	2	0	혼	방	면	사
---	---	---	---	---	---	---	---	---	---	---

- ③ 순면사, 혼방면사를 모두 생산하는 사업체

2	1	1	0	2	1	0	순	면	사	
2	1	1	0	2	2	0	혼	방	면	사

다. 유고사항

- 품목에 관련된 변동사항을 다음 부호에 따라 기입
- 유고사항 부호
  - 품목 신규 생산 ..... 1  
(전수조사업체에 한함)
  - 품목 생산중단(휴업포함) ..... 2
  - 기보고해은 품목으로서 분류착오로 제외 ..... 3
  - 품목 조사 누락 ..... 4

라. 단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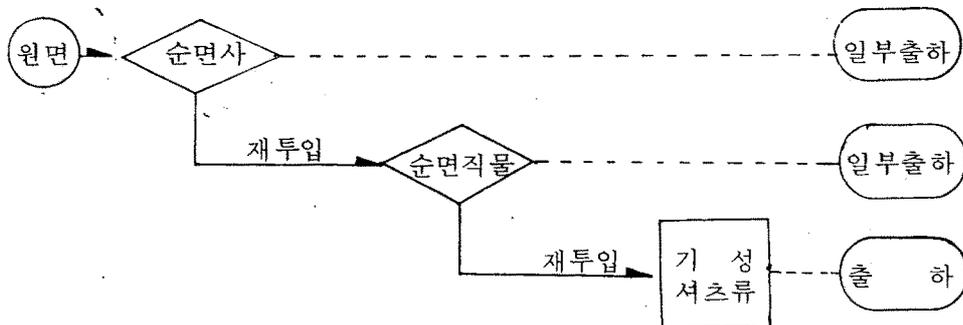
- 「지정품목분류표」에 게재된 지정단위를 사용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 지정단위로 정확히 환산
- 조사표 I 대상품목중 금액조사 품목은 각 란을 금액으로 조사함

- 조사표Ⅱ 대상품목은 지정수량 단위에 의한 물량조사와 함께 금액 조사도 병행함
- 지수편제 단위는 금액기준이지만, 물량통계를 위하여 수량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물량조사를 병행함
- 수량 또는 금액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불필요한 란은 사선

마. 생 산

- 조사대상월중 사업체에서 직접생산한 량 및 금액 (공정중에 있는 재공품은 제외)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량은 위탁업체의 생산량으로 간주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받지 않고 수탁생산한 량은 수탁업체의 생산량으로 간주 (OEM 방식 생산도 같음)
- 중간제품 (재공품이 아닌 제품원재료로서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재투입되거나, 기타 연료, 가공용 등으로 소비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지정품목일 경우 조사

※ 예 : 원면을 투입하여 중간제품 단계를 거쳐 기성셔츠류를 생산할 경우



- 중간제품인 순면사(2110210), 순면직물(2120110) 및 최종제품인 기성셔츠류(2220200)가 모두 지정품목임으로 세가지를 제품으로 조사

- 생산액의 평가는 생산자 판매가격(간접세 포함가격)으로 함

바. 구입

- 일반업종은 「외부구입」과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기계, 전기·전자기기 업종은 이들을 합하여 기입
- 자기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위탁생산분 포함) 지정품목과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의 구입에 한함
  -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연료, 가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제품은 당해 사업체에서 그러한 제품이 중간제품 또는 최종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면 포함되나, 생산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고, 「원재료 및 연료 사용·재고」 사항에서 파악함
- 「외부구입」
  - 타기업 또는 타상사로부터 구입한 것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지 않고 위탁생산한 제품으로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것
  - 외국에서 수입한 것
  - 이미 출고한 제품중 반품된 것으로서 재판매되거나 재고로 계상될 것(폐기될 것은 제외)
  - 타기업체로부터 빌려온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구입하거나, 내부거래로 받은 것

※ 〈주의사항〉

- 자기 사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구입 또는 내부거래로 받는 경우에는 그 품목이 지정품목이라 하더라도 「구입」란에 계상할 수 없음

※ 금액조사 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사. 동일공장내 재투입 (자가소비)

- 당해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정품목중, 다른 제품(지정품목이 아닌 것도 포함) 생산을 위해 당해 사업체내에서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량(구입량 및 재고량의 재투입도 포함)
- 재투입유형
  - 제품 원재료로서 투입 (예:순면사를 순면직물 생산을 위해 사용)
  - 연료로 투입 (예:당해공장에서 생산된 코오크스를 연료로 사용)
  - 촉매제 또는 환원제로 투입
  - 다른제품의 가공을 위해 투입

※ 금액조사 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 〈주의사항〉

- 견본, 선물, 전시, 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사무실 및 공장사무용, 제품포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자기사용)는 출하중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의 기타출하로 간주(다만, 외국으로 출하되는 것은 수출로 간주)

아. 제품출하

-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생산한 지정품목, 지정품목과 같은 제품의 구입분 및 위탁생산분중 그 사업체(자가창고, 타장소 보관 불문)에

서 출고된 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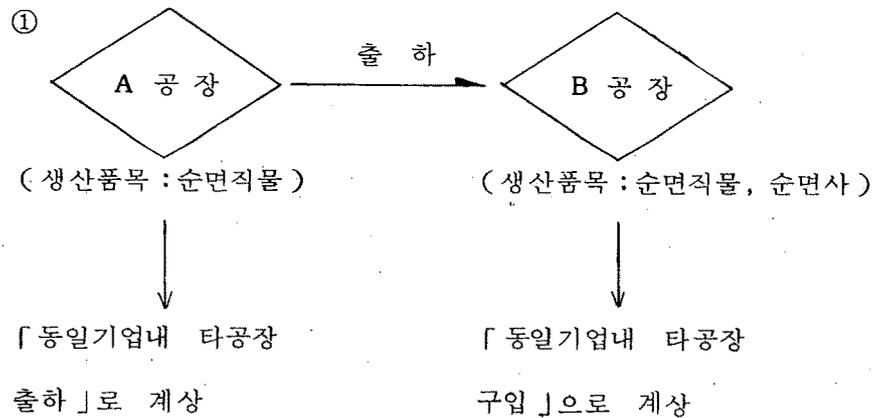
- 현금, 외상을 불문하고 사업체에서 출고된 시점에서 출하로 간주하며, 판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하로 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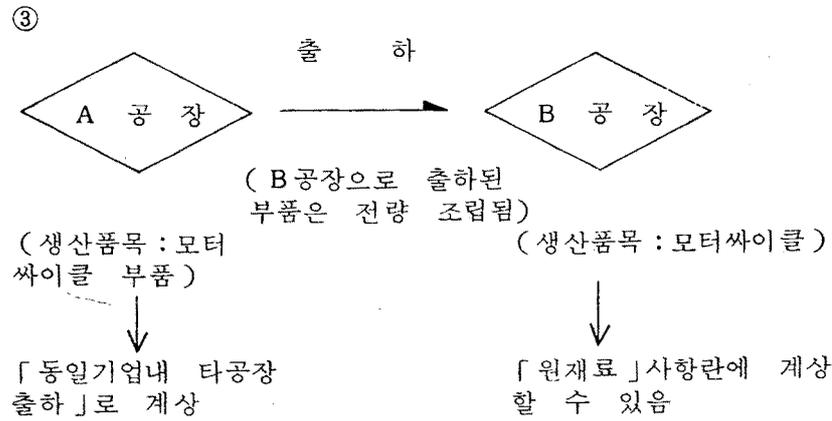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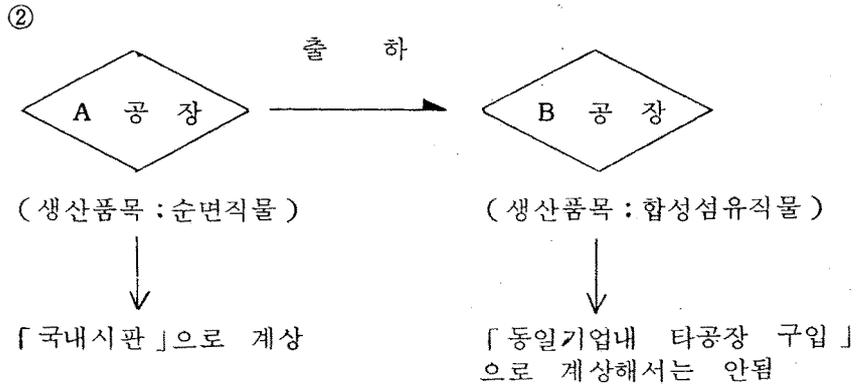
(다만,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국내시판」

- 국내판매업자, 타사업체, 기관, 단체, 개인소비자 등에게 판매
- 국군부대에 납품
- 판매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하고있는 본사나 영업소등에 출하
- 수탁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에 위탁업체로의 납품
- 동일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

※ 예 : 동일기업내 A, B 공장간에 거래하는 경우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어 인수받은 공장에서 전량이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될 경우는 보내는 공장에서는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계상하고, 받는 공장에서는 받는 품목과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면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으로 계상하지만, 동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원재료」관련 사항에 계상할 수 있을 뿐임

○ 「수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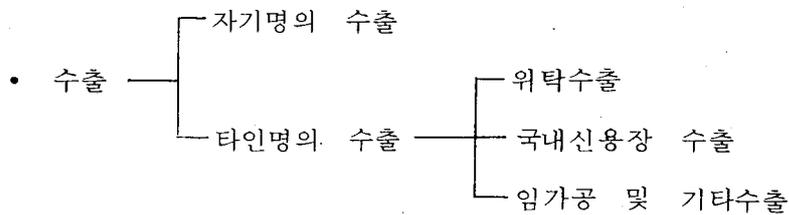
- 외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출하
-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에 출하
- 주한 외국군에 납품

- 외국 또는 주한 외국군에 견본, 선물 등으로 증정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전시용으로 송부한 것
- SKD, CKD 방식에 의해 수출되는 품목도 완성품 수량 및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

※ 〈주의사항〉

-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부품이 되는 제품을 동일기업이 아닌 타사업체에 출하할 경우 「국내시판」으로 봄

※ 수출의 구분



※ 수출은 무역거래법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또는 사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자기명의 수출과 타인명의 수출로 구분됨

i) 자기명의 수출

자기명의 수출이란 수출업체가 외국관계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로 광공업 동태조사에서는 광공업 사업체에서 직접 수출할 경우에 해당됨

ii) 타인명의 수출

타인명의 수출은 다시 위탁수출과 내국신용장수출, 임가공 및 기타로 나눌 수 있음.

- 위탁수출은 자기 또는 사업체가 직접 외국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 허가가 없거나, 수출입 허가가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타인(또는 타업체)에게 위탁하여 수출하는 것을 말함. 광공업 사업체로 수출입 허가가 없는 사업체는 위탁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내국 신용장수출(Local 수출)은 국내의 비광공업체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으로 자기 사업체가 직접 외국 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타수출업체(비광공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제2, 제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로 원재료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출로 조사

- 임가공 및 기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임가공 및 기타 약정에 의해서 비광공업체에 출하되는 수출용 제품의 출하와 계약서상 수출품으로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체에서 수출용제품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로 이 때도 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 공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출로 조사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및 출하방식

※ SKD(Semi-Knock Down) : 제품을 반해체 상태로 수출

※ CKD(Complete Knock Down) : 제품을 완전해체상태로 수출

- 「국내시판금액」

- 국내시판금액의 평가는 생산자 판매가격(운임, 포장비, 보험료, 간접세 등을 포함하여 정한 경우는 이들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함

- 수탁업체에서 위탁업체로 납품(원재료를 제공받지 않은 위·수탁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비와 가공임등을 포함하여 계약한 금액
- 「수출액」
  -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일자별 환율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월평균 환율을 적용
-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는 「국내시판」으로 계상하지만, 다만 그 제품이 인수받은 타공장내에서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소비되는 경우는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계상
  - 국내에 견본, 선물, 전시용 등으로 출하하거나, 자기공장이나 사무실용(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제품 포장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 항목에 계상(「기타」에 해당)
  - 타사업체에서 빌려온 제품(조사지정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의 변제(「기타」에 해당)

※ 금액조사 품목은 국내시판 금액의 평가방법에 준함

자. 과부족 조정

- 과부족 조정사유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멸실, 분실(-)
  - 재고로 보관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
  - 계산단위 미만의 사사오입에 따른 증감(+, -)

- 기타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고의 증감( +, - )
  - 생산, 출하, 재고와의 관계
    - 전월말재고(월초재고) + 생산 + 구입 - 동일공장내 재투입 - 출하 ± 과부족 조정 = 월말재고(조사표 I)
    - 전월말재고 + 생산 + 구입 - 재투입 - 출하  $\begin{matrix} > \\ < \end{matrix}$  월말재고(조사표 II의 경우)  
(이때 월말재고의 증감차이가 많은 경우 재확인)
  - 과부족 조정량을 기입시 위 관계식을 참조 ⊕, ⊖ 기호를 적색으로 표시
- ※ 금액조사 품목은 실제 재고액을 기준하여 가감
- 차. 월말재고
- 재고로 되는 경우
    - 당해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및 위탁생산 제품의 보관(자기창고, 타인창고 불문)
    - 현금 또는 외상판매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다만,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수탁업체에서 보관중인 것
    - 조사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보관중인 것
- ※ 1회사 1공장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본사창고는 공장창고로 봄
- ※ 금액조사 품목은 실제 재고액을 기입(재고액 평가방법은 출하액 평가방법과 동일)

4. **품목수주·진척사항** 기재요령〔조사표Ⅲ〕

가. 품목부호, 품목명

- 조사표상에 인쇄된 부호, 명에 맞추어 해당란에 기입
- 지정된 품목이외에는 진척율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표 I, II를 사용하여야 함

나. 유고사항

- 3. 「제품생산, 출하, 재고」란의 유고사항과 동일

다. 단 위

- 조사표상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함
- 선박해체업은 LDT(Light Displacement Ton: 輕化排水 톤수)를 사용

라. 당월수주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받은 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폐선박 도입량을 기입하되, 폐선박내의 물을 뺀 중량으로 함

마. 당월진척량

- 수주잔량에 조사월의 공정진척율을 승하여 환산하거나, 총수주량에 공정진척율 누계를 승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차감하여 환산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공정진척율에 따른 해체량을 환산

바. 수주잔량

- 총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누계를 차감한 잔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미해체량
- 수주량, 진척량, 수주잔량과의 관계
  - 전월말 수주잔량 + 당월수주량 - 당월진척량 = 당월말 수주잔량

사. 당월 완성품 인도량

- 진척율 조사품목은 당월 진척량을 생산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출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 (지수편제시)
- 그러나 실제 완성품의 출하는 상당한 시차가 있게 됨으로, 공정진척도(기성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통관 또는 납품한 량을 기입함
- 선박해체업은 조사하지 않으며 그외 품목은 중량과 척(대)수를 함께 조사

5. 제품의 증감내용 란 기재요령

가. 품목부호

- 사업체의 지정품목중 생산, 출하, 재고에 대한 전월비가 큰 순으로 기입
- 진척율 조사품목은 「당월진척량」전월비를 기준으로 함.

나. 전월비(%)

- $\frac{\text{금월실적(생산, 출하, 재고)}}{\text{전월실적(생산, 출하, 재고)}} \times 100$  (소숫점이하 반올림)
- $\frac{\text{당월진척량}}{\text{전월진척량}} \times 100$  (소숫점이하 반올림)
- 수량, 금액 병행조사품목은 지수편제「지정단위」에 의거 계산.

다. 증감부호

- 예시된 부호중 주된 부호 하나만을 선택 기입(꼭 알맞은 부호가 없더라도 가장 유사한 부호를 선택)

라. 증감사유

- 증감부호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입.

- 기입예 :

품 목 부 호	전월비(%)	증 감 부 호	증 감 사 유
2220300	△ 32	11	미국
2220900	20	02	미도파백화점
2330200	△ 10	14	3일간
2221100	8	04	전월 2 일휴업

- 사업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거나, 선박진척상황보고 등 특수자료는 별도 부전지를 사용.
- 진척율 조사품목은 증감부호없이 증감사유를 기재.

## 6.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란 기재요령

### 가. 원재료

-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원료(재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원료(재료)를 말함.
- 원재료의 구분
  - 원재료 { 국산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 { 수입 ..... 외국에서 생산된 원재료(외국에서 직접 구입하였거나, 국내 다른 업체나 상사로부터 구입하였거나 불문)
- 포함 또는 제외여부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에서 조사
  -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탁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에서는 제외

### 나. 원재료번호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정한 번호를 정확히 기입

다. 원재료 및 연료명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의해 기입
- 분류표상의 원재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증상에 보고
- 분류표상에 게재된 원재료들보다 비중이 크거나 주요 원재료라고 판단되는 것은 원재료 번호없이 원재료명과 다른 해당란을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 보고함.
- 연료에 대하여 조사표상에 인쇄된 연료만 조사

라. 유고사항

- 「제품, 출하, 재고」란의 유고사항과 동일

마. 단 위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지정된 단위 사용
- 사업체 사용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라도 지정단위로 환산기입

바. 구 분

- 부 호
  - 국산원재료 ..... 1
  - 수입원재료 ..... 2
- 동일 원재료를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 기입예 :

원재료 및 연료명	단 위	구 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소 맥	%	1	50	200
소 맥	%	2	20	150

사. 월중사용량

○ 원재료 사용량

- 조사대상기간중 대상사업체의 지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한 원재료 수량을 기입 (직접생산, 구입 원재료 불문)
- 원재료 사용량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창고로부터 공장의 제조공정에 출고된 원재료수량 기입.  
지정제품과 비지정제품을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관된 공정에서 생산하는 경우 지정제품에 대한 원재료 사용량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량(또는 금액), 설비비율 등 적절한 기준에 의해 배분계산하여 지정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량만을 파악.

○ 연료 및 전력사용량

지정·비지정제품에 관계없이 사업체에서 사용한 총연료 및 전력량을 조사

아. 월말재고량

- 사업체내에서 자체 생산한 원재료 및 연료와 외부에서 구입한 원재료 및 재료의 월말현재 재고수량.
- 기타 정의는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에 따름.

※ 

잠정조치
------

-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신조사표에는 「지정원재료분류표」에 게재된 원재료를 무시하고 해당사업체에서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원재료를 순차적으로 기입보고할 것.

(단, 원재료부호가 있는 것은 

7	9	5	-	0	1
---	---	---	---	---	---

 과 같이 기입할 것)

## 7. 고용, 급여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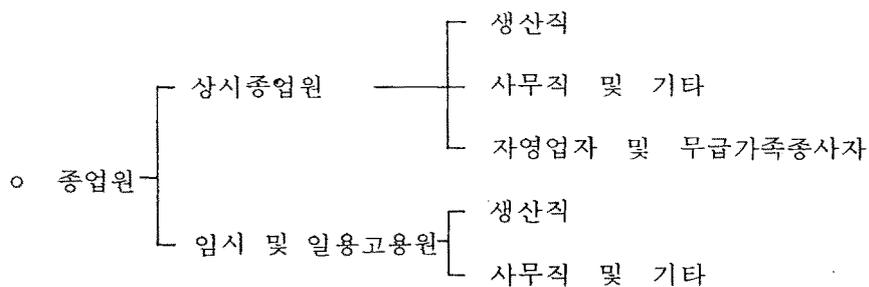
### 가. 조사대상

- 광공업 동태조사 대상업체로 지정된 사업체의 종업원(상시, 임시 및 일고포함)의 변동사항과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조업현황.
- 회계나 경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본사의 종업원은 대상업체의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고, 본사가 대상사업체(공장)와 결합되어 운영될 때는 대상업체의 종업원에 포함.
- 지정품목생산을 중단하고 비지수품목만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고용·급여 및 조업사항을 계속 조사.
  - 다만, 「연근무인원수」 「연근무시간수」란은 현지정품목생산 중단 이후분은 조사하지 않음.

※ 기입예 : '88년 1월 16일부터 현지정품목생산을 중단한 경우

- ① '88년 1월분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는 1일부터 15일분까지만 조사.
- ② '88년 2월에도 계속하여 지수품목생산이 없었다면 " 0 "

### 나. 종업원의 구분



#### ○ 상시종업원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체에 고용된 자.

- 매일매일 고용되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라도 지난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을 대상사업체에 고용되었을 경우 상시종업원에 포함.

○ 생산직 종업원

생산직 종업원이란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업원과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함.

단,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종업원으로 보지 않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檢査),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貯藏), 조작(操作), 포장(包裝),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공장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광업의 경우

채광(採鑛),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內支柱), 권양(捲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천공(穿孔), 발파(發破), 분쇄(粉碎) 선광(選鑛), 검사(檢査), 저장(貯藏),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書記

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자,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말하며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제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종업원

-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 등.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단, 주당 18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 다. 월말 종업원수

- 해당 조사월 말일현재의 종업원수
- 월말 종업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말일에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수시로 종업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됨)

#### ※ <주의사항>

- 급여계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는 지급되었더라도 이미 퇴직한 종업원(상시, 임시·일고)은 월말 종업원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휴업 및 기타 사유(폐업제외)로 일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계속조사 기입
    - 휴업은 되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 일시적 휴업(2개월까지)

- 휴업으로 처리, 종업원수 기입않음.

— 위 이외의 경우

라.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 조사월중에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연인원수(延人員數), 즉 매일별 인원수를 월간합계한 수.
- 급료가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수는 제외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자는 연근무인원수에 포함.

마. 월중 종업원 연근무 시간수

- 조사월중에 실제 근무한 생산직 종업원(임시 및 일고 생산직 포함)의 매일별 근무시간수를 월간 합계한 시간수.

※ 기입예 :

종업원 10인(생산직)을 가진 업체가 시간외 근무없이 1일 8시간씩 30일간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 연근무인원수 : 10명 × 30일 = 300명
- 연근무시간수 : 10명 × 8시간 × 30일 = 2,400시간
- 휴식시간은 제외함(다만, 광공업체의 쟁내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은 포함)
- 본래 업무외로 근무한 일·숙직시간은 제외.
- 지각, 조퇴, 노동쟁의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

※ <주의사항>

- 휴업, 조업중단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 계산에서 제외.
- 신규채용 종업원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훈련 또는 수습기간중에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는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에서 제외(단, 월말 종업원수 및 급여란은 포함)

바. 전월말 상시 종업원

- 전월말 상시 종업원수를 기입.

사. 월중 상시 종업원 입직자

- 해당월중에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새로 사업체에 들어온 상시 종업원수.

아. 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해당월중에 자진퇴직, 해고, 사망, 전출 등으로 사업체를 떠난 상시 종업원수.

자. 금월말 상시종업원

- 조사해당월말 상시종업원수를 기입.
- 「전월말 상시종업원 + 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 - 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금월말 상시종업원」

차. 월중 조업일수

-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하였더라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
- 사업체 사정 등으로 생산직종업원 일부가 조업을 하였더라도 조업일수에 포함(단,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카.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교대

- 월중 1일 평균조업시간 =  $\frac{\text{해당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text{월 중 조업 일 수}}$

- 교대작업일 경우  
교대작업이 몇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입.

타. 급여총액

- 해당월중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 봉급, 수당, 상여금, 각종수당 및 임금인상 소급분 등의 총액(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 현물급여의 경우는 그 평가액도 포함.

파. 정액급여

- 매월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정액급여에 포함.
- 현물급여의 경우 그 평가액도 포함.

하. 특별급여

- 월중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기말상여금, 임금인상소급분, 기타수당, 연차수당.

거. 증감내용

- 항목별로 증감부호 및 증감사유를 기입.

※ 기입예 :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① 입 직 자	-	-
② 이 직 자	1	20명 감축
③ 조업일수	3	4일 단축
④ 정액급여	4	20명분
⑤ 특별급여	-	-

※ < 주의사항 >

1개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2종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급여 사항은 사업체의 주산업이 속하는 조사표에만 기입하여야 하고, 조사표에 모두 기입하거나, 분할기입하여서는 아니됨.

###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1. 조사착오 유형

##### <유형 1> 대상업체 착오포함 및 조사지연

- 비제조업체(예:도·소매업)가 제조업체 등에 하청을 주어 생산케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대상업체로 선정
- 대규모업체신설의 경우등은 경제신문등에도 보도되고, 직·간접으로 파악이 가능한데도, 이의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조사착수가 매우 늦어지는 경우

##### <유형 2> 품목개념 및 포괄범위 착오

- 면편직물을 혼방합성 섬유직물로 조사
- 당면을 인스턴트면류(라면류)로 조사
- 소형모터를 전동기로 조사

##### <유형 3> 품목확인 소홀

- 농업용 트랙터 및 이앙기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
-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

##### <유형 4> 동일기업내 공장간 중복조사

- 본사와 함께있는 공장에서도 조사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도 조사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인수한 량을 생산량에 포함

##### <유형 5> 위·수탁관계에서의 중복·누락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 하청공장의 자체생산 납품량(원재료 제공없음)을 납품받은 업체에서 포함 조사

〈유형 6〉 출하포착시점의 혼동

- 염색·가공을 위해 단순 출고된 량을 출하로 조사

〈유형 7〉 내수·수출의 착오

- 타사에 납품하여 수출되는 경우에, 타사수출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를 수출로 조사
- 내수·수출물량을 바꾸어 기재

〈유형 8〉 재투입물량의 혼동

- 연속된 일관공정이 아니고 제조 완료된 반제품을 일관공정으로 취급하여 재투입물량에서 제외
- 시판으로 하여야 할 물량을 재투입으로 조사

〈유형 9〉 단위환산 착오

- 상자로 포장된 제품수량을 지정단위로 환산시 환산수치를 잘못 적용하여 과대조사
- 수성페인트  $kl$  를  $l$  로 조사
- 벽지  $m^2$  를 필로 조사
- 착오로 끝숫자를 더붙여 기재

〈유형 10〉 품목번호 오기

- 신규품목 조사시 품목번호를 잘못 기재
- 품목번호의 끝자리와 바로 앞자리를 바꿔쓰는 경우

〈유형 11〉 잠정·확정치의 현격한 차이

- 조사자 임의로 전월실적과 비교하여 기입하는 경우

2. 중점 검토사항

- 사업체 고유번호는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 품목부호는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 단위는 정확히 기입하였으며, 조사단위와 물량(금액)을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전월말재고(조사수첩활용)+생산+구입-재투입-출하」로 계산한 것과 금월말 재고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부족조정」사유가 생겼는가?
- 원재료 사용량과 생산량을 비교할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조업일수나 종업원수, 연근무시간수등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는데도 생산이 감소한 경우(또는 그반대) 등 관련사항간에 의문은 없는가?
- 전월에 비하여 생산·출하·재고가 크게 증감이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잠정치 자료인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 3. 수시 확인 점검사항

- 대상업체에서 새로운 조사지정품목이나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가?
- 현재 조사중인 품목이 지침서의 포괄범위나 개념에 부합되는가?
- 조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사업체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 4. 조사표 제출

-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되,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시는

늦게 도착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야 함.

-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은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조사표에 기입보고 (휴업의 경우도 동일)
- 유고사업체라도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Ⅳ.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 1. 일반사항란

- ① 조사표 상단의 □□ 월분의 기입과, 잠정자료, 확정자료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② 사업체 고유번호 기입누락은 없으며, 전월에 없었던 사업체 고유번호는 없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③ 행정구역 부호기입 누락은 없으며, 정확히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④ 유고사항이 1. 전입인데 행정구역번호가 전월과 달라 졌는가?  
(서울시는 4단위(시, 도, 구시군), 기타 시·도는 2단위(시·도) 부호가 바뀌어야 전입에 해당됨)  
→ 확인하여 정정.

### 2. 제품생산·출하·재고

- ① 사업체별 품목부호는 전월과 같은가? 만약 추가된 품목이 있다면 품목 유고사항란에 부호 1(신규생산), 4(조사누락)중 어느 한 부호가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누락, 착오시는 정정.
- ② 물량 통계를 위해 세분, 조사되는 품목(품목부호 7단위중 6번째 단위가 ○이 아닌 품목)은 세분 품목으로 조사되었는가?  
→ 착오시 질의

- ③ 전월대비 생산·내수, 수출,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실적이 대규모 업체 30%이상, 중소기업 업체 50%이상인 경우 확인  
→ 증감부호, 증감사유등을 참고하되, 의심나면 질의.
- ④ 생산이 전월, 금월 모두 ○이면서 「구입」란에 실적이 있는 품목이 있는가?  
→ 확인하여 자체 생산은 없고 구입만 있는 품목인 경우 삭제.
- ⑤ 전월대비 「구입」란 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확인  
→ 금월 또는 전월분 착오여부등을 확인.
- ⑥ 전월에 재투입이 있었던 품목이 금월에 없어지는 경우 확인  
→ 조사착오 여부, 특수사정등 확인.
- ⑦ 전월대비 재투입 실적이 ±30%이상인데 생산실적이 ±5% 이내면 확인  
→ 조사착오여부 검토
- ⑧ 전월대비 월말재고 실적이 대규모업체 30%, 중소기업업체 50% 이상 증가한 경우 확인.  
→ 조사착오여부 검토
- ⑨ 조사표 I에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전월말재고+생산+구입계-재투입-출하계±과부족조정=금월말재고」  
→ 착오기입 여부검점(특히 생산, 출하, 재고)
- ⑩ 조사표 II에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수치와 금월말 재고를 비교하여 ±30% 이상인 경우 확인  
「전월말재고+생산+구입-재투입-출하」와 금월말재고 비교  
→ 착오기입여부 검토(특히 생산, 출하, 재고)

⑩ 조사표 Ⅲ에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전월말 수주잔량+당월수주량-당월진척량 = 당월수주잔량」

→ 착오기입 여부검토

### 3.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① 전월대비 전력사용량이  $\pm 20\%$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실적이 모두 반대인 경우 확인

→ 생산실적 착오조사 검토

② 국산, 수입 원재료별로 전월말 재고가 금월말 재고간에  $\pm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확인

→ 기입착오 확인

### 4.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① 월말 종업원수란의 「상시종업원 계」와 그 아래에 있는 「금월말 상시종업원」(보조자료)이 서로 일치하는가?

→ 틀릴경우 확인

② 상시종업원 생산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 「월말 종업원수×월중 조업일수」와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와의 차이가  $\pm 10\%$  이상인 경우

○ 「월중종업원 연근무인원수×월중 1일평균조업시간」과 「월중종업원 연근무시간수」와의 차이가  $\pm 20\%$  이상인 경우

→ 의심이 있을 경우 확인

③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나 연근무 시간수가 증가하였는데도 제품 사항란의 생산 품목이 모두 감소한 경우는 없는가?

→ 생산실적, 종업원 사항증 착오 확인.

④ 다음 등식은 성립하는가?

「전월말 상시종업원+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월중 상시종업원 이직  
자=금월말 상시종업원」

→ 틀릴 경우 전월말 상시종업원 대조 및 관련사항을 확인.

⑤ 전월대비 월말 종업원수가 증가(또는 감소)하였는데도 급여총액이  
감소(또는 증가)한 경우 확인

→ 특별급여 영향때문인지, 다른 특수사정이 있는지를 확인.

## V. 사례연구 및 중점 강조사항

**사례 1**

〈문〉 • A업체는 각종 장난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정품목인 플라스틱스폰지, 소형모터, 동력식장난감을 생산한다. A업체는 어떤 조사표를 사용해야 하는가?

〈답〉 • 2 가지 종류의 조사표 사용  
 즉, 플라스틱스폰지 ( 5600600 ), 인형 및 장난감 ( 9040100 )  
 ..... 조사표 I  
 소형모터 ( 8342400 ) ..... 조사표 II

**사례 2**

〈문〉 • B업체는 스위치 ( 8391200 )를 생산한다. 다른 지정품목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스위치 생산은 지정단위 ( 천개 )미만인 경우가 많다. 매월별 생산이 다음과 같다고 할때 매월 조사표의 생산수량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월	1	2	3	4	5	6	7	8
생산량 (개)	680	400	420	380	600	480	400	450
누 계 (개)	680	1,080	1,500	1,880	2,480	2,960	3,360	3,810

〈답〉 • 통상 지정단위 이상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반올림규정에 따라 보고하면 됨.  
 • 지정단위 미만으로 생산하는 달이 연간 6월이상일 경우는 누계생산량 ( 또는 액 )에 따라 반올림규정을 적용함.

- 위 설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고

월	1	2	3	4	5	6	7	8
생산량 (천개)	1	0	1	0	1	0	0	1
※	월중생산 량반올림	—	누계량 반올림	—	월중생산 량반올림	—	—	누계량 반올림

### 사례 3

〈문〉 • C업체는 지정품목인 목제포장상자(3120100)를 주로하고 부수적으로 장식장(3200300)을 생산하였으나 금월부터는 장식장 생산에 주력하게 되어 목제포장상자는 부대품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금월 조사표의 산업분류부호는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

〈답〉 • 산업분류부호는 같은 조사표를 사용하는 품목만을 조사할 경우에는 연간출하액이 많은 품목의 산업분류부호, 조사표를 달리하는 품목들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 기재대상품목을 기준으로 출하액이 큰 품목의 산업분류부호를 기입함.

- 새로운 지정품목을 생산하거나, 기존 지정품목의 비중이 달라짐으로써 주종제품이 바뀔 경우 새로이 산업분류부호를 정하여야 함(다만 이 경우는 이러한 변동사항이 6월이상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이때 주종제품의 평가는 월간 출하액을 기준으로 함.

- 위 설문의 경우, 산업분류부호는 다음과 같이 바뀜



**사례 4**

〈문〉 D업체는 프레스기 생산업체이나 자금사정으로 휴업하였으며, 조사 당월생산, 출하실적은 없고 재고도 전무하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월분을 지급하였다.

조사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답〉
-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조사중지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설문의 경우 조사표 기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일반사항란의 「유고사항」:

유 고 사 항
1. 전 입
②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유고 사항	단위	생 산	...	월말재고
01	8231100	프레스기	2	MT	0	...	0

— 「원재료 및 연료사용 재고」

사용원재료가 없더라도 원재료부호, 명, 유고사항, 단위를 기입하고, 국산, 수입원재료 구분은 월말재고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월중사용량은 “0”, 월말재고량은 실제보유재고량을 기입함(다만 연료에 대하여는 사업체의 총사용량을 기입하

므로 공장유지, 사무실근무용등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기입)

一 「고용, 급여 및 조업사항」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월말종업원수,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 이직자, 금월말 상시종업원, 급여총액, 정  
액급여, 특별급여 항목은 기입, 다만 생산직종업원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근무 인원수, 시간수, 조업일수,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란은 “0”으로 기입

사례 5

〈문〉 • E업체는 이번에 신규사업체 확인대상업체로 통보되어 왔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E업체는 자체 제조시설은 없고,  
소아용 의복류를 몇군데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케 하여  
판매하는데, 다만 납품을 받을때, E업체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또한 위탁사업체에서는 단가계약으  
로 자기계산하에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대상업체가 되는지?

〈답〉 • 대상사업체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그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업체는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애초부터 조사대상이 아님. 따라서 E  
업체의 위탁물량은 위탁업체 개개에서 조사되어야 함.

(수탁업체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물론 조사할 필요가 없지  
만)

•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도·소매, 농림, 수산,

전기, 개스, 수도, 금융, 건설, 운수, 창고, 통신, 서서비스산업등)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위탁한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받은 제조업체에서 조사해야 함.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받았든, 단가 또는 총액계약에 의하든간에 무조건)

- 그러나 산업분류가 제조업인 사업체들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제공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조사할 대상이 달라지게 됨.
- 따라서 위 사례는 만약 조사하게 된다면 원초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닌 산업을 조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사례 6

〈문〉 • F사업체는 「유성페인트(5210310)」생산업체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기업내 G공장에서부터 「수성페인트(5210320)」를 이송받아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구입」란에 해당되는가?

〈답〉 • 「구입」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지정품목이고, 이와 포괄범위가 같은 제품을 외부로부터 구입(또는 수입)하거나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이송받는 경우임.

- 이때 포괄범위가 같은 제품이라함은 지수품목부호(품목부호중 앞의 5자리까지)가 일치하면 동일품목으로 간주함.
- 따라서 위 설문의 경우,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는 제품의 성질상은 다르나 「페인트(5210300)」에 함께 포괄되므로 동일품목으로 간주됨.

- F사업체에서 「수성페인트」생산이 전혀 없다고 할 때에 조

사표 기입예 :

품목부호	품 목 명	생 산	구 입	
			외부구입 (수입포함)	동일기업내 타공장
52110310	유성페인트	325	0	0
52110320	수성페인트	0	0	250

- 한편 G공장은 (전량 F공장으로 보낸다고 가정)

품목부호	품 목 명	생 산	출 하		
			국내시판	수 출	동일기업내타공장
52110320	수성페인트	250	0	0	250

#### 사례 7

<문> • H제약회사에서는 각 의약품 도매업체에 출하하였던 의약품들이 유효기간경과로 상당수 반품되어 왔으므로, 이를 폐기처리코자 한다. 「구입」란과 「재고」에 기입하는 방법은?

<답> • 반품된 제품은 「구입」란에 계상하여야 하나,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구입」으로 보거나 「재고」란에 계상할 수 없음.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되는 제품
- 반품된 제품중 대부분 해체되어 새로이 생산공정에 투입될 제품 (이때는 새로이 생산, 출하, 재고를 파악하여야 함)
- 단순처리, 가공으로 반품처에 재출고될 제품

**사례 8**

<문> • I사업체 제조1부에서는 회사기획실로부터 연승 5,000 kg의 제조명령서를 받았다. 따라서 PE사(株)를 투입하여 연승 5,000 kg을 생산하였는 바, 이중 3,000 kg에 대하여는 추가제조지령서에 의하여 어망생산으로 투입하여 2,900 kg의 어망을 생산하였다. 생산·재투입간의 관계는?

<답> •

제 품 명	생 산 량	재 투 입 량	출 하 량	재 고 량
연 승	5,000	3,000	0	2,000
어 망	2,900	0	0	2,900

- 일반적으로 생산량 관계조사는 경리장부상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음. 왜냐하면 경리장부는 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 체계이기 때문임. 따라서 정확한 생산량조사는 생산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함.
- 재투입관련문제는 쉽게 파악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일관공정에 걸쳐있는 재공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일반적으로 「재투입(자가소비)」이란 동일공장 내에서 1차적으로 생산완료된 중간제품을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시 원재료로서 투입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생산완료된 중간제품이라 하면, 일단 현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창고에 있건, 현장에 있건간에) 다른 공장 또는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기 위해 대기상태에 있는 반제품을 말함.
- 따라서 현재 어떤 특정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정중에 걸쳐있는 원재료는 설혹 중간제품 생산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중간상태를 일단 생산으로 잡고 다시 전량 재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생산완료된 제품이 아니고 재공품임)  
이러한 경우는 재투입관계는 무시되어야 함.

- 그러나, 일단 중간제품으로 생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제조명령에 따라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다시 소비되거나, 다음 제조를 위해 시간적·장소적으로 일단 분리되거나 출하를 위해 대기중인 반제품 상태의 것은 일단 재공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다시 소비될 경우는 재투입관계가 조사되어야 함. 여하튼 재투입문제는 생산담당부서에서(회계담당부문의 처리와는 별도로) 여하히 파악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임.

#### 사례 9

<문> • J 공장 생산부에서는 본사로부터 아연도강판 10,000 M/T의 생산명령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스톱보통강을 기초소재로 투입하여 생산을 완료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일관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하나, 아연도강판이 되기까지는 대강, 냉연박판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대강이나, 냉연박판의 생산을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제조명령서상의 제품 제조수량만을 확인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 • 이 경우에는 대강, 냉연박판이 지수품목이라 하더라도, 굳이 대강, 냉연박판 생산량을 추정한 후, 다시 아연도강판을 만들기 위해 재투입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비록 대강이나 냉연박판 상태에 있긴하나 그것은 일관공정상 경유부분에 불과하여 하나의 재공품이기 때문임.

따라서 「아연도강판」만 조사하면 됨.

**사례 10**

〈문〉 • J공장 생산부에서는 본사로부터 각각 별개의 제조지령서에 의하여 냉연박판 3,000M/T, 아연도강판 4,000 M/T의 생산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3,000 M/T은 냉연박판 공정까지만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아연도강판 4,000 M/T은 일관공정으로 진행하였다. 생산, 재투입의 관계는?

〈답〉 •

제 품 명	생 산 량	재 투 입 량	출 하 량	재 고 량
냉 연 박 판	3,000	0	1,000	2,000
아 연 도 강 판	4,000	0	2,000	2,000

※ 다만, 생산부에서 일관공정이라도 일단 중간제품으로 생산량을 잡았다가 다시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례 11**

〈문〉 • K업체는 알미늄샷시를 생산하면서 건설업도 겸업하고 있다. 자체에서 생산한 샷시바를 건축물샷시에 전량 투입하는데 재투입으로 볼 것인지?

〈답〉 • 제품을 자기사용(自己使用: 사무용, 업무용, 시험용, 전신용등)에 공하는 경우는 재투입이 아니라 출하로 포함해야 함. 더욱기 산업분류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제조업과 건설업, 제조업과 무역업등)에는 더욱 출하로 간주해야 함.

**사례 12**

<문> • L업체는 코오크스(5400400)를 자체 생산하여 이를 철강제품생산을 위해 연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자기사용으로 보아 「국내시판」에 포함할 것인지?

<답> • 코오크스를 생산하여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연료등으로 사용한 양은 출하가 아니고 재투입으로 처리함. (과거지침서의 처리방법을 변경)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는 출하가 아니고 재투입으로 하며 다음 경우가 이에 해당

— 제품원재료(원료, 부품)로서 투입

— 연료로 투입

— 촉매제, 환원제 등 화학처리를 위해 투입

— 다른 제품의 성질을 변형, 보완, 가공을 위하여 투입

※ 다만, 단순포장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자기사용으로 보아 동일기업내타공장출하 및 기타로 처리

**사례 13**

<문> • M업체는 반제품 및 부품(지수품목으로 채택된) 생산업체로서 대기업인 “갑”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갑”업체는 주로 수출오더에 의해 M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므로, M업체는 이를 전량수출로 계상하고 있다. 옳바른 것인지?

<답> • 원칙은 다음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함.

첫째, “갑”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

는 「시판」으로 조사해야 하고  
둘째, “갑”업체에서 부품 자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로 계상하여야 함.

**사례 14**

- 〈문〉 • 삼척N공장에서는 회주물을 생산하여 포항의 하치장으로 출하하였다. 포항의 하치장에서는 이 제품을 서울의 본사 지시에 의해 제품을 수요처에 인도하고 있다. 이때 N공장에서의 조사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 • N공장에서는 「국내시판」으로 처리해야 함. 왜냐하면 제품 관리가 N공장의 관할을 벗어났기 때문임. 물론 포항하치장이 N공장의 관할하에 있다면 출하가 되지 않음.
-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포항하치장이 회주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

**사례 15**

- 〈문〉 • O공장에서는 집적회로(8340700)를 생산하여 칼라 및 흑백 T.V.를 생산하는 동일기업내 P공장으로 전량 이송하고 있으며, P공장에서는 집적회로를 자체생산하지는 않고, O공장에서 보내온 전량을 T.V.생산에 투입한다고 한다. O공장 및 P공장의 처리는?
- 〈답〉 • O공장에서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 원재료(원료, 부품)로 제공하였으므로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에 계상함.

또한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되어 연료, 촉매제등으로 전량 투입되는 경우도 같음.

- P공장에서는 집적회로의 생산이 없음으로 「생산」 「구입」란등에는 기재할 수 없고, 다만 주요원재료인 경우, 「원재료 사용, 재고」란에 기입하여야 함.

**사례 16**

〈문〉 • Q공장에서는 R사업체 (동일기업내 사업체가 아님)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중유 2,000 kl를 빌려주었다. R업체에서는 다음 달에 이를 전량 변제하기로 하였다. 양 사업체의 조사표 처리는?

〈답〉 • 외상판매가 아닌 융통관계는 현물로 받을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빌려준 업체에서는 조사표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따라서 당월에 6,000 kl를 시판하고, 2,000 kl를 빌려주었다고 가정할 경우

외 부 판 매		동일기업내 타공장 및 기타	월 말 재 고
국 내 시 판	수 출		
6,000	0	0	5,000

로 되어 월말재고량에는 빌려준량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 됨.

- 만약 다음달에 가서 현물변제대신 판매 (현금, 외상) 형태로 약정이 바뀌었다면 그때에 출하로 계상하고, 재고에서 제외시

키면 됨.

- 한편 R사업체에서는 빌려온 제품 2,000 kℓ를 포함하여 8,000 kℓ를 시판하고 재고가 500 kℓ 남았다고 할 경우

구 입		출 하			월말재고
외부(수입포함)	동일기업내타공장	외 부 판 매		동일기업내 타 공장 및 기타	
		국내시판	수 출		
2,000	0	8,000	0	0	500

- R업체에서 다음달에 2,000 kℓ를 Q공장에 전량 변제하였다고 하면 R업체에서의 처리방법은(구입없고 시판 6,000 kℓ, 재고 3,000 kℓ라 가정)

구 입		출 하			월말재고
외부(수입포함)	동일기업내타공장	외 부 판 매		동일기업내 타 공장 및 기타	
		국내시판	수 출		
0	0	6,000	0	2,000	3,000

- 만약 현물변제하지 않고 약정을 바꾸어 현금으로 갚았다면 R업체에서는 조사표에 나타낼 필요가 없음.

**사례 17**

- <문> • S업체에서는 「인형 및 장난감」을 생산하고 있는바, 생산액, 출하액은 공장인도가격으로 평가하여 조사표에 기재하여 주나, 재고액은 후입선출법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생산, 출하, 재고액 간에 함수상 불일치가 생긴다고 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답> •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월말재고액+당월생산액+구입액-재투입액-출하액=월말재고액」의 함수관계가 성립할 것이지만, 회계처리방법이나, 금액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불일치가 생기게 됨. 이때는 실제재고액(현싯가기준이 원칙이나 이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장부상 가액)을 먼저 기입한후, 증감액만큼을 ⊕, ⊖기호를 붙여 「과부족조정」(이 란이 없으면 기입불필요)란에 기입하면 됨.

예컨데 실제재고액은 15백만원이나 위 산식에 의해 계산된 재고액은 12백만원이라면

과 부 족 조 정							월 말 재 고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백 단	십 만	만	천	백	십	일
⊕						3							1 5

와 같이 기입(과부족조정란이 없는 경우는 실제재고만 기입)

**사례 18**

- <문> • T업체는 면직물을 생산하여 부분 자수과정을 거친후 동일기업내 U업체에 출하하고 U업체는 이를 완전 자수직물로 만들고 있다. 양 회사가 모두 대상사업체일때의 처리관계는?

- <답> • 자수직물(2140500)은 자수과정이 모두 완료된 것만 조사한다. 따라서 T업체는 부분자수과정만을 거쳤으므로 「면직물생산→재투입→자수직물생산→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해서는 안되고 「면직물생산→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조사하여야 함.

- 한편 U업체의 경우, 면직물을 자체생산하면서 완전자수직물을 만들 경우에는 T업체에서 받은 일부자수면직물은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재투입하여 자수직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야 함. 다만, 자체내에서 면직물 생산이 없는 경우는 T업체에서 받은 면직물은 「구입」이 되지 않고 「원재료사항」에 기입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조사표로 작성하면 다음예와 같음.

① T업체의 경우

품 목 번 호	품 목 명	생 산	출 하		
			국내시판	수 출	동일기업내 타공장
21120110	순면직물	150	0	0	150

② U업체의 경우

i) 면직물 자체생산이 있는 경우

품목부호	품목명	생 산	구 입		동일공장내 재 투 입	출 하	
			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 공 장		국내시판	월말재고
2120110	순면직물	400	0	150	450	100	0
2140500	자수직물	450	0	0	0	400	50

ii) 면직물 자체생산이 없는 경우

품목부호	품목명	생 산	구 입		동일공장내 재 투 입	출 하	
			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 공 장		국내시판	월말재고
2140500	자수직물	450	0	0	0	400	50

**사례 19**

〈문〉 • 면직물, 방모직물등 일반 직물과 염색가공직물과의 관계는?

〈답〉 • 염색가공직물이 지수품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염색가공업체(주로 외주가공)들의 동향을 자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일반직물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자체 염색시설을 갖추고 염색과정까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직물로 조사하여야 하고, 다만 외주가공만을 해주는 염색업체나 동일기업내에 속하면서 염색만을 산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염색가공직물로 조사하여야 함.

- 결국 광공업 동태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염색가공직물의 총량은 우리나라 전체 염색가공직물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가공이나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염색을 위탁받아 처리해준 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임.
- 예를들어 V사업체에서 면직물을 생산하여 자체염색을 하는 경우와 동일기업내 타공장인 W사업체(또는 타사업체)에 염색가공을 위탁한다고 할 경우의 조사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V사업체의 경우

i.) 면직물 생산과 함께 자체염색하는 경우

품목부호	품 목 명	생 산	구 입		재투입	출 하		
			외 부	동일기업내		국내시판	수출	동일기업내타공장
2120120	혼방면직물	120	0	0	0	50	30	0

ii) W사업체에 염색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 (i)조사표와 같음.

② W사업체(염색가공만을 하는 업체)의 경우

품목부호	품목명	생 산	구 입		재 투입	출 하		
			외 부	동일기업내		국내시판	수 출	동일기업내 타공장
211301100	염색가공직물	120	0	0	0	120	0	0

※ 이 경우 「동일기업내 타공장 및 기타 출하」가 되지 않는 이유는 V사업체에서는 염색가공 직물로 조사되지 않기 때문임.

**사례 20**

〈문〉 모기업체인 X사업체는 각각 독립된 사업체 고유번호를 가진 Y, Z사업체를 계열사업체로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Y, Z사업체는 모기업체인 X사업체로부터 원재료 일체를 공급받아 X사업체와 같은 지정품목을 생산한다. Y, Z사업체에서의 조사표 처리는?

〈답〉

-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또는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은 각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여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이를 각 공장간에 출하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지 않고 타공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이를 전량 원재료를 제공한 공장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위·수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함. 따라서 Y, Z사업체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원재료를 전량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출하」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원재료 제공공장과 별개로 출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관계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각각 대상사업체로 처리되어야 함. 따라서 이 경우 Y, Z사업체는 X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를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원재료 사항란에 기재하고, 제품생산, 출하, 재고도 조사되어야 함.

## Ⅵ. 조사대상사업체 관리요령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 1. 개 요

### 가. 관리목적

- 신규 및 휴·폐업등의 변동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업체의 누락·중복을 방지하고, 표본사업체를 적기에 보완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조사표 누락·중복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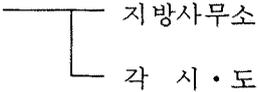
### 나. 대상사업체

-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및 기계수주 사업체

### 다. 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변동사항을 대상

### 라.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지방사무소
- 각 시·도→지방사무소
- 지방사무소→중앙(산업통계과)
- 중앙(산업통계과) 

### 마. 관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등)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관리

### 바. 관리사항

- 조사지정 사업체의 변동사항
  - 휴업, 폐업, 진출, 합병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 신규 및 전입·전출 사업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체
  - 전입·전출 사업체
- 조사표 변동사항
  - 조사관할변경에 따른 변동
  - 조사중지 지시에 따른 변동

사. 관리방법

- 지방사무소 : CRT입력 및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시도 :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지방통계사무소에 제출
- 중앙 (산업통계과) :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에 의한 후속조치
- 지방사무소간 전산망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는 제출하지 않음.

아. 보고서식

-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총괄)
-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자. 보고서 제출

- 매월 10일까지 중앙 (산업통계과)에 도착

**2.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에는 변동된 내용만 기재  
( 단, 사업체 변동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체 고유번호 및 사업체 명을 반드시 기입 )
- (2)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 (필요한 경우 영문 병기)로

기재

(3) 기입한 사항의 정정시는 횡선을 긋고 바로 그 위에 다시 기재  
나. 관리현황 보고서 기재요령

(1) 사업체 고유번호

- 지정된 사업체 고유번호(7단위)를 기재하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신규로 조사된 사업체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번  
호를 기재

(2) 공장(사업체)명

- 공장(사업체)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을 기입한다.

※ 기입예 :

××공업(주)울산공장, (주)××산업 창원공장

- 사업체 명부와 실제공장(사업체)명이 다른 때에는 관리현황 보  
고서에 기재, 제출한다.

(3) 소재지 및 행정구역 분류부호

- 소재지는 현재 공장(사업체)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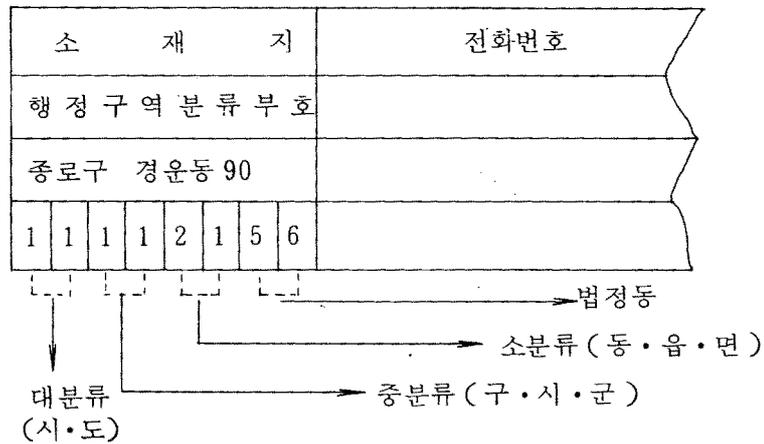
※ 기입예 :

- ① 여러개의 법정동이 모여서 하나의 행정동을 구성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가동 경운동 90 번지는 종로  
구 경운동 90
- ②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는 경우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35의 11번지는 안양시 호계2동  
935-11로

③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는 법정동 명칭을 기재한다.

- 행정구역 분류부호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송부한 분류부호 책자를 활용하여 지정된 구역분류부호를 기입

※ 기입예



(4) 전화번호

- 조사표가 실지로 작성되고 있는 과·계의 전화번호를 기입

(5) 산업분류

- 지정품목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해당하는 산업 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 동일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달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들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 세세분류를 기입

(6) 사업체규모

- 사업체규모는 사업체별로 기 지정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1. 대규모사업체 2. 중소기업체 )

- 신규사업체인 경우는 사업체규모 기준에 따라 분류 기입

(7) 작성구분

- 당해 공장(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본사(사무실등), 타공장등에서 조사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호를 기입

※ 기입예 :

- |                                    |   |
|------------------------------------|---|
| — 당해공장(사업체)                        | 1 |
| — 타공장(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 | 2 |
| — 분리된 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            | 3 |

(8) 조사종류

- 사업체에서 제출되는 조사종류에 따라 해당된 조사표란에 ○표를 기입
- 단일공장(사업체)에서 동태 지정품목이 달라 I, II, III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란에 ○표를 기입

(9) 조사지정품목

- 각시·도와 지방통계 사무소에서 조사대상품목의 포괄범위와 일치하고 사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규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공장(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태조사, 생산능력의 지정품목명과 품목번호를 기입
- 동일공장(사업체)에서 여러개의 조사지정품목이 생산되는 경우란을 달리 기입

※ 기입예 :

조 사 지 정 품 목												
광공업동태품목 및 부호						생산능력품목 및 부호						
모						래						
0	9	0	0	3	0	0						
자						갈						
0	9	0	0	4	0	0						

(10) 유고내용

① 전입·전출

- 행정구역(각시·도)의 경계를 달리하여 공장(사업체) 설비가 이동되는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시·도에선 전입, 이전하기 전 장소의 관할 시·도는 전출
- 공장(사업체)의 이동이 각시·도의 경계를 이탈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전출이 아니고 소재지 변경(관할이 같은 경우) 또는 조사 관할변경에 해당
- 행정구역 관할변경으로 소속시·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봄.

② 신규

- 중앙(산업통계과)에서 표본추출결과 새로 조사 지시된 공장(사업체).
- 조사지정품목의 포괄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사업체)이 새로 설립된 경우

③ 휴업

- 생산시설과 건물을 유지한채로 1개월이상 전혀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비지수 품목생산은 계속하더라도 지정품목을 3개월이상 전혀 생산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계획이 불투명한 업체도 휴업으로 간주

④ 폐업

- 사업체의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가 지금까지의 생산활동을 영구적으로 중지한 상태를 말한다.
- 생산설비를 완전 매각 처분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해체인 경우
- 광업 및 제조업체가 타산업(건설, 서어비스등)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 6개월이상 휴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계속하여 지정품목 생산계획이 없는 업체 및 완전 폐업 사업체는 비교란에 「조사중지요망」이라 기재

⑤ 합병·합산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타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을 흡수하여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완전하게 하나의 공장(사업체)으로 결합되는 경우

※ 공장(사업체) 감소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타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을 흡수하였으나 경영 및 장부조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명칭변경만 발생)

⑥ 비 고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예 :

- 경기도에서 전입, 서울로 진출
- 현지 색출로 신규, 중앙지시로 신규
- 설비 완전폐기로 폐업등
- 사업체 변경, 동일 시·도내 주소이동, 전화번호 변경, 작성구분 변경, 조사종류 변경은 유고부호가 없으므로 변경내용만 기입
- 폐업·6개월이상 휴업등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은 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적색으로 “조사중지요망”이라 기입한다.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3.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기입한 사항을 정정할시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다시 기재
- (2)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의 유고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사업체의 내용만을 집계하여 기재
- 단, 폐업과 조사중지는 중앙지시에 따라 기입여부를 결정한다.

나.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1) 전월말 사업체 및 조사표

- 전월말 현재 제출된 조사표수와 조사대상 사업체수를 기입

(2) 증가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증가된 대상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를 각 항별로 기입

① 신규

- 중앙에서 새로이 지시된 신규조사 사업체와 그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매수를 기입
-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신규사업체를 현지에서 색출하여 조사하는 경우 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② 전입

- 타시·도에서 이전되어온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③ 조사관할 변경

- 동일시·도내에서 지방통계사무소간 전입되는 사업체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3) 감소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감소된 대상 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각 항목별로 기입

① 조사중지

- 중앙에서 폐업 또는 휴업업체(전체휴업 또는 지정품목휴업)중 조사중지 지시한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② 합병·합산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합병·합산으로 인하여 사업체의 감소와 조사표 작성 매수에 변동이 있을시에 기입  
단, 합병·합산이라도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별도로 수행되는

경우는 명칭변경 또는 상호변경만 발생한다.

- 흡수합병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관리현황 보고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③ 조사관할 변경

- 동일 시·도내에서 지방통계사무소간에 전출되어가는 공장(사업체)과 조사표의 감소된 숫자를 기입

④ 전 출

- 공장(사업체)의 생산설비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공장(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⑤ 비 고

-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⑥ 기 타

- 유고사업체로서 조사중지 요청한 사업체의 조사표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휴업으로 표기 제출한다.

( ) 월분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

구분 조사종류	전월말사업체 및 조사표		증		가		감		소		금월말사업체 및 조사표	비고
	신	규	전	입	조사관 변	조사관 할	조사중지	합병·합산	조사관 할	전		
광공업동태조사 대상사업체												
생산능력조사 대상사업체												
기계수주조사 대상사업체												
합 계												
광공업동태 조사표 I												
광공업동태 조사표 II												
광공업동태 조사표 III												
소 계												
생산능력조사표												
기계수주조사표												
합 계												
사 업 체 수												
조 사 표 수												



29-5

# 가장조사포럼 및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국가정책연구소

통제청자료실



B0003354

## VII. 광공업동태조사지정품목 분류표

대분류 2. 광           업  
대분류 3. 제   조   업  
대분류 4. 전   기   업

## 대분류 2. 광 업

### 중분류 21. 석탄광업, 23. 금속광업, 29. 기타광업

#### ○ 문제점 및 유의사항

##### 1. 휴광, 폐광사업체

가. 광업의 경우 자금 및 기타 사정으로 휴광이 많고,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광산주를 매월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관할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실적보고 유무를 매월 확인.

나. 폐광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 보고

다. 광산물은 그 품위가 광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품위에 따라 실수율 또는 실채취율이 다르므로 매월 품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 2. 품위환산

##### 가. 품위환산 방법

###### 1) 품 위

채굴된 광석에서 해당광물의 실채취량을 환산할 수 있도록 정한 광물의 함유 비율.

###### 2) 환산방법

광산물은 그 품위에 따라 실수율 또는 실채취율이 다르기 때문에, 광산물 품위환산 조건표에 의한 실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함.

예) 1. 품위 40%인 철광석 100% 경우

( 품위 40%, 환산수치는 0.643임 ) :

$$100\% \times 0.643 \approx 64\%$$

2. 품위 42.5%와 42.55% 철광석 각각 100% 경우

( 품위 42%의 환산수치 0.663, 품위 43%의 환산수치  
0.706임 )

가) 품위 42.5%인 경우

$$100\% \times \{ 0.663 + (0.706 - 0.663) \times 5/10 \} \approx 68\%$$

나) 품위 42.55%인 경우

$$100\% \times \{ 0.663 + (0.706 - 0.663) \times 55/100 \} \approx 69\%$$

\* 품위 43%인 경우는 71%이므로 42.5%, 42.55%등을  
사사오입하여 43%로 계산해서는 안됨.

3. 매월 품위가 달라지는 경우

가. 품위별로 각각 생산, 출하, 재고를 환산

나. 월중 품위가 변동될 때도 품위별로 환산된 물량을 합계함.

4. 기준품위

- 무연탄 : 4,800 ~ 5,000 cal
- 철광석 : Fe 56% ( 조건표에 의거 환산할 것 )
- 중석광석 :  $W_o_3$  70% ( " )
- 연광석 : Pb 50% ( " )
- 아연광석 : Zn 50% ( " )

5. 은광석, 금광석의 경우는 제련시설을 갖춘 사업체에서는 99.9%의

순은, 또는 순금의 실수량으로 조사하고, 제련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해당 광산의 금, 은의 함유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6.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  
단, 구분이 명확한 혼합광은 구분조사
7. 당해 사업체서 채굴한 광석을 기초자료로 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  
할 경우 그 광물은 원재료로 투입되는 전량을 재투입으로 기입  
예) 석회석 조사시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생산할 경우  
원료로 투입되는 물량은 재투입량으로 기입
8. 무연탄의 재고는 산지재고, 역두재고, 소비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체의 재고라 함은 산지, 역두, 소비재고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관리하에 있는 재고 전부를 말함.
9. 조사범위  
품목개념, 원재료, 용도등을 기준으로 포괄범위내에서 조사하여야 하  
며 유사한 것으로, 포괄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문의  
후 처리.
10. 기 타  
광석의 주판매처, 품위, 수출이 있는 경우 수출국 등을 구체적으로  
매월 기입.

광산물 품위환산 조건표

(%당×합량=광산물 환산량)

광산물 함유량 (%)	광산물%당환산수치			광산물 함유량 (%)	광산물%당환산수치			
	철	연	아연		철	연	아연	증석
20	0.275	0.374	0.372	55	0.977	1.112	1.112	
25	0.357	0.473	0.472	56	1.135	1.135		
30	0.447	0.574	0.572	57	1.028	1.157	1.158	
32	0.485	0.615	0.613	58	1.056	1.180	1.181	
33	0.504	0.636	0.634	59	1.080	1.202	1.203	
34	0.524	0.657	0.655	60	1.104	1.225	1.227	0.819
35	0.544	0.678	0.676	61	1.130	1.248	1.250	0.836
36	0.563	0.698	0.696	62	1.157	1.271	1.273	0.854
37	0.583	0.719	0.717	63	1.182	1.295	1.296	0.871
38	0.604	0.740	0.738	64	1.206	1.318	1.320	0.890
39	0.624	0.762	0.760	65	1.233	1.344	1.347	0.907
40	0.643	0.783	0.781	66	1.261	1.370	1.373	0.925
41	0.653	0.804	0.802	67	1.285	1.395		0.944
42	0.663	0.826	0.827	68	1.310	1.420		0.962
43	0.706	0.847	0.846	69				0.981
44	0.727	0.869	0.868	70				
45	0.747	0.891	0.890	71				1.018
46	0.772	0.913	0.912	72				1.038
47	0.793	0.934	0.934	73				1.057
48	0.819	0.956	0.956	74				1.077
49	0.840	0.978	0.978	75				1.097
50	0.862			76				1.116
51	0.883	1.023	1.023	77				
52	0.910	1.045	1.045	78				1.156
53	0.932	1.067	1.067					
54	0.955	1.090	1.090					

소분류 210 . 석 탄 광 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100100	무 연 탄 (無 煙 炭)	℥	고정 탄소의 함량이 높고 휘발분이 적으며 회분이 많은 석탄

소분류 230 . 금 속 광 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300100	철 광 석 (鐵 鑛 石)	℥	주로 철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선광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성분이 제거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함유율이 높아진 광석)  Fe 56%로 환산한다.
0300200	중 석 광 석 (重 石 鑛 石)	℥	주로 중석을 함유하는 정광  Wo <sub>3</sub> 70%로 환산한다.
0300300	은 광 석 (銀 鑛 石)	kg	은을 함유하는 원석  Ag 99.9%로 환산한다.

조 사 범 위	원재 료	용 도
• 갈탄, 역청탄, 아탄은 제외		연료, 연탄

조 사 범 위	원재 료	용 도
○ 적철광, 자철광을 조사		
○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은 정량을 조사		은괴
○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원석 또는 정광의 은 함유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 제련소에서 제련된 은괴는 7210600으로 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300409	금 광 석 (金 鑛 石)	kg	금을 함유하는 원석 Au 99.9%로 환산한다.
0300500	연 광 석 (鉛 鑛 石)	%	주로 납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 Pb 50%로 환산한다.
0300600	아 연 광 석 (亞 鉛 鑛 石)	%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 Zn 50%로 환산한다.
0300709	몰리브덴광석	kg	MoS <sub>2</sub> 를 주성분으로 하는 몰리브데나 이트광석 몰리브덴정광 90%로 환산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금 정량을 조사</li> <li>○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원석 또는 정광의 금함유 비율을 적용하여 조사.</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련소에서 제련된 금괴는 7210700으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연광, 백연광, 황산연광, 기타연광을 포함.</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련된 연괴는 제외.</li> </ul>		연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아연광, 이극광, 홍아연광, 탄산아연광을 포함한다.</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련된 아연괴는 제외</li> </ul>		아연괴
		진공관재, 굴신재, 내열합금재, 페인트안료, 반도체, 전기료

소분류 290 . 기타 광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900100	화 강 암 (花 崗 岩)	%	심성암의 일종으로 석영, 정장석, 사장석, 운모등을 주성분으로 한 석재(썩돌)
0900200	쇄 석 (碎 石)	%	각종 암석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돌조각
0900300	모 래	m <sup>3</sup>	강변, 해변에서 자연상태로 채취한것.
0900400	자 갈	m <sup>3</sup>	강변, 해변에서 자연상태로 채취한것.
0900500	석 회 석 (石 灰 石)	%	탄산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성암(회돌) CaO 50%로 환산한다.
0900600	고 령 토 (高 嶺 土)	%	바위속에 있는 장석이 풍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흰빛 또는 잿빛을 띤 흙
0900709	장 석 (長 石)	%	정장석, 조장석, 회장석등의 광석이 있으며 유리나 도자기의 주원료로 쓰여지는것.
0900800	규 석 (硅 石)	%	규소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암석.
0900900	납 석 (蠟 石)	%	수분함량이 적은 연질광물로서 용이하게 분쇄되어 쓰이는 광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운모화강암, 백운모화강암 포함.</li> <li>×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은 제외 (예 ; 비석, 상석등)</li> </ul>		건축, 토목용
		건축용, 도로포장, 철도 로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의 것을 조사.</li> <li>× 산업용 모래 ( 규사 ) 는 제외</li> </ul>		건축용, 도로포장, 철도 로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의 것을 조사</li> </ul>		건축용, 도로포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운석을 포함.</li> </ul>		시멘트, 석회, 내화재, 벽재, 판유리, 도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토포함.</li> </ul>		도자기, 시멘트
		도자기, 유리, 유리섬유, 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사 ( 산업용 모래 ) 제외.</li> </ul>		내화용벽돌, 주강사, 주 물사, 유리공업, 전자산 업
		내화재료, 실충제, 아스 팔트충전재, 고무공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0901009	천 일 염 (天 日 鹽)	%	해수를 자연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켜 얻은 자연염.
0901100	흑 연 (黑 鉛)	%	전기의 양도체이며 내고온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광물
0901200	활 석 (滑 石)	%	매우 부드럽고 촉감이 매끄러우며 전기에 대해 절연성을 가지며 분말상태일때 흡수성, 고착성이 강하며 내화성이 있어 내화재, 충전재등으로 쓰여진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암염, 재제염은 제외.		
× 공업적으로 무연탄, 피치등을 고온 가열하여 제조된 것은 제외.		주형재료, 탄소강원료, 내화재료, 탄소봉, 원자로용, 운할재
○ 스테아타이트, 소우프스톤을 포함 ..... × 활석분은 제외.		요업제품재료, 페인트원료, 살충제, 제지, 내화재, 화장품, 고무

## 대분류 3. 제조업

###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햄 및 소시지는 축육제품과 어육제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어육 햄, 어육소시지는 어육함량이 60%이상인 것이며, 혼합어육햄, 혼합어육소시지는 각각 어육햄, 어육소시지에서 조사한다.(식품제조허가시 구분허가하고 있음)
2. 분유는 생우유를 완전 탈수시킨 것으로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우유기저 이유식을 포함한다.  
곡분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기저 이유식은 제외됨을 주의
3. 냉동물고기에 냉장 또는 빙장된 것은 제외  
냉동 :  $-20^{\circ}\text{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각시켜 보관한 것  
냉장 :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  
빙장 : 얼음을 이용하여 부패방지 하는 것  
원양어선상에서 냉동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은 제외되며 국내에서 가공처리를 위해 해동시킨 것을 다시 냉동시킨 경우는 냉동시점에서 조사
4. 어묵은 어육을 갈아서 만든 것으로 찐어묵, 구운어묵, 튀김어묵 등 명칭, 형태에 관계없이 원재료 및 제조과정이 유사한 것은 모두 포함한다.(덴뿌라, 오뎅 등)  
원양어선상에서 생선을 일차 가공하여 만든 냉동어육은 어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에서 제외한다.

5. 인삼차 및 분말인삼은 별도 조사하며 인삼차는 물엿 또는 과당을 혼합하여 과립 또는 분말화 시킨것으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인삼제품(인삼정, 인삼엑기스등)은 제외
6. 아이스크림, 빙과는 유지방함유량 및 성형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함유량이 일정량 이상의 것으로, 반고형의 상태로 되어진 것을 말함.
7. 과즙음료는 과일을 입착하여 즙을 낸 것으로 과육부분의 섬유질등을 완전히 걸러내어 순수액상으로 된것을 말하며, 넥타는 과육부분을 갈아서 여과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한다.  
과즙음료에 넥타는 제외되나, 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한 것(넥타쥬스)은 포함조사
8. 재건조잎담배는 제막엽만 조사대상으로 하며 주막(잎담배줄기), 판상엽은 제외

소분류 311-312 . 식료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10100	햄	Kg	돼지고기, 어육을 염장, 훈제한 것
1110110	축 육 햄	Kg	돼지고기를 염장, 훈제한 것
1110120	어 육 햄	Kg	참치등 어육을 분쇄하여 염지한 것을 익혀 햄과 유사하게 만든 어육연제품
1110200	소 시 지	M/T	돼지고기, 어육 등을 분쇄하여 혼합한 것에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훈제, 케이싱한 것
1110210	축육소시지	M/T	돼지고기, 가축고기를 분쇄하여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혼합, 훈제 케이싱한것
1110220	어육소시지	M/T	어육을 분쇄하여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소시지와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케이싱한 것.
1110300	가축가공고기 (家畜加工고기)	M/T	가축 및 가금고기를 절단 포장하거나 염장, 건조, 훈제등 가공처리한 것
1120109	치 즈	Kg	전지유, 탈지유, 크림, 버터밀크등을 원료로하여 유산균과 렌넷을 첨가하여 우유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유정을 제거, 가열, 가압, 발효 숙성한 유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베이컨은 제외</p> <p>○ 햄소시지는 소시지에서 조사</p> <p>○ 어육햄, 혼합어육햄을 포함</p>	<p>돼지고기</p> <p>참치, 명태</p> <p>등</p>	
<p>× 베이컨, 햄은 제외</p> <p>○ 어육소시지, 혼합소시지를 포함</p>	<p>가축고기</p> <p>돼지고기</p>	
<p>× 통조림은 제외</p>		
<p>○ 가공치즈를 포함</p> <p>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유회시킨것</p>	<p>우유,</p> <p>유제품</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20200	분 유 (粉 乳)	M/T	생우유를 탈수시켜 분말화한 것
1120300	아 이 스 크 립	Kℓ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당류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동결한 것으로 유지방 함유량이 일정량 이상의 냉동식품
1120400	시 유 (市 乳)	Kℓ	음용으로 하기 위해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것
1120500	유 산 균 음 료 (乳 酸 菌 飲 料)	Kℓ	유 또는 유제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균상 또는 액상으로 한 것
1130100	농 산 물 통 조 립 (農 産 物)	M/T	각종 과일, 채소를 가공 살균 및 저온가열하여 캔, 병등에 밀봉한 것
1130209	냉동과실및간밤	Kg	과일을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냉시킨 것
1130309	냉 동 과 즙 원 액 (冷 凍 果 汁 原 液)	Kℓ	과일즙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시킨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 탈지, 조제분유, 우유기저이유식을 포함</li> <li>.....</li> <li>× 곡물기저 이유키는 제외</li> </ul>	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류를 포함</li> <li>.....</li> <li>× 빙과(하드, 아이스케키)류는 제외</li> </ul>	우유, 설탕 향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유(딸기우유, 커피우유등) 및 탈지유등을 포함</li> <li>.....</li> <li>× 양유, 연유등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균 발효유 및 유산균음료를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일 및 야채통조림을 포함</li> <li>.....</li> <li>× 잼, 케찹등은 제외</li> </ul>	야채, 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 밥을 포함</li> <li>○ 냉동채소는 제외</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40100	수산물통조림	M/T	어개류를 가공 가열 살균하여 밀봉한 것
1140200	냉 동 물 고 기 ( 冷 凍 )	M/T	생선을 변질되지 않게 급냉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물고기
1140300	한 천 ( 寒 天 )	Kg	우무가사리, 강리등에 함유되어 있는 점질물, 갈락토우스 및 무수갈락토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
1140400	어 목	Kg	어육을 갈아서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부원료를 첨가하여 증기·열수로 자숙하거나 이를 유탕처리한 것
1140500	가 공 어 패 류 ( 加 工 魚 貝 類 )	M/T	어개류를 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1140609	가 공 해 조 류 ( 加 工 海 藻 類 )	Kg	미역, 다시마, 김등 해조류를 건조 염장, 훈제한 것
1150100	대 두 유 ( 大 豆 油 )	Kℓ	식용 콩기름
1150209	유 채 유	Kℓ	유채실에서 채취하여 정제한 식용유
1150309	옥 수 수 유	Kℓ	옥수수 배아에서 채취한 식용유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고등어, 꽁치, 참치, 굴, 조개, 골뱅이 등 어개류를 가공한 통조림 조사		
○ 빙장, 냉장 및 원양어선에서 냉동한 것은 제외하며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이라도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냉동한 것은 조사		
	우무가사리 강리	양갱, 우무, 젤리 수성 도료, 세균배양기
○ 찐어묵, 구운어묵, 튀김어묵, 혼합어묵 을 포함 ○ 맛살류를 포함 ..... × 오징어 혼제품은 제외		
○ 오징어포, 어포, 건조조갯살, 오징어 혼제품등 포함. × 젓갈류는 제외.		
× 생김을 구워 소금등을 친 가공품 (조미김, 맛김)은 제외. 튀각도 원초를 구입하여 가공한 것 은 제외.		
× 비식용 식물유지로서의 콩기름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50400	대 두 박 (大豆粕)	M/T	대두를 숙성하여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가공처리한 것
1150500	마 가 린	M/T	정제한 동식물의 유지·식용경화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물등을 첨가하여 유화시켜 만든 가소성을 가진 것 또는 유동상의 유지, 가공식품
1150600	쇼 팅	M/T	식용동식물유지 및 식용경화유를 혼합 가공처리한 것으로 식염등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적은 것 (수분함량: 마가린 18%이하, 쇼팅 0.5% 이하)
1160100	밀 가 루	M/T	밀의 배젓부를 제분한 것
1170100	빵 및 케익	M/T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등 첨가물을 가하여 굽거나 찌거나하여 가공한 식품
1170200	건과자및스낵류 (乾果子 및 스낵類)	M/T	밀가루, 설탕등을 주원료로 굽거나 튀기거나 볶은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콩깻묵 포함		사료, 된장, 간장용
× 버터는 제외	식물성기름 동물성기름	
× 마가린은 제외	동식물성 유지	튀김용
○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	연질, 경질 소맥	
○ 식빵, 과자빵, 카스테라, 케익류 등을 포함하여 주원료는 밀가루뿐 아니라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등 곡분을 가공한 것은 모두 포함 ○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만두는 포함. ○ 초코파이, 빅파이 등 제과업체에서 생산되는 파이류는 과자빵에 포함 ..... × 건빵은 제외 × 만두피만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	곡분, 이스 트, 설탕	
○ 비스킷, 미과, 건빵, 스낵류등을 포함하며 기타 옥수수, 감자등을 소재로	밀가루, 감 자, 옥수수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170300	설 탕 과 자 ( 雪 糖 果 子 )	M/T	설탕, 물엿, 초코렛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과자
1170400	껌	M/T	천연 또는 합성수지에 가소제 충전제 감미료, 착향료를 배합하여 성형한 것
1170500	빙 과 ( 冰 菓 )	M/T	설탕물, 과일즙, 향료, 유제품등 첨가물을 혼합하여 고형 또는 반고형상태로 냉동시킨 것
1170600	인 스텐 트 면	M/T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하여 이에 각종 첨가물을 혼합하여 성형 또는 알파화한 것으로서 스프를 첨부한 것
1180100	정 당 ( 精 糖 )	M/T	사탕수수, 사탕무우에서 얻은 원당을 정제한 것
1210100	간 장	Kℓ	
1210200	글루타민산소다	M/T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한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상태의 조미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한 유사한 제품을 포함</p> <p>× 곡물의 씨 자체를 볶거나 튀기거나 하여 가공한 것은 제외</p>	<p>고구마, 양 과, 우유, 팜유, 설탕 조미료등</p>	
<p>○ 캔디, 드롭프스, 카라멜, 초코렛, 제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밀가루과자(비스킷류)에 초코렛을 입힌 것은 건과자에서 조사</p>	<p>초코렛, 설탕, 물엿, 향료</p>	
	<p>껌베이스, 분당, 과당 향료</p>	
<p>×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콘류 등은 제외(아이스크림에서 조사)</p>	<p>설탕, 물, 과즙, 우유 식물성지방</p>	
<p>○ 인스턴트식품으로 면이 포함된 것은 모두 조사</p>	<p>밀가루, 우 지, 팜유, 조미료</p>	
<p>○ 정백당, 갈색당을 포함</p>	<p>원당</p>	
<p>○ 양조간장, 화학간장을 포함</p>		
<p>× 순수 글루타민산소다에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은 혼합조미료로 조사 (다시다 등)</p>	<p>당밀, 염산 가성소다, 사탕수수</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210300	정 제 소 금 (精製소금)	M/T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해수를 직접 진공증발하여 농축정제한 것으로 짠맛을 내는 결정체
1210400	혼 합 조 미 료 (混合調味料)	M/T	식품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식품을 건조 가공한 것에 아미노산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분말로 만든 조미료
1210500	마 요 네 즈	M/T	계란노른자위, 샐러드유, 설탕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
1220100	홍 삼 (紅 蔘)	Kg	6년생 인삼을 찌서 말린것
1220200	인 삼 차 (人 蔘 茶)	Kg	인삼을 농축하여 물엿, 과당등을 혼합한 것을 과립 또는 분말로 만든것
1220309 ✓	분 말 인 삼 (粉 末 人 蔘)	Kg	인삼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1220400	맥 아 (麥 芽)	M/T	보리, 밀 등을 발아시켜 건조한 것
1220500	두 부	M/T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가열 여과한 여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천일염, 맛소금제외		
○ 맛나, 다시다, 진국등의 조미료를 조사 ----- × 맛소금, 라면스프는 제외		
	계란, 설탕 샐러드유	
× 홍삼을 가공한 제품은 제외. (홍삼정, 삼차, 삼분은 제외) ----- × 건삼은 제외	인삼	
× 분말인삼은 제외	인삼	
○ 약재용,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사 ----- × 인삼차는 제외		
		맥주, 음료, 당류
○ 연두부, 순두부를 포함 ----- × 순두부는 두부제조를 위해 재투입 되는 것은 제외하며 그 자체로 판 매되는 것만을 조사	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220600	전 분 ( 澱 粉 )	M/T	감자, 고구마, 옥수수등을 마쇄하여 사별, 분리, 정제,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
1220700	물 엿	M/T	곡분이나 고구마 등을 원료로 하여 산으로 당화시킨 산당화엿과 맥아로 당화시킨 맥아엿
1220800	과 당 ( 果 糖 )	M/T	전분, 설탕 또는 기타 다당류를 가수분해하여 농축한 것
1220900	식 용 사 카 린	Kg	탄수화물이외의 단맛을 가진 화학합성품으로 백색결정을 한 감미료
1221000	커피	Kg	커피원두를 볶거나 원두를 원료로 그 침출액을 가공하여 분말로한 것
1221100	커피크리머	Kg	커피, 홍차등의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보완 식품
1230100	배 합 사 료 ( 配 合 飼 料 )	M/T	가축, 가금류를 키우기 위한 충분한 영양소를 과학적·경제적으로 배합한 사료
1230200	보 조 사 료 ( 補 助 飼 料 )	M/T	가축, 가금류를 위한 사료로서 일부영양소를 첨가 또는 특화하여 성장촉진, 질병방지 및 생리기능을 조정시키도록 만든 사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반제품인 수전분은 제외	감자, 옥수 수, 고구마 밀	제지, 제약, 접착제, 물 엿, 포도당, 당면, 양조.
× 엿은 제외 (응고된 것)		
× 포도당은 제외	전분	제과, 제빵, 빙과, 통조 림, 음료, 양조
○ 소디움사카린, 불용성사카린을 포함 (식용만 조사) × 아스파 탐류는 제외.		설탕대체품, 당의정, 음 료
○ 카페인제거한 커피, 군커피, 분말커피를 포함	원두	
× 연유, 기타 액상의 유제품은 제외	야자유, 물엿	
× 보조사료는 제외	대두박, 옥 수수, 보리, 밀, 어분등	
	곡류, 아미 노산, 항생 물질, 비타 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230300	어 분 (魚粉)	M/T	어개류의 지방을 제거한 후 말려서 분말화한 것

소분류 313. 음료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310100	주 정 (酒精)	Kℓ	전분, 당질을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시 킨 것으로 주류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색유동성 액체
1310200	소 주 (燒酒)	Kℓ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소주
1310300	위 스 키	Kℓ	위스키원액, 주정, 물 및 기타 첨가물 을 혼합 제성한 것
1320100	탁 주 (濁酒)	Kℓ	
1320209	약 주 (藥酒)	Kℓ	곡류를 발효한 주요를 여과한 것
1320300	청 주 (淸酒)	Kℓ	백미를 발효시킨 주요를 여과하여 제 성한 것과, 발효중의 주요에 주정 또 는 희석식소주와 기타의 원료를 첨가 하여 숙성시켜 여과 제성한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우모분, 육분, 꿀분을 제외		배합사료의 원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화학공업, 위생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주정은 제외	전분, 당밀	
○ 증류소주를 포함 ..... X 고량주제외		
	원액	
X 약주를 제외	쌀, 밀가루 누룩	
○ 합성청주도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320400	포 도 주 ( 葡 萄 酒 )	Kℓ	포도를 발효시킨것 또는 주정 기타첨가물을 혼합하여 포도주와 유사하게 제조한 것
1330100	맥 주 ( 麥 酒 )	Kℓ	맥아·호프·옥수수·감자 등을 발효시켜 제성한 것
1340100	사 이 다	Kℓ	순수 무색 탄산음료
1340200	콜 라	Kℓ	
1340300	과 즈 음 료 ( 果 汁 飲 料 )	Kℓ	탄산가스가 주입되지 않은 음료로 과즙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
1340409	천 연 수 ( 天 然 水 )	Kℓ	자연상태의 천연수를 용기에 담아 놓은것
1340500	합성 탄산음료 ( 合 成 炭 酸 飲 料 )	Kℓ	탄산가스가 주입된 탄산음료로 과즙 또는 향을 가한것
1340609	오 렌 지 원 액	Kℓ	오렌지의 과즙 또는 오렌지 향을 내는 화학원액
1340700	두 유 ( 豆 乳 )	Kℓ	대두를 주원료로 식물성유지, 당류, 식염을 첨가한 음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포도, 주정	
○ 생맥주를 포함		
× 생수는 제외		
× 보리음료는 제외		
× 분말쥬스 제외		
× 향 및 당분을 첨가하여 만든 천연사이다는 사이다에서 조사		
○ 탄산가스가 주입된 청량음료는 모두 포함 (보리음료 포함)		
× 순수 오렌지 과즙을 장기보관하기 위해 냉동한 것은 1130309 냉동 과즙원액에서 조사		
○ 순수두유 및 가공두유 (딸기, 잣, 초코, 두유등) 포함		

**소분류 314. 담배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1400100	재 건조 잎 담 배 (再乾燥잎담배)	M/T	연초를 제맥분리하여 건조시킨것 (제맥엽)
1400200	담 배	백 만 개 비	건조가공된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권련지로 말아놓은 담배제품
1400309	판 상 엽 (板狀葉)	Kg	연초의 줄기 또는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모아 얇게 편것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섬유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그 폭(직경)이 1/100 미리 이하로서 육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늘며 그 길이는 폭의 100 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321. 섬유제조업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섬유를 원재료로 한 사(실의 형태)나 직물, 편물 등의 지정된 품목이다.

2. 섬유의 분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주맥, 판상엽은 제외	연초	담배제품
○ 필터담배, 필터없는 담배를 포함 × 각연, 여송연은 제외	재건조잎담배, 권련지 휠타	
		담배제품

섬유 { 천연섬유 { 식물성 섬유(綿)  
                  { 동물성 섬유(絹毛)  
                  { 인조섬유 { 재생섬유(반합성섬유 포함)  
                  { (또는 화학섬유) { 합성섬유

가. 식물성 섬유

면(綿), 마(麻) 등이 주종을 이루나 여기에서는 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 원면(原綿)→개표(開表)→해면(解綿)→혼타면(混打綿)<sup>1)</sup>→소면(梳綿)<sup>2)</sup>→슬라이버(Sliver)<sup>3)</sup>→연조(練條)<sup>4)</sup>→조방(組紡)<sup>5)</sup>→정방(精紡)→단사(單絲)→직조(織組)→직물(織物) 이 공정을 설

명하면,

먼저 단단하게 압축포장된 포장을 풀고 자연방치시켜 원면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표 및 해면에 해당하며 1) 혼타면 : 씨앗 및 불순물을 제거하며 얇게 펴서 두루말이 형태의 랩(Lap)을 만든다. 2) 소면 : 랩을 카드(Card)에 걸고 빗어 남아있는 불순물이나 섬유가 단단하게 얽힌것(Nep)을 제거한 다음 3) 슬라이버 : 섬유를 묶어서 굵은 끈모양의 고치(Sliver)를 만든다. 이 슬라이버를 몇 가닥 모아서 4) 연조 : 연조기에 걸어 늘이면서 섬유의 방향을 다시 맞춘다. 5) 조방 : 실을 만들기 위해 굵은 것을 가늘게 만들어 약간 꼬임이 간 조사(組絲)를 만든다. 6) 정방 : 조사를 정방기에 걸어 일정한 가늘기로 늘여 꼬임을 준 것이 단사이다.

나. 동물성 섬유

#### 1) 견(繭)

누에고치를 가공하여 실이나 직물을 제조한다. 춘잠은 5~6월, 하잠은 7월, 추잠은 8~9월에 사육한다.

제조공정은,

고치 말리기→고치간수하기→고치고르기→고치삶기→김풀기→다시감기→  
끝맺음→직조→직물

고치고르기 단계에서는 김풀기(조사)할 수 없는 고치와 있는 고치를 분류한다. 고치삶기단계에서는 세리신을 적당히 순화요착력을 약화시켜 견사를 쉽게 뽑기 위한 것이다. 김풀기란 조사기에 고치를 옮겨 실마리를 잡아 한가닥 실로하여 잡아올린다.

## 2) 모(毛)

양모는 화학적으로 젤라틴이라 부르는 단백질에 속하며 일종의 피부 변태물이다. 주로 양모를 가공하는 활동으로 지부양모를 수입하여서 세척하여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세척양모를 수입 사용하거나 혹은 톱(top), 화이버(fiber)를 구입 사용한다. 제조공정은 소모공정과 방모공정으로 대분할 수 있으며 주요 공정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가) 소모공정

세척양모 → Card top<sup>1)</sup> → rovingtop<sup>2)</sup> → 순소모단사<sup>3)</sup> → 소모사<sup>4)</sup> → 직조<sup>5)</sup>  
→ 소모직물<sup>6)</sup>

- 1) 의 공정은 양모섬유를 소면기(Card機)에 걸어 타면(打綿), 빗질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복합(doubling), 연신(drafting)하여 균등하면서도 비교적 굵은 top 상태를 만든다.
- 2) 의 공정은 전방공정으로서 실의 종류, 변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계에 걸어 복합, 연신을 되풀이 하며 정방기에 공급할 roving top을 만들기 위해 점차 가늘게 한다.
- 3) 의 공정은 필요한 굵기로 가늘어진 roving top을 꼬아서 단사(單絲)를 만든다.
- 4) 는 이러한 단사를 실의 굵기에 따라 여러 가닥 합해서 꼬는 공정이다.

### 나) 방모공정

모설(毛屑), 세척양모 → Card top → top → 방모 단사 → 방모사 → 직물

방모공정을 소모공정과 달리 전방공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굵기도

일정치 않고 매끈하지도 않으며, 재료로는 모설, 재제모(再製毛), 소모공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사용한다. 즉, 방모와 소모의 구분은 원재료 사용과 공정상의 전방(前紡)유무에 의해 구별한다.

다. 재생섬유(반합성 섬유 포함)

1) 재생섬유

셀룰로오스 등 자연에 존재하는 고분자를 용해하여 이것을 노즐에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응고, 재생한 것인데 섬유를 형성하는 물질은 천연 고분자와 거의 같다.

제조과정에서 화학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며 원래 있었던 천연의 셀룰로오스를 재생하였다는 의미에서 재생섬유(레이온)라 부른다.

(통칭 인견이라 한다)

2) 반합성 섬유

셀룰로오스 분자에 초산기를 결합시켜 아세틸셀룰로오스로 한 다음 용제로 하고 방사응고시켜 섬유로 만든 것이다.

이 섬유는 아세틸화한 부분이 합성품이므로 반합성섬유라 부른다.

내수성이 좋고 건조되기 쉬우며 촉감이 좋다.

라. 합성섬유

합성섬유란 저분자물질을 원료로 하여 섬유가 되는 쇠사슬 모양의 고분자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합성고분자를 용해, 분산, 용해시킨 후 작은 구멍으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응고시켜 만든 것인데 3대 합성섬유로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을 들 수 있다.

제조에는 중합성을 가진 단량체(monomer)를 만들고, 이것을 중합시켜서 중합체(Polymer)로 하여 방사한다.

### 1)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일반명은 나이론이라 하며, 제법에는 웨놀법과 PNC법 등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카프로락담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다. 인장력과 염기에 강하여 어망이나 레이스 등 찢어지기 쉬운 것의 보완용으로 많이 쓰인다.

### 2) 폴리 아크릴릭 합성섬유

양모와 가장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직물방면에 용도가 개발되어 편물, 메리야스, 인테어리어(장식물) 부문에 많이 사용된다. 제법으로는 프로필렌에 암모니아와 공기를 촉매로 하여 에이엔모노머(A. N. monomer)를 만들어 원재료로 사용한다.

### 3)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원재료는 테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이며 중합된 폴리에스터를 질소가스 압력으로 칩을 만들어 용해 방사한다. 내마모성은 나이론보다 약간 뒤떨어지나 아크릴릭보다 높으며 일반 의류를 만드는 섬유로 이용된다.

※ 편직물의 경우 합성섬유인 경우만 합성섬유직물로 포함하고 기타 섬유의 편직물은 해당 섬유직물조사에서 제외한다.

## 3. 각 섬유별 혼방도표

모든 섬유는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방한다.

혼방 주된 섬유	섬유	견	모	면
견	1)			
모	2) 61.0% 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모혼방직물 • 방모 :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1)		
면			1)	
화 섬 ~	5) 71% 이상 • 혼방합성섬유사 혼방합성직물	6) 61% • 혼방섬유사 • 혼방섬유직물	7) 50% 이상 • 혼방섬유사 • 혼방섬유직물	
재 생 반 합 성				

- 주 1) : 혼방이 안된 100%의 사, 직물  
 2) : 모가 61%이상 견이 39%미만 혼방된 사, 직물  
 3) : 모가 40%이상 화섬이 60%미만 혼방된 사, 직물  
 4) : 모가 40%이상 재생, 반합성이 60%미만 혼방된 사, 직물  
 5) : 화섬이 71%이상 견이 29%미만 혼방된 사, 직물  
 6) : 화섬이 61%이상 모가 39%미만 혼방된 사, 직물  
 7) : 화섬이 50%이상 면이 50%미만 혼방된 사, 직물  
 8) : 화섬이 50%이상 재생, 반합성이 50%미만 혼방된 사, 직물  
 (단, 3) 4)의 경우 하복지의 경우 모가 35%이상 화섬이 65%미만)

혼방도표

화 섹	재 생 ( 레 이 온 ) 반합성 ( 아세테이트 )	조 사 품 목
		생사 ( 옥사포함 ) 순본견직물
3) 40 % 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혼방소모직물 • 방모 :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4) 40 % 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 방모 : 혼방소모직물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순소모사, 직물 순방모사, 직물 혼방소모사, 직물 혼방방모사, 직물
51 % 이상 • 혼방면사 혼방면직물		순면사, 직물 혼방면사, 직물
1)	8) 50 % 이상 • 혼방섬유사 혼방섬유직물	순합성사, 직물 혼방합성사, 직물
	1)	재생섬유사 재생섬유직물조사

※ 공란은 조사하지 않는 품목임

※ 혼방도표에 따라 분류하되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모를 경우 원재료명과 혼방비율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본부와 협의할 것.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10100	생 사 (生 絲)	<b>Kg</b>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 즉, 한가닥의 긴 필라멘트(filament)의 실을 몇 가닥으로 합하여 만든 것
2110200	면 사 (綿 絲)	<b>M/T</b>	
2110210	순 면 사 (純 綿 絲)	<b>M/T</b>	원면을 가공, 순면사를 방적한 것
2110220	혼 방 면 사 (混 紡 綿 絲)	<b>M/T</b>	타섬유와 혼방된 것
2110300	양모 및 수모 (羊毛 및 獸毛)	<b>Kg</b>	실의 원재료, 의복의 보온재
2110400	방 모 사 (紡 毛 絲)	<b>M/T</b>	
2110410	순 방 모 사 (純 紡 毛 絲)	<b>M/T</b>	양모를 가공하여 제조한 실. 원재료가 다양하며 섬유의 길이도 짧고 긴 것이 혼합되어 잔털이 많다.
2110420	혼 방 방 모 사 (混 紡 紡 毛 絲)	<b>M/T</b>	타섬유와 혼방된 실
2110500	소 모 사 (梳 毛 絲)	<b>Kg</b>	
2110510	순 소 모 사 (純 梳 毛 絲)	<b>Kg</b>	카드 및 콧공정을 거쳐 잘 간추려진 실이다. 모양이 매끄럽고 잔털이 적으며 일정한 굵기를 갖고 있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사포함</li> <li>× 견방사는 제외하고, 견연사는 연사로 조사</li> </ul>	누에 고치 ( 繭 )	견직물
○ 면사가 100%인 것만 조사	원 면	면직물
○ 면이 51%이상인 것만 조사	원면, 화학 섬유	면혼방직물
○ 양모, 수모, 모설, 기타동물털 등 카드스리머, 톱상태의 것도 포함	동 물	실, 보온재
○ 방모가 100%인 것만 조사	모설, 양모 수모	방모직물
○ 방모가 40%이상인 것만 조사	모설, 양모, 수모, 화학 섬유	혼방방모직물
○ Wool 이 100%로 방적된 사로서 반드시 전방공정을 거친 사만을 조사	양 모	소모직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10520	혼 방 소 모 사 (混紡梳毛絲)	<b>Kg</b>	Wool Top 과 Top 상태의 타섬유와 혼합하여 순소모사의 전방공정에서부터 제조한 실
2110600	합 성 섬 유 사 (合成纖維絲)	<b>M/T</b>	
2110610	순합성섬유사 (純合成纖維絲)	<b>M/T</b>	석유화학공정을 거친 나프사를 원재료로한 실체의 실을 칭하며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이 대종을 이룬다. Fiber 와 Filament 등 일체의 합성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재공정한 사의 상태
2110620	혼방합성섬유사 (混紡合成纖維絲)	<b>M/T</b>	화섬과 타섬유와 혼방되어 만들어진 사로서 각 섬유의 단점을 보완, 용도를 다양하도록 제조되었다.
2110700	재 생 섬 유 사 (再生纖維絲)	<b>M/T</b>	Viscose 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실로서 비스코스인견사, 스프사 등을 말함.
2110800	연 사 (撚 絲)	<b>M/T</b>	
2110810	재 봉 사 (裁 縫 絲)	<b>M/T</b>	재봉에 쓰이는 실
2110820	편 물 사 (編 物 絲)	<b>M/T</b>	편물에 쓰이는 실
2120100	면 직 물 (綿 織 物)	천 <b>m<sup>2</sup></b>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가 40%이상인 혼방소모사만 조사</li> </ul>	양모, 화학 섬유	혼방소모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섬유사가 100%인 것만 조사. 합성장섬유사도 직접 방적할 수 있으면 포함조사</li> <li>× 모노 필라멘트는 관련섬유(화학제 조업)에서 조사</li> </ul>	합성섬유	순합성섬유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방도표 참조</li> </ul>	합성섬유, 견, 모, 면	혼방합성섬유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테이트 섬유(반합성섬유)로 만든 실도 포함.</li> </ul>	펄 프	재생섬유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연사, 견연사, 모연사, 인조섬유연사 바느질실 등</li> </ul>	각 종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연사, 모연사, 인조섬유연사, 기타 연사 등</li> </ul>	각 종 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20110	순 면 직 물 (純綿織物)	천 $m^2$	순면사로만 짠 직물(일명 면포)
2120120	혼 방 면 직 물 (混紡綿織物)	천 $m^2$	
2120200	소 모 직 물 (梳毛織物)	천 $m^2$	
2120210	순 소 모 직 물 (純梳毛織物)	천 $m^2$	순소모사로만 짠 직물
2120220	혼 방 소 모 직 물 (純紡梳毛織物)	천 $m^2$	혼방소모사로서 짜거나 순소모사와 타 섬유사와 방직한 것
2120300	방 모 직 물 (紡毛織物)	$m^2$	
2120310	순 방 모 직 물 (純紡毛織物)	$m^2$	순방모사로만 짠 직물
2120320	혼 방 방 모 직 물 (混紡紡毛織物)	$m^2$	혼방방모사로 짜거나 순방모사와 타섬 유사로 방직한 직물
2120400	순 본 견 직 물 (純本絹織物)	$m^2$	생사 또는 고치중 김풀기를 할 수 없는 것을 타면(打綿)하여 만든 견 방사로 제직한 것(일명 비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목, 내광목, 옥광목, 당목, 면범포, 포프린, 읍, 면복지 등</li> <li>-----</li> <li>× 면세포, 면거즈 제외</li> <li>○ 면의 비율이 51%이상인 것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 면 사</li> <li>-----</li> <li>면사, 합성섬유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류, 산업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ol 이 100%인 것만 조사하되 직물가공시 일부 타섬유가 재봉으로 1%정도 사용될 수 있다.</li> <li>-----</li> <li>○ 하복지의 경우에 한하여 소모가 35%이상 혼방인 경우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 모 사</li> <li>-----</li> <li>혼방소모사, 순소모사와 타섬유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모가 100%인 것만 조사</li> <li>-----</li> <li>○ 방모의 비율이 40%이상인 것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 모 방 사</li> <li>-----</li> <li>혼방방모사, 순방모사와 타섬유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훌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리원단, 쓰므기원단 등</li> <li>-----</li> <li>× 원단에 수를 놓는 등의 가공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방사, 생사</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20500	합성섬유직물 (合成纖維織物)	천 $m^2$	
2120510	순합성섬유직물 (純合成纖維織物)	천 $m^2$	순합성섬유사로 방직한 직물
2120520	합성섬유파일직물	천 $m^2$	
2120530	혼방합성섬유직물 (混紡合成纖維織物)	천 $m^2$	다른 성질의 섬유가 2종이상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로서 합성섬유가 기준 비율보다 많이 차지한 직물
2120600	재생섬유직물 (再生纖維織物)	천 $m^2$	재생섬유사로 제작한 직물(일명 인견 직물)
2120700	세 폭 직 물 (細幅織物)	천 $m^2$	폭 13센티미터 미만의 직물
2120800	타 율 ( TOWEL )	Kg	세면 및 위생, 목욕용 등에 사용되는 수건
2130100	염색가공직물 (染色加工織物)	천 $m^2$	원단에 염색을 한 것.  직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염색하는 것은 해당 직물로 조사
2140100	직 물 포 대 (織物包裝)	천 $m^2$	합성섬유사, 마사,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것을 재봉한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나이론, 다후다, 폴리텍스, 캐미컬트, 리코트 등을 포함.	합성섬유사	
○ 혼방도표 참조	각 종 사	
○ 아세테이트직물도 포함.	재생섬유사	
○ 밴드, 테이프, 리본, 전선의 절면 등의 재료	각 종 사	
○ 규격에 관계없이 조사 ※ 손수건, 이태리타올, 침대커버 제외	면 사	
○ 반드시 공장에서 기계로 염색, 표백 가공처리한 것만 조사 × 홀치기, 나염 및 개인을 상대로 하는 염색가공활동 제외	염료,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 양곡포대, 우편낭, 모래포대 등 × 종이포대, 압축성형(비료포대)제품 제외	합성섬유사, 마사, 프라스틱물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40200	담 요	m <sup>2</sup>	털 혹은 섬유질로 만든 모포
2140300	텐트 및 천막	매	야외행사 또는 야영(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섬유직물 또는 비닐직물로 만든 천막 및 텐트
2140400	배 낭 (背囊)	개	물건을 담아 등에 질수 있도록 만든 낭
2140500	자 수 직 물 (刺繡織物)	천m <sup>2</sup>	직물에 수를 놓은 것. 일명 니들위크 태피스트리(공장에서 10야드 이상 긴 천에 자수를 놓는 직물)
2140600	직 물 벽 지 (織物壁紙)	천m <sup>2</sup>	고급벽지로 안면은 종이 겉면은 직물이나 갈포로 제조된 벽지
2150100	스 타 킹 (STOCKING)	천켄레	화섬이 60%이상 포함된 사로 편직하여 만든 무릎이상까지 덮을 수 있는 양말
2150200	양 말 (洋襪)	천켄레	발목까지를 덮어주는 양말
2150300	메 리 야 스 내 의	천 매	편직기로 편직한 내의로 통칭 메리야스라 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화학섬유사, 방모사	
○ 25㎡를 1매로 환산조사한다.	섬유, 비닐 직물	야영 및 비, 이슬, 바 람, 별을 가리는 장막
○ 캠핑용품만 조사 ----- × 아동용, 군용배낭, 책가방 및 썸 ( sack )은 제외		
○ 기계자수만 조사 ----- × 가내자수 제외	직 물	자수제품
	직물, 갈포	
○ 타이스, 팬티스타킹, 밴드, 판타롱	화섬, 면	
○ 원재료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각 종 사	
○ 남·녀용 여름내의(팬티, 런닝셔츠) 및 겨울내의만 조사 ----- × 기타 내의는 322 의복에서 조사	면, 화섬	동·하절기 내의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50400	메 리 야 스 외 의	천 매	편물외의인테 반드시 편물한 것만 조사
2150500	인 조 섬 유 편 직 물 ( 人 造 纖 維 編 織 物 )	천m <sup>2</sup>	인조섬유사를 편직기로 짠 직물
2160100	카 페 트 ( CARPET )	m <sup>2</sup>	인조섬유의 아크릴, 나일론, 비스코스트로 짠 직물이며 일명 융단, 양탄자
2170100	연승및섬유로프 ( 連 繩 及 纖 維 ROPE )	M/T	
2170110	식물성섬유로프 ( 植 物 性 纖 維 ROPE )	M/T	식물성 섬유를 가공하여 여러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
2170120	연승,인조섬유로프 ( 連 繩 , 人 造 纖 維 ROPE )	M/T	화섬을 가공하여 여러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
2170200	어 망 ( 魚 網 )	M/T	수계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채포, 채 취하는 어업용 자재
2190100	솜	Kg	화이버상태에서 랩 ( Lap ) 공정을 거 친 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웨타류, 셔츠류 등 크기에 관계없이 조사</li> <li>× Y-shirt, 브라우스, 운동복(츄리닝 포함)은 322 의복에서 조사</li> </ul>	면, 화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지용 편직물도 조사</li> <li>× 파일직물은 2120520 으로 조사 천</li> <li>연섬유(면, 모 등) 편직물은 제외</li> </ul>	인조섬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적 수직 포함</li> <li>× 명석, 매트(Mat) 등 제외</li> </ul>	화 섬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니라, 면, 파압 등 합</li> <li>○ 어망사, 인조섬유로프, 각종 합성로프 포함</li> </ul>	아바카, 면사, 파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어망 모두 조사</li> <li>× 곤충망, 농업용망, 건설업용망 제외</li> </ul>	어 망 사	어로용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인조섬유, 기타섬유솜 모두 조사</li> <li>× 페딩은 부직포로 조사</li> </ul>	원면, 화섬	이불, 쿠션충진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190200	부 직 포 (不織布)	천m <sup>2</sup>	일반직물과는 달리 방직하지 않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포
2190300	인조섬유타이어지 (人造纖維타이어紙)	M/T	화섬을 연사화하여 만든 직물 타이어의 골격으로 사용되며 하중, 충격, 공기압 등에 저항하는 역할

소분류 322. 의복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천(직물, 가죽, 모피, 합성피혁등)을 가지고 재단, 재봉한 모든 의류를 말한다.
2. 금액조사품목의 경우 생산자판매가격 수출의 경우는 계약 당시의 환율(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평가한다.
3. 단위에서 한벌이라함은 상하의를 말하고 코트의 경우, 1점이 한벌이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210109	男子用마춤洋服	벌	
2210209	女子用마춤洋裝服	//	
2220100	남자용기성양복 (男子用既成洋服)	//	정 장 복
2220200	既成 셔츠류	천개	외의를 받쳐주는 중의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 패딩, 니들편치, 펠트 등	합성섬유	여과포, 소독타올의 커버조화, 심지, 붕대, 가제등
	합성섬유	타이어

#### 4. 조사요령

가. 편직내의중 남녀 여름용 팬티, 셔츠 및 겨울용 내의는 2150300으로 조사한다.

나. 편물외의의는 원단을 자체생산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2150400으로 조사하고 원단을 구입 봉제하는 경우만 의복류로 조사한다.

다. 편물외의라도 운동경기복(츄리닝포함)은 모두 2220600으로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 남자용 마춤 정장복, 코트 각 1 착	직 물	
○ 여자용 마춤 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각 1 착)	직 물	
○ 기성 정장복, 코트 각 1 착	직 물	
○ Y-셔츠, T-셔츠, 정복셔츠, 기타 셔츠	직 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220300	기 성 하 의 ( 既 成 下 衣 )	개	직물로 만든 바지
2220400	기 성 작 업 복 ( 既 成 作 業 服 )	백만원	훈련, 업무, 작업시 입는 옷
2220500	기 성 보 통 외 의 ( 既 成 普 通 外 衣 )	백만원	
2220600	기 성 경 기 복 ( 既 成 競 技 服 )	//	
2220700	여 자 용 기 성 외 의 ( 女 子 用 既 成 外 衣 )	//	
2220800	소 아 용 기 성 외 의 ( 小 兒 用 既 成 外 衣 )	//	
2220900	女 性 用 화 운 데 이 션 및 난 제 리 류	//	
2221000	가 족 및 毛 皮 衣 服	//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 남녀용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조사	직 물	
○ 작업복, 훈련복 ----- × 위생복, 방수복, 방열복 등 특수복 은 제외	직 물	
○ 자켓, 반코트, 캐주얼웨어, 콤비, 잠바 헌팅코트 등	직 물	
○ 선수용자켓, 운동복(츄리닝포함) 등	직 물	
○ 여자용정장복, 코트, 브라우스, 원피스 투피스, 여성캐주얼정장복, 드레스, 스 커트 등 여성용 외의	직 물	
○ 소아용드레스, 브라우스 및 셔츠, 코 트, 양복, 기타소아용외의	직 물	
○ 브래저, 콜셋, 콜셋벨트, 콜셋릿, 거들 콜셋, 히프벨트, 임신후복, 띠, 케미솔 쉬미즈, 페티코트, 스타프 등 ----- × 완전히 고무로 된 제품은 제외 펜티 및 런닝셔츠 → 메리야스내의	직 물	
○ 가죽, 모피, 합성피혁으로 만든 의복 은 모두 조사	가죽, 모피 합성 피혁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221100	모 자 ( 帽 子 )	천 개	
2221200	가죽및毛皮掌匣	천컬레	
2221309	손 수 건	천 매	

**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우혁(牛革)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수혁(갑피혁 :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 표면피혁 핸드백 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나.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 중창(구두), 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며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다. 이혁(SOLE)

(용도) 작업복 장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내고 남은 안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래(아교의 원료)가 남는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모든 모자 조사 × 철모, 플라스틱모자, 운동경기용 보호모자 제외		
○ 가죽, 모피, 합성피혁으로 만든 장갑은 모두 조사 × 고무장갑, 직물제장갑, 야구장갑, 권투장갑 제외	가죽, 모피 합성피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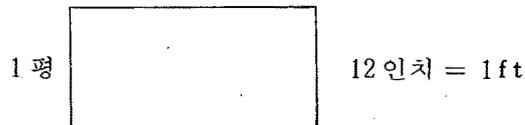
라. 저 혁

( 용도 ) 창용·패킹·공업용 혁벨트

( 성질 ) 특수제조과정을 거친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혁보다 저혁이 비싸다.

※ 우혁의 단위환산법

12인치 = 1ft



사방 12인치 = 0.093  $m^2$  ( 1 평 )

1 매 30 ~ 40 평

1 매 2.8  $m^2$  ( 30 평 )

1 매 3.7  $m^2$  ( 40 평 )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310100	쇠 가 족	천m <sup>2</sup>	원피(소)를 가공하여 만든 가죽으로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이 있다.
2310200	재 생 및 인 조 가 족 (再生및人造가죽)	천m <sup>2</sup>	가죽조각을 재생시킨 것이나 인조가죽
2310309	돼 지 가 족	m <sup>2</sup>	기름과 털을 제거 약품을 첨가하여 제혁공정을 거친 돈피(豚皮)
2310409	파 총 류 가 족	m <sup>2</sup>	
2320100	모 피 제 품 (毛皮製品)	백만원	의복을 제외한 모피 가공 제품
2330100	가 방	//	
2330200	핸 드 백	천 개	
2330309	마 구 (馬 具)	백만원	말의 사육 및 조련에 사용되는 물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원 피	신발, 가방, 혁대등의 가죽제품
○ 조각가죽, 인조가죽 (직물이나 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입힌 것) ----- × 프라스틱레저는 제외	가죽 조각 직물, 폴리우레탄 등	
	돈 피	
○ 뱀피, 뱀장어피 등		
○ 모피카페트, 모피방석, Car Seat, 침대커버 등	모 피	
○ 직물, 가죽, 모피, 합성피혁 등으로 만든 모든 가방 조사 ----- × 쇼핑백, 종이백, 비닐백 제외		
○ 반드시 피혁, 합성피혁으로 만든 것 조사 ----- × 직물제 핸드백 및 소형지갑 제외	피혁, 합성 피혁	
○ 말이불, 말고삐, 말안장, 말굽 등		

소분류 324. 신발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2400100	단 화 (短 靴)	켈레	
2400200	가죽장화·등산화 및 작업화	//	
2400300	실 내 화 (室 內 靴)	천켈레	가죽, 인조가죽 또는 그 위에 직물을 씌어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2400409	신 발 부 속 품	백만원	가죽(인조가죽포함)신발 제조에 필요한 구성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남녀용 단화, 군용단화, 케쥬얼화(가죽으로 만든 것)	가죽, 합성 피혁모피	
○ 군화, 장글화, 작업화, 부츠, 앵글, 등산화 등		
○ 플라스틱 레저를 절단, 봉제하여 만든 것도 포함		
<p>× 완전고무제품, 플라스틱제는 제외 → 35 화학에서 조사</p>		
○ 반드시 피혁이 원재료가 된 것만 조사		
<p>× 프라스틱, 고무제품 제외</p>		

중분류 33 .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소분류 331 .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소할재, 각재, 판재, 합판, 재생목재, 포장상자는 지정단위가 「㎥」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에서는 才, 매, B/F, S/F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정단위로 ㎥로 반드시 환산조사 하여야 한다.

※ 단위 환산방법

$$1 \text{ 才} = 0.00334 \text{ ㎥} \qquad 1 \text{ ㎥} = 303 \text{ 才}$$

$$1 \text{ B/F} = 0.002359 \text{ ㎥} \qquad 1 \text{ ㎥} = 423.77 \text{ B/F}$$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110100	각 재 (角 材)	㎥	각재 (두께 폭이 8센티미터 이상) 소할재 (두께 8센티미터 미만,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3110200	판 재 (板 材)	〃	두께 8센티미터미만.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3110300	문 및 문 틀	〃	
3110400	일 반 합 판 (一 般 合 板)	〃	단판을 여러장 겹쳐 접착제로 붙여 만든 판(板)

○ S/F 환산방법 (합판의 경우)

규격			환산	수치
가로 (F)	세로 (F)	두께 (mm)	1매당 $m^2$	1S / F 당 $m^2$
4	8	3.2	0.0095133	0.0002973
3	6		0.0053512	
4	8	3.6	0.0107024	0.0003345
3	6		0.0060201	
4	8	4	0.0111892	0.000372
3	6		0.006689	
4	8	6	0.017837	0.000557
3	6		0.010034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소할재 (정할재, 평할재), 각재 (심지각, 심거각, 정각, 평각)	원목	
○ 소폭판 (小幅板), 사면판 (斜面板), 후판 (厚板)	"	
○ 문, 문틀, 창문, 창문틀의 원재료인 목재 사용량을 조사	제재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110500	가 공 합 판 (加工合板)	m <sup>2</sup>	합판에 무늬목을 부착하거나 프린팅한 것
3110600	재 생 목 재 (再生木材)	//	폐재, 펄프, 찌꺼기, 벗집 등의 소편(小片)을 접착제로 압착한 것
3110709	침 목 (枕 木)	본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제재하여 크레오소오트(방부제)를 주입한 것
3120100	포 장 상 자 및 통 (包装箱子및筒)	m <sup>3</sup>	목재로 만든 포장용 상자 및 통
3190100	위생및식탁용목제품 (衛生및食卓用木製品)	백만원	
3190209	콜크및콜크제품	kg	굴참나무 껍질을 분쇄, 접착하여 건조시킨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인슐레이션보드, 세미하드보드, 하드보드, 파티클보드	목 재 칩	
○ 병침목, 분기침목, 교침목, 철도침목을 포함 ----- × 철근콘크리트침목 및 갭목(坑木)은 제외	원 목	
○ 액체용 통, 고체용 통, 각종 목재용 포장상자, 드럼 및 바렐, 펠리트 및 스키드 조사(단위는 원재료 기준) ----- × 절목상자 제외	제 재 목	
○ 스푼, 포크, 위생저, 이쑤시개, 아이스크림대 등	원 목	
○ 악세사리, 병마개, 건축흡음재, 메모판 팩킹, 방진재 등	굴참나무피	

소분류 332 .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금속제 가구류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 381.조립금속제품으로 분류조사 )
2. 장농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화장대를, 책장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의자를 병행해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에 누락없도록 유의한다.
3. 특히 가구류의 경우는 대부분 판매만 하는 가구점만 외부에 나타나고 있어 공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외로 처리하기 쉬우나, 같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200100	나 무 의 자	개	목재로 만든 각종 의자
3200200	나 무 책 상 ( 册 床 )	〃	목재로 만든 책상
3200300	장 식 장 ( 粧 飾 機 )	〃	

은 건물 또는 별도의 장소에 공장이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가구업종은 생산제품의 변동이 빈번하고, 주문생산이 많으므로 품목누락에 항상 판별 보완하여야 한다.

5. 반제품 상태의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예 : 1. 락카 또는 페인트등을 칠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

2. 조립을 하지 않고 부분품으로 출하된 제품

6. 책상과 의자를 단순히 편의상 연결시킨 제품은 각각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과 의자가 붙은 것(1인용)도 포함</li> <li>-----</li> <li>× 쇼파, 등받침이 없는 의자(Stool) 및 벤치와 같은 공공용 및 플라스틱의자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에 관계없이 조사</li> <li>○ 학교책상도 포함</li> <li>-----</li> <li>× 의자겸용책상은 의자로 장식장겸용은 장식장으로 조사</li> </ul>	제 재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서가 포함</li> <li>-----</li> <li>× 부엌용 찬장, 도서관등에서 사용되</li> </ul>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200400	장           릉 ( 穢       龍 )	개	의류나 이불을 넣는 장
3200500	화    장    대 ( 化   粧   臺 )	개	
3200600	식           탁 ( 食       卓 )	개	
3200700	침           대 ( 寢       臺 )	개	
3200800	문           갑 ( 文       匣 )	개	
3200900	상    크    대	개	목재로 만든 부엌용 설비
3201000	서랍장맞춤향기기대	개	
3201109	찬           장 ( 饌       穢 )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는 진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책꽂이 문갑 등은 제외		
○ 자개농, 티크농, 나전칠농 모두 조사 ----- × 찬장, 서랍장, 서가는 제외	제 재 목	
○ 경대, 화장장, 나전칠기, 자개, 포함	//	
○ 티테이블 및 상을 포함 ----- × 회의용 대형테이블, 사이드테이블 유리판만 올려놓은 탁자등은 제외	//	
○ Single, double, Twin 침대 모두 조사 ----- × 철재 침대 제외	//	
○ 자개, 나전칠기제 포함	//	
○ 설것이대, 조리대, 가스레인지대등으로 분리시켜 수량 파악 ----- × 벽장·후드관 및 철재 제외		
○ 서랍장(단스), TV대, 전축대, 비디오대 등		
○ 부엌용 찬장만 조사 (싱크대 위에 설치되는 찬장 포함)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3201209	공공건물용목재가구 (公共建物用木材家具)	백만원	교회·강의실·도서실등 공공건물에서 사용되는 가구
3201309	가정용내장가구 (家庭用内藏家具)	백만원	탁자와 의자가 1 set로 된 응접가구
3201409	차량용내장가구 (車輛用内藏家具)	백만원	

**중분류 34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소분류 341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사업체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연」이다. 그러나 조사단위는 「M/T」임에 유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교회용 벤취·탁자·교탁등		
○ 쇼파·쇼파용탁자 모두 조사		
○ 타 용도의 가구와 구분하여 차량에 쓰이는 것만 조사		자동차 Seat

※ 단위환산

1 연 = 500 매 × 종이 1 매의 중량

1 매 : 가로 ( 1,091 m ) × 세로 ( 0.788 m )

2. 「골판지원지」를 생산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골판지 및 상자」를 생산하니 재투입량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110100	펄 프	M/T	목재를 기계로 갈아서 만든 쇠목펄프와 목재를 짧게 절단한 칩에 약품을 섞어서 만든 화학펄프
4110200	신문용지 (新聞用紙)	M/T	인장강도가 높고 잉크가 잘 흡수되도록 제작한 종이
4110300	백상지	M/T	일명 모조지, 화학펄프만으로 제조한 고급인쇄용지
4110400	중질지 (中質紙)	M/T	쇠목펄프에 화학펄프 30~40%를 배합 제조한 중급 인쇄용지
4110500	아트지	M/T	일명 안료도공지. 광물성의 백색 또는 담색안료를 지면에 입혀 만든 종이
4110600	크라프트지	M/T	가성소다와 황하나트륨의 혼합액에 넣은 후 고온저압을 가해 얻은 황산염 펄프를 원료로 한, 질기고 두터운 황토색의 종이
4110700	박엽지 (薄葉紙)	M/T	얇은 종이의 총칭으로 평균 $40g/m^2$ 이하의 것
4110809	화선지 (畫宣紙)	매	일명 서예지. 붓으로 그림이나 글을 쓰는 선지류의 하나로 수제지임.
4110900	판지 및 판지 상자 (板紙 및 板紙箱子)	M/T	판지원지로 판지상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마닐라, 고휘표백, 기타등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쇄목, 감색쇄목, 황산표백, 소다, 용해, 식물성 등의 쇄목 및 화학 펄프를 조사</li> </ul>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펄프(고지, 헝겍등) 제외</li> </ul>	소 나 무, 참 나 무, 활엽수, 침엽수, 황산, 가성 소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갱지포함</li> </ul>	화 학 및 쇄 목 펄 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지포함</li> </ul>	화 학 펄 프	
	쇄 목 펄 프, 화 학 펄 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트지, 광택지, 바라이트지 등 조사</li> </ul>		달력, 엽서등 원색 판 인쇄
	화 학 펄 프	증포장 및 일반포장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본, 등사, 절연, 차봉지등의 각 원지와 담배용지등 조사</li> </ul>	화 학 펄 프	사전, 성서 및 타자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판선지등 각종 선지류 포함</li> </ul>	화 학 펄 프, 닥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지만을 생산한 업체는 판지를, 판지를 생산, 상자를 만드는 업체</li> </ul>	판 지원 지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판지 또는 상자
4111000	골 판 지 원 지 (골板紙原紙)	M/T	골판지를 만들 수 있게 제작한 종이 제품
4120100	골 판 지 및 상자	천 <sup>m<sup>2</sup></sup>	골판지 상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 든 종이제품 또는 상자
4120200	크 라 프 트 지 포 대 (布 袋)	천매	크라프트지를 3~6겹으로 하여 만든 포대
4120300	위 생 용 식 품 용 기 (衛 生 用 食 品 用 器)	kg	종이로 만든 각종음료 및 식품의 일 회용 용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는 상자를 조사</p> <hr/> <p>× 판지를 구입 상자를 만드는 것은 제외</p>		
<p>○ 라이나원지 (A.B.K 원지), 중심지 조사</p>	고지필프	골판지 및 상자
<p>○ 조사요령은 4110900 판지 및 판지상자와 동일.</p> <p>즉, 골판지원지를 구입하여 골판지만을 생산한 업체는 골판지를, 골판지를 생산하여 상자를 만드는 업체는 상자를 조사.</p> <p>※ 골판지원지를 생산, 골판지 및 상자를 만드는 업체는 골판지원지가 재투입이 됨.</p> <hr/> <p>× 골판지를 구입 상자만을 만드는 업체는 제외</p>	골판지원지	
<p>× 크라프트지가 아닌 백화점쇼핑백등은 제외</p>		시멘트, 곡물, 약품등의 포장재
<p>○ 종이로 만든 컵, 접시, 우유 및 유산균 발효유등의 각종 용기 (카탈팩)</p>		
<p>× 콘, 얼음과자등의 포장용기와 프리</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120409	지 관 (紙 管)	kg	방적사, 어망사, 농업용필름, 화장지, 신문용지 등을 감을 수 있게 만든 것
4190100	종 이 벽 지 (壁 紙)	천㎡	
4190200	위생용종이제품	M/T	
4190300	금 속 박 지 (金 屬 箔 紙)	M/T	일반 지류에 금속광물(알루미늄, 주석, 아연등)을 吹付 또는 금속박을 합해서 만든 것
4190400	사 무 기 기 용 지 (事 務 器 機 用 紙)	M/T	사무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든 사무용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마통, 단순인쇄 및 코팅만 하는 것은 제외		
	복 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크러스타 포함</li> <li>-----</li> <li>× 갈포벽지는 2140600 (직물벽지)로, 순비닐벽지는 5600300 (플라스틱장판 및 벽지)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형태의 화장지, 냄프킨, 생리대, 종이거저귀, 종이타월등을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은박지등을 조사</li> <li>-----</li> <li>× 금은박 또는 박지를 구입 접착제로 단순히 접촉하는 것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시트지, 복사지, 천공용카드, 자동기록지, 전신 및 텔레타이프지를 조사</li> </ul>		

소분류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사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210100	일 간 신 문 (日 刊 新 聞)	천부	신문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신문
4210200	정 기 간 행 물 (定 期 刊 行 物)	천권	주간, 월간, 계간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각종 잡지류
4210300	서           적 (書           籍)	백만원	판매 관계없이 일반출판사 및 국정교과서에서 발행되는 책자
4210400	일 반 인 쇄 물 (一 般 印 刷 物)	연	정기간행물, 서적등 원고를 받아 임가공료를 받고 인쇄한 것과 기타 일반적인 인쇄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비밀간신문(주간신문, 학습지, 학보, 사보, 협회지등)은 일반인쇄물로 조사</p>		
<p>○ 교과서, 참고서, 학술지, 문학기, 전문지, 대중소설, 어린이그림책등</p> <p>※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출판사는 일반인쇄물과 서적을 조사한다.</p> <p>-----</p> <p>×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서적등은 인쇄소에서 일반 인쇄물로 조사</p>		
<p>○ 팸플렛, 약보, 지도, 연하장, 어린이그림, 포스터 및 그림복사물, 주식·채권등의 유사권리증서를 포함</p> <p>※ 인쇄소에서 원고를 받아 인쇄하여 만든 서적류는 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일반인쇄물로 조사한다.</p> <p>-----</p> <p>× 지폐, 우표 제외</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4210500	노 트	천권	
4210600	앨 범	천권	사진, 우표, 화폐 등을 보관할 수 있게 엮은 것

**중분류 35 . 화합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소분류 351 .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 황산, 가성소다는 지정품위로 환산 조사

① 황 산

35 %, 40 % 등으로 생산되며 지정품위 98 %로 환산 조사

② 가성소다

40 %, 46 %, 97 % 등으로 생산되며 지정품위 100 %로 환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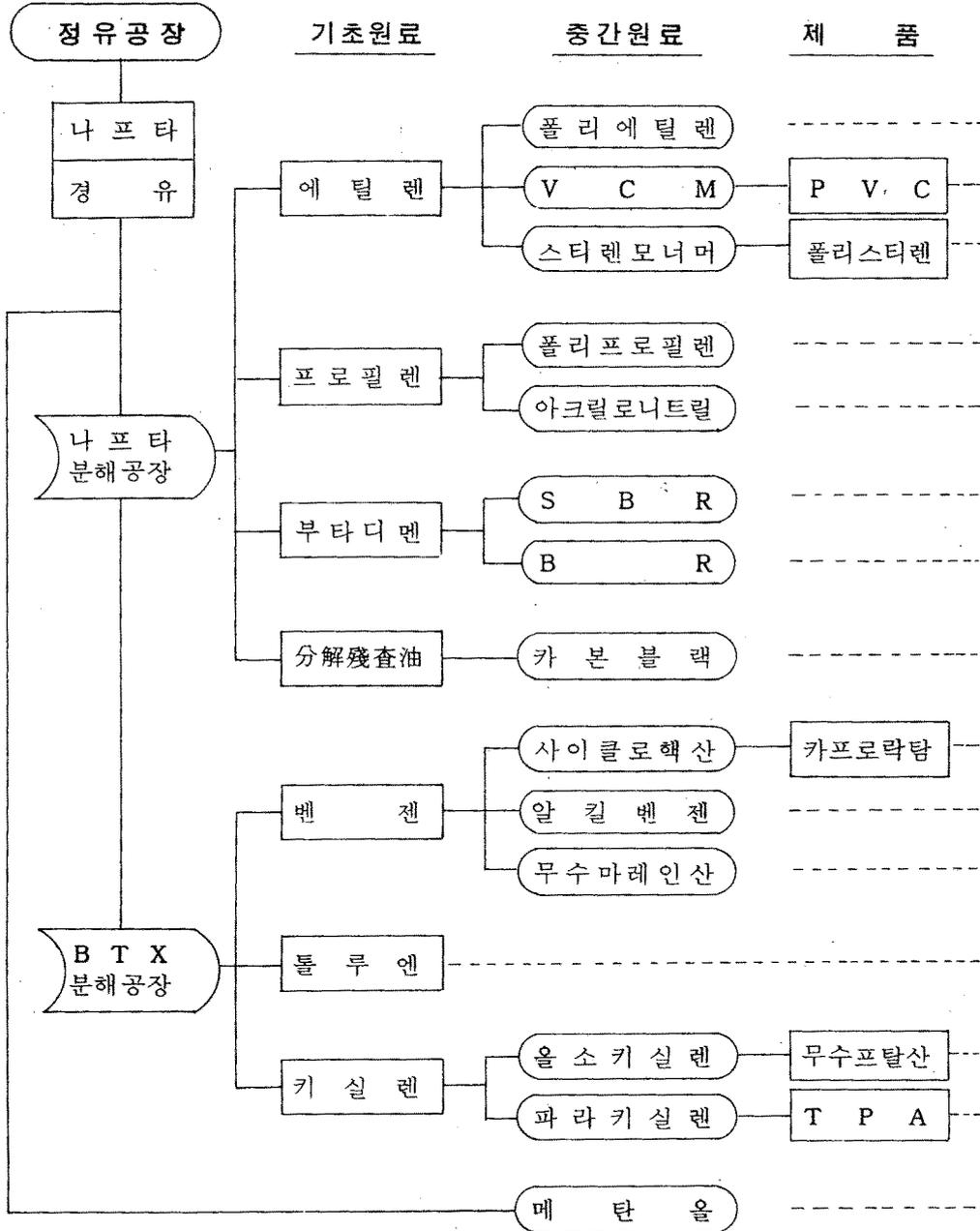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수첩, 다이어리, 장부책, 스케치북 제외		
X 학생졸업앨범등 내용물을 인쇄한 것 은 제외		

※ 환산요령

예 : 40 % 황산 250M/T를 생산하였다면,

$$\frac{40}{98} \times 250 = 102 \text{ M/T} \dots\dots\dots \text{실생산량}$$

2. 농약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비수기때 황산, 가성소다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생산여부 확인조사
3. 나프타생산업체에서는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키실렌등을 생산하니 재투입 및 제품조사누락에 유의
4. 특히 화학제품은 타제품제조나 촉매제, 원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재투입조사에 누락없도록 유의



계 열 도 ( 지 정 품 목 )

주 용 도 품 목

- ..... 합 성 수 지 : 농업용필름, 전선피막, 각종상품의 포장재
- ..... 합 성 수 지 : 파이프, 관, 모노름, 실내내장재
- ..... 합 성 수 지 : 전기용품, 케이스, 건축재, 완구, 식기
- ..... 합 성 수 지 : 필름, 성형제품, 합성섬유, 대형용기 및 식기
- ..... 합성수지원료 : 아크릴수지, 아크릴릭섬유
- ..... 합 성 고 무 : 타이어, 신발, 산업용 고무제품
- ..... 합 성 고 무 : " " "
- ..... 고무제품원료 : 타이어, 공업용 고무제품
- ..... 합성섬유원료 : 나이론섬유, 수지
- ..... 합성세제원료 : 각종 합성세제, 살충 및 살균제
- ..... 화 공 약 품 : 합성수지도료, 가소제
- ..... 합성수지원료 : 우레탄수지, 가소제, 염료, TNT
- ..... 화 공 약 품 : 가소제, 도료
- ..... 합성섬유원료 : 폴리에스텔섬유, 녹음테이프
- ..... 화 공 약 품 : 포르말린, 접착제, 용제, 의약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0100	에틸렌 (Ethylene)	M/T	二重結合을 갖는 탄화수소의 하나인 不飽和化合物 (올레핀탄화수소). 석유화학공업의 가장 중요한 1차원료로 무색의 可燃性기체이며 꽃향기같은 냄새가 나는 물질
5110200	프로필렌 (Propylene)	M/T	불포화화합물에 속하는 물질로 석유화학공업의 1차원료
5110300	부타디엔 (Butadiene)	M/T	일명 폴리에틸렌탄화수소. 불포화화합물의 하나
5110400	벤젠 (Benzene)	M/T	芳香族化合物의 기본물질로 가연성 무색 유독액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化工用, 重合用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重合</p> <p>※ 에틸렌 → 폴리에틸렌</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체                      중합체</p> <p style="text-align: center;">(Monomer)                      (polymer)</p>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합성수지원료</u></li> <li>폴리에틸렌, 스티렌</li> <li>모너머, VCM</li> <li>• <u>합성섬유원료</u></li> <li>산화에틸렌</li> <li>• <u>화공약품원료</u></li> <li>에탄올, 아세트알데</li> <li>히드</li> </ul>
<p>○ 化工용, 중합용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중합</p> <p>※ 프로필렌 → 폴리프로필렌</p>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합성수지원료</u></li> <li>폴리프로필렌, 산화</li> <li>프로필렌</li> <li>• <u>합성섬유 및 수지원료</u></li> <li>아크릴로니트릴</li> <li>• <u>화공약품원료</u></li> <li>옥탄올, 부탄올</li> </ul>
	나 프 타	합성고무(SBR, BR)의 원료
<p>○ 공업약품 및 溶濟用 조사</p> <p>× BT(벤젠+톨루엔), BX(벤젠+키</p> <p>실렌) 같은 화합물은 제외</p>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합성섬유원료</u></li> <li>싸이클로hex산</li> <li>• <u>합성세제원료</u></li> <li>알킬벤젠</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0500	톨 루 엔 (Toluene)	M/T	톨루올이라고도 하며 메틸벤젠에 해당됨. 무색의 액체
5110600	키 실 렌 (Xylene)	M/T	키실올이라고도 하며 디메틸벤젠에 해당
5110700	염화비닐모너머 (V.C.M)	M/T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염화비닐의 單量體(고분자화합물을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할 때 그 단위가 되는 화합물)
5110800	에틸렌글리콜 (E.G)	M/T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단맛과 吸濕性이 있고 粘度가 높은 무색의 액체
5110900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P.G)	M/T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5111000	아크릴로니트릴 (A.N)	M/T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물질. 향긋한 냄새를 가진 폭발성, 가연성의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성수지원료 무수마레인산, 페놀</li> <li>화공약품원료 아세톤</li> </ul>
	나 프 타	TDI 원료 (우레탄수지의 원료), 폭약, 염료, 수지, 농약, 가소제
○ 혼합, 올소, 파라키실렌을 포함	나 프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소키실렌 : 무수프탈산의 원료</li> <li>파라키실렌 : TRA의 원료</li> </ul>
	에 털 렌	PVC 수지의 원료
○ 모너, 디,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	에 털 렌	폴리에스테르섬유 및 수지, 부동액의 원료
----- X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제외		
	산 화 프로 필 렌	우레탄수지의 원료 (플라스틱스폰지와 단열재 등 원료)
	프로 필 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성수지원료 ABS, AS, 아크릴</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무색유독액체
5111109	초 산 에 틸	M/T	
5111209	옥 탄 올	M/T	일명 2에틸헥실알콜
5111300	스티렌모너머 (S . M)	M/T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5111400	T . D . I	M/T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녹는점 (MP)이 12 °C이며, 동절기 고체, 하절기는 액체상태로 무색투명하며 유 독함.
5111500	페 놀 (Phenol)	M/T	일명 石炭酸(C <sub>6</sub> H <sub>5</sub> OH). 방향족탄화수소핵의 수소원자를 水酸基 로 置換한 방향족히드록시화합물을 일 반적으로 페놀(類)이라 함.
5111600	무 수 프 탈 산	M/T	기둥모양의 프탈산을 열을 가하면 탈 수되어, 바늘을 묶어놓은 것 같은 형태 (純白針狀)로 된 결정체
5111700	테 레 프 탈 산 (T.P.A)	M/T	성질이 다른(異性體) 프탈산과 이소 프탈산의 화합물인 백색의 결정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수지 <u>합성섬유원료</u> 아크릴계섬유
	질산, 황산	
	폴리프로필렌	DOP 가소제의 원료
	에틸렌	합성수지인 폴리스티렌의 원료
	DNT, 염소, 툴루엔	폴리우레탄 스폰지등 발포성제품의 원료
○ 수산기의 수에 따른 1가페놀, 다가페놀(2가, 3가페놀, 일명 폴리페놀)등을 조사	벤젠	페놀수지등의 원료
	키실렌	가소제의 합성재료, 도료의 원료
	키실렌	폴리에스텔섬유, 녹음테이프의 원료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1800	카 프로 락 탐 (Caprolactam)	M/T	
5111900	알 킬 벤 젠 (Alkyl Benzene)	M/T	벤젠의 수소원자를 1~6개의 알킬기를 가진 탄화수소류의 하나. 무색투명한 액체
5112009	싸 이 크 로 핵 산	M/T	탄소가 주성분으로 함유된 즉 有機溶劑로 석유냄새가 나는 무색流動性的의 액체
5112109	사 카 린 원 료	M/T	O.T.S.A(Ortho Toluene Sulfon Amide)
5112200	페 놀 수 지	M/T	페놀류과 포름알데히드를 酸이나 알칼리로 축합시켜 얻는 熱硬化性플라스틱
5112300	폴 리 우 레 탄	M/T	熱可逆性폴리부가형플라스틱
5112400	폴 리 에 틸 렌 (P . E)	M/T	열가소성플라스틱. 에틸렌을 중합시켜 만든 투명 또는 반투명 고체
5112410	저밀도폴리에틸렌 (L.D.P.E)	M/T	고압법에 의해 만들어짐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싸이클로 헥산	나이론섬유 및 수지의 원료
	벤젠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농약의 원료
	벤젠	
× 가소제원료인 P.T.S.A는 제외	톨루엔, 암모니아, 염화술포산	
○ 산성의 노불락(분말), 알칼리성의 데졸(액상) 포함.	페놀, 포름 알데히드	전기절연재료, 기계, 농 기구의 부품, 톱니바퀴, 사무용품
	벤젠, 톨루엔, 싸이크로 헥산	폴리우레탄 폼(Foam) 우레탄고무, 우레탄 도료 및 발포성형제품
	에틸렌	
		필름, 포장재, 시트, 전선피복.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2420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M/T	저밀도보다 結晶性이 크고 硬度, 強度, 耐熱性이 우수한 반면 加工性이 떨어짐.
5112500	폴리프로필렌 (P.P)	M/T	가장 가벼운 열가소성 플라스틱.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투명하며 내열성, 引張強度가 크며 전기적성질이 크다.
5112600	폴리스티렌 (P.S)	M/T	열가소성플라스틱. 스티렌의 중합체로 투명성, 電氣的性質, 熱流動性, 熱安定性, 着色性이 우수함. 충격에 약한 결점이 있음.
5112700	A B S 수 지	M/T	열가소성플라스틱.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의 공 중합체로 유백색이며 견고함.
5112800	P V C 수 지	M/T	일명 폴리염화비닐. 열가소성플라스틱.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不燃性이며 백색 무취함.
5112900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不飽和 PET 樹脂)	M/T	열경화성플라스틱 (FRP 수지). 불포화基를 갖는 선형폴리에스터와 비닐단량체와의 중합으로 얻은 수지
5113009	요소 수 지 (尿 素 樹 脂)	M/T	열경화성플라스틱. 요소와 포름알데히드를 축합시켜 얻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각종용기, 파이프
	프로필렌	가정용품(용기, 식기, 세면기등), 필름, 배관용파이프, 의자
○ 발포성 스티렌포함	스티렌모너머	착색의 식기 및 완구, 장신구, 일용잡화, 라디오, 냉장고등의 케이스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전기용품, 주택자재, 문구류, 용기, 구두굽 및 충격보강제제품
○ 중합도 기준에 따라 경질(가소제 함유량 29%이하), 연질(가소제 함유량 30~50%)이 있음.	VCM	전선피복, 모노륨, 호스, 시트, 전선관, 수도파이프, 밸브등 건설자재 파이프
	텔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FRP 제품(의자, 욕조, 단추, 선박등)
	요소, 포르말린	약품류의 용기의 캡, 전기부품, 단추, 식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것. 무색투명하여 임의로 착색이 쉬 우나 내수성이 약하고 건조하면 균열 하는 결점이 있음.
5113109	에 폭 시 드 수 지	M/T	열경화성 플라스틱. 1 분자속에 에폭시기를 두개이상 갖는 樹脂狀물질 및 그 에폭시기의 開環重 습에 의해서 얻어진것. 황갈색의 粘 調한 액체 또는 고체.
5113209	실 리 콘 수 지	M/T	일명 규소수지.
5113309	포화폴리에스터수지	M/T	일명 선형포화폴리에스터 수지.
5113400	S . B . R	M/T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공중합시켜 만든 합성고무의 하나. 유백색 및 갈색의 원료고무로 천연고무보다 약하고 부드 럽다.
5113509	포 르 말 린	M/T	포름알데히드의 40% 수용액
5113609	스 테 아 린 산	M/T	유지류의 주요성분을 이루는 지방산에 액체산을 제거하여 만든 무취의 백색 고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접착제
○ 저분자량, 고분자량이 있음.		접착제 (저분자량), 페놀수지등 타수지와 병용해서 도료에 사용 (고분자량)
	규소 (실리콘)	
	텔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DMT ?	폴리에스터섬유, 필름 (Pet 필름)
○ BR을 포함. × NBR, NCR, IIR, 스테레오 SBR 제외.	스티렌, 부타디엔, 가소제	타이어, 신발창, 고무 벨트
	메탄올	접착제, 요소수지
	우지	고무공업, 금속문구, 안정제, 화장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13709	구 연 산 (枸 櫞 酸)	M/T	밀감등 과실류에서 짜내거나 당류를 어떤 종류의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것.
5120100	카 바 이 드	M/T	일명 탄화칼슘. 생석회와 탄소를 반응시켜 만든 회색의 굳은 결정체. 물을 가하면 아세틸렌가스가 발생.
5120209	황 산 (黄 酸)	M/T	일명 유산. $H_2SO_4$ 및 그 수용액을 말하며, 보통 수용액인 경우가 많음. 무기화학공업제품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를 가진 것으로 빛도 맛도 없는 끈끈한 기름모양의 액체.
5120309	5 산화인 및 인산	M/T	황인을 태우면 5 산화인이 발생되며, 여기에 물을 혼합하여 얻어지는 일련의 산.
5120409	과 산 화 수 소 (過 酸 化 水 素)	M/T	황산수소암모늄의 전해에 의해 양극에 생기는 페르옥소 2 황산암모늄용액을 감압증류하여 얻는 것으로 기름모양의 무색액체, 산화작용이 강함.
5120509	탄 산 칼슘	M/T	석회암, 대리석등으로 산출하며 칼슘염의 수용액에 탄산알칼리를 가하면 무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청량음료수 제조
	생석회	아세틸렌 가스제조
○ 98% 기준 한산초사. 발열황산(올레움) 포함.	유황, 인광석	비료, 폭약, 염료, 금속 정련, 농약, 의약, 세제, 식품공업, 방직, 제지등 에 사용
	황인	금속표면처리제, 인산염 및 조미료 제조에 사 용
		종이, 섬유등의 표백제
○ 중질탄산칼슘, 경질탄산칼슘, 胡粉을 포함조사.	석회석, 생석회,	화공약품 및 형광물질 제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색침전으로 얻어진다.
5120600	가 성 소 다 (苛性소다)	M/T	일명 수산화나트륨 (NaOH). 즉, 흔히 양잿물이라 하며,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물에 녹을 때 많은 열이 발생.
5120700	가 소 제 (可塑劑)	M/T	일명 수산화칼리 (KOH), 수산화칼륨 또는 가성칼리라 함. 플라스틱, 고무, 도료등 고분자물질에 첨가하여 유연성, 가공성, 접착성을 좋게 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질을 만들게 하는 무색, 무미, 무취, 무독한 물질.
5120800	소 다 회	M/T	일명 탄산나트륨 (Na <sub>2</sub> CO <sub>2</sub> ), 또는 탄산소다. 無水鹽을 속칭 소다회로 불리우며 흡습성이 있는 무색의 분말로 물에 잘 녹고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냄.
5120909	탄 산 칼 륨	M/T	일명 탄산칼리 (K <sub>2</sub> CO <sub>3</sub> ). 공기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물에 녹으면 강한 알칼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소다회, 염화칼슘	
<p>○ 용액상태 포함. 100 % 기준 환산</p>	소다회, 식염, 석회	조미료, 비스코스인건사, 염료, 향료, 농약, 의약 품, 종이 및 펄프제조 에 사용.
<p>○ 프탈산에스테르, 옥시산에스테르, 폴리 에스테르계, 에폭시계등 각종 가소제 류 포함. ※ 고분자물질 : 분자량이 큰 화합물의 총칭 ( 합성고무, 합성섬 유, 합성수지, 단백질, 섬유소 )</p>	무수프탈산, 에틸렌글리 콜, 무수마 레인산	합성수지류, 접착제, 호스, 추잉검등에 사용.
<p>※ 수용액을 32 ℃로 결정시키면 10 水鹽 ( 속칭 양젯물 ) 이 됨.</p>	암모니아, 석회석, 식염	아미노산공업, 비누, 유리, 가성소다, 제지, 염색, 의약품
	염화칼륨	브라운관유리, 크리스탈유리, 카메라렌즈의 제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성을 나타냄. 고체의 백색결정체.
5121009	염 산 (鹽 酸)	M/T	일명 염화수소산. 염화수소의 수용액을 말함.
5121109	규 산 소 다 (硅 酸 소 다)	M/T	일명 규산나트륨이며 보편적으로 메타 규산나트륨( $\text{Na}_2\text{SiO}_2$ )을 가르킴. 물에 쉽게 녹으며 수용액은 강한 알 칼리성을 나타낸다.
5121200	산 소 (酸 素)	천 $\text{m}^3$	적정온도에서 산소에 높은 압력을 가 하여 그 부피를 줄인 압축산소와, 영 하 $118^\circ\text{C}$ 이하의 온도 및 50 기압이 상의 압력으로 냉각, 압축하여 얻은 약간 푸른색을 띤 액체산소로 대별됨.
5121300	아 세 틸 렌 가 스	M/T	아세틸렌계 탄화수소의 하나인 카바이 드(탄화칼슘)에 물을 가하여 얻은 무색의 독성이 있는 기체
5121400	화 이 트 카 본	M/T	규소화합물의 하나로 무색, 무해의 백 색 고운 분말.
5130100	염 료 (染 料)	M/T	일명 타르염료라고도 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용 염산, 진한염산 조사</li> <li>× 약국에서 파는 염산은 의약품으로 조사.</li> </ul>	염화수소	생철의 脫朱錫, 염화물, 의약, 색조류등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르토규산나트륨 (<math>\text{Na}_4\text{SiO}_4</math>), <math>\text{Na}_2\text{Si}_2\text{O}_5</math>, <math>\text{Na}_2\text{Si}_4\text{O}_9</math> 등의 각종 규산나트륨 포함.</li> </ul>	소다회, 2 산화규소 가성소다	
	공기, 물	용접, 용산, 열원, 폭약, 의료, 공기정화등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체 아세틸렌 제외.</li> </ul>	카바이드	
	규산소다, 황산	백색 합성고무의 밝은색 보강제, 합성수지, 인쇄 잉크, 도료, 농약, 접착제등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성염료인 직접, 산성, 염기성, 반응성, 유기용제용해, 형광백, 유기합</li> </ul>	벤젠, 톨루엔,	섬유, 종이, 목재, 유지 등의 착색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30200	안 료 (顔 料)	M / T	물, 기름등에 녹지않는 백색 또는 유색의 분말로 소정의 빛갈을 내게 하는 착색제.
5130210	무 기 안 료	M / T	무기물질인 주로 금속의 산화물로 되며 유기안료와 비교하여 대체로 열안정성이 좋으며 색이 변하지 않음.
5130220	유 기 안 료	M / T	유기화합물인 안료로 물에 가용성 또는 불용성인 염료를 금속염류등의 침전제로 불용성으로 한것(레이크계 안료) 등. 무기안료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착색력이 크고 색상이 선명함.
5130230	조 제 안 료	M / T	유기, 무기안료를 용도에 맞게 조제 한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성유기등의 모든 염료를 포함.	염산, 소다회, 메탄올, 가성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안료, 유기안료, 조제안료를 세분조사.</li> </ul>		플라스틱, 고무, 도료, 인쇄잉크등 제조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색인 연산화물, 티타늄화이트, 아연화등과 적색의 산화철, 청록색의 프래시안, 울트라마린 및 황적색의 적연 및 황연등의 안료를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조레이크계 안료, 불용성 아조계 안료, 푸타로시아닌계 (블루, 그린계) 안료등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제유기, 무기안료, 조제법량 및 유약, 마스타 뱃치등 기타 조제안료 조사.</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40100	아세테이트섬유	M/T	재생섬유(반합성섬유). 전기절연성이 뛰어나며 토우(tow)는 담배필터용으로 대량 사용.
5140200	폴리아미드섬유	M/T	합성섬유의 하나. 일명 나이론섬유
5140300	폴리에스터섬유	M/T	합성섬유의 하나. TPA와 EG를 중합하여 만든 것으로 섬유의 대표적 성질인 강신도가 나이 론 다음으로 우수.
5140400	아크릴릭섬유	M/T	합성섬유의 하나. 양모와 가장 비슷한 모양과 성질을 가진 폴리아크릴계섬유.
5150100	요소비료 (尿素肥料)	M/T	질소의 함유량이 높은 질소질비료의 하나로 흡습성이 강한 속효성의 중성 비료.
5150200	복합비료 (複合肥料)	M/T	비료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량을 조정하여 혼합 한 대표적인 화학비료.
5150309	유안비료 (硫安肥料)	M/T	일명, 황안비료. 황산과 암모늄을 반응시켜 만든, 백색 의 질소질비료.
5150409	유기질비료 (有機質肥料)	M/T	동식물의 유체 및 분뇨와 조미료 생 산시 그 부산물로 만든 비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장섬유, 장섬유토우, 단섬유 조사	아세톤후 레이크	
○ 장섬유, 단섬유 조사	카프로락탐	
○ 장섬유, 단섬유, 장섬유토우 조사	TPA, EG	
○ 장섬유, 단섬유, 토우 조사.	아크릴로 니트릴, 암모니아	
	암모니아, 탄산가스	전답
	암모니아, 과진산석회	전답, 원예, 인삼
	암모니아, 황산	
○ 2종복합비료에 유기질을 10%이상 가한 3종의 비료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160100	농 약 ( 農 藥 )	M / T	乳劑, 粒劑, 粉劑, 液劑, 水和劑로 된 농약.
5160110	살 충 제	M / T	해충을 구제, 사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기합성살충제.
5160120	살 균 제	M / T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을 갖는 약제.
5160130	제 초 제	M / T	잡초를 고사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제
5160209	살 서 제	M / T	취약

소분류 35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의약품의 증감사유기재시 부호와 함께 해당 약제명을 기입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세분조사.	벤젠, 키실렌, 염산, 가성소다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
○ 수도용, 원예용 조사. (진디물, 각종 나방류, 멸구, 깍지 벌레, 응애, 토양해충약등)		
○ 합성살균제 포함. 수도용, 원예용 조사. (종자소독, 도열병, 흰가루병, 검은 무늬병, 탄저병, 갈록병, 흰빛마른 잎병, 더덩이병, 곰팡이병, 부탄병, 노균병약등)		
○ 페녹시초산형, 유기산형, 산아미드형, 페놀제등으로 된 제초제 조사.		

< 약제명 >

신경계용약, 해열진통제,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혈액 및  
체액용약(수액제, 지혈제 등), 항감염제, 기타

2. 세탁비누, 화장비누는 제조시 무게로 조사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10100	바 니 스	ℓ	일반적으로 니스라 불림. 광택 또는 무광택의 투명한 막을 만드는 유성 도료의 하나
5210200	에 나 멜	㎏	안료와 유바니스를 녹여 혼합한 전색 제 도료. 페인트보다 광택이 풍부하며 미끄럽고 건조가 빠르다. 녹을 막고 열에 견 디는 힘이 크다.
5210300	페 인 트	㎏	
5210310	유 성 페 인 트	㎏	안료와 보일유를 혼합해서 만든 유색 도료의 하나. 된 반죽(堅練), 種, 調合페인트로 분류 됨
5210320	수 성 페 인 트	㎏	
5210400	락 카	ℓ	용제형으로 막이 질기고 강한 광택을 내는 투명도료의 하나. 건조시간이 빠르며 보통 셀룰로즈락카 및 섬유소 도료를 말함.
5210500	신 너	㎏	일명 복합솔벤트. 도장작업에 적합한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물계 하는 용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精, 油바니스(스파·골드·코팔·보 디등 바니스)등을 조사	톨루엔, 키 닐렌, 무스 프탈산, 산 화티탄, 수 리	나무의 투명도장
	무스프탈산 글리세린, 안료, 수지, 톨루엔, 키 일렌	차량, 선박, 건축등의 내부, 철재가구, 기계, 전기기기등에 도장
○ 방취, 방부페인트등 기타 유성도료 포함	무스프탈산 글리세린, 산화티탄, 스티렌모너 머	건축, 선박, 교량등 주로 옥외구조물에 도 장
	산화티탄, 스티렌모너 머	옥내용 도장
○ 아크릴, 하이솔리드, 우제 탄락카 및 락카에나멜을 조사	무수프탈산 수지, 톨루 엔, 키실렌, 가소제, 산 화티탄	가구, 완구, 항공기, 차량, 선박에 도장
※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솔벤트는 5300500 으로 조사	솔벤트, 키 실렌, 톨루 엔	페인트, 바니스등의 회 석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20100	의 약 품 (醫 藥 品)	백만원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쓸것을 목적으로 제조된 모든 약제품
5230100	세 탁 비 누	M / T	
5230200	화 장 비 누	M / T	
5230300	합 성 세 제 (合 成 洗 劑)	M / T	비누 이외의 합성 표면활성제를 말한다.
5230310	세 탁 용 세 제	M / T	
5230320	주 방 용 세 제	M / T	식품, 주방집기등을 세척
5230400	계 면 활 성 제 (界 面 活 性 劑)	M / T	
5230500	치 약	M / T	
5230600	화 장 품 (化 粧 品)	백만원	
5230610	화 장 수	백만원	투명한 알카리 및 산성화장수와 유액상의 乳化性화장수로 대별됨
5230620	화 장 크 림	백만원	유액과 같이 기름과 물로 되어있는 含水油性, 無油性, 중성크림으로 대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모든 약제품 포함		
× 공업용비누(알루미늄, 칼슘, 망간, 아연 등의 비누) 제외	규산, 우지가성소다, 규산소다회	
○ 액체, 종이, 칼리, 부상비누를 포함		
○ 연성, 경성세제 포함	가성소다, 향료, 알킬벤젠, 규산소다	
○ 유이온, 양이온, 비이온, 양성 등의 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등을 포함	벤젠, 소다회, 스테아린산, 가성소다, 메탄올, 글리세린	린스, 합성세제, 샴프, 비누 등 제조
× 가루치분제외		
○ 기초, 색조, 모발등의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등 전 화장품을 포함		
○ 밀크로션, 쓰킨로션의 유연 및 수렴 화장수 모사		기초화장
○ 콜드, 영양, 크린싱, 바니싱, 표백등의 크림을 조사		기초화장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30630	삼 푸 린 스	백만원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乳液狀 및 젤리상의 모발 세척제
5230640	기 타 화 장 품	백만원	
5290100	공 업 용 접 착 제 (工業用接着劑)	M / T	합성접착제로 완제품인것
5290200	다 이 나 마 이 트	M / T	니트로글리세린을기제(劑)로 하여 만든 폭발약
5290300	카 본 블 랙	M / T	천연 및 석유가스등을 불완전 연소시켜 생긴 그을림을 긁어모은 분말로된 흑색안료의 하나. 착색력, 내열, 내광성 및 내약품성이 크다.
5290400	인 쇄 잉 크	kg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X 먼도크림, 헤어크림은 기타 화장품 으로 조사		
○ 분말, 액체, 젤리등의 모든 샴푸와 헤어린스, 헤어토닉등의 양모제를 포함		모발화장
○ 화장수, 화장크림, 샴푸 및 린스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을 조사		
X 별도품목의 포르말린, 수지류와 동 식물계(아교, 제자틴 등) 접착제는 제외	합성고무, 나이론, 폴리우레탄 고무	
○ 교질, 분상, 혼합등의 다이나마이트 를 조사	글리세린, 초안	광석의 채굴 및 채취, 갱도굴진, 일반토목
○ 고무용, 안료용의 하드카본, 소프트 카본등을 조사	나프타, 콜타르	타이어, 인쇄잉크, 도료, 건전지, 고무의 착색 및 보강제
○ 철판, 요판, 형판, 등사, 그라비아등 의 잉크를 조사	염료, 카본 블랙, 산하 티탄, 톨루 엔, 대두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290500	P V C 안정제 (安定劑)	M / T	PVC 수지 배합시 첨가되어 열안정과 가공성을 높여주는 첨가제
5290609	초안폭약 (硝安爆藥)	M / T	일명 질산암모늄 폭약, 폭발성의 감도가 둔하고 폭발온도가 낮다.
5290709	방수액	M / T	
5290809	고무노화방지제 (老化防止劑)	M / T	고무에 섞어 넣거나 표면에 칠하여 산화를 방지케 함으로써 고무의 수명을 연장케 함.  자갈색, 담황색, 담갈색 등의 액체, 후레이크, 분말로 되어있음
5290909	가황촉진제 (加黃促進劑)	M / T	

소분류 : 353. 석유정제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각종 유류의 1BbL (바렐)은 158,984 ℓ 임

$$1\text{BbL} = 0.158984 \text{ kl} \quad \therefore \text{BbL} \times 0.158984 \text{ kl}$$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말 ( 무기 및 금속성검제 ),</li> <li>— 액상 ( 액상유기 복합안정제 및 유기식계 안정제 ) 등의 안정제를 조사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면처리제, 배합제, 자외선 안정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산암모늄유제 폭약, 슬러리 폭약 포함</li> </ul>		공업용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민계, 알킬페놀계 등을 조사</li> </ul>		합성고무 및 합성고무 라텍스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기성, 누연성 등의 각 촉진제를 포함</li> </ul>		고무제품, 신발, 전선, 접착제 등에 사용

2. 윤활유는 소분류 354 에서 조사. 윤활기유와 다름에 유의

3. 프로판가스 1t = 10.88 BbL = 1,729 kl

부탄가스 1t = 12.28 BbL = 1,968 kl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300100	젯 트 유	kl	연소 속도와 지속성이 크다. 연소중 탄소를 퇴적시키지 않으며 잔류탄소가 없다. 다른 기름에 비하여 규격이 엄격함
5300200	휘 발 유 (揮 發 油)	kl	
5300300	나 프 타	kl	원유를 증류하여 얻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증류할 때에 발생하는 하나의 석유유출물(溜分). 무색 또는 담황색으로 인화, 폭발성이 가장 높다.
5300400	등 유 (燈 油)	kl	점도가 낮고 휘발성은 낮으나 인화점이 높다. 잘 정제되어 색상이 밝고 안정성이 있다.
5300500	솔 벤 트	kl	일명 백정
5300600	경 유 (輕 油)	kl	등유 다음으로 유출되며 엔진에 필요한 충분한 착화성과 적당한 점도를 가진 담황색 또는 담갈색의 기름
5300700	중 유 (重 油)	kl	휘발유, 등유, 경유에 비하여 점도가 높고 침전물과 유황분이 많은 흑색의 기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민수용 (Jet. A1), 군수용 (JP4) 및 항공기용 가솔린을 조사	원유	젯트기관 및 항공터빈 연료
○ 직류, 개질, 분해등 가솔린을 조사	원유	자동차연료
	원유	석유 및 비료화학의 원료
○ 백등유, 다등유 조사	원유	가정용, 동력용연료
※ 복합솔벤트(신너)는 5210500 으로 조사	나프타	신너, 세정, 의약품의 원료
○ 경질, 중질의 경유를 조사	원유	대형차량, 기관차, 건설 기계 등의 고속디젤엔진 및 보일러 등의 연료
○ 방카A, B유 포함	원유	저속디젤엔진, 발전, 가스터빈 등의 연료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300800	방 카 C 유	kl	중유의 하나로 방카A, B유보다 침전물, 유황분이 더 많은 흑색의 저질 기름
5300900	L P G	kl	일명 석유액화가스
5300910	프 로 판 가 스	kl	탄화수소의 하나인 프로판(C <sub>3</sub> H <sub>8</sub> )을 주성분으로한 석유계 가스
5300920	부 탄 가 스	kl	부탄(C <sub>4</sub> H <sub>10</sub> )을 주성분으로한 석유계 가스
5301000	석 유 아 스 팔 트	kl	일명 석유역청(피치). 흑갈색 및 흑색을 띤 점착성 고체 또는 반고체 물질의 역청물
5301100	윤 활 기 유 (潤滑其油)	kl	정유공정의 감압증유공정에서 나오는 殘渣油의 하나(Mineral 오일:광유)
5301209	조 경 유	kl	코크스 제조시 발생하는 코크스 오븐 가스를 정제한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원유	※ 용도(국내 연간) 발전 : 45%, 산업 : 35%, 난방 : 20%
× 도시가스, 천연가스(LNG)는 제외 ※ 1 t = 10.88 BbL = 1,729 kl	원유	취사용
※ 1 t = 12.28 BbL = 1,968 kl		내연기관용
○ 스테이트(도로포장설), 블로운(슬라 브지붕, 외벽, 지하실등의 방수 및 방습용)등의 아스팔트를 조사 × 역청질혼합물(아스팔트에 골재를 섞 은것)은 5400300 아스콘에서 조사	원유	도로포장용아스팔트제품, 배관피복, 건축물, 포장 지의 방수 및 방습용
× 윤활유는 5400200에서 조사	원유	윤활유의 원료
	코크스오 븐가스	석탄계의 벤젠, 톨루엔 키실렌 원료

소분류 : 354 .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400100	연 탄 (煉 炭)	M / T	
5400200	윤 활 유	ℓ	윤활기유에 적당한 광물유를 첨가 배합한 윤활재
5400300	아 스 콘	M / T	일명 역청질혼합물 또는 가열혼합 가열포설 염층포장용 혼합물이라함 아스팔트에 골재를 혼합한 것
5400400	석 탄 코 크 스	M / T	유연탄(일명 粘結炭)을 가열하여 휘발분을 제거한 多孔質의 고체연료
5400500	콜 타 르	M / T	일명 광물타르. 유연탄을 가열 코크스를 만들때 그 건류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끈기가 있는 흑색 또는 갈색의 액체(상온에서 고체)
5400600	콜 탈 핏 치	M / T	콜탈의 증류 잔유물(석탄액화와 잔유물). 즉 코크스 생산 과정에서 부생되는 콜탈을 계속 증류시켜 남은 찌꺼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무연탄 향토석회석	
○ 윤활기유는 5301100에서 조사	윤활기유	기계가 맞는 부분의 마컵제거용
	아스팔트 골재	도로포장
× 석유코크스 제외	유연탄	연료, 제철, 주물카바 이드 제조에 사용
	유연탄	카본블랙, 염료, 석탄계 벤젠등의 원료, 콜탈 핏치
	콜탈	알루미늄제련, 전주봉 제조, 코크스집결용등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400709	절삭유 (切削油)	ℓ	철이나 스틸등의 재질을 자를 때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윤활제
5400809	아스팔트루핑	M/T	루핑(Roofing)원지에 아스팔트를 칩투 또는 피복한 것

소분류 : 355 . 고무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510100	자동차타이어	천 본	
5510200	모터사이클타이어	천 본	
5510300	자전거타이어	천 본	
5510400	자동차튜브	천 본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윤활기유, 에밀존, 솔 러블	
○ 아스팔트펠트(Felt) 포함	루핑원지, 아스팔트	건축재료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승용차, 버스, 트럭 등의 소형 및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의 타이어를 조사	생고무, 합성고무, 타이어코드 사, 카본블 랙	
○ 각종 소·중·대형 모터사이클용 타 이어를 조사		
× 어린이용 삼발자전거, 리어카용 타이 어 제외		
○ 자동차타이어에 준함:	생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510500	모터싸이클튜브	천 본	
5510600	자 전 거 튜브	천 본	
5510700	재 생 타 이 어	본	드래드가 낡고 닳아없어져 디자인이 없어진 경우 표면의 고무만을 갈아 붙여서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만든 타이어
5590100	고 무 장 화 및 우 화	천켈레	발목, 무릎, 허벅다리까지 올라오는 고무제품의 신발
5590200	운 동 화 (運 動 靴)	백만원	표피등 모든 재질이 직물, 나이론, 합성피혁, 순가죽등에 관계없이 만든 경기 및 일반보행용 신발
5590300	운 동 화 부 품	백만원	
5590400	고 무 호 스	km	
5590500	고 무 벨 트	천PLY	면사 및 합성섬유 직물에 고무를 발라 성형하였거나 양면에 손상을 막기 위하여 커버고무를 씌운 것으로 이음매 없는 환상벨트
5590600	고 무 스폰 지	㎡	氣泡 - 있는 쿠션용 · 고무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모터싸이클용 타이어에 준함		
○ 자전거용 타이어에 준함		
○ 자동차용 타이어에 준함		
○ 우기, 수렵, 취사, 작업, 공업용 등 및 방한화를 조사	생고무, 합성고무, 면직물	
○ 전문경기용인 축구화, 야구화, 럭비 축구화 등 포함		
× 신사화, 등산화, 랜드로바등 가죽제 신발은 324에서 조사		
○ 운동화의 갑피, 바닥창, 중창만을 조사	합성고무	
○ 충고무, 편상식, 布捲式등의 고무호스 를 조사	생고무, 재 생고무, 아 연화, 카본 블랙면직물, 합성섬유사	소방, 양수, 일반송수, 함마착압기, 압축공기 통과, 오일용 등
○ 平, V형, 톱니바퀴형 등 각종의 벨트를 조사	고무호스  참조	동력전달 및 운반용
× 플라스틱물질을 원료로한 스폰지는 365 플라스틱스폰지로 조사	생고무, 합성고무, 아연화	주로 운동화 속창에 사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590709	산업용고무제품	백만원	
5590809	피 임 용 기 구	천다스	
5590909	고 무 장 갑	천컬레	

소분류 : 356 .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600100	플 라 스틱 필 림	M / T	각종 수지를 투입하여 만든 1차 제 품의 필름(원단)
5600200	플 라 스틱 레 저	M / T	천이나 종이등에 주로 염화비닐수지를 바른 것
5600300	플 라 스틱 장 관 및 벽 지	M / T	
5600400	플 라 스틱 관 및 봉	M / T	각종 용도의 관(파이프) 및 봉
5600500	스 치 로 폴	M / T	
5600600	플 라 스틱 스폰 지	M / T	산업용 발포성형 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12개를 1다스로 환산 조사		
○ 가정용, 산업용 조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필름(원단) 및 시트 조사 × 필름(원단)을 구입 재단 절단하여 만든 각종의 제품(봉투등 포장재)은 제외	합성수지	농업용 및 식품, 각종 물품등의 포장재
	염화비닐	
○ 일반 및 특수장판(거실 이외의 실내바닥에 펴는 것)과 순수 플라스틱 벽지를 조사	합성수지	
○ 배수, 배전, 이음등의 관 및 봉과 프로파일을 포함	PVC 수지	
○ 건축용(평판)과 각종 물품 충격방지용 스티로폴을 조사	발포폴리 스티렌	건축, 전기전지기기 및 각종 물품 충격 방지용
○ 연질로된 스폰지류와 경질의	PPG, TDI,	자동차 외자, 보통의자,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600700	FRP 제품	M/T	강화플라스틱(내구성, 특수보강제를 첨가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등)중 FRP로만 만든 제품
5600800	전기전자기기용 케이스	M/T	산업용의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케이스와 가정용의 전기 전자기기용 제품의 플라스틱케이스
5600900	플라스틱자동차부품	M/T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종의 부품
5601000	플라스틱주방용품	M/T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 및 주방용 등의 각종 제품
5601100	플라스틱포장용기	M/T	플라스틱으로 만든 중·소·대형용기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발포제품(주로 단열재)조사	MDI	침구류, 의복등의 쿠션 과 건축물의 단열재
○ 창틀, 욕조, 정화조, 의자, 물탱크, 화 학약품탱크, 헬멧조사	불포화 폴 리에스터수 지(FRP)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기기, 복사 기, TV, VTR, 냉장고, 전화기, 선풍 기, 세탁기, 오디오, 밥통, 녹음테이프 의 케이스만 조사	합성수지	
○ 식기 및 소형의 용기(밥·찬그릇, 대접, 접시등 식기류와 물통등의 소 형용기)와 칼, 수저, 포크, 주걱, 양 념통 등의 주방용품만 조사	합성수지	
× 세면기, 목욕통, 비누갑, 쓰레기통등의 위생용기는 제외		
○ 컨테이너박스(주류, 음료등 병박스), 고기상자, 육묘상자, 막걸리병, 화장품 용기, 세제용품용기, 물통 및 합지박 (일명 고무대야), 각종의 식품용기	합성수지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5601200	플 라 스 틱 신 발	M / T	합성수지를 압축, 압출하여 만든 신발
5601300	플 라 스 틱 포 대	M / T	합성수지를 압단 또는 접합하여 만든 포대 및 백
5601400	라 미 네 이 팅	km	합성수지 필름 및 지류에 인쇄를 해서 Sealant 성질이 있는 필름을 접착한 것 또는 합성수지를 코팅한 것
5601509	플 라 스 틱 창 문	M / T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합성수지만을 투입하여 만든 신발류 (주로 슬리퍼)	합성수지	
○ 비료포대, 화공약품포대등 조사 ----- ×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편직기로 짠 것은 2140100 직물포대로 조사		
× 라미네이팅한 것을 구입 또는 주문 생산한 것을 받아 봉투만을 제작하 는 것과 인쇄만 하는 것은 제외	나이론 필름, OPP 필름, PET 필름, 복합필름, 지류	
<p>※ 용도 : 진공, 냉동포장 및 기타 포장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론 필름 : 햄류, 조림류, 오징어등 진공포장</li> <li>○ OPP // : 라면류, 제과류등</li> <li>○ PET // : 농약, 보향성제품포장(커피등 향내가 나는 식품)등</li> <li>○ 복합 // : 스넥류</li> </ul>		

## 중분류 3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소분류 361 . 도기, 자기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 1) 도자식기, 위생도기제품은 도기로 된 제품만 조사한다. 즉 플라스틱이나 화이버토기(오지그릇) 등 유사제품은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 2) 도자기는 진흙의 종류와 구울때의 온도에 따라 질그릇, 돌그릇, 사기그릇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토기제품은 6100509 에만 조사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100100	가정용도자식기 (家庭用陶瓷食器)	천 개	사기로된 식기류
6100200	위생용도기제품 (衛生用陶器製品)	개	도자기류로서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위생처리기구
6100300	애 자 (磚 子)	M / T	송배전용 지지물인 전주에 전력선을 연결하는데 쓰이는 도기제품
6100400	도 기 장 식 품 (陶器裝飾品)	천 개	수종의 광석을 분해 혼합하여 형체를 이루어 구어낸 장식용 제품

3) 위생용 도기제품(화장실의 싱크)와 금속제싱크와는 특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도기장식품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만 조사한다.

즉, 인간문화재의 골동품은 조사하지 않는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기, 자기로 된것</li> <li>○ 부엌 및 식탁용식기, 대접</li> </ul>	백토, 규사, 고령토, 장석, 납석, 규석, 석고	주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변기, 대변기, 욕조, 세면기, 기타 위생도기제품</li> <li>○ 플라스틱 욕조는 5600700에서 조사</li> </ul>	백토, 점토, 장석, 고령토, 납석, 석고, 규사 및 규석	위생용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애자, 현숙애자, 고압애자, 저압애자, 특고압애자, 기타도기절연체</li> <li>○ 애자류와 애관자기로된 전기절연제품 모두 조사</li> </ul>	토석, 점토, 장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기형, 술병형, 인물형, 꽃병형, 동물형 및 도기완구 모두 포함</li> <li>○ 골동품은 제외</li> </ul>	점토, 백토, 규사, 장석, 백운석, 고령토, 규석, 아연화 및 산화티타늄	실내 및 실외장식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100509	토 기 제 품 ( 土 器 製 品 )	M / T	각종 토기제품의 용기
6100609	싱 크	개	도자기류로써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기구

소분류 362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판유리, 안전유리는 2mm로 환산 조사한다.

예 : 규격 : 3mm 판유리를 200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규격 2mm로 환산하므로  $3/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표에는 300 C/S로 기입하고 포장(상자=C/S)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환산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200100	유 리 관 ( 琉 璃 管 )	M / T	유리로 된 관 형광전구 켈유리 실험실 용기구 일명 관유리
6200200	판 유 리 ( 板 琉 璃 )	C / S	판상(板狀)유리 $1C/S = 9.29 m^2$
6200300	거 울 판 유 리	kg	판유리를 구입 진공상태의 제조를 거 쳐 거울판유리를 만듦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일명 항아리, 뚜껑용 용기, 토기 화분 오지물을 입힌것도 포함	점토, 백토	김치독, 간장독, 뚜껑용기, 화분토기
○ 화장실의 세면기보다 대체로 큰것	백토, 점토 장석	위생처리장치

즉,  $1C/S = 100 \text{ 평} = 100 S/F = 9.29 \text{ m}^2$  환산한다.

2) 브라운관용 유리 (6200500)는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 요령은 (앞면+뒷면) ÷ 2 조사한다.

3) 식품 및 음료병 유리병, 약 및 화장품용 유리병, 유리식기 및 유리 주방용품은 M/T으로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일명 관유리	규사, 규석, 소다회 파 유리	형광전구유리, 실험실 기구
○ 이형관유리, 보통관유리, 무늬관유리, 망유리, 플로트유리	규사, 소다 회, 백운석, 파유리, 망 초, 규사, 석회석, 장 석	건물용, 창유리, 형유리
○ 각종 거울관유리 모두 조사	관유리	거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200400	안 전 유 리 ( 安 全 琉 璃 )	C / S	유리에 특수가공하여 압력, 충격, 온도 변화에 대한 강도를 높인 유리
6200500	브라운관용유리	천 개	내전압성, X선차폐성, 방사선 비색색상이 뛰어나게 만든 TV브라운관 켈유리
6200510	흑백브라운관용유리	천 개	
6200520	칼라브라운관용유리	천 개	
6200600	식품및음료용유리병	M / T	각종 식품 및 음료수병
6200700	약및화장품용유리병	M / T	의약품, 위생 및 화공약품을 넣는데 쓰이는 용기
6200800	유리식기및유리주방용 용	M / T	가정용 유리주방용품
6200900	유 리 설 유	M / T	유리와 섬유의 합성체로서 내열성, 단열성, 내약품성 절연성이 강하다.
6201009	장식용유리제품	천 원	유리가공 장식제품 유리를 깎아 가공하고 색상을 입혀 만든 모조장식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유리, 적층유리, 적층단열유리</li> <li>※ 복층유리 제외</li> </ul>	판유리	차량유리, 건물용 도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수상기용, CRT용 전자오락기구</li> </ul>	파유리, 규사, 규석, 소사회	TV용, CRT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병(소주, 맥주)음료수(사이다, 콜라)우유, 베지말병 및 각종 음료병</li> </ul>	규사, 규석, 소다회, 파유리	유리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카스, 까스명수, 구론산병 각종 약병 및 화공약품병</li> </ul>	규석, 소다회, 석회석, 초석, 파유리, 형석	유리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식기, 유리컵, 유리술잔 포함 조사</li> </ul>	규석, 소다회, 장석, 망초, 파유리, 석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섬유사 포함조사</li> </ul>	납석, 석회석, 붕광석, 파유리, 암모니아	건축용 내장재, 보강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형, 유리크리스탈 인물형, 꽃모양형, 조명에 장식으로 부착되는 것</li> </ul>	유리	장식제품

소분류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은 형태에 관계없이 조사한다.
2. 콘크리트 전주나 콘크리트 파일은 그 규격이 매우 다양하지만, K.S 규격대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K.S 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3. 흙관은 콘크리트관이나 석면 시멘트관과는 제조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포함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제품은 성형시켜 양생에 들어간 시점, 판상 제품(석면 스투트)은 부서지기 쉬우므로 검사를 끝낸 시점을 생산시점으로 본다.
5. 석면 스투트는 다음과 같이 환산 조사한다.(두께는 환산하지 않음)

구 분	두께	가로	세로	환산 (㎡)
① 소골 스투트				
6 자	6.3 mm	720 mm	1,820 mm	1.3104
7 자	6.3 mm	720 mm	2,120 mm	1.5264
8 자	6.3 mm	720 mm	2,420 mm	1.7424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10100	소성벽돌 (燒成벽돌)	천 개	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소성한 벽돌
6910200	타일 ( Tile )	일 천 ㎡	건축물 내외장 및 치장용으로 쓰이는 도기류의 판재

구 분	두께	가로	세로	환산 (㎡)
② 대골 스투트				
6 자	6.3 mm	960 mm	1,820 mm	1.7472
7 자	6.3 mm	960 mm	2,120 mm	2.0352
8 자	6.3 mm	960 mm	2,420 mm	2.3232
③ 기와 스투트	6 mm	570 mm	1,050 mm	0.5985
④ 평 스투트	4.5 mm	910 mm	1,820 mm	1.6562
	6 mm	910 mm	1,820 mm	1.6562
	6 mm	1,200 mm	2,420 mm	2.904

6. 벽들에는 소성, 내화, 콘크리트벽들이 있으므로 조사시 원재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용 석고판제품(석고보드)와 산업용 석면제품과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므로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료	용 도
○ 보통벽돌, 오지벽돌	점 토	건축용자재
○ 외장타일, 내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모두 포함	장석, 백토	건축용 내·외장재
○ 판석, 인조판석, 프라스틱 혼합제품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20100	시 멘 트 ( 포 오 틀 랜 드 )	천M/T	시멘트 크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 해 분쇄하여 제조함  적당량의 물과 혼합하여 조형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는 콘크리트제품의 원 재료
6920200	시 멘 트 크 링 커	천M/T	석회석과 점토를 분쇄 건조시켜 적당한 비율 4:1로 혼합하여 이를 다시 적당 한 크기로 응고제조된 덩어리
6920300	프 라 스 터 ( 석 고 ) ( 石 膏 ) ( Gypsum )	M/T	○ 석회질 광물(각종 비료의 부산물) 150℃ 이상 가열하면 가루가 됨 ○ 천연석고와 타공업에서 부산물로 얻 어지는 화학석고
6920409	생 석 회	M/T	석회석을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구운 백색 건조하며 알칼리성을 가진 광물 제품
6930100	석 면 스 레 트	천㎡	불연재로서 내열성이 우수하며 물이나 습기에 견디는 내수성이 강한 석면판
6930200	건축자재석고판제품 ( 석 고 보 드 )	M/T	불연, 단열내장용 건축자재(석고보드)
6930300	레 미 콘	천㎡	시멘트, 물, 골재의 혼합된 굳지 않는 상태 콘크리트 반죽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종~5종 포오펀드 시멘트 벌크, 백색, 고로 시멘트, 내화 시멘트는 6940200에서 조사</li> </ul>	시멘트크링커 철 광 석 철 압 석 고	
	석회석, 점토	각종 시멘트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화학비료에서 부산물을 제거한 순수한 분말상태의 석고</li> </ul>	비료의 부산물	시멘트원료
소석회는 포함하지 말 것.	석 회 석 백 운 석	제강용, 비료, 농약용 토양개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형, 합판형, 기와형</li> </ul>	시멘트, 석 면 유리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고보드, 아스칼, 아미텍스, 아스텍스, 석고텍스,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모두 포함</li> </ul>	규산질석고 석회질석고 석면	건축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S 규격품 모두 포함</li> </ul>	시 멘 트 골 재	토목, 건축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30400	콘 크 리 트 벽 돌	천 매	블록과의 차이는 그 크기에 있다. KS 규격 길이 190 ~ 210 mm 높이 90 ~ 100 mm 두께 100 ~ 210 mm
6930500	콘 크 리 트 블 록	천 매	시멘트, 골재, 물을 혼합하여 성형 양생한 것 KS 규격 길이 390 mm 높이 190 mm 두께 100 ~ 210 mm
6930600	흙 관	본	일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소정의 틀에 조립된 철선을 넣고 회전하면서 혼합된 콘크리트를 넣어 성형한 다음 최고 65℃ 양생한 것
6930700	콘 크 리 트 전 주	본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철선과 철근을 내장하여 강도를 높여 굳힌 전주
6930800	콘 크 리 트 파 일	본	높은 압축 및 인장강도를 필요로 하는 말뚝으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형하고 60℃로 양생한다.
6930909	콘 크 리 트 문 틀	개	콘크리트 창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시 멘 트 골 재	건축, 토목용 자재
○ 보도블록 제외	시 멘 트 골 재	건축자재, 토목용자재
○ 2.5 m 를 1 분으로 조사하며 반드시 열처리하여 양생하고 원심력에 의해 제조된 것만 조사 ○ 콘크리트관, 석면스레트관, 도관, 토관 등은 제외	시멘트, 골재, 철선	상하수도관 농수로용 관으로 사용
○ KS 규격대로 조사	시멘트, 철 근 목 재	
○ 토목, 건축용으로 쓰이는 제품만 조사	시멘트, 골 재, 봉강, 철선	토목, 건축물 기초공사
○ 콘크리트 제품만 조사	시 멘 트 모 래	건물용 창틀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6940100	내 화 용 벽 돌 (耐火用벽돌)	M/T	요업, 보일러용, 용광로용 내화물
6940200	부 정 형 내 화 물 (不定型耐火物)	M/T	형태가 없는 내화물
6990100	석 면 제 품 (石綿製品)	kg	산업기계용(공업용)석면제품과 압면광석을 부수어서 열을 가해 섬유질을 생산함.  기계용 석면제품은 프레스나 압출기로 성형제품을 생산할 때 열방지효과로 쓰임
6990200	연 마 지 및 포 (研磨紙 및 布)	m <sup>2</sup>	크라프트지 또는 천에 금강사를 접착한 것(일명 뼈빠)
6990300	장식및기념석제품 (裝飾및記念石製品)	천 원	비석이나 석장식제
6990400	건자재용석물제품 (建資材用石物製品)	천 원	건축 및 토목자재용
6990500	활 석 분 (滑石粉)	M/T	활석을 분쇄한 가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석질, 점토질, 고알루미나질의 내화 벽돌</li> </ul>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내화점토 고령토, 백운석, 납석, 규사및 규석	용광로, 단일내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화시멘트, 내화골재</li> </ul>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내화점토	용광로, 단일내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적석면, 석면혼합물</li> <li>○ 석면이 50 ~ 100 % 이상 함유된 제품</li> <li>○ 건축자재석고판제품은 6930200 에서 (석고보드) 조사</li> </ul>	암면광석	산업용, 기계용, 보일러 배관용, 기계부품용, 금속피복용
	금강사, 크라프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석 및 석골동품, 석등</li> </ul>	대리석, 화강암	비석, 석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석, 화강석</li> </ul>	대리석, 화강암	건축자재용
	활 석	종이표백과 농약(분말) 제조용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소분류 371. 철 강 산 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철강제품은 그 형태와 두께 및 폭에 따라 품목이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최종제품의 용도, 탄소함유량 물리적 성질 및 비철원소의 함유량에 따라 물량세분이 많으므로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10100	선 철 ( 銑 鐵 )	M / T	제강의 원료로서 용광로에서 철의 성분만을 뽑아낸 탄소함유량이 1.7% 이상인 철
7110110	제 강 용 선 철 ( 製 鋼 用 銑 鐵 )		
7110120	주 물 용 선 철 ( 鑄 物 用 銑 鐵 )		
7110200	합 금 철 ( 合 金 鐵 )		철에 망간, 규소, 크롬, 원소를 20 ~ 80% 정도 함유시킨 철의 합금
7110210	망 간 철 (Ferro Manganese)	M / T	
7110220	규 소 철 (Ferro Silicon)		
7110230	규 소 망 간 철 (Silicon Manganese)		
7110240	기 타 합 금 철 ( others )		
7110300	강 괴 ( 鋼 塊 )	M / T	탄소의 함유량이 선철보다 낮으며 제강로에서 만들어지는 용강을 주형에

- 2) 철과 강 의 구분은 탄소가 1.7% 이상 함유한 것을 [철] 그 미만의 것을 [강] 이라고 한다.
- 3) 소분류 371 (제 1 차 철강제품)은 재공품 상태의 것과 반제품 (중간 제품) 상태의 것과 출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생산완료된 제품이 아니고 재공품 상태의 것은 재투입 관계는 무시하여야 한다.
- 4) 봉강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괄공정으로 마봉강을 생산할 경우 마봉강을 조사할 것. 이때 원래의 봉강은 조사하지 않는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강용 선철</li> <li>○ 주물용 선철</li> </ul>	철강석, 고 철	압연제품 단조물, 주물용, 제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간, 규소, 크롬을 함유한 철</li> <li>○ 크롬철, 몰리브데넘철, 텅스텐철, 기타 합금철</li> </ul>	철, 망간, 규소, 크롬, 니켈	제 강 용
	선철, 고철	압연강재나 단장품 소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M/T	주입하여 응고된 피를 말하며 신축성이 적으나 단단하여 압연제품제조에 사용
7110310	압 연 용 강 피		
7110320	단 조 용 강 피		
7110400	주 강 ( 鑄 鋼 )	M/T	제련로에서 만들어진 용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만든것
7110410	보 통 강 주 강		
7110420	특 수 강 주 강		
7110500	슬 랩 ( Slab )		두툼한 강판제품 단면은 장방형으로 모서리가 둥근 일명 후강판
7110510	보 통 강 슬 랩		
7110520	특 수 강 슬 랩		
7110600	블 룸 ( Bloom )	M/T	대형강피 대형, 장방형, 단면은 정방형
7110610	보 통 강 블 룸		
7110620	특 수 강 블 룸		
7110700	빌 렛 ( Billet )	M/T	블룸을 소형으로 잘라 놓은 것으로 굵은 장작형, 철봉형
7110710	보 통 강 빌 렛		
7110720	특 수 강 빌 렛		
7120100	봉 강 ( 棒 鋼 )	M/T	강피나 강반성품을 봉괴형태로 조강한 것 봉강을 가공하여 마봉강을 생산할 경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압연용강괴, 고탄소강강괴</li> <li>○ 보통단조용강괴, 특수강강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강 주강</li> <li>○ 고탄소강 주강, 합금강주강</li> </ul>	고철, 선철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께 50 ~ 90 mm 폭 350 ~ 500 mm 길이 1 ~ 5 m</li> </ul>	평강, 강괴	후판, 열연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 130 mm 이상</li> <li>○ 단면 16.90 mm<sup>2</sup></li> </ul>	각형, 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 130 mm 이하</li> <li>○ 단면 16.90 mm<sup>2</sup></li> </ul>		소형조강, 선재
	강괴, 빌렛	기계부품 소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M/T	마봉강만을 조사할것 이때 원래의봉강은 조사하지 않는다.
7120110	보 통 강 봉 강		
7120120	특 수 강 봉 강		
7120200	철 근 (鐵 筋)		건축용 자재로 쓰이는 봉강의 일종
7120210	이 형 철 근	M/T	
7120220	원 형 철 근		
7120300	형 강 (形 鋼)		강반성품을 압연하여 그 모양을 용도에 따라 길게 늘린것
7120310	보 통 강 형 강	M/T	
7120320	특 수 강 형 강		
7120400	중 후 판 (中 厚 板)		두께 3mm 이상의 열간압연으로 만들어지는 강판
7120410	후 판 (厚 板)	M/T	
7120420	중 판 (中 板)		
7120500	열 연 박 판 (熱 延 薄 板)	M/T	두께 3mm 미만의 열간압연으로 만들어지는 얇게 늘려서 절단한 강판
7120600	열 연 대 강 (熱 延 帶 鋼)		열간압연으로 코일상태로 감긴것 두께 1.2mm~22.0mm 이상
7120610	열 연 광 폭 대 강 (熱 延 廣 幅 帶 鋼)	M/T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봉강, 중형봉강, 소형봉강</li> <li>○ 고탄소강, 합금봉강</li> </ul>	고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강과 혼돈하기 쉬우나 원재료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형철근, 원형철근만 조사</li> </ul>	강괴, 강반성품, 고철	건축, 토목용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중형, 소형, 보통강형강 및 강시판포함, T형, H형등 각형 포함</li> <li>○ 고탄소강, 합금강, 형강 및 강시판 포함</li> </ul>	강괴, 강반성품, 대강	토목자재, 건축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판, 보통강, 고탄소강, 합금강 6 mm 이상의 후판 150 mm 이상의 극후판 포함</li> <li>○ 3 ~ 6 mm 중판</li> </ul>	강반성품	일반구조용 조선용 프레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강 열연박판</li> <li>○ 고탄소강 열연박판</li> <li>○ 합금강 열연박판</li> </ul>	열연대강 강반성품	각종 판제품제조 강관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강 열연광폭대강</li> <li>○ 고탄소강 //</li> <li>○ 합금강 //</li> </ul>	강반성품	각종 판제품제조 강관제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20820	열 연 협 폭 대 강 (熱延狹幅帶鋼)	M/T	
7120700	궤 조 (軌 條)	M/T	철도 및 광산레일
7120710	중 궤 조 (重 軌 條)		
7120720	경 궤 조 (輕 軌 條)		
7120800	냉 연 박 판 (冷延薄板)	M/T	두께 3 mm 미만의 열간대강을 소재로 냉간압연하여 절단한 강판 표면이 균일하고 광택을 내는 강판
7120900	특수강냉연강판 (特殊鋼冷延鋼板)	M/T	니켈(Ni) 8~16% 크롬(Cr) 11~20%를 함유한 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진 강판
7120910	스텐레스강판		
7120920	냉연전기강판 (冷延電氣鋼板)		규소 1~5%를 함유하는 합금강판으로서 전기적 성질이 뛰어난 제품
7121000	냉연대강 (冷延帶鋼)	M/T	냉간압연하여 코일상태로 감긴 상태의 강판
7121010	냉연광폭대강		
7121020	냉연협폭대강		
7121100	강 관 (鋼 管)	M/T	대강을 말아서 용접하여 만들거나 빌렛등 강편소재를 가열 압출하여 만든 강판
7121110	무계목강관		
7121120	전기용접강관		
7121130	아크용접강관		
7121200	선 재 (線 材)	M/T	철선의 2차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늘게 하여 코일과 같이 말아 놓는것
7121210	보통강선재		
7121220	합금강선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보통강 열연협폭대강, 합금강협폭대강, 고탄소강열연협폭대강		
○ 철도레일  ○ 광산레일, 엘리베이터레일	강괴, 강반성품	철도레일 광산 및 엘리베이터
○ 냉연박판 - 보통강 // - 고탄소강 // - 합금강	열연대강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부품
○ 크롬, 니켈외에 몰리브덴 합금의 스테인레스 강판도 포함	크롬, 니켈 강반성품	공장설비부품 및 건축물 벽면, 도구, 식기제조
○ 두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강반성품, 강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제조에 사용
○ 냉연광폭대강 ○ 냉연협폭대강	열연대강 강반성품	전자제품, 자동차 및 기계부품
○ 강관을 구입해서 피복을 입힌 사업체는 조사에서 제외	강괴, 대강 강반성품	배관용, 보일러용, 토목배관용
○ 보통선재, 연강선재, 경강선선재	강반성품 강 괴	철선, 용접봉, 와이어로프, 못, 볼트, 너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21300	철 강 선 (鐵 鋼 線)	M / T	선재를 강도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실선 가공한것
7121310	흑 철 선		
7121320	아 연 도 철 선 (亞 鉛 鍍 鐵 線)		
7121330	경 강 선 (硬 鋼 線)		
7121340	P . C 강 선		
7121350	피 아 노 선		
7121360	스 텐 레 스 선		
7130100	주 철 관 (鑄 鐵 管)	M / T	주물용 선철, 고철을 주형에 주입하여 만든 관
7130110	직 관		
7130120	이 형 관		
7130200	회 주 물 (回 鑄 物)	M / T	특정한 규격이 없이 쇠물을 녹여부어 일정한 형태로 서서히 냉각하여 만든 주물로 깨지기 쉽다.
7130300	강 주 물 (鋼 鑄 物)	M / T	선철 및 고철을 제련하여 주형에 주입 하여 만든 제품
7130400	가 단 주 물 (可 鍛 鑄 物)	M / T	일반주물을 60시간이상 가열한후 일정한 주형에 주입하여 급냉시켜 만든 주물 임. 표면이 흰색이다.
7190100	단 조 물 (鍛 造 物)	M / T	단련된 강으로서 압연강재나 주강으로 는 그 형상과 강도에서 부적당하기 때 문에 프레스나 햄머로 인장강도를 높인 강제품
7190110	보 통 강 단 조 물		
7190120	특 수 강 단 조 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철선, 소둔선</li> <li>○ 아연도철선, 울타리철선</li> <li>○ 경강선, CHQ선</li> <li>○ P.C 강선</li> <li>○ 피아노선</li> <li>○ 스텐레스선</li> </ul>	선 재	와이어로프, 선스프링 양산살대, 못, 볼트, 너트, 용접봉, 철망, 철조망
	주물용 선철, 고철	상수도, 하수도용 배수관
○ 구상흑연주물 제외	고철, 선철	기계부분품
○ 강주물, 합금강주물	강주물, 합금강주물	기계부분품
○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고철, 선철	농업용기계, 열쇠, 철도외륜
○ 보통강 단조물	강반성품 봉 강	원동기, 철도차량, 차축, 기계부품
○ 고탄소강 단조물, 합금강단조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190200	석 도 강 판 ( 錫 鍍 鋼 板 )	M / T	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철판으로 내식성이 강하다. 일명 양철이라 함
7190300	아 연 도 강 판 ( 亞 鉛 鍍 鋼 板 )	M / T	박판에 아연을 도금하여 녹이 · 쓰는 것 을 방지하게 만든 강판 일명 합석

소분류 372. 비철금속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은과 금은 제련하는 업체만 그 대상이 되며, 광업소에서 생산하는 은광석은( 0300300 )으로 조사, 즉 전기동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은과 금은 ( 7210600, 7210700 )으로 각각 조사한다.

예 : 동광석 1M / T에서 대략 전기동 30%, 금 3g, 은 70g이 생산되고 있다.

2) 「동」제품은 동봉 및 동합금봉, 동관 및 띠, 동관 및 중공봉 등 세가지로 나누어졌으므로 특히 품목의 개념에 유의하여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도금 석도강판</li> <li>○ 열지도금 석도강판</li> <li>○ 크롬도금강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연대강,</li> <li>냉연대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판용기, 통조림용판,</li> <li>각종 관제조 및 병마</li> <li>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연도 강판 - 전기도금</li> <li>○ " - 열지도금</li> <li>○ " - 착색도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 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붕판, 방화벽, 농기구,</li> <li>국자등 제조</li> </ul>

- 3) 알루미늄샷시바는 알루미늄괴를 압출하여 만드는 제품으로서 건축용샷시의 원자재가 되므로 건축용샷시와 혼돈하여 조사하면 안된다. 또 알루미늄샷시바를 재투입하여 절단하고 조립하면 건축용샷시가 되는것이므로 알루미늄샷시바를 생산하여 건축용샷시를 만드는 사업체는 건축용샷시를 생산한 만큼 알루미늄샷시바는 재투입량으로 조사해야 한다.
- 4) 나동선의 경우는 나동선 자체로도 출하되며, 케이블선으로도 출하되므로 재투입량과 출하량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5) 텅스텐 분말은 금속텅스텐 분말 (Tungsten Metal Powder; W-P) 만 조사하고, 탄화텅스텐분말 (Tungsten Carbide Powder; W-C) 및 기타 텅스텐분말은 조사해서는 안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210100	전 기 동 (電氣銅)	M/T	전기로 정련한 적색에 가까운 구리빛의 동괴 전성과 연성이 대단히 풍부하며 전기와 열의 양도체
7210200	알 루 미 늬 괴	M/T	제련된 은백색의 유연괴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
7210300	연 괴 (鉛塊)	M/T	납덩어리로 전기나 열에 약하며 유연하므로 가공처리에 편리하여 타금속과 가공처리가 용이하고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갖고 있어 내부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다.
7210400	아 연 괴 (亞鉛塊)	M/T	청백색의 금속광택을 가진 금속으로 습기중에 강한 염기성 있으며 탄산아연의 피막이 생겨 내부를 보호한다.
7210500	주 석 괴 (朱錫塊)	M/T	일명 낫쇠 원자기호(Sn) 은백색의 금속광택을 내며 전성 연성이 풍부함.
7210600	은 괴 (銀塊)	kg	은백색의 귀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풍부함.
7210700	금 괴 (金塊)	kg	전연성과 내산성이 매우 큰 노란색의 귀금속
7220100	알 루 미 늬 합 금	M/T	알루미늄에 다른 금속을 혼합하여 내식성과 전기 및 열의 양 전도체로 만들거나 더 단단하게 만든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지금 1종~4종 모두 조사</li> <li>○ 동쇼트, 해갑봉(동찌꺼기) 등은 제외</li> </ul>	<p>황동과 휘 동광, 적동 광</p>	전선, 활판, 합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 알루미늄괴 포함</li> </ul>	보오크 사 이트	알루미늄합금계, 알루미늄판, 봉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Pb) 1종~6종을 모두 조사</li> </ul>	방연광, 유 산연광, 백 연광	축전지, 활자제조 및 합금화학공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Zn 1~6종 모두 조사</li> <li>○ 재생 아연괴 포함.</li> </ul>	섬아연광, 규아연광 아연정광	동합금, 아연도금, 건전 지, 안료, 방부제등의 원료
		식기, 도금, 양철원재료, 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도 99.9%</li> </ul>	황동광, 방연광	장식품, 화폐, 도금화학 및 의료용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ul>	"	장식품, 도금, 화폐, 금 박의 치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물용, 압출용, 재생합금 포함</li> </ul>	알루미늄, 구리, 아연, 망간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제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220200	아 연 분 (亞鉛粉)	M/T	아연가루(1종에서~6종까지 모두 조사), 철물산화방지제
7230100	동봉 및 동합금봉 (銅棒 및 銅合金棒)	M/T	전기동의 제 2 차제품인 동의 봉과 동합금봉
7230200	나 동 선 (裸銅線)	M/T	전기동을 압출하여 균일하게 뽑은 구리선
7230300	동 판 및 띠	M/T	전기동의 제 2 차제품인 동의판과 띠
7230400	동 관 및 중공봉 (銅管 및 中空棒)	M/T	전기동의 제 2 차제품인 동의관
7230500	알 루 미 늬 슴 선	M/T	알루미늄으로 균일하게 뽑은 알루미늄선
7230600	알 루 미 늬 슴 판	M/T	알루미늄 만든 은백색의 유연한 판으로 연성과 전성이 풍부하다. 가볍고 열전도와 전기전도도 크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말가루</li> </ul>	아연피	철물산화방지용, 방부제, 도금착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동봉, 동환강, 각강, 육각강, 팔각강, 반원강, 이형강 및 ㄱ, ㄷ, I, T, H형강등 포함.</li> <li>○ 동합금제품 ( 황동, 청동, 포금동 : 케사 황동, 단조황동, 네블황동, 고강도황동 ) 도 포함조사</li> </ul>	전기동, 동 설	건축자재, 기구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선중에 피막을 입히지 않는 순수한 구리선만 조사</li> <li>○ 신선기를 통하여 뽑은 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판 1종, 2종, 동띠를 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관과 속은 비었으나 양끝이 막혀 있는 증공봉을 포함.</li> </ul>	//	보일러용관, 기계공구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루미늄로드 ( Rod )를 가지고, 신선기를 통하여 가늘게 뽑은 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li> </ul>	알루미늄피	전기기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께에 관계없이 알루미늄판 제품 모두 조사</li> <li>○ 특종 1~3종 기타제품을 포함.</li> </ul>	알루미늄피, 알루미늄 고철	건축자재부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7230700	알루미늄샷시 바	M/T	알루미늄괴를 압출기에 통해 압출하여 만든 기다란 막대
7230800	알 루 미 늄 관 및 중 공 봉	M/T	알루미늄샷시의 제 2 차제품인 알루미늄 관
7230909	아 연 판 , 띠	M/T	아연의 제 2 차제품인 아연판과 띠
7231000	연 봉 및 연 선 (鉛棒 및 鉛線)	M/T	납의 2 차제품인 연봉 및 연선, 납의 2 차제품
7290100	텅 스텐 분 말 ( 텅 스텐 粉末 )	M/T	산화텅스텐을 수소로 환원하여 얻은 고순도 분말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형, 이형 모두 조사</li> <li>단, 알루미늄 샷시바를 생산해서 조립된 철제나 알루미늄제의 문틀이나 창틀을 제조할 때는 8130200 건축용 샷시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루미늄괴,</li> <li>알루미늄고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루미늄괴, 알루미늄고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루미늄관과 속이 비어있는데 양끝이 막혀 있는 중공봉을 포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종 모두 조사 ( Zn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아연광,</li> <li>능아연광,</li> <li>규아연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자제조 및 전기전자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Pb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연광,</li> <li>유산연광,</li> <li>백연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땀납, 연선, 전기, 전자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텅스텐 분말만 조사</li> <li>○ 탄화 및 기타 텅스텐분말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망강,</li> <li>중석,</li> <li>회중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텅스텐 금속제품원료 ( Rod, Wire, Sheet 전기용접, 중합금, 전극 ) 텅스텐 카바이드원료</li> </ul>

**중분류 38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 381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은 제품의 유형이나 원재료에 따른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많아 각각의 품목에 따라 조사범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금속제 식탁용품 ( 8110100 )은 수저, 포크, 국자, 주걱, 식탁용나이프만 조사하고 알루미늄제 가정용품 ( 8140100 )이나 스텐레스제 가정용품 ( 8140200 )은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류, 쟁반, 후라이팬, 대야, 요강, 비전기식 커피포트는 각각 알루미늄제인지 스텐레스제인지를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많은 품목에 포괄범위가 확대 조정되고 세분되었기 때문에 조사범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류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주문에 의해 월별로 제품이 달라지는 사업체가 많으므로 기존 조사품목 외에도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면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전수조사업체에 한함)

3) 농업용 수공구에서 쟁기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 「뱃」과 「보습」을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10100	금속제 식탁용품 (金屬製食卓用品)	천개	금속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

한 쌍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 석유스토브(난로)는 석유곤로와 구분되며, 스토브만 조사하고 곤로는 제외한다. 단, 사업체에서 완전 겸용으로 생산된것(반사형과 철사망이 부착된 것)은 석유 스토브로 포함 조사한다.

5) 건축용 샷시중 알루미늄샷시는 알루미늄샷시바를 잘라 조립한 건축부착물(창틀, 문틀)을 말하는 것으로 알루미늄샷시바와 구별 조사하여야 한다.

6) 금속 탱크 및 용기는 특히 단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생산 14,000 ℓ을 14,000 kl로 조사

7) 금속가스탱크 및 용기는 용기 자체무게(중량톤)로 조사하지 말고 용량의 무게 %로 조사하여야 한다.

8) 공정을 환산

공정을 환산 대상품목은 열교환기(8130400), 육상구조물(8130500), 해상구조물(8130600), 금속탱크 및 용기(8130800), 가스저장탱크 및 운반용기(8130700)로서 제품중 공정이 3개월 이상일 때만 환산 조사한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수저, 포크, 국자, 주걱, 식탁용 나이프만 조사 ※ 용기는 알루미늄제 가정용품과 스테인레스제 가정용품에서 조사	스텐인레스판, 석도원판, 알루미늄판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10200	칼 및 칼 날	천개	
8110300	가 위	천개	
8110400	손 톱 깎 기	천개	
8110500	공 장 용 수 공 구 (工場用手工具)	천개	공장용 및 일반산업용 공구
8110600	농 업 용 수 공 구	천개	농사·과수·원예용으로 쓰이는 도구
8110700	톱 및 톱 날	천개	
8110800	가 방 부 착 용 철 물 (가방附着用鐵物)	<b>Kg</b>	가방에 부착하는 모든 철물
8110900	자 물 쇠 및 열 쇠	<b>Kg</b>	자물쇠 및 열쇠 모두 조사
8111009	건 물 용 철 물	백만원	각종 건물에 부착된 철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용칼, 주머니칼, 칼날, 면도날, 면도칼, 안전면도날</li> <li>○ 유리칼은 공장용 수공구에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텅스텐강,</li> <li>스테인레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도, 주방용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용, 사무실, 어린이용 모두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텐레스,</li> <li>강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톱깎기 모두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이어, 천공편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줄칼, 유리칼, 모루, 바이스, 해머, 드릴, 태핑 및 나사공구 기타수공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강, 고철, 박판, 주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수공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삽, 곡괭이, 호미, 기타수공구,</li> <li>× 야전삽, 모종(꽃)삽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강, 고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용, 금속용, 석재용, 시계 및 보석가공용, 기타톱, 톱날, 체인톱</li> <li>※ 손으로 사용하는 것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강, 고탄소강, 텅스텐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자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핸드백, 여행용가방, 기타가방등에 사용되는 철물</li> <li>※ 가방테두리 심용철사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철, 황동</li> <li>스텐레스,</li> <li>알루미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가방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건물문용, 책상, 열쇠 모두 포함.</li> <li>※ 가방부착자물쇠는 8110800에 포함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놋쇠, 특수강, 주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에 부수적으로 부착된 철물</li> <li>※ 비상계단, 보호대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판, 스텐레스강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에 부착되는 철물</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20100	철 제 캐 비 넬	개	가정용 및 사무실용
8120200	철 재 책 상	개	설합이 달리고 틀이 철제인 책상
8120300	철 제 의 자	개	틀이 철재 및 비철금속으로 된 의자
8130100	철 제 문 (鐵 製 門)	개	철물로 된 문
8130200	샷 시 문 및 창 틀	M/T	알루미늄 샷시문이나 창틀문
8130300	산 업 용 보 일 러	T/H	목욕탕이나 산업에 쓰이는 보일러
8130400	열 교 환 기 (熱 交 換 器)	백만원	관의 기벽을 통하여 냉온 두유체 사이의 열을 주고 받는 장치로 가열기, 냉각기, 응축기, 증발기등으로 분류된다. 보통은 폐열회수 목적의 장치가 많다.
8130500	육 상 금 속 구 조 물 (陸上金屬構造物)	M/T	주로 형강을 이용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루어진 구조물
8130600	해 상 금 속 구 조 물 (海上金屬構造物)	M/T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화일 캐비넷 포함	박판	
○ 철제책상 모두 조사 ----- × 타자기용 탁상은 제외	박판, 강판	
○ 틀이 금속으로 된 것을 조사 (이발소용 포함) ----- × 의료용 특수의자는 제외	박판, 주물, 합판, 각재	
○ 아파트철문, 철대문, 소방문, 셔터문 포함. ----- × 수문제외	철판, 열연 박판	
○ 사무실 및 주택용 등	알루미늄	문
○ 대형온수 보일러, 증기발생 보일러	박판, 강판, 주물	산업용
○ 투관식, 이중관식, 코일식, 편식, 플레 이트식, 공냉식, 굽어내기식의 모든 열교환기 조사 ----- × 공기조화기의 부속품인 전열교환기 제외	강판, 박판, 중후판	폐열회수, 증발, 냉각, 응축등 주로 화학산업 에서 이용
○ 육상건물구조재, 교량용, 철탑용, 망루 용의 구조재등 포함.	형강, 강판	건축, 일반산업용
○ 해상의 가스 및 오일분리시설, Jacket Module, Pipeline 등 ----- ※ 시추선은 384에서 조사	형강, 강판	건축, 일반산업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30700	가스저장탱크 및 운 반 용 기	M/T	압축 및 액화개스를 저장 및 운반 을 위해 제작된 병상의 밀폐된 용기 와 탱크
8130800	금속탱크및용기 (金屬탱크및容器)	K/	금속으로 제작된 구형 기둥형의 운반 및 저장용기
8130900	콘 테 이 너 용 기	대	화물수송용 운반용기
8131109	구 조 용 품 금 속 판 제 품	M/T	사람이나 기계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판 및 철봉제품
8140100	알 루 미 늬 음 제 품 가 정 용 품	M/T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정용기
8140200	스 텐 레 스 제 품 가 정 용 품	M/T	스텐레스로 만든 가정용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가스(헬륨, 산소,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LPG, LNG 등 저장 또는 운송용 용기 및 탱크류 조사</li> <li>× 적은 용량의 부탄가스통, 라이타가스통, 파리모기약통 제외</li> </ul>	박판, 중후판, 용접봉	액화가스 저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 유류, 사료저장, 우유 및 유가공제품의 저장 및 운반용탱크와 플랜트산업(유기화학공장등)설비의 일부, 탱크류등 조사</li> <li>× 생맥주, 관공서재털이통 제외</li> </ul>	박판, 중후판, 용접봉	저장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콘테이너도 포함</li> <li>※ 20 ft 를 1 대로 환산 조사</li> </ul>	중후판, 박판	화물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판 및 철봉형 (<del>지하철용, 배수구용, 시설, 기계차단용</del>)</li> </ul>	철판, 철봉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 비전기식 커피포트등 알루미늄제 가정용기</li> </ul>	알루미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류, 비전기식 커피포트, 스텐레스후라이팬, 대야, 요강등 스텐레스제 가정용기</li> </ul>	스텐레스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40300	병 마 개	천개	금속제 병마개
81901000	금 속 캔 (식 관 및 잡 관)	천개	
8190110	통 조 립 용 관	천개	
8190120	기 타 잡 관	천개	
8190200	드 럽 관	개	
8190300	스텐 레스제 싱크	대	식기류등 주방용품을 세척하도록 제작 된 주방용기
8190400	가 정 용 보 일 러	대	난방용의 온수를 얻기 위한 보일러
8190500	방 열 기 (放 熱 器)	매	서로 결합하여 증기를 흘리도록 제작 된 난방용 주물제품
8190600	석 유 난 로	대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로 종류는 ① 대형철제 스토브 ② 유리관이 달린 것 ③ 발열망과 반사판이 달린 것 ④ 발열망만이 달린것 등이 있음.
8190700	난 방 용 버 너 및 터 히	대	연료(액체, 고체, 방카C유, 석유등)를 연소시켜서 열을 내는 기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각종 금속병마개 포함.	석도철판, 주석판	
○ 농산, 축산, 수산, 분유, 설탕, 벡타등 ○ 음식료품 및 통조림을 제외한 기타 금속판	석도강판, 주석강판 알루미늄판	음료 및 식료품통
○ 200 ℓ 용기만 조사	박판	유류저장
○ 스텐레스제품만 조사	스텐레스	주방세척용
○ 유류 및 연탄사용 보일러를 포함. ○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기타보일러	박판, 강판	가정용, 난방용
○ 건물용 방열기만 조사 × 건물용이면서도 핀형으로 된것과 차 량용은 제외	강철, 고철	
○ 난로와 콘로겸용 포함. ○ 석유콘로는 8261000 에서 조사	박판, 철선	난방
	철판, 황동 판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90800	나 사 제 품 (螺 絲 製 品)	M/T	물체와 물체를 결합하기 위해 봉에 나선을 낸 슛나사(볼트)와 결합되어 조이도록 된 암나사(너트)
8190900	철 망	M/T	각종 굵기의 철선으로 엮은 망
8190910	망	M/T	
8190920	철 조 망	M/T	
8191000	선 스프링	M/T	강선으로 만든 스프링
8191100	와 이 어 로 프	M/T	경강선을 여러개 꼬아 가닥을 만들고 다시 심앙을 중심으로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쇠줄
8191200	쇠 못	M/T	선재를 제정기에 걸어서 만든 못
8191300	밸 브	개	배관상에 부착되어 유체의 흐름을 통 제하는 장치
8191310	일 반 용 밸 브	개	
8191320	특 수 용 밸 브	개	
8191400	금 속 관 이 음 쇠 (金屬管 이음쇠)	M/T	유체를 흘러보내는 파이프의 연결부분 이음쇠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트 및 너트, 나사못, 리베트, 와셔 및 파스너, 기타 나사제품 모두 조사</li> </ul>	봉강, 주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티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각종철망 모두 조사</li> <li>○ 가시철조망, 링크철조망등 주로 울타리나 건물경계용 쓰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스프링 (차량용은 384 품목)</li> </ul>	강선	볼펜, 침대, 의자용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용 와이어로프 포함. 심을 넣지 않고 강선을 단순히 꼬은 것은 제외</li> </ul>	경강선, 선재	선박, 크레인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물못은 제외</li> </ul>	청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연기관 (엔진, 원동기) 밸브는 제외</li> <li>○ 수도꼭지는 포함 조사</li> <li>○ 청동, 주철, 주강, 기타 밸브를 모두 포함,</li> <li>○ 고온고압용 밸브, 자동조절 밸브</li> </ul>	청동, 주철, 주강, 봉강, 형강, 알루미늄, 스텐레스강	상수도 및 가스, 석유, 조선, 화학, 전력산업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보 ( 45°, 90°형등 ) T, 유니온, 니뿔, 크로스, 소켓등 포함.</li> </ul>	중후관, 강관, 스텐레스	배관, 이음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191500	체 인	M/T	핀, 로울러, 핀링크플레이트와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체인을 구성, 스프로킷 휠과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제품
8191600	용 접 봉 ( 鎔 接 棒 )	M/T	각종 철선에 피복을 입혀 용접효과를 좋게 철선

**382 . 기계 제조업 (전기제외)**

1. 기계제조업은 여타산업에서 사용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이다.

이를 세분하여 분류하면,

- 1) 3821. 기관 및 터빈제조업
- 2) 3822. 농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 3) 3823.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
- 4) 3824.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 제외
- 5) 38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 6) 3826. 서어비스 산업용기계제조업
- 7) 38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제외로 나뉘어진다.

2. 이들 세분된 업종을 간략히 설명하면

- 1) 기관 및 터빈제조업은 각종기계의 동력원인 기관 및 터빈을 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연계체인, 로울러체인, 사이런트체인, 메트레스체인, 싱크스토퍼체인 등 모두 조사	봉강, 특수강, 중후판	동력전달
○ 피복용접봉, 자동용접봉 (CO <sub>2</sub> 용접봉) 포함.	철선, 피복재	전기용접

조하는 제조업이다. 내연기관은 기계제조업에서는 육상용 내연기관중 운수장비용을 제외한 것을 조사한다.

2) 농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경작, 파종, 수확, 방제, 수확, 농산물의 건조등의 농업용기계 및 장비를 생산하는 업종이다.

3) 금속 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은 다시 세분하면 금속절삭기계, 금속성형기계, 금속처리용기계, 수지식 동력구동공구 제조, 목공기계, 호환용절삭구, 금형 및 관련제품제조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속 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으로 나뉘어진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금속 절삭기계는 공작기계라고도 하는데, 크게 범용기계 (선반, 밀링기, 드릴링기, 연삭기등 일반적인 절삭작업이 가능한 기계)와 범용의 기계이 나 수치제어장치가 부착된 NC 또는 CNC 공작기계 (NC선반, 머시닝 센터등), 요구되는 특정제품의 전공정을 동시에 처리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생산, 대량생산작업에 유효한 전용공작기계와 이와 유사하나 하나의 공정만을 처리 가능한 단용공작기계가 있다.

금속판이나 선제품성형, 나사전조등의 작업을 하는 금속성형기계, 금속의 세척이나 도금등의 금속처리용기계, 손에 들고 이동하며 작업이 가

능한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제조업, 목공공작용의 목공기계, 앞의 공작기계들이 절삭이나 성형을 위한 호환용 절삭구, 그리고 금형관련제품과 기타 앞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세분되어진다.

- 4) 금속공작기계 및 목공기계를 제외한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는 건설 및 광산용의 기계장비, 섬유용기계, 식료품 가공기계,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용기계, 종이산업용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유리 및 요업용기계 그리고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세분된다.

※ 직기부품 및 부속품

- 타페트 : 평직시에 쓰이는 직기의 부속품
- 도 비 : 직물에 무늬를 넣을 때 사용하는 직기의 부속품 (작은 무늬용)
- 자카드 : 큰 무늬를 넣을 때 사용되는 직기의 부속품  
위의 세가지는 직물을 짜는 내용에 따라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며, 동시에 종광의 개구를 하는 역할을 한다.
- 종광 : 직물을 짜기 위하여 직기의 타페트나 도비, 자카드와 연결되어 날실을 2군으로 나누어 주는 가는선으로 된 직기부품
- 바디 : 북이 날줄 사이로 씨줄을 물고 지나간후 이를 두들겨 촘 촘히 하는 직기부품
- 샷틀 : 씨줄을 물고 날줄사이로 움직이는 직기부품 (일명 북)

- 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는 자동자료처리장비, 계산기, 등사 및 복사기, 저울, 타자기,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로 분류된다.

자동자료처리장비는 컴퓨터와 주변장치로 분류되는데 관련기기로는 CPU (중앙자료처리장치), CRT TERMINAL (단말기), DISK DRIVER(보

조기억장치), PRINTER (출력장치), BANKING TERMINAL (은행용 단말기), CRT MONITER (화상기), MULTIPLEXER, MODEM (전송장치), POWER SUPPLY (컴퓨터용 전압전류 조정기), KEYBOARD (자판)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CPU, DISK-DRIVER, PRINTER, CRT MONITER, MODEM, KEYBOARD 의 물량은 세분하여 단위 '대'와 '백만원'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주변기기는 금액조사의 경우에만 KEY BOARD에 합산조사한다(단, POWER SUPPLY는 분리조사)

- 6) 서어비스 산업용기계는 자동판매기, 상업용세탁기, 산업용 냉동장비, 공기조절장치, 상업용 조리 및 식품가공기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어비스 산업용 기계로 분류된다.
  - 7)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송풍기 및 환풍기제조업, 물품취급장비,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재봉기, 산업용 로봇,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장비로 분류된다.
3. 기계제조업의 제품에 대한 조사는 수량단위 (IP, 대, %,  $m^2 / H$  등)와 금액단위 (백만원 : 생산액, 시판액, 수출액)의 조사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한다.
  4. 장기공정 생산품 (생산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위에 대해서 진척을 환산조사를 실시한다. (단, 수량단위가 '대'인 경우는 금액 (백만원) 단위에 대해서만 진척률 조사를 실시할 것)
  5. 조사되는 제품중 플랜트 (설비 또는 공장설비)인 경우는 적요란에 플랜트의 내용과 공기, 총수주액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6. 크레인은 건설용크레인과 물품취급용크레인으로 분리되었으니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10100	내 연 기 관 (內 燃 機 關)	IP	연료를 기통내에서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고압의 폭발력을 직접 피스톤에 주어 회전력을 일으키는 원동기
8220100	탈 곡 기 (脫 穀 機)	대	동력원을 갖추거나 동력전달장치가 부착되어 알곡을 털어내는 기계
8220200	경 운 기 (耕 耘 機)	IP	
8220300	농 업 용 트 랙 터 (農 業 用 트 랙 터)	IP	내연기관의 힘을 이용 경작, 경지정리등의 농사일을 하는 기계
8220400	이 양 기 (移 秧 機)	IP	벼의 모종을 옮겨심는 기계
8220500	콤 바 인	IP	벼, 보리등의 수확용기계로 베고 탈곡까지 가능한 기계
8220600	농 업 용 동 력 분 무 기 (農 業 用 動 力 噴 霧 機)	대	동력원을 갖추거나 동력전달장치가 부착되어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 분무하는 농업용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석유, 알코올, 가스등을 연료로 하는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내연기관을 조사</p> <p>※ 자동차용 내연기관은 8431200 에서, 선박용 내연기관은 8410100 에서 조사</p> <p>× 모터싸이클용 및 철도차량용 기관 제외</p>	<p>주물, 피스톤</p>	<p>농업용기계, 일반산업용 기계의 동력생산</p>
<p>× 인력식 탈곡기 및 콤바인 제외</p> <p>※ 콤바인은 8220500 으로 조사</p>	<p>박판, 봉강, 형강</p>	
	<p>내연기관, 기어, 주물, 박판등</p>	
<p>× 임업, 건설용 트랙터 제외</p>	<p>내연기관, 기어, 주물 등</p>	
<p>※ 바인다는 8221009 에서 조사</p>		
<p>× 인력분무기, 방제차 부착 분무기 제외</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20700	농 산 물 건 조 기 (農産物乾燥機)	대	잎담배, 알곡, 고추등을 밀폐된 공간을 이용 간접열을 가하여 말리는 기계
8220800	착 유 기 (搾乳機)	대	젖소나 양등의 젖을 짜는 기계
8220900	사 료 절 단 기 (飼料切斷機)	대	볏집이나 옥수수대등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기계
8221009	바 인 다	대	벼나 보리등을 베고 묶는 수확용 농기계
8230100	수 치 제 어 선 반	대	수치제어장치가 부착되어 공작물을 자동, 대량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반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한 공장에서 공장자동화와 겸하여 제작된 금속절삭기계
8230200	범 용 선 반 (汎用旋盤)	대	회전축에 공작물을 고정시켜서 이동하는 절삭공구(Bite류)에 의해 선삭을 주로 한 금속절삭기계. 주축대, 삼입대, 왕복대 배드, 보냄장치등으로 구성된다.
8230300	밀 링 기	대	회전축에 절삭공구(커트, 엔드밀)를 고정시키고 베드위에 공작물을 고정시켜 베드의 상하좌우 이동으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
8230310	(범용)밀링기	대	
8230320	수 치 제 어 밀링기	대	NC 또는 CNC장치가 부착된 밀링기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농산물용의 건조기만을 조사		
※ 식물용 착유기는 8243109 에서 조사		
○ 모터부착형, 동력전달장치 부착형 포함(취상형, 절삭형 포함)		
	내연기관, 박판, 강판	
○ CNC, NC선반을 조사	기계용 주 물, 박판, 모타, NC 컨트롤러	금속절삭기계
○ 보통선반, 자동선반, 터릿선반등을 포함	주물, 모타 기어	"
	"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30400	톱 기 계 (Sawing M/C)	대	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톱날로 공작물을 절단하는 기계
8230500	연 삭 기	대	바이드나 밀링커트로 가공할 수 없는 단단한 공작물이나, 기계부품의 정밀한 다듬질을 위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슷돌을 이용, 공작물의 표면을 연삭(절삭)하는 공작기계
8230600	드 릴 링 기	대	회전축에 드릴을 고정시키고 이를 상하 이동시켜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기계
8230700	전 용 공 작 기 계 (專用工作機械)	대	특별한 목적(특정제품만을 생산)을 위해 전문적으로 절삭가공하도록 제작된 공작기계
8230800	척 (Chuck)	개	회전축과 결합되어 공작물이나 날물(바이트, 커트등)을 고정시키는 공작기계의 부속품
8230900	방 전 가 공 기 (放電加工機)	대	방전(Spark)현상을 임의로 조절하여 금속을 절삭하는 기계(주로 금형같은 정밀제품가공에 많이 이용)
8231000	머 시 닝 센 타	대	수치제어장치와 자동공구교환장치가 부착되어 입력된 자료에 따라 밀링,보링등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락톱, 회전톱, 핵소포함 조사</li> <li>※ 목공용 기계톱은 8231700에서 조사</li> <li>× 석재용톱은 제외.</li> </ul>		금속절삭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치제어 ( NC ) 연삭기, 공구연삭기 포함.</li> <li>× 탁상형 및 휴대용 ( 수지식 ) 연삭기는 8231600 으로 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탭핑기 포함</li> <li>× 휴대용 전기드릴 ( 수지식 ), 수동드릴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용기 ( 공작물의 전공정이 아닌 하나의 공정을 처리토록 된 기계 ) 는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척 ( 선반, 드릴링기, 밀링기용등 ) 포함 조사</li> </ul>		"
		"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의 다양한 작업을 복합적으로 자동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복합공작기계
8231100	프 레 스 기	M/T (능력)	본(금형)을 이용, 철판에 쳐내기, 굽히기, 길이짜기, 압축등의 가공을 하는 금속성형기계
8231200	신 선 기	대	굵은선을 다이스를 통해서 드럼에 감고 인발작업을 통해 연속적인 작업으로 직경을 줄이는 기계
8231300	압 연 기 (壓延機)	대	회전하는 로울(압연기롤)사이에 금속재료를 통과시키며 누르는 힘에 의해 두께를 줄이는 기계
8231400	압 연 기 롤	M/T	대체로 중량이 무겁고 표면을 특수처리하여 경도를 높게한 원주상의 압연기의 주 부품
8231500	초 음 파 세 척 기 (超音波洗滌機)	Watt	각종제품의 오물세척을 위해 초음파의 음압(音壓)과 공동현상(空洞現象)을 일으켜 폭발효과와 열적작용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기계
8231600	수 지 식 연 삭 기 (手持式연삭기)	대	주물제품의 거친면의 처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손에 들고서 작업하는 연삭기
8231700	목 공 기 계	대	목재의 가공 즉, 절단, 표면처리, 형상 제작등의 작업을 하는 목공용의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압식, 기계식 포함</li> <li>× 인력식 제외</li> </ul>		금속절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식 및 습식 신선기 포함</li> <li>× 압출기 제외</li> </ul>	철판, 주물, 중후판, 봉강, 형강, 강관	철선, 동선, 알루미늄선의 가공
	기계용주물, 감속기	금속압연
<p>※ 제품의 연속된 이동시에 사용되는 콘베어롤과 기타 기계장치의 제품 안내용롤은 8291900 에서 조사</p>	주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세척기 포함</li> </ul> <p>Watt : 초음파발생기 능력</p>	스테인레스 강판, 두랄루민	세 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상형 연삭기 포함</li> </ul>	전동기, 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공밀링기, 대패 및 장부기, 기계톱 등 각종 목공기계를 포함</li> </ul>		목재가공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31800	공 작 용 절 삭 구 (工作用切削具)	천개	칩을 발생시키며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바이트나 커트등의 날물
8231810	금속공작용절삭구	천개	
8231820	기타재료용절삭구	천개	
8231900	금 형	대	금속이나 기타재료의 성형을 위한 금속 제의 본
8231910	프 레 스 형 금 형	대	
8231920	프라스틱시출용금형	대	
8231930	기 타 금 형	대	
8232 009	전 단 기	대	절판의 절단을 위해 절단날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절단하는 기계
8240100	파 쇄 기 ( 破 碎 機 )	대	화강암이나 석회석등을 도로포장용의 쇄 석이나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잘게 부 수거나 마쇄하는 기계
8240200	교 반 혼 합 기 (아스팔트플랜트)	T/H	도로포장용의 아스콘을 만들기 위해 아 스팔트와 쇄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는 아스콘제조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재료용 (드릴, 바이트, 밀링커트, 엔드밀, 연삭용휠등)을 조사</li> <li>○ 목재, 석재용등의 공구</li> </ul>		
<p>금속프레스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고경도, 고강도의 금형</p> <p>프라스틱 칩을 열을 가함과 동시에 찍어내는 금형</p> <p>다이캐스팅형, FRP용, 주단조용, 기타금형 포함</p> <p>× 금형부품 (MOLD BASE 금형등)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압식, 기계식 포함</li> </ul>	<p>금형용 특수강</p>	<p>각종재료성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쇄기 ( crusher ), 마쇄기 포함 조사</li> </ul>	<p>중후판, 형강</p>	
<p>※ T/H : 시간당 처리능력</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0300	건설(건축)용크레인	M/T (중량)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건설이나 건축등의 작업에 주로 이용되는 크레인과 고층건물 건축용의 탑형크레인
8240400	그 레 이 더	대	도로포장시 도로의 평탄작업을 하는 땅정지용의 건설장비
8240500	로 더	대	삽(Shovel) 또는 들것을 이용 흙이나 목재등을 들어올려 차량등에 적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용 장비
8240600	굴 삭 기	대	삽을 이용 땅을 긁거나 파고 흙을 파서 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건설중장비
8240700	벧 치 플 랜 트	M <sup>3</sup> /H	도로포장작업을 위해 자갈, 모래, 시멘트 물을 일정비율로 섞어 레미콘을 만드는 기계
8240800	볼 도 저	대	건설중장비 25 Ton을 기준으로 환산
8240900	면 사 기 ( 撚 絲 機 )	대	실을 꼬는 기계
8241000	방 적 기 ( 紡 績 機 )	대	솜, 모사, 화학섬유등의 단섬유의 올을 잡아내어 실을 만드는 기계. 방적의 공정은 개포, 해면, 타면, 빗질, 연조등의 전방공정과 실을 만드는 정방으로 나뉘어진다.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자주식크레인, 탑형크레인	형강, 증후판, 궤도	
※ 지게차와 혼동이 없을 것		
※ 일명 엑스카베이트		
○ 고정식과 이동식 포함 ○ M <sup>3</sup> /H : 시간당 처리능력		
× 합사기는 제외		
× 전방공정의 방적준비기계 제외 ○ 정방기, 면방적기, 모방적기, 기타방적기를 포함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1100	직 기 ( 織 機 )	대	날가닥의 실을 2군으로 나누고 개구하여 그 사이에 씨가닥을 넣어서 직물을 짜는 기계
8241200	편 직 기 ( 編 織 機 )	대	실을 얽히게 하기 위해 실자체를 꼬부러 뜨게눈을 만들고 이 뜨게눈을 다음 줄의 뜨게눈과 서로 대조되게 하여 메리야스등의 편직을 하는 기계
8241300	도비 및 재퀴드	개	직기의 날줄을 2군으로 개구하는 부분으로 개구를 달리함으로서 직물의 무늬를 넣는 부분
8241400	샷 틀	개	씨가닥을 물고서 날줄사이를 움직이는 직기의 부품
8241500	바 디 ( Reed )	개	날줄사이로 씨줄이 지나간뒤 이를 두들겨서 공간을 촘촘하게 하는 직기의 부품
8241600	염 색 기 ( 染 色 機 )	대	직물을 염색하는 기계
8241700	정 미 기 ( 精 米 機 )	대	벼의 껍질을 벗기고(현미상태) 적당히 표면을 깎아내어(정미) 쌀을 만드는 기계
8241800	제 빵 용 기 계 ( 製 빵 용 機 械 )	대	제과점등에서 각종 모양의 빵을 형성하고 만드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면직기, 견직기, 모직기, 기타직기를 모두 조사		
○ 각종 편직기를 모두 포함 조사		
○ 도비(작은 무늬용)와 재워드(큰 무늬용)만 조사		
○ 사염기, 지그, 윈스, 패드, 비임염색기, 드럼염색기 포함		
○ 현미기와 정미기 포함조사	박판, 주물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1900	포장 및 충전기	대	용기(병, 통, 갑, 상자, 봉지, 자루등)에 내용물을 채워 넣고 검사하여 충전포장 또는 상포하는 기계
8242000	화학용 압출기 (化學用壓出機)	대	인조수지(합성수지)를 압출하여 봉이나 관, 필름등을 뽑아내는 기계
8242100	고무 가공 기계	대	경질의 고무를 부수고 화학처리하여 연질의 고무로 만들고, 이 고무로 요구되는 제품을 성형하는 기계
8242200	(화학용)사출성형기 (化學用射出成形機)	대	인조수지(합성수지)를 금형에 넣어 필요한 모양의 제품을 성형하여 뽑아내는 기계
8242300	펄프 제조 및 초지용 기계	대	폐지나 펄프를 원료로 종이를 제조하는 기계 제조공정 : 원료→정선→저장→휘석(약품 투입)→탈수→압착→건조→카렌딩→감기→재단→권취
8242400	인쇄기 (印刷機)	대	문자나 그림, 사진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충진기, 상포기 포함</li> <li>× 단순히 포장된 상자를 묶는 결속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용 압출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무가공용 믹서(혼합기), Mixing Mill, Press, Extruder (압출기), 칼렌다기 포함조사</li> </ul>	강판, 주조품, 환봉, 베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제조플랜트의 경우 각 공정의 기계를 분리하여 조사</li> <li>○ 펄프제조기, 초지기, 기타종이 제조용기계를 포함 조사</li> <li>○ 금액단위의 경우는 합산, 대수는 각 공정의 기계를 각각의 대수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의 인쇄기(평압식, 원통압식, 윤전식 인쇄기등)를 포함조사</li> <li>× 인쇄보조기계는 제외</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2509	동 력 쇼 벨	대	지반을 굴착하고 동시에 운반차에 싣기 위한 기계
8242609	무 한 궤 도	M/T	산업중장비(블도저, 크레인등)의 이동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부의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이와 맞물리도록 연결된 편
8242709	스 핀 들	개	보빈을 결합시켜 실을 감는 방적기나 직기등의 부품(방적기계에서 실을 감는 보빈부분의 강철로 만든 축)
8242809	종 광 (Reed Wire, Herld Wire)	Kg	날줄을 종광의 가운데 부분의 구멍으로 한가닥씩 끼워서 도비(타페트, 재쿼드)와 연결되어 개구를 하여 주는 부품
8242909	나 염 기 (Printing M/C)	대	실 도는 직물에 나염을 하는 기계
8243009	양조 및 증류용기계	대	주정공장의 알코올 증류기 및 발효용 기계
8243109	식 물 용 착 유 기	대	유압이나 스크류의 전진에 의한 압축력으로 참깨, 유채, 들깨등의 기름을 짜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굴삭기와 혼동이 없도록 할 것		광산용
○ 구성품 즉 링크, 핀, 슈가 합쳐져서 된 트랙을 조사 (강철제의 좁은 판을 여러개 연결하여 앞뒤 바퀴에 사슬모양으로 걸고 이것을 동력으로 회전시켜 주행하게 하는 장치 : 일명 Caterpillar )		
		방적기부품
	강 선	직기부품
○ 롤러나염기, 스크린나염기 포함		
○ 증류기와 발효용기계를 각각으로 합산조사		
○ 압착식 (유압식) 과 스크류 (Screw) 식 포함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43209	콘크리트제품성형기	대	콘크리트 전주, 파일, 홈관등 콘크리트제품을 성형하는 기계
8243309	연 탄 제 조 기	대	구공탄 제조용 기계
82501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백만원 (병행 :대)	대량의 자료를 기억 신속정확하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전자자료 처리장치
8250110	C P U	백만원 (병행 :대)	자료의 연산, 판단, 분류, 비교, 추출하는 중앙자료 처리장치
8250120	디스크드라이브 (Disk driver)	백만원 (병행 :대)	Hard disk나 플로피 디스크의 자료를 구동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보조기 역장치)
8250130	프 린 트 (Printer)	백만원 (병행 :대)	처리된 자료를 외부로 찍어내는 장치
8250140	C R T Monitor	백만원 (병행 :대)	자료의 처리상황을 화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
8250150	전 송 장 치	백만원 (병행 :대)	단말기와 주자료처리장치와 자료를 연결시켜 주는 자료전송장치
8250160	키보드 (Key Board) 및 기타	백만원 (병행 :대)	
8250200	컴퓨터용전류 전압공급기 (Power supply)	대	컴퓨터내에 필요한 다양한 전압이나 전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장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타일, 벽돌생산용 기계포함		
○ 연탄을 찍는 기계만 조사	주 물	
	PCB, 저항 코일등	
○ HDD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FDD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포함		
○ Key Board와 위의 장치를 제외한 것을 조사. 대수는 Key Board만 조사		
○ 컴퓨터외의 여타 사무기계용으로 동 시 사용되는 제품 포함	PCB, 저항, 코일등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50300	전 자 계 산 기	대	
8250310	휴대용전자계산기	대	
8250320	탁상용전자계산기	대	
8250400	산 업 용 저 울	대	차량의 계근이나 연속된 포장라인내에서 내용물의 계근등을 위한 산업용의 저울
8250500	상업용 및 가정용 저 울	개	지레의 방법등을 이용 지침이나 수침등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상업용이나 가정용의 저울
8250600	타 자 기	대	
8250700	플로피 디스크 (Floppy Disk)	개	자료의 저장, 보관 그리고 필요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억시키는 매체
8260100	자 동 판 매 기 ( Vending M / C )	대	음식품, 잡화품, 서어비스용품을 판매원 없이 판매하는 기계
8260200	산업용 및 상업용 냉 장 고	대	음식료품을 저온으로 보관,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진열대를 겸하여 만든 냉장고
8260300	산 업 용 냉 동 기	대	중앙냉방형의 대형건물이나 어물이나 축산물의 냉동보관용의 대형냉동기계
8260400	룸 에 어 콘	대	창문이나 벽걸이형의 에어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카드형 계산기 포함		
○ 각종의 상업용 및 가정용저울 조사		
○ 각종의 타자기 포함		
○ 등전교환기, 우표, 차표판매기, 담배판매기 포함		
○ 정육점의 냉동고 포함		
		대형건물 냉방용, 냉동창고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60500	차 량 용 에 어 콘	대	차량내의 냉방을 위한 차체부착형의 에어컨
8260600	패 키 지 형 에 어 콘	R/T	큰 면적의 냉방을 위하여 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되는 대형의 에어컨
8260700	냉 각 탑 ( 冷 却 塔 )	T/H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용수의 냉각이나, 냉동기, 에어컨에서 냉매의 응축을 위해 설치된 탑
8260800	공 기 조 화 기 ( Air Handling Unit ) ( 空 氣 調 和 機 )	대	사무실의 냉난방을 위해 보일러나 냉동기에서 제공된 냉·온열을 정화된 외기와 혼합하여 송풍기에 의하여 강제로 공급하는 장치
8260900	가 스 레 인 지	대	
8261000	석 유 곤 로	대	
8261100	상 하 수 정 화 장 비 ( 上 下 水 淨 化 裝 備 )	대	상하수의 침전, 화학처리를 거쳐 정화하여 식수용이나 공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정수된 물을 강으로 흘리기 위한 정화장치
8290100	산 업 용 펌 프	HP	동력을 이용 액체를 공급, 배출 및 순환시키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용, 버스용, 트럭용 포함</li> </ul>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차량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향류형, 직교류형의 냉각탑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1 R / T = 0.78 T / H</math></li> <li>1 <math>T / H = 1.28 R / T</math></li> <li>※ R/T: 냉동톤 T/H: 유량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 코일 유닛 ( Fan-Coil Unit )</li> </ul> <p style="padding-left: 20px;">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취사용, 식당용 ( 대형 ) 포함</li> </ul>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물제품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로 겸용의 경우는 석유스토브로</li> </ul> <p style="padding-left: 20px;">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용이나 하수도용의 폐수처리</li> </ul> <p style="padding-left: 20px;">장치 포함</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물을 이온화등으로 정화하는 정</li> </ul> <p style="padding-left: 20px;">수기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기 포함</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90200	가 정 용 펌 프	대	가정용의 소형 자동펌프
8290300	공 기 압 축 기 ( 空 氣 壓 縮 機 )	대	공기의 압축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기 또는 그밖의 기체를 압축하는 기계
8290310	산업용공기압축기	대	
8290320	냉매용공기압축기	대	
8290400	송 풍 기 ( 送 風 機 )	대	
8290500	집 진 장 치 ( 集 塵 裝 置 )	대	수용성가스, 유해성가스, 분체등을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기 위해 전기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모으는 장치
8290600	호 이 스톱	M/T	주로 크레인에서 물건을 달아올리거나 감아당기기 위하여 도르레의 배율을 이용한 장치
8290700	물품취급용크레인	M/T (중량)	물품의 하역이나 적재를 위하여 물품을 들어올려서 이동시키는 기계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온수보일러용의 온수순환펌프 포함		
○ 공장, 광산이나 건설용등의 산업용 압축기		
○ 냉동기나 냉장고용의 냉매압축기		
○ 블로우형 (송출압력 0.1 ~ 1.0 kg/cm <sup>2</sup> ) 과 팬형 (송출압력 0.1 kg/cm <sup>2</sup> 미만) 을 포함		
※ 환풍기는 8331009에서 조사		
○ 전기집진기, 백 필터 (Bag filter ) 집진기, 싸이클론집진기 포함		
○ 전동식 호이스트만 조사		
○ 부두용, 천정형, 부상형등의 물품취급 용만을 조사		
※ 건설장비로서의 크레인은 건설용 크 레인으로 조사		
× 곤도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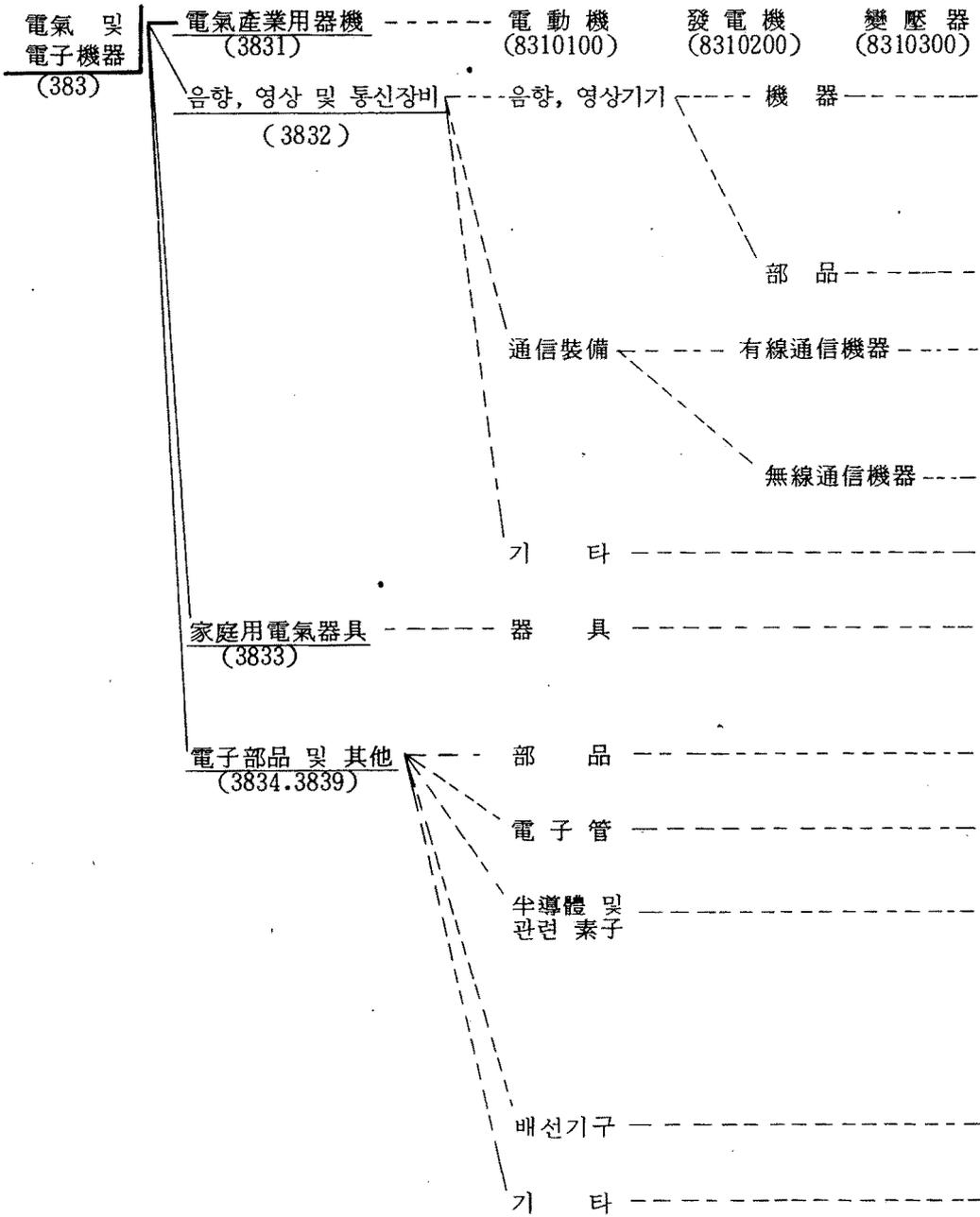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90800	에 스 컬 레 이 타	대	계단식의 이동장치를 통해 사람을 상하층으로 이동시키는 운반기계
8290900	엘 리 베 이 타	대	고층빌딩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기계
8291000	콘 베 이 어	대	연속적인 재료의 공급이나 배출, 분업화된 작업선(line)에서 화물을 수평이동이나 경사이동 시키는 화물연속이송장치
8291100	지 게 차	대	지게모양의 두개의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팔로 화물의 하역, 적재를 위해 제작된 물품취급장치
8291200	공 업 용 재 봉 기	대	얇은 직물에서 가죽에 이르기까지 재봉을 위해 전문화되어 제작된 재봉용기계
8291300	기 어	M/T	원통형이나 원뿔등의 면에 이를 만들어 이것이 다른것과 서로 맞물려서 한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과 회전을 전달하는 기계요소
8291400	감 속 기 (減 速 機)	대	기어의 회전비를 이용, 기어를 여러단으로 연결하여 전동기에서 나오는 회전을 기계에 적절한 회전속도로 바꾸어 주는 장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트콘베이어, 로라콘베이어, AQ콘베이어, 경사콘베이어등 각종 콘베이어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ttery 이용 전동지게차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침직선, 본봉재봉틀, 오바로크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기어, 헬리칼기어, 베벨기어, 워엄기어, 레크와 피니언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형 감속기, 유성감속기, 워엄감속기, 기어드모타 포함</li> </ul>	주물, 기어, 중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속기 제외</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291500	베 어 링	M/T	회전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그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계요소
8291600	열처리로 및 전기로 (熱處理爐 및 電機爐)	대	쇳물을 녹이거나 금속재료의 열처리를 위해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로와 버너등으로 열을 공급하는 열처리로
8291700	소 화 기 (消 火 器)	대	물이나 소화액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불을 끄는 장비
8291800	소화용스프링쿨러	개	열감지장치에서 화재를 감지하여 소방용 벨브를 작동시켜 스프링쿨러에서 대량의 물을 일시에 살포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하는 자동소화장비의 소화부분
8291900	로 울 러	개	콘베이어나 제품의 이송을 위하여 안내를 제공하는 원통형의 굴림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베어링, 로울러베어링, 메탈베어링, 기타베어링을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분말소화기, CO<sub>2</sub> 소화기, 하론 (Halon) 소화기 포함.</li> <li>×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소화 전)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 용구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의 스프링롤러 헤드를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연기를 제외</li> </ul>		

소분류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配電盤 (8310400)      回路遮斷器 (8310500)      電氣溶接機 (8310600)      整流器 (8310700)      燈安定機 (8310809)

흑백 TV수상기, 칼라 TV수상기, 콤비네이션 TV수상기, 영상녹화재생기, 일반라디오,  
 (8320100)      (8320200)      (8320300)      (8320400)      (8320700)  
 카스테레오, 녹음 및 재생기, 소형전축, 데스크, 헤드폰, 레코드플레이어,  
 (8320800)      (8320900)      (8321100)      (8321200)      (8321800)      (8321300)  
 스피커시스템, 전축용튜너, 전축용앰프, 자동차용음향증폭기, 방송용증폭기  
 (8321400)      (8321500)      (8321600)      (8321700)      (8322000)

電子式 TV튜너, 機械式 TV튜너, 오디오용튜너, 확성기, 테크메카니즘  
 (8320500)      (8320600)      (8321000)      (8321900)      (8322100)

電話機, 키폰, 電話交換機, 반송장치, 텔레폰레코더, 모사전송기기,  
 (8322200)      (8322400)      (8322500)      (8322600)      (8322700)      (8322800)  
 인터컴, 인터폰, 유선통신기기부품, 모니터 TV  
 (8322900)      (8323909)      (8324009)      (8323000)

무선전화기, 무선송수신기, 무선원격조절기, 위성방송수신기, 자동차용전화기  
 (8322300)      (8323100)      (8323200)      (8323300)      (8323400)

도난경보기, 의료용방사선기기,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8323500)      (8323600)      (8323700)      (8323800)

가정용냉장고, 가정용선풍기, 전기세탁기,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8330100)      (8330200)      (8330300)      (8330400)      (8330600)      (8330700)  
 진공소제기, 가습기, 환풍기  
 (8330800)      (8330900)      (8331009)

타임어스위치  
 (8330500)

흑백 TV용브라운관, 칼라 TV용브라운관, 표시관, 산업용브라운관  
 (8340100)      (8340200)      (8340300)      (8340400)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직접회로, 혼성직접회로, 금속산화물반도체, 발광다이오드  
 (8340500)      (8340600)      (8340700)      (8341000)      (8340800)      (8340900)  
 고정축전기, 가변축전기, 고정저항기, 가변저항기, 변성기, 전자코일  
 (8341100)      (8341200)      (8341300)      (8341400)      (8341500)      (8341600)  
 인쇄회로기판, 자기헤드, 코넥터, 릴레이, 동박적층판, 웨라이트코아  
 (8341700)      (8341800)      (8341900)      (8342000)      (8342100)      (8342200)  
 웨라이트마그네트, 소형모터, 수정진동자, 로드안테나  
 (8342300)      (8342400)      (8342500)      (8342600)

소켓트, 스위치, 절연코드 및 코드셀, 콘센트, 프러그  
 (8391100)      (8391200)      (8391300)      (8391409)      (8391500)

통신선 및 케이블, 전력선 및 케이블, 마그네트선, 백열전구, 형광전구,  
 (8390100)      (8390200)      (8390300)      (8390400)      (8390500)  
 장식용전구, 축전지, 건전지, 형광등, 차량용조명등 및 신호등  
 (8390600)      (8390700)      (8390800)      (8390900)      (8391000)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품목명이 유사할지라도 용도, 복합체, 강·약전(전압의 크기)용 등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한다.

예) • 전동기(8310100)와 소형모터(8342400)

• 변압기(8310300)와 변성기(8341500)

• 전력회로차단기(8310500)와 스위치(8391200)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10100	전 동 기 (電 動 機)	HP	외부의 전기적에너지를 받아 기계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8310110	직 류 전 동 기 (直 流 電 動 機)	HP	
8310120	교 류 전 동 기 (交 流 電 動 機)	HP	
8310200	발 전 기 (發 電 機)	KW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적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계
8310300	변 압 기 (變 壓 器)	KVA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
8310400	배 전 반 (配 電 盤)	백만원 (병행:대)	발전기, 변압기, 기타 전기배선기구 등의 운전을 제어하고 그 발생전력을 이끄는 데 필요한 기구, 기계를 모아서 장치한 반
8310500	회 로 차 단 기 (回 路 遮 斷 器)	대	정상전류와 이상전류에 대하여 각각 통전(通電), 투입(投入), 차단하는 개폐(開閉)장치

릴레이 ( 8342000 )

- 전력선 및 케이블 ( 8390200 ) 과 절연코드 및 세트 ( 8391300 )

2. 타업종에 비하여 제품의 수명이 짧고, 신제품개발이 활발하므로 관련  
 사업체에서의 누락품목 등 확인사항 철저 ..... 산업통계과 담당자와  
 협의 조사유무결정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만 조사</li> <li>× 기기용의 소형모터 ( 보통 1kw이하 ) 는 제외</li> <li>○ 직권, 분권, 복권전동기 등</li> <li>○ 단상유도, 3상유도, 동기전동기 등</li> </ul>	주물,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류, 교류 조사</li> </ul>	주물, 철심, 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배전용, 발전용포함, 강전용만 조사</li> </ul>	주물, 철심, 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력용 고압, 저압 배전반, 제어반 분전용 분전반 등을 조사</li> </ul>	주물, 철판	※ 단위변경 ( 대 1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차단기 조사</li> <li>○ 퓨즈, 스위치는 제외</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10510	전력회로차단기 (電力回路遮斷器)	대	
8310520	누전차단기 (漏電遮斷器)	대	
8310600	전기용접기 (電氣溶接機)	대	용접에 쓰이는 각종 전기용접기계
8310700	정류기 (整流機)	대	전류의 흐름(교류를 직류로)을 바꾸어 주는 장치, 기기
8310809	등안정기 (燈安定機)	대	각종 등에 내장되어 변압기능을 갖는 기기
8320100	흑백 TV 수상기 (黑白TV受像機)	대	
8320200	칼라 TV 수상기 (칼라 TV受像機)	대	
8320210	로타리형수상기	대	기계식튜너를 통한 채널선택방식형
8320220	터치및리모콘형수상기	대	전자식튜너를 통한 채널선택방식형
8320300	콤비네이션TV수상기 (콤비네이션TV受像機)	대	TV수상기능과 오디오기능을 복합장치한 TV수상기
8320310	칼라콤비네이션 TV수상기	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등을 조사</li> <li>×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용접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용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전변류기, 전동발전기, 수은정류기, 금속정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광등, 수은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과 튜너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li> <li>× TV게임, 공업용 TV, 학술조사용 등 특수분야 유선 TV (폐쇄회로)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 PCB, 브라운관 튜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백 TV수상기에 준함.</li> <li>×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 PCB, 브라운관 튜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터블형 (휴대용), 콘솔형 (장식용) 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 PCB, 브라운관 튜너</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20320	홀백콤비네이션 TV 수상기	대	
8320400	영상녹화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대	
8320410	영상녹화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대	녹화와 재생 겸용
8320420	영상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대	단순재생기능만 있는 제품
8320500	전자식 TV 튜너 (電子式TV 튜너)	천개	TV수상기의 채널선택장치로써 터치 및 리모콘형 수상기에 쓰이는 부분품
8320600	기계식 TV 튜너 (機械式TV 튜너)	천개	TV수상기의 채널선택장치로써 로타리형 TV수상기에 쓰이는 부분품
8320700	일반 라디오 (一般 라디오)	대	
8320800	카스테레오	대	자동차용 녹음재생기
8320900	녹음 및 재생기 (録音 및 再生器)	대	
8320910	일반 녹음기	대	라디오부착 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기기
8320920	녹음 재생기	대	라디오미부착 단순재생기능만 갖춘 기기
8321000	오디오용 튜너	천개	각종 오디오용 방송주파수 조절기능장치 (채널선택기능장치)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CR, VTR</li> </ul>		
	IC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계라디오 포함</li> <li>○ 카라디오는 8320800 카스테레오에 포함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부착 또는 미부착 녹음재생기 모두 포함.</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 및 재생기 포함</li> <li>× 전축용 테크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식, 기계식 포함</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21100	소 형 전 축 (小 型 電 蓄)	대	일명 뮤직센타, 앰프, 레코드플레이어, 스피커 등으로 조립된 콤파넌트의 제품
8321200	데 크	대	녹음테이프를 삽입하여 녹음 및 재생시킬수 있는 장치(데크메카니즘)가 부착된 콤파넌트의 부분품
8321300	레 코드 플 레 이 어	대	픽업, 턴테이블, 캐비넷 등으로 구성된 콤파넌트의 구성품(턴테이블: 레코드판의 홈에 수록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갖춘 기기)
8321310	일반레코드플레이어	대	
8321320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C . D . P)	대	
8321400	스 피 커 시 스템	대	증폭된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갖춘 확성기 조립품
8321500	전 축 용 튜 너	대	방송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받아 음성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갖춘 콤파넌트형의 부분품
8321600	전 축 용 앰 프	대	음성증폭기능을 갖춘 콤파넌트형의 부분품
8321700	자동차용음향증폭기 (自動車用音響增幅器)	대	일명 카부스타
8321800	헤 드 폰	천개	폰을 양귀에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는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각종 기기의 분리형은 제외		
	데크메카니즘	
	픽업, 턴테이블	
	확 성 기	
○ Hi-Fi 앰프, 튜너앰프 등을 조사		
○ 자동차에 내장 가능한 앰프만 조사		
○ 대형, 소형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제품
8321900	확 성 기 (擴 聲 器)	천개	일명 스피커, 스피커시스템의 부분품
8322000	방 송 용 증 폭 기 (放 送 用 增 幅 器)	대	전축용앰프를 제외한 산업 및 사무기기 용 제품
8322100	데 크 메 카 니 즘	천개	녹음, 녹화 및 재생기능을 하는 모타, 헤드를 포함한 기계 부분품
8322110	녹 음 기 용 D.M	천개	오디오용
8322120	녹 화 기 용 D.M	천개	비디오용
8322130	컴퓨터용및기타 D.M	천개	컴퓨터용
8322200	전 화 기 (電 話 機)	대	
8322210	전 자 식 전 화 기	대	MFC전화기
8322220	다 이 알 식 전 화 기	대	
8322300	무 선 전 화 기	대	일명 코드레스전화기
8322400	키 폰	대	각 회선에 전화기를 연결하여 내선 상 호간은 물론 각 전화기에서 자유로운 국선호출, 응답, 다른 전화기에 전송이 가능토록 한 통신기기
8322500	전 화 교 환 기 (電 話 交 換 機)	회선	전화기의 송수신기능을 연결가능토록 한 통신기기
8322510	자동식 전화교환기	회선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이어폰 제외		
○ 공중전화기 포함		
○ 스텝 바이스방식, 크로스바방식, 전자교환방식, 자동식구내교환기, 기계식, 전자식 등 조사	IC, 릴레이 통신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22520	전 자 식 및 기 타 전 화 교 환 기	회 선	
8322600	반 송 장 치 (返 送 装 置)	회 선	전화교환기와 전화기, 단말기, 국과 국의 연결등에서 기능보완을 갖춘 장치물(음 성신호 ↔ 전기적신호)
8322700	텔 레 폰 레 코 더	대	전화기에 연결장치한 무인수신기
8322800	모 사 전 송 기 기	대	문서 또는 사진을 일반전화, 송수신망을 이용 송수신하는 장비(일명, 팩시밀리)
8322900	인 터 컵	대	모기(母機)와 자기(子機)간의 직접무 선통화 할 수 있는 기기(무선인터폰)
8323000	모 니 터 TV	대	국시적 시청을 위한 수상기로 폐쇄회로 카메라로 화면을 포착 영상화하는 기기
8323100	무 선 송 수 신 기 (無 線 送 受 信 機)	대	일명 : 민수용무전기
8323200	무 선 원 격 조 절 기	대	일명 : 리모콘 (Remote Control)
8323300	위 성 방 송 수 신 기 (TVRO)	대	적도 상공(약 40,000 km)의 방송위성에 서 보내오는 TV 프로그램을 직접 수신 하여 가정용 TV로 시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 아파트, 호텔 등에서의 공청 도 가능
8323400	자 동 차 용 전 화 기	대	일명, 카폰, 자동차내에 부착 이동하면서 무선중계대와 교환국을 이용하여 일반전 화가입자나 다른 카폰과 통화할 수 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CB, IC	
○ 자동응답기 포함		
※ 보통 1세트에 모기 1대, 자기 6대로 구성됨.		방송국에서 주로 쓰임
	브라운관	• 도난방지, 감시기능 • 지하철 등에 쓰임
○ 민수용만 조사 ○ CB트랜시버, 워키토키 포함		• 건설현장 • 레저용
	IC	TV용, 레저, 장난감용
○ 단일변환방식, 이중변환방식, 모노, 스테레오, 리모콘형 등 조사	안테나, 변류기	TV시청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는 전화기
8323500	도 난 경 보 기 (盜難警報器)	대	
8323600	의료용 방사선기기	백만원	각종 방사선의료기기 및 기자재
8323700	녹 음 테 이 프	KM	플라스틱테이프표면에 자성철분을 입힌것 (오디오용)
8323800	비 데 오 테 이 프	천개	영상을 재생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자 기테이프(비디오용)
8323909	인 터 폰	대	
8324009	유선통신기기 부품	백만원	유선통신기기용 부품
8330100	가 정 용 냉 장 고	대	
8330110	소 형 냉 장 고	대	140 ℓ 이하
8330120	중 형 냉 장 고	대	270 ℓ 이하
8330130	대 형 냉 장 고	대	271 ℓ 이상
8330200	가 정 용 선풍기 (家庭用扇風機)	대	
8330300	가정용전기세탁기	대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차량용, 주거용, 사무실용 각종 제품 포함		
○ 보조기기 및 관련제품 포함		
○ 카세트형, 릴형 모두 포함	플라스틱, 산화철	
	플라스틱, 산화철	
○ 통신기기부품중 유선통신기기만 조사		
----- × 무선통신기기용은 제외		
○ 산업용은 382에서 조사 아이스박스 제외		
○ 벽걸이선 풍기 포함	타임어스위	
----- × 산업용, 날개 만있는것 (자동차, 여객차 등에서 설치된 것)은 제외	치, 소형모터	
○ 가정용만 조사	타임어스위 치, 소형모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30400	탈 수 기 (脫 水 機)	대	세탁물의 탈수기능만 갖춘 기기
8330500	타 임 어 스 위 치	천개	시간조절용 자동개폐기
8330600	전 자 레 인 지	대	
8330700	전 기 밥 솥	대	
8330800	진 공 소 제 기 (眞 空 掃 除 器)	대	
8330900	가 습 기 (加 濕 器)	대	물을 기화하여 건조한 공기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
8331009	환 풍 기	대	
8340100	흑백TV 용브라운관	개	
8340200	컬러TV 용브라운관	개	
8340300	표 시 관	천개	각종 디지털기기의 표시관
8340400	산업용브라운관	개	컴퓨터주변기기(모니터)용
8340500	트 랜 지 스 터	천개	
8340510	S.S 트랜지스터	천개	Small-Signal (1W이하)
8340520	P.W 트랜지스터	천개	Power (1W이상)
8340600	다 이 오 드	천개	양극과 음극의 두극만을 갖춘 진공관
8340700	집 적 회 로 (集 積 回 路)	천개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회로소자를 작은기관위에 놓고 배선까지도 하여 한 계열의 기능을 갖도록 만든 반도체회로
8340800	금속산화물반도체 (M . O . S.)	천개	집적회로용 메모리관 (Metal-Oxide-Semiconductor)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가정용만 조사		
○ 각종 전기, 전자용 포함		
○ 전기보온밥통겸용 포함		
○ 산업용은 제외		
	발광다이오드	
○ 반도체 I.C, 고밀도 I.C, 초고밀도 I.C 등 모두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40900	발광다이오드	천개	일명, LED
8341000	혼성직접회로	천개	하이브리드 IC
8341100	고성축전기	천개	서로 마주본 2개의 전극사이에 유전체를 끼워서 정전용량을 갖게한 장치
8341200	가변축전기	천개	
8341300	고정저항기	천개	
8341400	가변저항기	천개	
8341500	변성기	천개	전압을 공급회로내에서 요구되는 전압을 승압시켜주는 장치물 일명, 트랜스포머
8341510	중간및고주파변성기	천개	
8341520	전원변성기	천개	
8341530	입출력변성기	천개	
8341540	고압변성기	천개	
8341600	전자코일	천개	산화철을 혼합 자성물질을 갖춘 코아의 부품
8341700	인쇄회로기판	개	동박적층판에 회로를 가한 것
8341710	페놀인쇄회로기판	개	
8341720	에폭시인쇄회로기판	개	
8341800	자기헤드	천개	자기테이프와 접촉하여 녹음 녹화 또는 재생시켜주는 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약전 ( 전자기기 ) 용 제품 의 부품
○ 인덕형코일, 편향요크, 필터코일, 동조 코일, 포화코일, 고주파발생 코일 등 포함	산화철, 선 재	전자코아의 부품
	페놀동박적층판 에폭시동박적층판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41810	오디오용 자기헤드	천 개	
8341820	비디오용 자기헤드	천 개	
8341830	컴 퓨 터 및 기 타 자 기 헤 드	천 개	
8341900	코 닉 터	천 개	전자회로를 여러방향으로 연결가능토록 한 전자기기용 부품
8342000	릴 레 이	천 개	자동개폐기 등을 갖춘 전자용스위치의 일종
8342100	동 박 적 층 판	천 개	인쇄 회로기판의 원판
8342110	페 놀 동 박 적 층 판	천 개	페놀수지에 절연지를 합침시켜 동박을 적층한 것
8342120	에폭시 동박적층판	천 개	에폭시수지에 절연지를 합침시켜 동박을 적층한 것.
8342200	웨 라 이 트 코 아	천 개	전자코일을 소재로 한 전자부품
8342300	웨 라이트마그네트	M/T	자기능력을 갖춘 전자부품
8342400	소 형 모 터	천 개	약전(보통 1kw이하)에 쓰이는 전자부 품
8342410	직 류 소 형 모 터	천 개	
8342420	교 류 소 형 모 터	천 개	
8342500	수 정 진 동 자 (水晶振動子)	천 개	수정의 진동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주파 수변동을 줄여서 발진주파수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전자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녹음기 등 오디오용제품
		• VCR 등 비디오용제품
		• 컴퓨터 등 산업용 제품
○ 전기 콘센트는 제외		
○ 전기스위치는 제외		
	페놀수지, 절연지, 동박 페놀수지, 절연지, 동박	• 인쇄회로기판 • 가정용기기제품 ( TV, VTR, 라디오등 ) • 산업용기기제품 ( 컴퓨터 교환기등 )
	전자코일, 산화철	
	산화철	
		전자기기용, 장난감용
	수정	송수신기, 측정기등에 사용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42600	로 드 안 테 나 (Rod 안 테 나)	천 개	로드 (Rod)형 안테나, 전자기기용 부착 사용
8390100	통 신 선 및 케 이 블	M/T	통신용 절연선
8390200	전 력 선 및 케 이 블	M/T	전력용절연선 (강전용)
8390300	마 그 네 트 선	M/T	절연물질 (에나멜등)로 피복한 절연선 (약전용)
8390400	백 열 전 구	천 개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발광토록 한 전구
8390500	형 광 전 구 (螢 光 電 球)	천 개	아아크방전 (수은증기)에 의해 생기는 자외선으로 유리관안쪽의 형광물질을 자 극하여 빛을 내제한 전구
8390600	장 식 용 전 구	천 개	주로 착색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전구
8390700	축 전 지 (蓄 電 池)	개	화학적 변화에 의한 전류의 충전, 재생 기능을 갖춘 전지, 건전지와 구분되는 2차전지
8390800	건 전 지	천 개	
8390900	형 광 등	개	형광전구를 부착 가능토록 한 장치물
8391000	차량용조명및 신호등	천 개	
8391010	전 조 등	천 개	자동차 전면에 있는 헤드라이트
8391020	경 광 등 및 기 타	천 개	리어등, 신호등, 경보등, 실내등 포함
8391100	소 켓 트	천 개	전구를 끼워 전류의 흐름을 연결가능토 록한 장치물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나동선	통신기기용
	나동선	전력송전 및 배전용
○ 권선도 포함 조사	나동선	전자기기용
	유리, 필라 멘트	
	유리관	
○ 착색유리가 아닌 장식용 제품도 포함		
		차량용
	등안정기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391200	스 위 치	천 개	
8391210	커버나이프 스위치	천 개	
8391220	옥내용 소형스위치	천 개	
8391230	전자기기용 및 기타	천 개	
8391300	절연코드 및 코드셋트	K M	각종 전기기기용에 쓰이는 절연선 (전기기기용 및 배선용)
8391409	콘 센 트	천 개	전기배선기구
8391509	프 러 그	천 개	

**소분류 384. 운수장비 제조업**

1. 운수장비 제조업은 사람이나 물품을 장거리로 이동시키기 위한 탈환으로 크게는 육상용과 해상용 그리고 항공용으로 분리될 것이다. 이를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 1) 3841, 선박건조 수선업
- 2) 3842, 철도장비 제조업
- 3) 3843, 자동차 제조업
- 4) 3844,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 5) 3845,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 6) 3846, 달리분류되지 않는 운수장비 제조업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2. 선박 및 철도차량 제품의 조사

선박 및 철도차량의 조사는 조사표(1)에 의해서 여타품목과 동일한 항목을 조사하였으나 85년 기준의 조사부터는 독립된 조사표에 수주량,진척량, 수주잔량, 완성기준의 당일생산량(척)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니 유의한다.

3. 동일 사업체에서 여러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시에는 합산 또는 누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4. 차량용 부품은 종전의 조립금속 제품이나 기계제조업에서 이동하여 온 제품이 많으므로 유의할것 (예 : 자동차용 방열기, 자동차용 중판스프링, 변속기, 피스톤, 피스톤링 등)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10100	선박용내연기관 (船舶用內燃機關)	HP	선박용의 엔진. 실린더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를 바꾸어 축을 움직이는 선박용 원동기.
8410200	철강유조선 (鐵鋼油槽船)	G/T	원유등의 수송을 위한 선박. ( Tanker )
8410300	일반화물선 (一般貨物船)	G/T	일반화물을 운반할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
8410400	특수화물선 (特殊貨物船)	G/T	특수한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할수 있게 특수형태로 건조된 선박
8410500	비상업용특수선박 (非商業用特殊船舶)	G/T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예인선, 쇄빙선, 시추선, 케이블선, 준설선, 기중기선, 소방선, 기상관측선등의 비상업용 선박.
8410600	철강어선 (鐵鋼漁船)	G/T	각종의 철강어선.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선박용 디젤기관 및 소옥기관 포함.		
		원유, 정유운반선
○ 다목적 화물선 (석탄, 곡물, 광물, 목재 등 운반용선박), 바지선, 콘테이너선, 자동차전용선 포함.		
○ 화학제품 및 가스운반선, 냉동선, LPG 운반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 비상업용선박인 예인선, 시추선, 오물수거선, 기상관측선, 소방선등은 제외		
× 공장선 및 군함, 잠수함 등 군사용 제외		
○ 부유생선가공선, 공장선, 포경선 포함 × 기타 재질어선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10700	합 성 수 지 선 (合成樹脂船)	G/T	강화 플라스틱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으로 만든 선박.
8410800	선 박 해 체 업 (船舶解體業)	L.D.T	노후화된 고선박을 구입하여 고철 또는 철근소재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체하는 업.
8410909	목 선	G/T	목재로 만든 선박
8420100	디 젤 기 관 차	량	디젤기관을 이용한 동력차.
8420200	전 등 차	량	전력을 받아 모타의 움직임을 이용한 동력차.
8420300	여객차및수하물차 (旅客車및手荷物車)	량	자체동력이 없어 끌려다니는 열차로 여객을 위한 여객차와 수하물을 실는 열차.
8420400	화 차 (貨車)	량	화물을 전용으로 싣기위해 제작된 열차
8420500	철 도 차 량 부 품 (鐵道車輛部品)	백만원	철도차량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차량부품.
8420609	철 도 차 량 료	개	열차의 바퀴.
8420709	광 차	량	광산에서 광석을 갱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동력이 없는 궤도차량
8430100	소형 승용 차	대	배기량 1,400 cc 이하의 승용차.
8430200	중형 승용 차	대	배기량 1,900 cc 이하의 승용차.
8430300	대형 승용 차	대	배기량 1,901 cc 이상의 승용차.
8430400	지 프 형 승용차	대	지프 (Jeep)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FRP 어선, FRP보트 포함.		
× 군사목적용은 제외		
※ L.D.T : 경하배수량 (선박내의 물을 뺀 중량) → 화물을 적재않은 상태의 실지 중량톤)		
○ 수화물차, 침대차, 식량차 포함.		
○ 무개차, 평저차, 유개차, 유로차, 냉장차등 포함.		
× 내장재 (의자, 에어컨등)와 철도차량류 제외.		
× 윤심제외		
× 광차로 끄는 광산의 기관차는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30500	소 형 버 스	대	25인승 미만의 버스
8430600	일 반 버 스	대	
8430700	고 속 형 버 스	대	고속도로용의 고속엔진을 부착한 버스.
8430800	소 형 트 럭	대	1/2톤이상 4톤미만의 트럭.
8430900	중 형 트 럭	대	4톤이상 8톤미만의 중형트럭.
8431000	대 형 트 럭	대	화물운반용의 8톤 이상의 트럭.
8431100	특 장 차 (特 裝 車)	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진 차량.
8431200	자 동 차 용 내 연 기 관 (自 動 車 用 內 燃 機 關)	대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등 각종차량의 내연기관.
8431300	자 동 차 용 기 관 부 품	백만원	
8431310	기 화 기	백만원	엔진의 운전상태에 따라 공기와 가솔린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고 동시에 미립화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부품.
8431320	피 스 톤	백만원	차량엔진의 기통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고온고압가스에서 발생하는 힘을 축(크랭크축)에 전달하는 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봉고차( 9인승이상 포함) 및 마이 크로 버스 포함.		
○ 시내 및 시외버스 포함.		
○ 6인승이하 봉고형 밴트럭(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만든 차량) 및 농촌형 다목적 트럭 포함.		
○ 병원차, 구난차, 콘크리트 믹서차, 위생차, 병원차, 방송차, 은행차, 장 의차, 급수차, 유조차, 냉동차, 트럭 트랙터 포함.		
× 무동력 트럭 트레일러 제외.		
○ 자동차용만 조사.		
○ 자동차용만 조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31330	피 스톤 링	백만원	실린더와 피스톤사이의 공간을 말해하기 위해 피스톤에 끼우는 등근대.
8431340	기타기관용부품	백만원	
8431400	변 속 기 (變 速 器)	대	일명 트랜스 미션. 차량엔진의 회전수를 변경하여 차축으로 전달하는 기어변속장치.
8431500	크랭크 샤프트	개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엔진의 출력을 외부로 전달하고 동시에 흡기, 압축, 배기의 각 행정에서 역으로 피스톤과 실린더에 운동을 전달하는 엔진부의 주제품.
8431600	클러치 디스크	개	크랭크 샤프트로 부터의 회전력을 외부의 변속기로 전달하는 원형의 강판으로 된 동력전달장치 부품.
8431700	시 동 전 동 기 (始動電動器)	대	차량의 최초시동을 위하여 전지(Battery)에 의해 구동되는 전동기.
8432100	자동차차체부품	백만원	자동차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구동부(엔진, 미션, 차축, 차륜등)를 고정시켜주는 틀(뼈대)과 사람이 탈수 있거나 화물을 싣을수 있도록 된 부분의 부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p>○ 기화기, 피스톤, 피스톤링을 제외한 기관용 부품을 조사.</p> <p>× 크랭크 샤프트는 별도조사.</p>		
<p>○ 자동차용만 조사.</p>		
<p>○ 자동차용만 조사.</p>		
<p>○ 자동차용만 조사.</p> <p>× 클러치 카바 제외.</p>		
<p>○ 자동차용만 조사.</p>		
<p>○ 자동차용만 조사.</p> <p>× 플라스틱부품, 유리등 비금속 제품 제외.</p>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432200	브레이크조직	백만원	주행 중의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고 동시에 주차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동장치.
8432300	조향장치 (調向裝置)	백만원	자동차의 주행방향을 바꾸어 주는 장치.
8432400	차량용스프링	M/T	자동차의 진동 및 충격을 완화시키는 현가장치 부품.
8432410	차량용코일스프링	M/T	코일모양의 스프링
8432420	차량용중판스프링	M/T	띠(잎: leaf)모양의 스프링.
8432500	자동차륜 (自動車輪)	개	자동차의 타이어를 지지하는 부분(rim)과 바퀴를 허브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바퀴.
8432600	차축 (車軸)	개	차륜회전의 중심이 되는 축.
8432700	자동차용방열기 (自動車用放熱器)	개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시키는 장치.
8440100	자전거 (自轉車)	대	각종용도(아동용, 학생용, 성인용, 경기용)의 이륜자전거 또는 자전거 차체.
8440200	자전거부품	백만원	자전거차체 및 자전거 림을 제외한 자전거 부품.
8440300	모터싸이클	대	49 cc 이상 이륜 및 삼륜오토바이
8440400	모터싸이클부품	백만원	모터싸이클용 기관을 제외한 각종 모터싸이클 부품을 조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자동차용만 조사.		
○ 자동차용만 조사.		
○ 자동차 및 철도차량용 스프링을 조사. ----- -----		
○ 자동차용만 조사.		
○ 후부차축, 앞부차축, 전달차축을 각 각 조사.		
○ 엔진냉각용 방열기만 조사. ----- × 차량내부 난방용 방열기 제외.		
○ 자전거 차체만 생산하는 업체도 완제품으로 간주하여 조사.		
× 모터 스쿠터는 제외.		

소분류 38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510100	1 회 용 주 사 기 ( 1 回 用 注 射 器 )	천 개	
8510200	수액 및 수혈셋트 ( 輸 液 및 輸 血 셋 트 )	개	영양제 주입 및 수혈을 위한 줄 및 그 세트를 말함
8510300	치 과 용 진 료 대 ( 齒 科 用 診 療 臺 )	대	환자가 걸터앉아 head rest 에 후두부를 대고 구강치료를 받는 치과치료 의자
8510409	치 과 기 공 품	백만원	
8520100	광 섭 유 ( 光 纖 維 )	Km	MCVD ( 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 ) 화학기상증착법 및 VAD Vapor phase axial deposition ) 기상축부법으로 만든 석영글라스파이버, 다성분글라스파이버, 복합재료파이버, 플라스틱파이버 등의 섬유를 말함.
8520200	광 섭 유 케 이 블	Km	광섬유를 피복하여 만든 선 및 케이블
8520300	광 학 렌 즈	개	광학유리로 제조된 각종 용도의 렌즈를 말함 ( 대물렌즈, 거리측정용 렌즈 등 )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left margin of the table, including arrows and scribbles.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치료대 ( dental chair ), 치과용유닛 ( dental unit ), chair uni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용시멘트 인조치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영글라스파이버, 다성분글라스파이버, 복합재료파이버, 플라스틱 파이버 등</li> </ul>	$SiO_2, GeO_2$ $P_2O_5, B_2O_3$ $Na_2O, B_2O_3,$ $CaO, TiO_2$ 플라스틱 그레이트 폴리스티롤 실리콘 등	일반통신용 광에너지 전송용 영상정보 전송용
	광섬유	광통신시스템 계측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안경, 현미경, 망원경, 카메라용 렌즈 포함</li> <li>× 안경용 렌즈, 콘택트렌즈 제외</li> </ul>	광학유리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520400	안 경 렌 즈 ( 眼 鏡 렌 즈 )	개	
8520500	사 진 기	대	
8520600	전 자 복 사 기 ( 電 子 複 寫 機 )	대	
8520700	현 미 경 ( 顯 微 鏡 )	백만원	
8520710	복합광학현미경	백만원	대물렌즈, 접안렌즈, 조명장치로 되어있어 극히 미세한 물체를 확대하여 관찰하거 나 촬영하는 광학기기
8520720	전자및양자현미경	백만원	회절 장치, 광선대신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광학현미경과 구별
8520800	안 경 테	천 개	금속 및 셀룰로이드판, 아세테이트판 등 으로 만든 각종 형태의 안경용 테
8520900	쌍 안 경 ( 雙 眼 鏡 )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렌즈 및 플라스틱렌즈 포함 (선그라스렌즈 포함)</li> <li>× 콘택트, 하드, 소프트렌즈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용 사진기 및 폴로라이드 사진기 포함</li> <li>× TV, VTR, 영화촬영 카메라는 제외 용 카메라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사기기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현미경, 금속현미경, 줌 (Zoom) 현미경, 배양, 수술현미경, 顯微分光光度計, 工具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光電현미경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그라스테 포함</li> <li>교정용 안경테 포함</li> </ul>	철선, 황동 동선, 셀룰 로이드판 P E수지	
오페라글라스 (Opera grass ) 프리즘 쌍안경 대형 쌍안경 (架臺에 부착) 등	렌즈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8530100	손 목 시 계	개	기계식 및 전자식 (디지털, 아날로그)
8530200	벽 시 계 (壁時計)	개	기계식 및 전자식
8530300	탁 상 시 계	개	기계식 및 전자식
8530400	손목시계케이스	개	
8530500	시계부품및반제품	백만원	시계기동부, 문자판 및 일부 시계부분이 결합된 반제품등 모든 시계 부품
8530609	큰시계용케이스	개	
8540100	온도계및체온계 (溫度計및體溫計)	개	
8540200	수 도 미 터	개	수도물 소비량 측정계기
8540300	적 산 전 력 계 (積算電力計)	대	전력소비량 측정계기 (일명 전기계량기)
8540400	전 자 계 측 기 (電子計測機)	백만원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등의 전기량을 지침이 가리키는 눈금값으로 나타내는 계기 및 이들을 변환할 수 있는, 물리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기록용 ( stop watch ), 어린이용 플라스틱 시계 제외</li> </ul>	스텐레스판 시계케이스 황동판	
	알루미늄판 스텐레스판 시계케이스 황동판, 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 시계케이스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용 시계케이스, 큰시계용 시계 케이스 및 플라스틱·목제품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상시계 및 벽시계용 시계케이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도계, 기압계, 비중측정계 및 산 업용, 물리, 화학분석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대형도 포함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스미터기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 및 직류 적산전력계 포함</li> </ul>	알루미늄판 동 선 규소강판 철 판 유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시계측기, 기록계측기 및 전자용 계측기를 조사</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량과 화학량의 시간적 변화를 지시 또는 기록지 위에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계기
8540509	측 량 자	개	길이측정에 사용되는 자

**중분류 39 . 기타제조업 소분류 390 . 기타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10100	귀석 및 반귀석 ( 貴石 및 半 貴石 )	백만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오팔 등 원석을 가공한 것
9010200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장신구	백만원	가공한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으로 만든 완제품 (반지, 목걸이, 브로찌, 팔찌 등)
9010300	모 조 장 신 구 ( 模 造 裝 身 具 )	백만원	귀석, 반귀석, 귀금속이 아닌 기타 재료로 만든 치장용품
9010400	금 속 주 화 ( 金 屬 鑄 貨 )	M/T	우리나라 화폐(주화)를 제외한 외국 주화, 기념주화, 메달, 토큰 등
9020100	피 아 노	대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텐레스 줄자</li> <li>    섬유 줄자</li> </ul>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용 자는 제외</li> </ul>	스텐레스 섬유	

조 사 범 위	원재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주, 수정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금, 백금, 은, 금, 은합금 제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 은, 동 및 각종 합금제품 포함</li> <li>○ (국내용 중 기념주화, 메달, 토큰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피아노 포함</li> </ul>	판재, 합판 각재, 탄소 강, 주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20200	기 타	대	
9020300	전 자 현 악 기 (電 子 絃 樂 器)	대	현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픽업을 가지며 앰프로 증폭하여 스피커에서 음을 내는 악기이다.
9020409	오 르 간	대	
9030100	라 켓	개	
9030200	대 형 공	개	
9030300	소 형 공	백만원	
9030400	야 구 장 갑 (野 球 장 갑)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동선, 철선 황동알루미 늄 합성수 지 등	
× 전자기타 제외	합판, 각재 판재, 철선 나이론 줄	
○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크로마 하아프 등 포함		
○ 전자오르간 포함 × 파이프 오르간 제외		
○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만 조사	금속, 플라 스틱 목재	
○ 농구, 축구, 배구, 송구, 수구, 미식축 구, 럭비공 등을 포함		
○ 야구, 테니스, 탁구공 × 골프공 제외		
	소가죽, 말 가죽, felt (양모, 牛 毛) 합성실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30500	뉡 시 대	개	
9030600	뉡 시 용 립	개	○ 뉡시줄을 감거나 펴는 용구
9030709	어린이용놀이터장비	백만원	
9030809	건강및미용체력기구	백만원	
9030909	뉡 시 용 부 속 장 구	백만원	뉡시줄, 뉡시바늘, 찌, 납봉, 콜러 뉡시끝 등
9040100	인 형 및 장 난 감	백만원	
9040110	인 형	백만원	봉제인형(사람 및 동물형)
9040120	어 린 이 승 용 물	백만원	삼륜차, 유모차, 보행기, 족담식 자동차등
9040130	기 타 장 난 감	백만원	과학용, 동력식, 무기류, 조립식, 모형, 악기 등
9050100	조 화 및 유 사 제 품 (造花및類似製品)	백만원	각종조화 및 유사제품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대나무 및 금속제의 낚시대와 플라스틱제 낚시대 포함	글라스파이버 (유리섬유) 합성수지 카본	
○ 미끄럼틀, 시소, 그네 회전대 등		
○ 러닝머신, 에르고미터 (미용자전거) 로잉머신, 트위스트머신, 벨트 바이브레이터 레크앤드의 익스텐션머신 등		
× 낚시대 및 릴 제외 낚시용의복 및 가방, 신발등 제외		
× 천을 입히지 않은 목각, 금속, 플라스틱등의 인형 및 동물형 제외	합성섬유직물, 면직물 플라스틱등	
× 인형 및 어린이 승용물 제외		
○ 제지조화, 리본플라워, 플라스틱플라워 폴리에스테르 실크플라워, 아메리칸플라워, 인조수목, 인조열매등 포함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50200	가 발 (假 髮)	천 개	
9050309	금속장식공예품	백만원	주물을 떠서 만든 각종 모형의 장식품
9090100	볼 펜	천 개	
9090200	연 필	천 타	
9090300	크레용 및 파스텔	백만원	
9090400	마킹 펜 (marking pen)	천 개	
9090500	샤프 연 필	천 개	
9090600	철제우산 및 양산 (鐵製雨傘 및 陽傘)	천 개	
9090700	개인위생용 솔 (個人衛生用솔)	백만원	여자용 헤어브러쉬 (Hair Brush) 및 화장용 솔 (눈, 입술, 손톱솔 등)만 조 사
9090800	칫 솔	천 개	
9090900	영구 및 반영구 라이타	개	금속제 및 플라스틱제를 불문하고, 연료를 재충전하여 계속 쓸수 있는 것.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인조가발 및 합성가발 조사		
	황동 심주 등	
○ 금속제, 플라스틱제의 볼펜을 조사		
○ 색연필 포함		
○ 크레용 및 파스텔만 조사		
○ 펄트펜, 사인펜 (컬러펜, 언더라인펜) 플라스틱펜 (플러스펜, 붓펜) 형광펜, 컴퓨터용펜, 파스펜등 조사		
× 샤프 연필심 제외		
○ 철제우산 및 양산의 완제품 및 유리섬유 (글라스파이버) 우산·양산 조사 ----- × 플라스틱 및 목재살대 우산 제 외	폴리에스테르, 실크, 비닐, 황동 파이프, 알 루미늄파이 프 구리선 순테인레스 유리섬유 (글라스파 이버)	
× 옷솔, 구두솔, 면도솔, 동물용솔 제외		
	합성수지	
○ 전자 및 장식용라이터 포함	황동판, 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91000	일 회 용 라 이 타	개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것
9091100	담 배 필 터	M/T	
9091200	지 퍼	Km	
9091300	단 추 천 개		모든 소재의 단추
9091400	바 늘	백만원	직조, 방적, 미싱, 편직용 바늘 및 침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판, 알미늄 판, 규소강 판, 동선	
	플라스틱	
	아세 테이트 섬 유	
○ 금속제, 플라스틱, 나일론 지퍼 모두 포함	알미늄, 구리, 니켈,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플라스틱	
○ 금속제, 플라스틱제, 나일론 지퍼 모두 포함 ----- × 후크 앤드 아이 (Hook & eye ) 후크 앤드 루프 (Hook & loop fastener) 제외		
○ (직조, 방직, 미싱, 편직)용 바늘 및 침, 손바늘 재봉바늘 포함	대강, 강선 강철선, 고탄소강선 연선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091500	그 립 물 감	백만원	
9091609	만 년 필 천 개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화물감, 수채그림물감(포스터칼라, 템페라칼라), 아크릴칼라 등 포함</li> </ul>	천연수지, 천연유지, 합성수지	
	황동판 스텐판 P.V.C 수지	

## 대분류 4. 전 기 업

1. 단위 : 1 GWH = 1,000 MWH = 1,000,000 KWH

2. 전기업은 한전 및 기타전력 생산업체의 전력생산량과 판매량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품목부호	품 목 명	단 위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9999900	발전량및판매량	GWH	

3. 판매량은 발전량에서 송변전단에서 발생한 손실량을 뺀것으로 한다.

- 판매량 = 발전량 (생산량) - 송변전손실량 (과부족)

조 사 범 위	원 재 료	용 도

## Ⅷ. 지정원재료 분류표

### 1. 유의사항

- (1) 원재료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원재료명의 해설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제품조사에 준하여 조사
- (2) 면 사 : 순면사, 면혼방사를 포함
- (3) 소모사 : 순소모사, 혼방소모사를 포함
- (4) 화학섬유사 : 합성섬유와 재생섬유로 구분조사하고 합성섬유사는 합성섬유방직사, 혼방합성섬유방직사, 합성섬유면사를 포함하고 재생섬유방직사는 아세테이트사(반합성섬유사), 재생섬유방직사, 혼방재생섬유방직사, 재생섬유 연사를 포함  
※ 상기 품목외에도 모든 絲는 혼방된 것도 포함 조사하며 연사도 포함.
- (5) 면직물 : 순면직물과 혼방면직물을 구분하여 조사
- (6) 화학섬유직물 : 재생섬유직물, 합성섬유직물을 분리하여 조사
- (7) 혼방직물 : 면혼방직물, 모혼방직물, 혼방합성직물, 혼방재생직물, 혼방견직물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
- (8) 특수강 : 철강은 강도를 기준으로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구분되는데 탄소강중에서 고탄소강과 합금강 중에서 고합금강을 특수강으로 조사, 용도별로 구분되는 것중 탄소공구강, 고속도강, 내열내식강 등이 특수강이며 이는 각종절삭공구베어링, 스프링과 같은 기계의 특수품목, 피아노선, 용접봉심선, 자석등에 사용됨. 단, 합금강 중의 저합금강은 저탄소강과 같이 특수강에서 제

- 외하며, 특수강으로 취급되는 고합금강이라도 규소강판, 스테인  
레스판과 같이 별도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
- (9) 황동 : 황동은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과 아연 합금이다. 일명 놋쇠  
또는 진유라고도 하며 과(塊), 판(板), 봉(棒)을 포함하여  
조사
- (10) 알루미늄 ( 0.2 mm 미만 ) : 알루미늄박은 제 1차 비철금속제품의 알루미늄박판을  
말함.
- (11) 알루미늄판 ( 0.2 mm 이상 ) : 알루미늄박은 제외
- (12) 인청동판 : 동에 인과 주석을 입힌 합금판으로 인 ( 10 - 15 % ) 과 주  
석 ( 3 - 7 % ) 이 합금된 철판
- (13) 비철금속 제품중 동, 알루미늄, 아연 등이 서로 합금된 것은 함유량이  
가장 큰 제품속에 포함.
- (14) P.C.B원판 ( Printed Circuit Board ) : 트랜지스터나 T.V에 사용되는  
회로판으로 표면은 동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어-스 ( earth ) 역할을  
한다.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격은 1 m × 1 m 인 것을  
기준으로 조사
- (15) 강반성품은 스텐, 비릿트, 쉬트바 ( Sheetbar ), 브룸을 포함 조사하  
고 열연대강 ( 핫코일 ) 과 냉연대강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
- (16) 무연탄, 원료탄 ( 유연탄 ), 경유, 중유, B - C유, 코크스의 사용량중 연  
료로 사용한 량은 연료란에 원재료로 사용한 량은 원재료란에 기입.

2. 광공업동태조사 지정원재료분류표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706	설 탕	%
522	갱 목	mm	707	소 기름(우지)	%
778	폭 약	kg	708	경 화 유	%
			780	향 료	kg
대분류 3. 제조업			818	통 조 립 관	천개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501	보 리(대 맥)	%
			502	밀 (소 맥)	%
502	밀 (소 맥)	%	504	고 구 마	%
503	콩 (대 두)	%	517	호 프	kg
504	고 구 마	%	518	당 밀	%
505	소 맥 피	%	701	보 리 쌀(정 맥)	%
506	탈 지 강	%	702	밀 가 루(소 맥 분)	%
507	콩 깻 목(대두박)	%	703	옥 수 수(가루포함)	%
518	당 밀	%	704	녹 말 가 루(전 분)	%
519	생 우 유	%	706	설 탕	%
525	어 개 류	%	710	주 정	kl
702	밀 가 루	%	711	콜 라 원 액	l
703	옥 수 수(가루포함)	%	712	엿 기 림(맥 아)	%
704	녹 말 가 루(전분)	%	749	탄 산 가 스	kg
705	원 당	%	780	향 료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90	유 리 병	천 개	717-1	채 생 섬 유 사 (아세테이트포함)	%
877	쌀 (현미, 백미)	kg	717-2	합 성 섬 유 사	%
314. 담배제조업			718	생 사	kg
516	잎 담 배	%	726	화 학 펄 프	%
738	은 박 지	%	752	카 프 로 락 담	%
740	휠 타	%	768	폴 리 에 치 렌 수 지	kg
869	권 련 지	kg	770	폴 리 프 로 피 렌 수 지	kg
중분류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771	합 성 섬 유 (튼, 실, 화이버)	kg
321. 섬유제조업			772	재 생 섬 유 (SF면, 아세테이트섬유포함)	kg
508	원 면	%	774	AN 모 노 마	%
509	누 에 고 치 (잠견)	kg	775	에 치 렌 그 리 골	%
510	지 부 양 모	kg	776	D. M. T	%
511	세 척 양 모	kg	876	나 이 론 수 지	kg
512	아 마	kg	880	부 잠 사	kg
513	아 바 카	kg	881	견 방 사	kg
515	모 설	kg	882	어 망 사	kg
713	양 모 톱	kg	899	T. P. A	%
714	면 사	kg	322. 의복제조업		
715	소 모 사	kg	719	순 면 직 물	m <sup>2</sup>
716	방 모 사	kg	720	순 소 모 직 물	m <sup>2</sup>
			721	순 방 모 직 물	m <sup>2</sup>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22-1	재 생 섬 유 직 물 ( 아세 테이트포함 )	m <sup>2</sup>	521	원 목	m <sup>2</sup>
722-2	합 성 섬 유 직 물	m <sup>2</sup>	758	호 르 마 린	M <sup>2</sup>
723-1	혼 방 재 생 섬 유 직 물 ( 아세 테이트포함 )	m <sup>2</sup>	759	메 타 늘	M <sup>2</sup>
723-2	혼 방 합 성 섬 유 직 물	m <sup>2</sup>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723-3	혼 방 면 직 물	m <sup>2</sup>	727	각 재	m <sup>2</sup>
723-4	혼 방 모 직 물	m <sup>2</sup>	728	판 재	m <sup>2</sup>
723-5	혼 방 견 직 물	m <sup>2</sup>	729	합 판	m <sup>2</sup>
724	소 가 죽	m <sup>2</sup>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제조업		
875	순 본 견 직 물	m <sup>2</sup>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목피제품제조업			512	아 마	kg
520	원 피	매	514	갈 저	kg
724	소 가 죽	m <sup>2</sup>	521	원 목	m <sup>2</sup>
898	합 성 피 혁	m <sup>2</sup>	524	고 지	M <sup>2</sup>
324. 신발제조업			624	활 석 분	M <sup>2</sup>
724	소 가 죽	m <sup>2</sup>	702	밀 가 루	M <sup>2</sup>
898	합 성 피 혁	m <sup>2</sup>	714	면 사	kg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 제품제조업			725	쇄 목 펄 프	M <sup>2</sup>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726	화 학 펄 프	M <sup>2</sup>
			731	백 상 지	M <sup>2</sup>
			732	중 질 지	M <sup>2</sup>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33	크라프트지	%	618	석회석	%
735	박엽지	kg	741	황산	%
736	판지	%	742	염산	kg
737	골판지원지	%	743	카바이드	%
744	가성소다	%	744	가성소다	%
751	유산반토	kg	747	소다회	%
817	알미늄박	kg	748	암모니아	%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750	V. C. M	%
730	신문용지	%	752	카프로락담	%
731	백상지	%	753	염화카리	%
732	중질지	%	754	벤젠	kg
734	아트지	kg	755	톨루엔	kg
735	박엽지	kg	756	키시렌	kg
784	인쇄잉크	kg	758	호르마린	%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섬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59	메타놀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766	요소	kg
614	유황	%	870	에티렌	%
615	인광석	%	871	프로피렌	%
617	공업염	%	872	부타디엔	%
			873	싸이크로헥산	kg
			788	납사	kl
			789	코크스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92	생 석 회	%	763	지 방 산	%
		%	764	스 테 아 린 산	kg
<u>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u>			766	요 소	kg
706	설 탕	%	777	스 치 렌 모 노 마	kg
707	소 기 림 (우지)	%	779	초 안	kg
709	아 마 인 유	kl	780	향 료	kg
710	주 정 (에타놀)	kl	781	아 연 화	kg
738	은 박 지	%	782	산 화 티 탄	kg
741	황 산	%	790	유 리 병	천 개
742	염 산	kg	872	부 타 티 엔	%
744	가 성 소 다	%			
745	규 산 소 다	kg	<u>353. 석유정제업</u>		
747	소 다 회	%	603	원 유	kl
748	암 모 니 아	%			
754	벤 젠	kg	<u>354. 기타 석유 및 석탄 제품제조업</u>		
755	톨 루 엔	kg	601	무 연 탄	%
756	키 시 렌	kg	602	원 료 탄 (유연탄)	%
757	알 킬 벤 젠	kg			
759	메 타 놀	%	<u>355. 고무제품제조업</u>		
760	무 스포 탈 산	kg	523	천 연 (생) 고 무	%
761	염 료	kg	714	면 사 (면사포)	kg
762	그 리 세 린	kg	773	합 성 고 무	%
			781	아 연 화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82	산 화 티 탄	kg	618	석 회 석	㎏
783	카 본 블 랙	kg	620	장 석	㎏
883	타 이 어 코 드 사	㎏	621	규 사 및 규 석	㎏
884	재 생 고 무	㎏	625	형 석	㎏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28	백 운 석	㎏
765	가소제 (DOP, DBP 등)	kg	629	파 유 리	㎏
767	P. V. C 수 지	kg	746	유산소오다 (망초)	㎏
768	폴 리 에 치 렌 수 지	kg	747	소 다 회	㎏
769	폴 리 스티 렌 수 지	kg	36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770	폴 리 프로 피 렌 수 지	kg	612	점 토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13	모 래	m <sup>3</sup>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618	석 회 석	㎏
612	점 토	㎏	619	고 령 토	㎏
619	고 령 토	㎏	620	장 석	㎏
620	장 석	㎏	621	규 사 및 규 석	㎏
621	규 사 및 규 석	㎏	622	납 석	㎏
627	석 고	㎏	625	형 석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626	석 면	㎏
616	초 석	㎏	627	석 고	㎏
			726	화 학 필 프	㎏
			739	크 라 프 트 지 대	천 매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91	시멘트	%	800	주물	%
797-1	붕강	%	801	선재	%
797-2	철근	%	808	아연괴	kg
802	철선	%	372. 비철금속산업		
887	자갈	m <sup>3</sup>	605	동광석	%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606	연광석	%
371. 철강산업			607	아연광석	%
602	원료탄(코크스제조용)	%	610	동실	kg
604	철광석	%	611	알미늄고철	kg
608	망강광석	%	618	석회석	%
609	고철	%	789	코크스	%
618	석회석	%	806	전기동	kg
789	코크스	%	807	아연괴	kg
793	선철	%	808	아연괴	kg
794	강피	%	809	알미늄피	kg
795-1	강반성품(스라브, 비래트, 브롬)	%	874	아루미나	kg
795-2	열연대강( 핫코일)	%	888	아연설	kg
797-1	붕강	%	889	아연설	kg
798	중후판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799	박판	%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609	고철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 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 위
610	동 설	kg	878	합 금 철	kg
611	알 미 늄 고 철	kg	879	알 미 늄 비 래 트	kg
789	코 크 스	Mt	890	석 도 철 판	kg
793	선 철	Mt			kg
796	형 강	Mt	382. 기계 제조업		
797-1	봉 강	Mt	609	고 철	
798	중 후 판	Mt	610	동 설	Mt
799	박 판	Mt	789	코 크 스	kg
800	주 물	Mt	793	선 철	Mt
801	선재 (와이어로프)	Mt	796	형 강	Mt
802	철 선	Mt	797-1	봉 강	Mt
803	강 판	Mt	798	중 후 판	Mt
804	특 수 강	Mt	799	박 판	Mt
806	전 기 동	kg	800	주 물	Mt
807	연 괴	kg	801	선재 (와이어로프)	Mt
808	아 연 괴	kg	802	철 선	Mt
809	알 미 늄 괴	kg	803	강 판	Mt
810	황 동 (놋쇠, 진유)	kg	804	특 수 강	Mt
811	알 미 늄 판	kg	806	전 기 동	kg
815	스 테 인 레 스 판	kg	809	알 미 늄 괴	kg
816	동 선	kg	810	황 동 (놋쇠, 진유)	kg
819	용 접 봉	kg	811	알 미 늄 판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12	동 판	kg	808	아 연 괴	kg
815	스 테 인 레 스 판	kg	809	알 미 늄 괴	kg
816	동 선	kg	810	황동 (놋쇠, 진유)	kg
819	용 접 봉	kg	811	알 미 늄 판	kg
891	전 동 기	HP	812	동 판	kg
892	변 속 기	개	813	인 청 동 판	kg
893	내 연 기 관	HP	814	규 소 강 판	㎥
894	체 인	kg	815	스 텐 레 스 판	kg
895	베 아 링	kg	816	동 선	kg
896	유 압 기 기	대	817	알 미 늄 박	kg
897	주 강	㎥	820	트 랜 지 스 터	천 개
<u>383.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u>			821	집 적 회 로	개
523	천 연 (생) 고 무	㎥	822	브 라 운 관	개
767	P . V . C 수 지	kg	823	P . C . B 원 판	매
773	합 성 고 무	㎥	824	자 석 ( 마그네트 )	천 개
798	중 후 판	㎥	<u>384. 운수장비제조업</u>		
799	박 판	㎥	796	형 강	㎥
802	철 선	㎥	797-1	봉 강	㎥
804	특 수 강	㎥	798	중 후 판	㎥
806	전 기 동	kg	799	박 판	㎥
807	연 괴	kg	800	주 물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02	철 선	㎏	767	P. V. C 수 지	kg
803	강 관	㎏	802	철 선	㎏
805	대 강	㎏	803	강 관	㎏
809	알미늄 피	kg	810	황 동	kg
819	용접 봉	kg	815	스텐레스관	kg
825	트랜스미션	개			
826	자동차엔진	대		대분류 4. 전기업	
885	타이어	본			
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 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				※ <연료 및 전력>	
810	황 동	kg	901	무연탄 및 원료탄	㎏
815	스텐레스관	kg	902	경유 및 중유	kl
			903	방카 C 유	kl
			904	전 력	천KWH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526	인 모	kg			
623	흑 연	kg			
717-1	재생섬유사 (반합성섬유사포함)	㎏			
717-2	합성섬유사	㎏			
722-1	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직물포함)	m <sup>2</sup>			
722-2	합성섬유직물	m <sup>2</sup>			

## 부록 1. 주요단위해설

1) ppm : 용액 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데니어임.

3) 'S (번수·番數) : 건사 1 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 840 야드는 1 'S면사의 길이 )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 560 야드는 1 'S소모사의 길이 )

$$(3) 4,3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 256 야드는 1 'S방모사의 길이 )

소모사는 영국식으로 560 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 번수라 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 / 32 S, 쌍사(雙絲)의 경우는 2 / 32 'S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淸紡機), 연사기(撚絲機) 등 스피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링” 정방기는 매일 16 시간 가동으로 20 번수를 0.5 파운드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율,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4 파

운드로 생산함.

- 5) D / W ( Dead Weight )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 6) G / T ( Gross Tonnage )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길이×높이의  $f^3$ , 100  $f^3$  를 1 G / T으로 한다.
- 7) 노트 ( Knot ) : 배가 1시간에 1해리 ( 1,853 m ) 를 달리는 속력
- 8) S / F  $\frac{1}{8}$  ( Square Feet  $\frac{1}{8}$  inch )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eet × 1 feet ×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9 m^3$ 이다.

[ 주 ] 1.1 才 ..... 1 처 × 1 처 × 12 처

2.1 石 ..... 180 L

3.1 斤 ..... 1.3 Lbs

4.1 實 ..... 8.2 Lbs

5.1 ..... 400 Lbs

6.1 坪 ..... 3.3  $m^2$

7.1 木材 ..... 3 分板 1 평은 9 才

4 分板 1 평은 12 才

5 分板 1 평은 15 才

9) R / T ( 냉동톤 ) : 1 R / T = 12,000 BTU / H

1 BTU / H : 1 pound 의 물을 1°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10) T / H : 물 1 Ton 을 1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열량

11) L.D.T ( Light Displacement Tonnage ) :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박 자체의 무게, 즉 중량톤을 말한다.

부록 2 . 도 량 형

<표 1> 길 이

단 위	mm	cm	m	km	in	ft
1 mm	□	0.1	0.001	(0.1) <sup>8</sup>	0.03937	0.00328
1 cm	10	□	0.01	(0.1) <sup>5</sup>	0.3937	0.0328
1 m	1,000	100	□	(0.1) <sup>3</sup>	39.37	3.2808
1 km	10 <sup>6</sup>	10 <sup>5</sup>	1000	□	39,370	3280.8
1 in	25.4	2.54	0.0254	0.000025	□	0.0833
1 ft	304.8	30.48	0.3048	0.000304	12	□
1 yd	914.4	91.44	0.9144	0.00091	36	3
1 mile	-	160930	1609.3	1.6093	63360	5280
1 尺 (자)	303.03	30.303	0.303	0.00030	11.93	0.9932
1 間 (간)	1818.2	181.82	1.818	0.0182	71.582	5.965
1 町 (정)	10909.1	10909.1	109.091	0.1090	4294.9	357.91
1 里 (리)	-	-	3927.27	3.927	154619	12885
1 寸 (치)	30.303	3.0303	0.0303	0.00003	1.1930	0.0994

# 환 산 표

yd	mile	尺	間	町	里	寸
0.00109	0.000006	0.0033	0.00055	0.000009	-	0.033
0.0109	0.000006	0.033	0.005	0.00009	-	0.33
1.0936	0.00062	3.3	0.55	0.009	0.00025	33
1093.6	0.62137	3300	550	9	0.25	33000
0.0278	0.000015	0.0838	0.0140	0.0002	-	0.8382
0.3333	0.00019	1.0058	0.1676	0.0028	0.00008	10.058
□	0.00057	3.0175	0.5029	0.0083	0.0002	30.175
1760	□	5310.8	885.12	14.752	0.4098	53108
0.3314	0.0002	□	0.1667	0.0028	0.00008	10
1.9884	0.011	6	□	0.0167	0.0005	60
119.304	0.0678	360	60	□	0.0278	3600
4295	2.4403	12960	2160	36	□	129600
0.0331	0.00002	0.1	0.01667	0.00028	0.000008	□

< 표 2 > 부 피

단 위	cm <sup>3</sup>	m <sup>3</sup>	in <sup>3</sup>	ft <sup>3</sup>	yd <sup>3</sup>
1 cm <sup>3</sup>	□	(0.1) <sup>6</sup>	0.06103	0.00003	0.00001
1 m <sup>3</sup>	10 <sup>6</sup>	□	61027	35.3147	1.3080
1 in <sup>3</sup>	16.3872	0.000016	□	0.00057	0.00002
1 ft <sup>3</sup>	28316.8	0.02831	1728	□	0.03703
1 yd <sup>3</sup>	764511	0.76451	46656	27	□
1 gal (美)	3785.43	0.00378	231	0.1337	0.00495
1 gal (英)	4545.9	0.00455	277.42	0.1605	0.00595
1 ℓ	1000	0.001	61.027	0.03531	0.0013
1 合 (香)	180.39	0.00018	11.0041	0.0066	0.00023
1 升 (되)	1803.9	0.0018	110.041	0.0637	0.0023
1 斗 (말)	18039	0.01803	1100.41	0.6371	0.0236
1 石 (섬)	180391	0.1803	11004.1	6.3704	0.2359

gal (美)	gal (英)	ℓ	合	升	斗	石
0.00026	0.00022	0.001	0.00554	0.00055	0.00005	0.000005
264.186	219.97	1000	5543.52	554.325	55.435	5.5435
0.00432	0.0036	0.01638	0.0908	0.00908	0.00091	0.00009
7.4805	6.228	28.3169	156.966	15.6966	1.5697	0.15697
201.974	168.18	764.511	4238.09	423.81	42.381	4.2381
□	0.8327	3.7854	20.983	2.0983	0.2098	0.02098
1.2009	□	4.5459	25.206	2.5206	0.2521	0.02521
0.2642	0.21997	□	5.5435	0.5544	0.0554	0.00554
0.04765	0.03968	0.18039	□	0.1	0.01	0.0001
0.4765	0.3968	1.8039	10	□	0.1	0.001
4.7657	3.6981	18.039	100	10	□	0.1
47.6567	39.681	180.39	1000	100	10	□

〈표 3〉 무게

단 위	g	kg	t (噸)	L / B	O Z
1 g	□	0.001	(0.1) <sup>6</sup>	0.002204	0.03527
1 kg	1000	□	0.001	2.20459	35.273
1 t (M/T)	10 <sup>6</sup>	1000	□	2204.59	35273
1 L/B	453.592	0.45359	0.00045	□	16
1 OZ	28.8495	0.02835	0.000028	0.0625	□
1 S/T (미톤)	907200	907.2	0.9072	2000	32000
1 L/T (영톤)	1016000	1016	1.016	2240	35840
1 gr	10.06479	0.00006	-	0.00014	0.00228
1 匁 (돈)	3.75	0.00375	0.000004	0.00827	0.1323
1 (근)	600	0.6	0.0006	1.3228	21.1647
1 貫 (관)	3750	3.75	0.00375	8.2672	132.28

S / T	L / T	gr	刃	斤	貫
0.000011	0.000098	15.432	0.2667	0.00166	0.000266
0.001102	0.000984	15432	266.67	1.6666	0.2666
1.1022	0.9841	-	266670	1666.6	266.66
0.0005	0.000446	7000	120.96	0.756	0.12096
0.000031	0.000028	437.4	7.56	0.0473	0.00756
[1]	0.89286	-	293919	1512	241.92
1.12	[1]	-	262420	1693.4	270.95
-	-	[1]	0.01728	0.00108	0.000017
0.0000041	0.0000037	57.872	[1]	0.00625	0.001
0.00066	0.00059	9259.56	160	[1]	0.16
0.00413	0.00369	57872	1000	6.25	[1]

< 표 4 > 넓 이

단 위	m <sup>2</sup>	cm <sup>2</sup>	m <sup>2</sup>	km <sup>2</sup>	in <sup>2</sup>	ft <sup>2</sup>	yd <sup>2</sup>
1 m <sup>2</sup>	□	0.01	(0.1) <sup>6</sup>	(0.0) <sup>12</sup>	0.00155	0.0001	0.000001
1 cm <sup>2</sup>	100	□	(0.1) <sup>4</sup>	(0.1) <sup>10</sup>	0.1550	0.0011	0.00012
1 m <sup>2</sup>	10 <sup>6</sup>	10 <sup>4</sup>	□	(0.1) <sup>6</sup>	1549.99	10.764	1.1958
1 km <sup>2</sup>	10 <sup>12</sup>	10 <sup>10</sup>	10 <sup>6</sup>	□	(39370) <sup>2</sup>	(3280) <sup>2</sup>	(1090) <sup>2</sup>
1 in <sup>2</sup>	645.16	6.4516	0.00065	-	□	0.00694	0.00077
1 ft <sup>2</sup>	92903.04	929.03	0.0929	-	144	□	0.1111
1 yd <sup>2</sup>	-	8359.44	0.8361	-	1296	9	□
1 mile <sup>2</sup>	-	-	-	2.5899	(63360) <sup>2</sup>	(5280) <sup>2</sup>	(1760)
1 a	10 <sup>8</sup>	10 <sup>6</sup>	100	0.0001	155001.7	1076.4	119.58
1 ha	10 <sup>10</sup>	10 <sup>8</sup>	10 <sup>4</sup>	0.01	15500160	107640	11958
1 acre	-	-	4046.8	0.0040	6274735	43560	4840
1 坪	-	-	3.3058	0.000003	5125.58	35.583	3.9537
1 段步	-	-	991.74	0.00099	1537500	10674.9	1186.1
1 町步	-	-	9917.4	0.0099	15375000	106749	11861
1 平方尺	-	918.2	0.09182	-	142.35	0.9884	0.1098

mile <sup>2</sup>	a	ha	acre	坪	段 步	町 步	平方尺
-	(0.1) <sup>8</sup>	(0.1) <sup>10</sup>	-	-	-	-	0.00001
-	(0.1) <sup>6</sup>	(0.1) <sup>8</sup>	-	0.00003	-	-	0.0011
-	0.01	0.0001	0.000247	0.3025	0.001	0.0001	10.89
0.3861	10000	100	247.114	302500	1008.3	100.83	108900000
-	0.000006	-	-	0.00019	-	-	0.0070
-	0.0009	0.000009	0.000022	0.0281	0.00009	0.000009	1.0117
-	0.00836	0.00008	0.00021	0.2529	0.00084	0.00008	9.1054
□	25898.46	258.98	640	-	-	78347.597	-
0.000039	□	0.01	0.0247	30.25	0.1008	0.01008	1089
0.0039	100	□	2.471	3025	10.183	1.008	108900
0.00156	40.468	0.40468	□	1224.2	4.0806	0.4081	44071.2
-	0.0331	0.00033	0.00081	□	0.0033	0.00033	36
0.00004	9.9174	0.09917	0.2451	300	□	0.1	10800
0.0004	99.174	0.9917	2.4506	3000	10	□	108000
-	0.00091	0.00009	-	0.0278	0.00009	0.000009	□

29-2

# 鑛工業 動態調查 指針

(市・道 調査 擔當者 用)

1988.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 차 례

I. 조 사 개 요 .....	3
II. 조사표 기입 요령 .....	9
III. 조사표 내검 및 제출 .....	27
IV. 조사대상사업체 관리 .....	28
V.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30
VI.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원재료 분류표 .....	44
<부록> : 도량형 환산표 .....	54

# I. 조 사 개 요

## 1. 왜 조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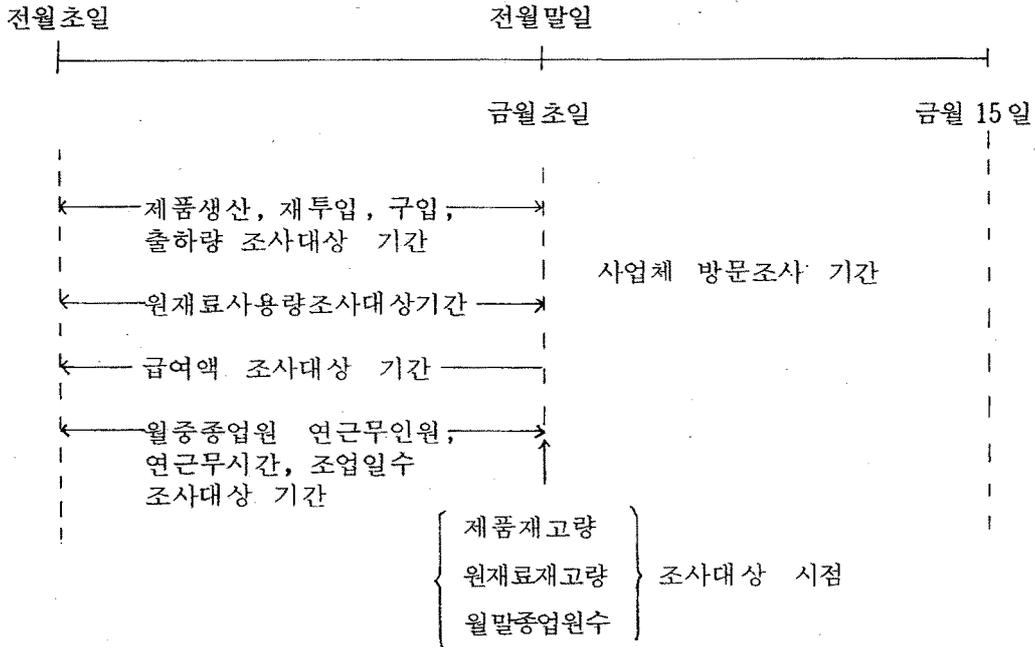
- 경기동향분석 및 전망 지표 작성
  - 지수 ( index ) 편제
    - 산업생산지수 ( 전국 및 시·도별 )
    - 생산자 출하지수 ( 전국 및 시·도별 )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전국 및 시·도별 )
    - 생산자 제품 재고율지수
    - 고용 및 임금지수
    - 원재료 소비·재고지수
  - 실적편제
    - 주요제품 생산, 출하, 재고실적
- 주요 관련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기초통계 제공
  - GNP 통계 ..... 한국은행
  - 노동생산성 통계 ..... 한국생산성본부
  - 기타 주요물자 수급 ..... 각부처, 연구기관, 기업체 관련 실적 및 전망통계

## 2. 조사의 법적근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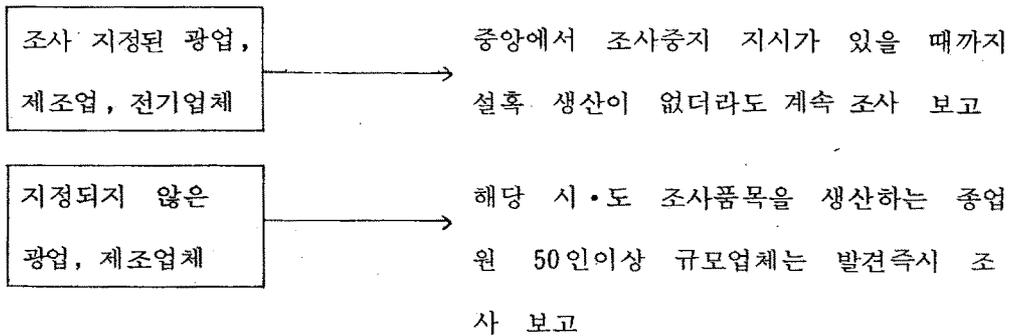
- 통계법 제 3 조 ( 통계작성의 승인 )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 ( 통계작성의 승인 ) 에 의한 정부지정통계 ( 111 - 11 - 12 )



5. 어느때를 기준으로 언제조사 하는가?



6. 어떤 사업체를 조사하는가?



※ 어떤 사업체가 조사 지정 되었는가?

- 전국 또는 시·도별로 광공업부문의 생산관련 동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생산품목을 통털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이 되도록 주요품목을 선정할 후, 이들 주요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중 일정규모(종업원 또는 출하액 기준으로) 이상인 업체는 모두 조사하고, 나머지 영세업체는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도록 지정 (주로 종업원 10인 이상 약 19,500개 업체중 9,100업체를 지정)

7. 어떤 품목을 조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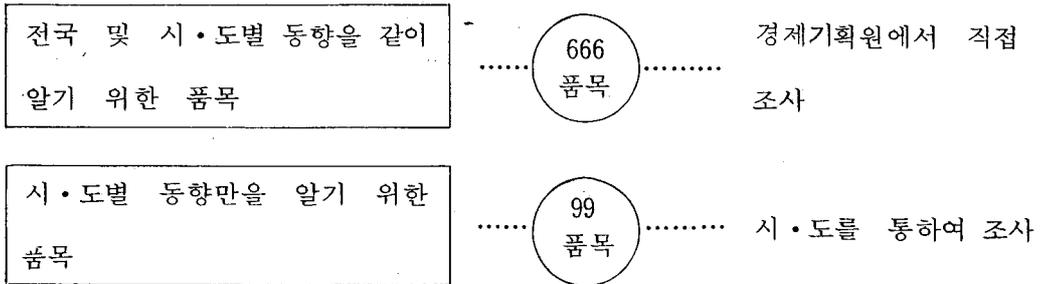
조사지정된 품목 .....> 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생산되지 않더라도 조사지정된 품목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속조사 보고

지정되지 않은 품목 .....> 조사할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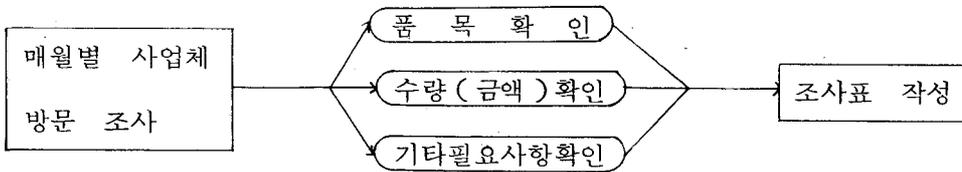
※ 어떤 품목이 조사지정 되었는가?

- 전국 또는 시·도별로 총생산액의 1/10,00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중 경기동향분석을 위하여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8. 어떤 체계로 조사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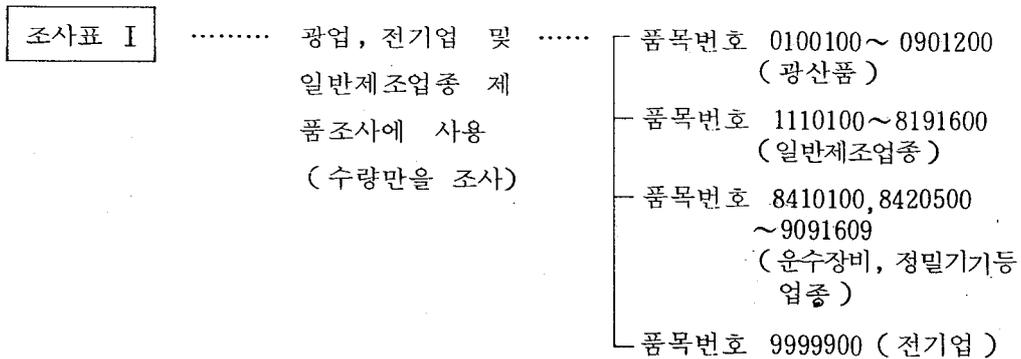
9. 어떻게 조사하는가?



※ 왜 반복 확인이 필요한가?

- 단기간의 경기동향분석이나 전망 또는 산업생산 성장률 추계에는 1~2%의 오차라도 큰 영향을 주게되며, 오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반복 확인하는 것임.

10. 어떤 조사표를 사용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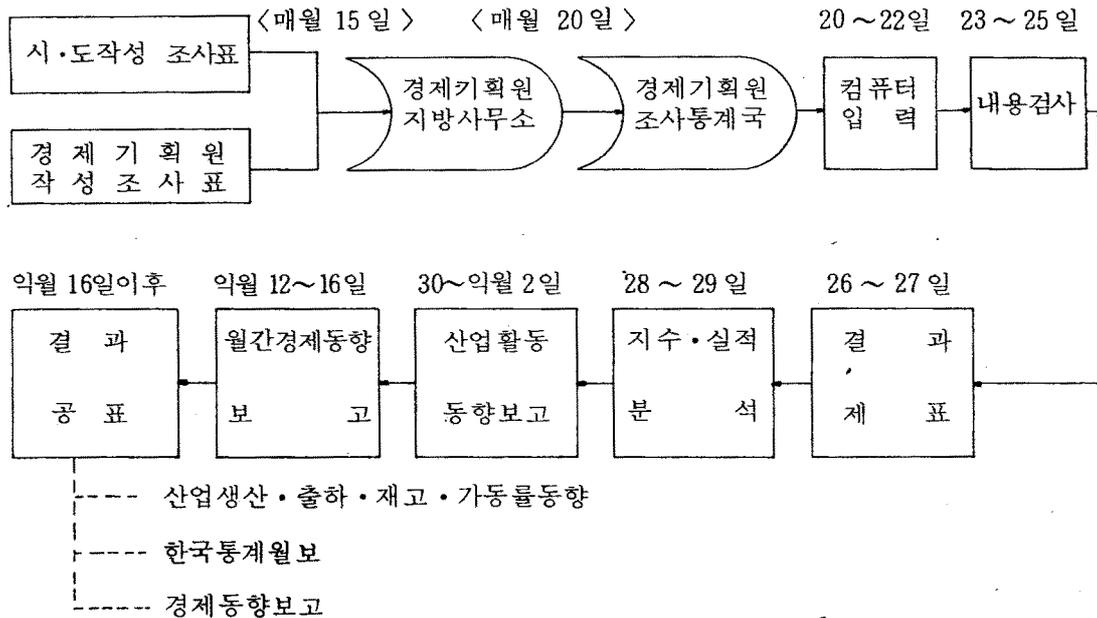
**조사표 II** ..... 기계류, 전기전자 ..... 품목번호 8210100~8391509  
 제품 조사에  
 사용(수량과 금  
 액을 병행조사)

**조사표 III** ..... 제조기간이 오래 ..... 품목번호 8410200~8420400  
 걸리는 제품조사 (선박, 철도차량)  
 에 사용(공정진  
 척률에 따라 수  
 량으로 환산조사)

※ 조사표를 잘못 사용하면?

- 조사항목 배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산처리상 큰 혼란을 초래함.

**11. 조사표집계 및 결과 공표는 어떻게 하는가?**



## Ⅱ. 조사표 기입 요령

( 198 □년 □□월분 )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사업체		
	—	본사		

※ 매월15일까지 제출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1. 대 규모	1. 500명 이상 2. 300 ~ 499명 3. 100 ~ 299명	1. 전 입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2. 중소기업	4. 99명 이하	4. 사업체 분리

### 1. 사업체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년, 월분

( 198 [8]년 [0:9]월분 ) ..... '88.9월분 자료 ..... 「월」은 01 ~ 09,  
라는 뜻 10 ~ 12로 기재.

나. 자료구분

①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

.....사업체 사정으로 ..... 월말까지 반드시  
완전한 자료가 확정자료 (적색으로  
아니고 추정치 표시)를 제출해  
자료를 제출한 야 함.  
다는 뜻

다.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고유번호는 7자리 숫자로 중앙에서 지정하였기 때문에 임의  
변경 불가

※ 사업체 고유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 과거자료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삭제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라. 행정구역번호

「한국행정구역분류부호」(경제기획원 고시)의 시·도, 구시군, 동읍면부호를 기입(다만 특별시, 직할시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시부호(○)을 생략하여 6단위로 기입)

※ 행정구역 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 A도에서의 실적이 B도의 실적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

마. 산업분류번호

사업체 명부상에 지정된 산업분류부호를 기입.

바. 조사구번호

1	1	A	-		
---	---	---	---	--	--

와 같이 「시·도」행정구역부호 다음에 A를 추가 기입하고 이후는 공란으로 둠.

사. 사업체명 및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질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아. 본사명 및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 관련사항에 대하여 본사 조화가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자.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는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기 지정하였으므로 임의변경 불가

차. 종업원 규모

매월말 종업원수(임시 및 일고포함)를 기준으로 해당규모에 ○표시

카. 유고사항

┌ 1. 전 입 :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타 시·도에서 조사

하던 업체가 새로 조사대상으로 이전되어온 경우 또는 사업체가 신설된 경우에 조사 첫월에만 표시

2. 휴업 : 사업체가 휴·폐업되었으나 증양에서 조사증지 지시가 없어 계속 조사해야 하는 것

3. 사업체흡수 : 타공장 또는 사업체를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4. 사업체분리 : 1개사업체가 2개이상 사업체로 분리되어 공장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2. 「제품생산·출하재고」사항(조사표 I, II)

I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 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단 위	생 산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구		입				동일공장내재투입 (자가소비)								
외부(수입포함)		동일기업내타공장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출				하				과부족조정						
외부		판매		동일기업내타공장										
국내시판		수출		출하및기타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 말 재 고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만	만				

※ 여기에 기재되는 품목은 조사대상품목으로서 반드시 당해 사업체에서 생산중이거나 일시 생산중단품목인 경우에만 조사기입하여야 함. 전혀 생산이 없는 품목은 설혹 구입이 있더라도 조사될 성질이 아님

가. 품목부호, 품목명

품목부호가 빠른 순서로 정해진 부호 및 명칭을 기입하되 품목조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됨.

나. 유고사항

품목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시 다음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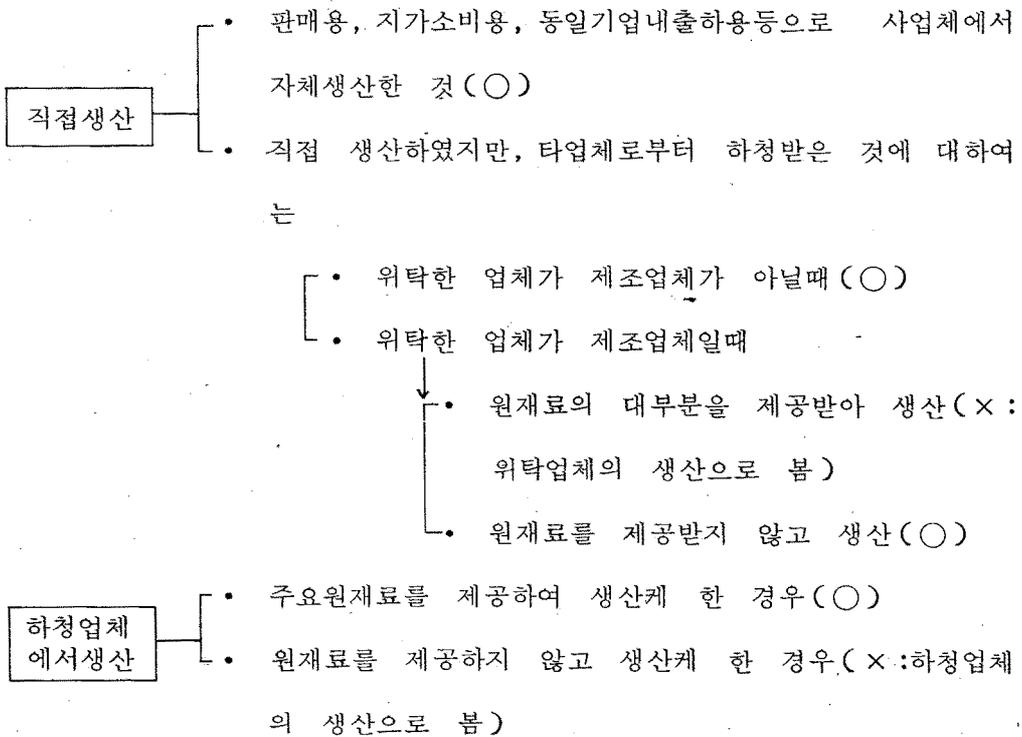
- 품목신규 생산..... 1 → 기존에 없던 조사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 (전수조사업체만 해당)
- 품목생산 중단..... 2 → 기존에 조사중이던 품목생산이 중단된 경우
- 품목분류착오로 제외 ... 3 → 조사중이던 품목이 분류착오로 밝혀진 경우
- 품목조사누락 ..... 4 → 이미 생산되고 있었으나 착오로 조사누락 시킨 경우 (생산시점부터 소급조사보고 요 함)

다. 단 위

반드시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함.

라. 생 산

다음 예중 0 표시된 경우만을 해당사업체의 생산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여야 함.



마. 구 입

※ 반드시 해당사업체에서 현재 생산중이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지정품목의 구입만을 조사

※ 조사지정제품의 원재료나 연료 또는 부품인 경우에는 원재료란에

기입할 수는 있으나 제품구입란에 기입해서는 안됨.

- (1) 외부구입(수입분 포함) ————
- 판매목적으로 국내 타업체로부터 구입한 것
  - 판매목적으로 국내 타업체로부터 유통한 것
  - 판매목적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하청 생산케 한 것
  - 판매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것
  - 출고된 제품중 반품된 것으로서 단순 수리·가공후 재판매될 것

- (2)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 ————
- 같은 기업내에 속하는 타공장에서 인수받은 것으로서 판매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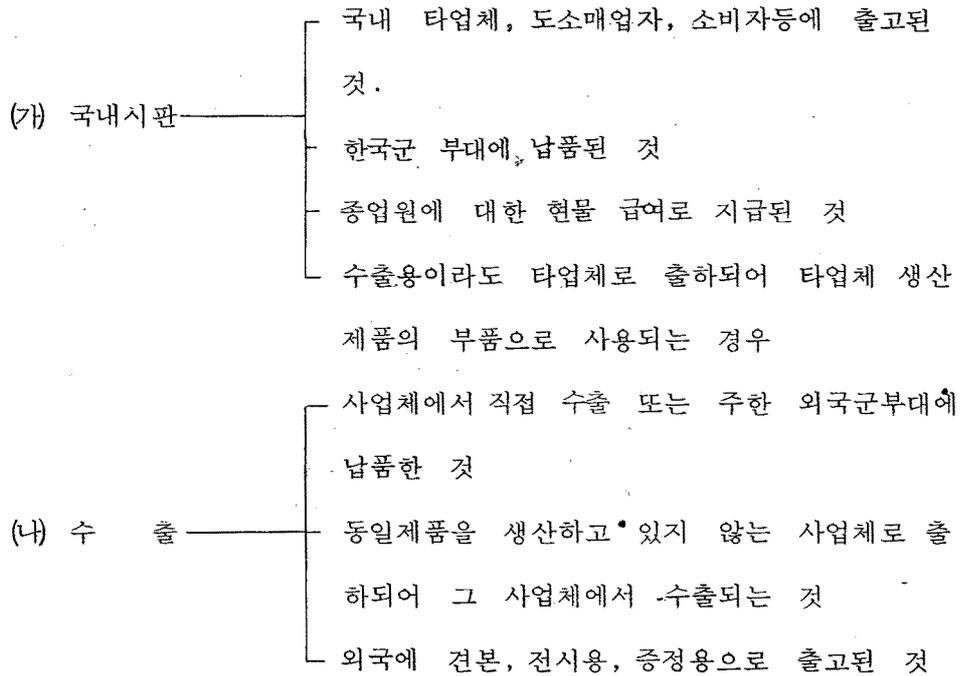
※ 조사표 II에서는 외부구입과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분을 모두 합하여 조사기입

바. 동일 공장내 재투입(자가소비)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당해 사업체내의 공정에 원재료, 연료, 부품등으로 재투입된 것
- 다른 제품의 가공을 위해 촉매제, 환원제등으로 소비된 것
- 다른 제품의 하청 생산을 위해 하청공장에 원재료로서 제공된 것

사. 출 하

(1) 외부판매



(2)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

-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분
- 국내에 견본, 증정용등으로 출하된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출고된 것
- 타업체로부터 유통한 량의 변제

※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는 이송받은 업체에서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이송한 업체에서 국내시판 또는 수출(수출용)로 계상하여야 함.

※ 염색, 도장 또는 단순 추가가공을 위하여 타업체로 일시 출하되는 것은 출하가 아니고 판매될 때까지 재고로 계상하여야 함.

아. 과부족 조정

실제 재고조사 또는 기타 사유로 기 보고된 제품 재고량에 변동이 생겨 조정해야할 경우, 재고증가요인은 「+」, 재고감소요인은 「-」로 첫칸에 기입한 후 수량을 조사 기입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 사유로 멸실 또는 분실된 량(-)
- 재고로 보관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한 량(-)
- 실지 재고조사 결과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재고증가(+)
- 실지 재고조사 결과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재고감소(-)

※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부분품등이 아닌 경우의 과부족 수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므로 과부족 조정란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제품재고에 가감 반영하도록 하였음.

자. 월말재고

- 아직 출하되지 않은 지정제품의 실제 재고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것은 재고에 계상하지 않음.

※ 규격·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류( 조사표 II사용제품)은 생산, 출하, 재고에 대하여는 금액(현재 판매가격 또는 판매예정가격)조사를 병행토록 하고 있음.

※ 전월말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 금 월 금월말  
재고량 + 생산량 + 구입량 - 재투입량 - 출하량 - 과부족조정량 = 재고량

가. 당월 수주량

확실한 계약에 의거 국내(국내용) 또는 외국(수출용)에서 주문받은 량

나. 당월 진척량

당월에 진행된 공정량을 말하며 「전월말 수주잔량×당월진척률」로 계산하거나,

「총수주량×공정진척률누계-전월까지의 진척량누계」로 계산됨

다. 수주잔량

총수주량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차감한 량

라. 당월 완성품 인도량

공정진척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월에 인도한 완성선박 또는 철도 차량

※	전월말	+	당월	-	당월	=	당월말
	수주잔량		수주량		진척량		수주잔량



4.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사항

②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 번호	원재료및연료부호	원재료및연료명	유고 사항	단 위	구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국산1 수입2	백'십 만'만	천'백'십'일	백'십 만'만	천'백'십'일	
01											
02											
03											
04											
05											
06											
07											
08											
51	9'0'1'-0'0	무연탄·연료탄		%							
52	9'0'2'-0'0	경 유·중 유		kl							
53	9'0'3'-0'0	방 카 C 유		kl							
54	9'0'4'-0'0	전 력		천 KWH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정제품중 비중이 가장 큰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원재료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되 지정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분은 제외.

가. 원재료 및 연료부호

해당 원재료의 부호를 이 지침서 부록에서 찾아 기입.  
(단, 부호가 없을 경우 부호 생략)

나. 원재료 및 연료명

소비되는 원재료 및 연료의 명칭기입

다. 유고사항

「제품 생산, 출하, 재고」사항란과 같음.

라. 단 위

「지정원재료분류표」(부록)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

마. 구 분

- 소비 또는 재고 원재료가 국산이면「1」, 수입품이면 「2」를 기입
- 국산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란을 달리하여 기재

바. 월중사용량

조사대상기간중 대상사업체의 지정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소비된  
량(단, 연료, 전력은 비 지정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한 량도 모두  
포함)

사. 월말재고량

자체생산구입(수입분 포함)을 망라하여 보유재고량을 기입

5. 「고용, 급여 및 조업상황」란

③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월말종업원 수 (명)	월 중 종업원 연근무인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 시간수 (시간)	
		만천백십일	백십만천백십일	천백십만천백십일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 · 기 타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 · 기 타				
	계				
전월말상시 종업원	월 중 상 시 종업원입직자	월 중 상 시 종업원이직자	금 월 말 상시종업원	월 중 조업일수	월 중 1 일 평균 조업 시간
□□□□ 명	□□□□ 명	□□□□ 명	□□□□ 명	□□ 일	□□□□ 시간 □□□□ 교대
		급 여 총 액	정 액 급 여	특별급여(상여금등)	
		천백십억억천백십만천	천백십억억천백십만천	백십억천백십만천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 · 기 타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 · 기 타				
	계				

※ 지정품목 생산라인 또는 사무실의 종업원 뿐만 아니라 비지정제품생산부문의 종사자 및 관리, 보조, 기술, 전문, 서기직 수행자들을 모두 포함하되, 하청업체 종업원이나 타공장종업원은 포함하지 않음.

※ 상시종업원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지난 3개월 통산 45일 이상 계속 고용된 자.

임시·알고 • 매일 매일 또는 필요시 수시 고용하는 자.

가. 월말 종업원수

- 해당 월 말일 현재의 종업원
- 말일 현재로 파악이 곤란한 경우 가장 가까운 급여일 기준 종업원

※ 휴업등으로 조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 급여가 계속 지급되거나, 2개월까지의 일시 휴업일 경우는 종업원수를 계속 조사기입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종업원수는 0으로 기입.

나.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는 모두 포함하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급료지급불문)는 제외
- 매일별 인원수를 월간 합계하여 기입.

다. 월중 종업원 연 근무시간수

(예) 종업원 10명이 변동없이 25일간 하루 10시간씩 계속 근무한 경우

- 연근무인원수 : 10명 × 25(일) = 250명
- 연근무시간수 : 10(명) × 25(일) × 10시간 = 2,500시간

※ 휴업, 파업등으로 생산직 종업원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근무인원수 및 시간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사무직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사무직만 포함 계산.

라. 전월말 상시 종업원

전월말 현재의 상용 종업원수

마. 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 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입직 : 신규채용, 전입등
- 이직 : 자진퇴사, 사망, 해고, 전출등

바. 금월말 상시종업원

- 「금월말 상시종업원」=「전월말 상시종업원」+「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월말 종업원수」란의 「상시 종업원계」와 일치하여야 함.

사. 월중 조업일수

-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생산직 종업원 일부만 조업한 경우 또는 사업체 사정에 의해 단축조업(1시간 이상)을 한 경우도 포함.
-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한 경우등도 조업일수는 1일로 함.

아. 월중 1일 평균조업시간

- 1일 평균조업시간 =  $\frac{\text{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text{월중 조업일수}}$
- 교대작업.....몇 교대 작업인지를 기입

자.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

- 해당월중 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를 구분 기입
- 정액급여: 매월 정례적 지급 급여(매월 지급하는 수당 포함)
- 특별급여: 각종 상여금, 임금인상 소급지급분, 연차수당, 임시수당,
- 급여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 1개 사업체에서 2종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고용  
급여사항은 사업체의 주산업이 속하는 조사표에만 기입.  
(분할기입, 양자 모두 기입 불가)

## 6. 증감내용

※ 「제품생산, 출하, 재고」, 「고용·급여·조업상황」란의 증감내용은 조사내용의 정확성 및 타당성 검토와 결과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것임. 특히 전월대비 증감폭이 다소 클 경우는 반드시 기입.

※ 전월비(%) =  $\frac{\text{금월생산(출하, 재고)량}}{\text{전월생산(출하, 재고)량}} \times 100 - 100$  (소숫점미만반올림)

###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1. 중점검토사항

- 사업체 고유번호는 정확히 기입되었나 …… 「사업체명부」와 대조
- 품목부호 단위는 정확한가 …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분류표」와 대조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사업체명부」와 대조
- 조업일수, 종업원수, 연근무시간수 등이 전월에 비해 증가(감소)하였는데도 생산이 감소(증가)한 경우 관련사항간에 의문은 없는가?
- 전월에 비해 생산, 출하, 재고가 크게 증감이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잠정치 자료인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 2. 수시확인사항

- 새로운 조사 지정품목이나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가?
- 조사중인 품목이 지침서의 포괄범위나 개념에 부합되는가?
- 사업체담당자(조사자, 응답자)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 3. 조사표 제출

-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
- 지정품목이 계절성을 띠고 있어 주문이 없거나 또는 휴업으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부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조사표에 기입한 후 생산, 출하, 재고량등을 “0”으로 기입
- 유고사업체라도 조사중지 등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조사표를 제출

## IV. 조사대상 사업체관리

### 1. 목 적

- 신규 및 휴·폐업등의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업체의 누락, 중복을 방지하고, 표본사업체를 적기에 보완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조사표 누락, 중복방지

### 2. 대상사업체

- 광공업동태 사업체 중 지역지수품목 생산사업체

### 3. 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변동사항을 대상으로 파악

### 4. 관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관리

### 5. 관리사항

- 조사지정 사업체의 변동사항
- 신규 및 전입·전출 사업체에 관한 사항 (후술 참조)
- 조사표 변동사항

### 6.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 → 각 시·도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지방사무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7. 관리현황서식

-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총괄)
- 사업체 관리현황보고서

## 8. 서식 작성 및 제출

- 동 서식을 매월 작성 5일까지 해당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지방사무소에 제출

### ※ ◎ 신규, 전입사업체 보고

- 신규창설(조사년도) 및 전입사업체 발굴
  - 해당시도 지정품목 생산업체중 월평균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체
  - 타시·도 전입업체중 해당시·도 지정품목업체
- 보고 및 서식작성요령
  - 7항 관리현황서식중 「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여백이나 별도 칸지에 첨부, 해당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지방사무소에 제출
  - 기입사항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월평균종업원수, 연간출하액(백만원) 월평균생산액(량), 전소재지(전입업체의 경우) 등

## V. 광공업동태조사지정품목분류표

### 대분류 2. 광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3. 금속광업, 29. 기타광업

#### 소분류 230. 금속광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0300409	금 광 석 (金 鑛 石)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금정량을 조사</li> <li>○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금함유 비율을 적용하여 조사</li> <li>※ 제련소에서 제련된 금괴는 제외한다.</li> </ul>
0300709	물 리 브 덴 광 석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공관재, 굴신재, 내열합금재, 페인트안료, 반도체, 전기로 등에 쓰이는 광석</li> <li>○ 물리브덴정광 90%로 환산조사</li> </ul>

#### 소분류 290. 기타광업

0900709	장 석 (長 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나 도자기의 주원료로 쓰이는 광석</li> <li>○ 정장석, 조장석, 회장석 등을 조사</li> </ul>
0901009	천 일 염 (天 日 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를 자연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켜 얻은 자연염을 조사</li> <li>※ 암염, 재제염은 제외</li> </ul>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소분류 311-312. 식료품제조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1120109	치즈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치즈와 가공치즈를 조사 (가공치즈...자연치즈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킨 것)</li> <li>※ 참고 치즈란 우유, 유제품등을 가공 우유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유정을 제거, 가열 가압 발효 숙성한 유제품</li> </ul>
1130209	냉동과실및간밤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보전 가능토록 급냉시킨 과실과 간밤을 조사</li> <li>※ 냉동채소는 제외</li> </ul>
1130309	냉동과즙원액 (冷凍果汁原液)	k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시킨 과일즙을 조사.</li> </ul>
1140609	가공해조류 (加工海藻類)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역, 다시마, 김등 해조류를 건조 염장, 훈제한 것을 조사</li> <li>※ 맛김은 제외</li> </ul>
1150209	유채유	k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채실에서 채취하여 정제한 식용유를 조사</li> </ul>
1150309	옥수수유	k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수수 배아에서 채취한 식용유를 조사</li> </ul>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1220309	분 말 인 삼 (粉末人蔘)	kg	○ 인삼을 건조하여 분쇄한 약재용, 식용 등을 조사 ※ 인삼차는 제외

소분류 313. 음료품제조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1320209	약 주	kl	○ 곡류를 발효한 주류를 여과한 주류를 조사
1340409	천 연 수 (天 然 水)	kl	○ 자연상태의 천연수를 용기에 담아놓은 것을 조사 ※ 향 및 당분을 첨가하여 만든 천연사이다는 사이다에서 조사
1340609	오 렌 지 원 액	kl	○ 오렌지의 과즙 또는 오렌지 향을 내는 화학원액을 조사 ※ 냉동한 오렌지과즙은 1130309 (냉동과즙원액)로 조사

소분류 314. 담배제조업

1400309	관 상 엽	kg	○ 연초의 줄기 또는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얇게 편것을 조사
---------	-------	----	--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2210109	남자용마춤양복	벌	○ 마춤정장복, 코트등을 조사(남자용)
2210209	여자용마춤양복	벌	○ 마춤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등)을 조사(여자용)
2221309	손 수 건	천매	○ 크기,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

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2310309	돼 지 가 죽	m <sup>2</sup>	○ 기름과 털을 제거 약품을 첨가하여 제혁공정을 거친 돼지가죽을 조사
2310409	파 충 류 가 죽	m <sup>2</sup>	○ 뱀, 뱀장어, 악어등 파충류의 가죽중 제혁공정을 거친 것을 조사
2330309	마 구 (馬 具)	백만원	○ 말의 사육 및 조련에 사용되어지는 말이불, 말고삐, 말안장, 말굽등 물품을 조사

소분류 324. 신발제조업

2400409	신 발 부 속 품	백만원	○ 가죽(인조가죽포함) 신발제조에 필요한 구성품을 조사 ※ 플라스틱, 고무제품등은 제외
---------	-----------	-----	---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포함)

소분류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3110709	침 목	본	○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제재하여 크레오소오트(방부제)를 주입한 철도침목, 교침목등을 조사  ※ 철근콘크리트침목 및 갱목은 제외
3190209	콜크및콜크제품	kg	○ 악세사리, 병마개, 건축흡음재, 메모판, 팩킹, 방진재등에 쓰이는 굴참나무 껍질을 분쇄, 접착하여 건조시킨 목제품을 조사

소분류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3201109	찬 장 개		○ 부엌용 미부착 찬장을 조사(싱크대 위에 설치되는 벽걸이 찬장 포함)
3201209	공공건물용목제가구 (共公建物用 木材家具)	백만원	○ 주로 공공대형건물에 사용되는 벤취(긴의자), 탁자, 교탁등을 조사
3201309	가정용내장가구	백만원	○ 탁자와 의자가 1세트로된 응접가구, 쇼파, 쇼파용탁자등을 조사
3201409	차량용내장가구	백만원	○ 차량에 내장하는 가구만 조사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4110809	화 선 지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명 서예지, 붓으로 그림이나 글을 쓰는 선지류의 하나로 수제지만을 조사</li> <li>○ 닥나무, 펄프등으로 만든것</li> </ul>
4120409	지 관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지등을 가공 방적사, 어망사, 농업용 필름, 화장지등을 감을 수 있게 만든 종이용기를 조사</li> </ul>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소분류 351. 산업용 화합물제조업

5111109	초 산 에 틸	℥	
5111209	옥 탄 울	℥	○ 일명 2에틸헥실알콜
5112009	싸이클로헥산	℥	○ 탄소가 주성분으로 함유된 유기용제 (有機溶劑)
5112109	사 카 린 원 료	℥	○ 일명, O . T . S . A
5113009	요 소 수 지	℥	○ 열경화성 플라스틱류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5113109	에폭시드수지	㎥	○ 열경화성 플라스틱류
5113209	실 리 콘 수 지	㎥	○ 일명, 규소수지
5113309	포화폴리에스터수지	㎥	○ 일명, 선형포화폴리에스터수지
5113509	포 르 말 린	㎥	○ 합판 접착등에 쓰이는 접착제의 일종
5113609	스 테 아 린 산	㎥	○ 유지류의 지방산에 액체산을 제거하여 만든 고체
5113709	구 연 산	㎥	○ 밀감등 과실류에서 짜냈거나 당류를 발효시켜 만든 물질
5120209	황 산	㎥	○ 일명 유산, 발열황산(올레오)도 포함
5120309	5 산화인 및 인산	㎥	○ 5산화인에 물을 혼합한 일련의 산을 조사
5120409	과 산 화 수 소	㎥	○ 종이, 섬유등의 표백제의 일종
5120509	탄 산 칼 습	㎥	○ 중질탄산칼습, 경질탄산칼습, 호분을 포함 조사
5120909	탄 산 칼 륨	㎥	○ 일명 탄산칼리
5121009	염 산	㎥	○ 약국에서 파는 염산은 의약품으로 조사
5121109	규 산 소 다	㎥	○ 일명 규산나트륨
5150309	유 안 비 료	㎥	○ 황산과 암모늄을 반응시켜 만든, 질소 질비료
5150409	유 기 질 비 료	㎥	○ 동식물의 유체 및 분뇨와 조미료 생 산시 그 부산물로 만든 비료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5160209	살 서 제	℥	○ 쥐약

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5290609	초 안 폭 약	℥	○ 공업용 폭약
5290709	방 수 액	℥	○ 건축자재용
5290809	고무노화방지제	℥	○ 고무에 섞어넣거나 표면에 칠하여 산 화를 방지케 하는 제재
5290909	가 황 촉 진 제	℥	

소분류 353. 석유정제업

5301209	조 경 유	kl	○ 코크스 제조시 발생하는 코크스 오븐 가스를 정제한 것을 조사
---------	-------	----	--

소분류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5400709	절 삭 유	kl	○ 철이나 스틸등의 재질을 자를때 칼날 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윤활제
---------	-------	----	--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5400809	아스팔트 투핑	㎡	○ 루핑원지에 아스팔트를 침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조사

소분류 355. 고무제품제조업

5590709	산업용고무제품	백만원	○ 각종기기용(전기, 전자, 기계등)
5590809	피 임 용 기 구	천타	○ 12개를 1타로 환산조사
5590909	고 무 장 갑	천켈레	○ 가정용, 산업용 모두 조사

소분류 356.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5601509	플 라 스틱 창문	㎡	○ 플라스틱제 창문, 틀
---------	-----------	---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소분류 361. 도기, 자기제조업

6100509	토 기 제 품	㎡	○ 각종 토기제품의 용기를 조사
6100609	싱 크	개	○ 도자기류 등으로 만든 싱크를 조사

소분류 36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6201009	장식용유리제품	천원	○ 유리를 깎아 가공하고 색상을 입혀 만든 모조장식품

소분류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920409	생 석 회	ㄲ	○ 석회석을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구운 광물제품을 조사
6930909	콘크리트문틀	개	○ 콘크리트로 만든 문틀, 창틀을 조사

중분류 37. 제 1차금속산업

소분류 372. 비철금속산업

7230909	아 연 판 , 띠	ㄲ	○ 아연의 제 2차 제품인 아연판, 띠만 조사
---------	-----------	---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작)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8111009	건 물 용 철 물	백만원	○ 건물에 부수적으로 부착되는 철물을 조사
8131109	구조용금속판제품	㎡	○ 사람이나 기계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판 및 철판형 제품

소분류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8221009	바 인 다	대	○ 벼나 보리등을 베고 묶는 수확용 농기계
8232009	전 단 기	대	○ 철판의 절단을 위해 절단날의 위치에 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절단하는 기계
8242509	동 력 쇼 벨	대	○ 지반을 굴착하고 동시에 운반차에 싣기 위한 기계
8242609	무 한 례 도	㎡	○ 산업중장비의 이동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부의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이와 맞물리도록 연결된 편을 조사.
8242709	스 핀 들	개	○ 방적기계에서 실을 감는 보빈부분의 강철로 만든 축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8242809	중 광	kg	○ 낫줄을 중광의 가운데 부분의 구멍으로 한가닥씩 끼워서 로비와 연결되어 개구를 하여 주는 부품
8242909	나 염 기	대	○ 실 또는 직물에 나염을 하는 기계
8243009	양조및증류용기계	대	○ 주정공장에서 알코올 증류 및 발효용으로 쓰이는 기계 ○ 증류기와 발효용기계를 각각으로 합산 조사
8243109	식물용착유기	대	○ 유압이나 스크류의 전진에 의한 압축력으로 참깨, 유채, 들깨등의 기름을 짜는 기계
8243209	콘크리트제품성형기	대	○ 콘크리트제품을 성형하는 기계
8243309	연탄제조기	대	○ 연탄을 찍는 기계만 조사

소분류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8310809	등 안 정 기	대	○ 각종 등에 내장되어 변압기능을 갖는 기기
8323909	인 터 폰	대	○ 실내 유선전달장치물
8324009	유선통신기기부품	백만원	○ 유선통신기기에 쓰이는 부품만 조사 ※ 무선통신기기에만 쓰이는 것은 제외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8331009	환 풍 기	대	
8391409	콘 센 트	천개	○ 전기배선기구
8391509	프 러 그	천개	○ 전기배선기구

소분류 384. 운수장비제조업

8410909	목 선	G/T	○ 목재로 만든 각종선박(어선등)
8420609	철 도 차 량 른	개	○ 열차의 바퀴를 조사
8420709	광 차 량		○ 광산에서 광석을 갱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동력이 없는 궤도차량

소분류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

8510409	치 과 기 공 품	백만원	○ 치과용시멘트, 인조치아등을 조사
8530609	큰시계용케이스	개	○ 탁상시계 및 벽시계용케이스만 조사
8540509	측 량 자	개	○ 길이측정에 사용되는 줄자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소분류 391 . 기타제조업

품목부호	품 목 명	단위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9020409	올	개	○ 전자오르간도 포함조사
9030709	어린이용놀이터장비	백만원	○ 미끄럼틀, 시소, 그네, 회전대등을 조사
9030809	건강및미용체력기구	백만원	○ 러닝머신, 미용자전거등 각종 체력증진 기구 포함
9030909	뉘시용부속장구	백만원	○ 뉘시대 및 띠, 뉘시용 의복 및 가방, 신발등을 제외한 전제품 조사
9050309	금속장식공예품	백만원	○ 주물을 펴서 만든 각종 모형의 장식 품
9091609	만	년	필
		천개	○ 사무기기용

## Ⅵ. 광공업동태조사 지정원재료분류표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706	설탕	ㄱ
522	갱목	m <sup>2</sup>	707	소기름(우지)	ㄱ
778	폭약	kg	708	경화유	ㄱ
	대분류 3. 제조업		780	향료	kg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818	통조림관	천개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502	밀(소맥)	ㄱ	501	보리(대맥)	ㄱ
503	콩(대두)	ㄱ	502	밀(소맥)	ㄱ
504	고구마	ㄱ	504	고구마	ㄱ
505	소맥피	ㄱ	517	호프	kg
506	탈지강	ㄱ	518	당밀	ㄱ
507	콩깻묵(대두박)	ㄱ	701	보리쌀(정맥)	ㄱ
518	당밀	ㄱ	702	밀가루(소맥분)	ㄱ
519	생우유	ㄱ	703	옥수수(가루포함)	ㄱ
525	어개류	ㄱ	704	녹말가루(전분)	ㄱ
702	밀가루	ㄱ	706	설탕	ㄱ
703	옥수수(가루포함)	ㄱ	710	주정	kl
704	녹말가루(전분)	ㄱ	711	콜라원액	l
705	원당	ㄱ	712	엿기름(맥아)	ㄱ
			749	탄산가스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80	향료	kg	715	소모사	kg
790	유리병	천개	716	방모사	kg
877	쌀 (현미, 백미)	kg	717-1	재생섬유사 (아세테이트포함)	%
314. 담배제조업			717-2	합성섬유사	%
516	앞담배	%	718	생사	kg
738	은박지	%	726	화학필프	%
740	휠타	%	752	카프로락담	%
869	권련지	kg	768	폴리에치렌수지	kg
중분류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770	폴리프로피렌수지	kg
321. 섬유제조업			771	합성섬유 (튼, 설, 화이버)	kg
508	원면	%	772	재생섬유 (SF면, 아세테이트섬유포함)	kg
509	누에고치 (잠견)	kg	774	AN모노마	%
510	지부양모	kg	775	에치렌그리골	%
511	세척양모	kg	776	D. M. T	%
512	아마	kg	876	나이론수지	kg
513	아바카	kg	880	부잠사	kg
515	모실	kg	881	견방사	kg
713	양모	kg	882	어망사	kg
714	면사	kg	899	T. P. A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u>322. 의복제조업</u>			898	합성 피혁	m <sup>2</sup>
719	면 직물	m <sup>2</sup>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 제품제조업		
720	순소모직물	m <sup>2</sup>	<u>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u>		
721	순방모직물	m <sup>2</sup>	521	원목	m <sup>3</sup>
722-1	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포함)	m <sup>2</sup>	758	호르마린	M <sup>4</sup>
722-2	합성섬유직물	m <sup>2</sup>	759	메타놀	M <sup>4</sup>
723-1	혼방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포함)	m <sup>2</sup>	<u>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u>		
723-2	혼방합성섬유직물	m <sup>2</sup>	727	각재	m <sup>3</sup>
723-3	혼방면직물	m <sup>2</sup>	728	판재	m <sup>3</sup>
723-4	혼방모직물	m <sup>2</sup>	729	합판	m <sup>3</sup>
723-5	혼방견직물	m <sup>2</sup>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제조업		
724	소가죽	m <sup>2</sup>	<u>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u>		
875	순본견직물	m <sup>2</sup>	512	아마	kg
<u>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목피제품제조업</u>			514	갈저	kg
520	원피	매	521	원목	m <sup>3</sup>
724	소가죽	m <sup>2</sup>	524	고지	M <sup>4</sup>
898	합성 피혁	m <sup>2</sup>	624	활석분	M <sup>4</sup>
<u>324. 신발제조업</u>					
724	소가죽	m <sup>2</sup>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02	말 가 루	%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섬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14	면 사	kg			
725	쇄 목 펄 프	%			
726	화 학 펄 프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731	백 상 지	%	614	유 황	%
732	중 질 지	%	615	인 광 석	%
733	크 라 프 트 지	%	617	공 업 염	%
735	박 엽 지	kg	618	석 회 석	%
736	판 지	%	741	황 산	%
737	골 판 지 원 지	%	742	염 산	kg
744	가 성 소 다	%	743	카 바 이 드	%
751	유 산 반 토	kg	744	가 성 소 다	%
817	알 미 늄 박	kg	747	소 다 회	%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730	신 문 용 지	%	748	암 모 니 아	%
731	백 상 지	%	750	V. C. M	%
732	중 질 지	%	752	카 프 로 락 담	%
734	아 트 지	kg	753	염 화 카 리	%
735	박 엽 지	kg	754	벤 젠	kg
784	인 쇄 잉 크	kg	755	톨 루 엔	kg
			756	키 시 렌	kg
			758	호 르 마 린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59	메 타 늘	%	754	벤 젠	kg
766	요 소	kg	755	틀 루 엔	kg
870	에 티 렌	%	756	키 시 렌	kg
871	프 로 피 렌	%	757	알 킬 벤 젠	kg
872	부 타 디 엔	%	759	메 타 늘	%
873	싸 이 크 로 핵 산	kg	760	무 스프 탈 산	kg
788	납 사	kl	761	염 료	kg
789	코 크 스	%	762	그 리 세 린	kg
792	생 석 회	%	763	지 방 산	%
<u>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u>					
706	설 탕	%	764	스 테 아 린 산	kg
707	소 기 림 (우 지)	%	766	요 소	kg
709	아 마 인 유	kl	777	스 치 렌 모 노 마	kg
710	주 정 (에타늘)	kl	779	초 안	kg
738	은 박 지	%	780	향 료	kg
741	황 산	%	781	아 연 화	kg
742	염 산	kg	782	산 화 티 탄	kg
744	가 성 소 다	%	790	유 리 병	천개
745	규 산 소 다	kg	872	부 타 티 엔	%
747	소 다 회	%	<u>353. 석유정제업</u>		
748	암 모 니 아	%	603	원 유	kl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01	무 연 탄	%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602	원료 탄 (유연탄)	%	612	점 토	%
355. 고무제품제조업			619	고령 토	%
523	천연 (생) 고무	%	620	장 석	%
714	면사 (면사포)	kg	621	규사 및 규석	%
773	합성 고무	%	627	석 고	%
781	아연화	kg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782	산화티탄	kg	616	초 석	%
783	카본블랙	kg	618	석회 석	%
883	타이어코드사	%	620	장 석	%
884	재생 고무	%	621	규사 및 규석	%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25	형 석	%
765	가소제 (DOP, DBP 등)	kg	628	백운 석	%
767	P. V. C 수지	kg	629	파유리	%
768	폴리에치렌수지	kg	746	유산소오다 (망초)	%
769	폴리스치렌수지	kg	747	소다회	%
770	폴리프로피렌수지	kg	36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612	점 토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613	모래	m <sup>3</sup>	608	망강광석	%
618	석회석	%	609	고철	%
619	고령토	%	618	석회석	%
620	장석	%	789	코크스	%
621	규사 및 규석	%	793	선철	%
622	납석	%	794	강피	%
625	형석	%	795-1	강반성품 (스라브, 비래트, 브롬)	%
626	석면	%	795-2	열연대강 ( 핫코일 )	%
627	석고	%	797-1	붕강	%
726	화학필프	%	798	중후판	%
739	크라프트지	천매	799	박판	%
791	시멘트	%	800	주물	%
797-1	붕강	%	801	선재	%
797-2	철근	%	808	아연피	kg
802	철선	%	<u>372. 비철금속산업</u>		
887	자갈	m <sup>3</sup>	605	동광석	%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606	연광석	%
<u>371. 철강산업</u>			607	아연광석	%
602	원료탄 (코크스제조용)	%	610	동설	kg
604	철광석	%	611	알미늄고철	kg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618	석 회 석	%	802	철 선	%
789	코 크 스	%	803	강 관	%
806	전 기 동	kg	804	특 수 강	%
807	연 과	kg	806	전 기 동	kg
808	아 연 과	kg	807	연 과	kg
809	알 미 늄 과	kg	808	아 연 과	kg
874	아 루 미 나	kg	809	알 미 늄 과	kg
888	아 연 설	kg	810	황 동 (놋쇠, 진유)	kg
889	연 설	kg	811	알 미 늄 관	kg
중분류 38. 조립 금속제품			815	스 테 인 레 스 관	kg
381. 조립 금속제품제조업			816	동 선	kg
609	고 철	%	819	용 접 봉	kg
610	동 설	kg	878	합 금 철	kg
611	알 미 늄 고 철	kg	879	알 미 늄 비 래 트	kg
789	코 크 스	%	890	석 도 철 관	kg
793	선 철	%	382. 기계제조업		
796	형 강	%	609	고 철	%
797-1	봉 강	%	610	동 설	kg
798	중 후 관	%	789	코 크 스	%
799	박 관	%	793	선 철	%
800	주 물	%	796	형 강	%
801	선 재 (와이어로프)	%	797-1	봉 강	%
			798	중 후 관	%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99	박 판	%	767	P. V. C 수 지	kg
800	주 물	%	773	합 성 고 무	%
801	선 재 (와이어로프)	%	798	중 후 판	%
802	철 선	%	799	박 판	%
803	강 관	%	802	철 선	%
804	특 수 강	%	804	특 수 강	%
806	전 기 동	kg	806	전 기 동	kg
809	알 미 늄 피	kg	807	연 피	kg
810	황 동 (놋쇠, 진유)	kg	808	아 연 피	kg
811	알 미 늄 판	kg	809	알 미 늄 피	kg
812	동 판	kg	810	황 동 (놋쇠, 진유)	kg
815	스 테 인 레 스 판	kg	811	알 미 늄 판	kg
816	동 선	kg	812	동 판	kg
819	용 접 봉	kg	813	인 청 동 판	kg
891	전 동 기	HP	814	규 소 강 판	%
892	변 속 기	개	815	스 텐 레 스 판	kg
893	내 연 기 관	HP	816	동 선	kg
894	체 인	kg	817	알 미 늄 박	kg
895	베 아 링	kg	820	트 랜 지 스 터	천개
896	유 압 기 기	대	821	집 적 회 로	개
897	주 강	%	822	브 라 운 판	개
			823	P. C. B 원 판	매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824	자 석 (마그네트)	천개
523	천 연 (생) 고 무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u>384. 운수장비제조업</u>			717-1	재 생 섬 유 사 (반합성섬유사포함)	%
796	형	강 %	717-2	합 성 섬 유 사	%
797-1	봉	강 %	722-1	재 생 섬 유 직 물 (아세테이트직물포함)	m <sup>2</sup>
798	중 후	관 %	722-2	합 성 섬 유 직 물	m <sup>2</sup>
799	박	관 %	767	P. V. C 수 지	kg
800	주	물 %	802	철 선	%
802	철	선 %	803	강 관	%
803	강	관 %	810	황 동	kg
805	대	강 %	815	스 텐 레 스 관	kg
809	알 미 늄	괴 kg			
819	용 접	봉 kg			
825	트 란 스 밧 손	개	대분류 4. 전 기 업		
826	자 동 차 엔 진	대	※ <연료 및 전력>		
885	타 이 어	본			
<u>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 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u>			901	무 연 탄 및 원료 탄	%
			902	경 유 및 중 유	kl
			903	방 카 C 유	kl
810	황 동	kg	904	전 력	천 KWH
815	스 텐 레 스 관	kg			
<u>중분류 39. 기타제조업</u>					
526	인	모 kg			
623	흑	연 kg			

부 록 도 량 형

< 표 1 > 길 이

단 위	mm	cm	m	km	in	ft
1 mm	□	0.1	0.001	(0.1) <sup>8</sup>	0.03937	0.00328
1 cm	10	□	0.01	(0.1) <sup>5</sup>	0.3937	0.0328
1 m	1,000	100	□	(0.1) <sup>3</sup>	39.37	3.2808
1 km	10 <sup>6</sup>	10 <sup>5</sup>	1000	□	39,370	3280.8
1 in	25.4	2.54	0.0254	0.000025	□	0.0833
1 ft	304.8	30.48	0.3048	0.000304	12	□
1 yd	914.4	91.44	0.9144	0.00091	36	3
1 mile	-	160930	1609.3	1.6093	63360	5280
1 尺 (자)	303.03	30.303	0.303	0.00030	11.93	0.9932
1 間 (간)	1818.2	181.82	1.818	0.0182	71.582	5.965
1 町 (정)	10909.1	10909.1	109.091	0.1090	4294.9	357.91
1 里 (리)	-	-	3927.27	3.927	154619	12885
1 寸 (치)	30.303	3.0303	0.0303	0.00003	1.1930	0.0994

환 산 표

yd	mile	尺	間	町	里	寸
0.00109	0.0000006	0.0033	0.00055	0.000009	-	0.033
0.0109	0.000006	0.033	0.005	0.00009	-	0.33
1.0936	0.00062	3.3	0.55	0.009	0.00025	33
1093.6	0.62137	3300	550	9	0.25	33000
0.0278	0.000015	0.0838	0.0140	0.0002	-	0.8382
0.3333	0.00019	1.0058	0.1676	0.0023	0.00008	10.058
□	0.00057	3.0175	0.5029	0.0083	0.0002	30.175
1760	□	5310.8	885.12	14.752	0.4098	53108
0.3314	0.0002	□	0.1667	0.0028	0.00008	10
1.9884	0.011	6	□	0.0167	0.0005	60
119.304	0.0678	360	60	□	0.0278	3600
4295	2.4403	12960	2160	36	□	129600
0.0331	0.00002	0.1	0.01667	0.00028	0.000008	□

< 표 2 > 부 피

단 위	cm <sup>3</sup>	m <sup>3</sup>	in <sup>3</sup>	ft <sup>3</sup>	yd <sup>3</sup>
1 cm <sup>3</sup>	□	(0.1) <sup>6</sup>	0.06103	0.00003	0.00001
1 m <sup>3</sup>	10 <sup>6</sup>	□	61027	35.3147	1.3080
1 in <sup>3</sup>	16.3872	0.000016	□	0.00057	0.00002
1 ft <sup>3</sup>	28316.8	0.02831	1728	□	0.03703
1 yd <sup>3</sup>	764511	0.76451	46656	27	□
1 gal (美)	3785.43	0.00378	231	0.1337	0.00495
1 gal (英)	4545.9	0.00455	277.42	0.1605	0.00595
1 ℓ	1000	0.001	61.027	0.03531	0.0013
1 合 (喜)	180.39	0.00018	11.0041	0.0066	0.00023
1 升 (되)	1803.9	0.0018	110.041	0.0637	0.0023
1 斗 (말)	18039	0.01803	1100.41	0.6371	0.0236
1 石 (섬)	180391	0.1803	11004.1	6.3704	0.2359

gal (美)	gal (英)	ℓ	合	升	斗	石
0.00026	0.00022	0.001	0.00554	0.00055	0.00005	0.000005
264.186	219.97	1000	5543.52	554.325	55.435	5.5435
0.00432	0.0036	0.01638	0.0908	0.00908	0.00091	0.00009
7.4805	6.228	28.3169	156.966	15.6966	1.5697	0.15697
201.974	168.18	764.511	4238.09	423.81	42.381	4.2381
□ 1	0.8327	3.7854	20.983	2.0983	0.2098	0.02098
1.2009	□ 1	4.5459	25.206	2.5206	0.2521	0.02521
0.2642	0.21997	□ 1	5.5435	0.5544	0.0554	0.00554
0.04765	0.03968	0.18039	□ 1	0.1	0.01	0.0001
0.4765	0.3968	1.8039	10	□ 1	0.1	0.001
4.7657	3.6981	18.039	100	10	□ 1	0.1
47.6567	39.681	180.39	1000	100	10	□ 1

〈표 3〉 무게

단 위	g	kg	t (噸)	L / B	O Z
1 g	□	0.001	(0.1) <sup>6</sup>	0.002204	0.03527
1 kg	1000	□	0.001	2.20459	35.273
1 t (M / T)	10 <sup>6</sup>	1000	□	2204.59	35273
1 L / B	435.592	0.45359	0.00045	□	16
1 OZ	28.8495	0.02835	0.000028	0.0625	□
1 S/T (미톤)	907200	907.2	0.9072	2000	32000
1 L/T (영톤)	1016000	1016	1.016	2240	35840
1 gr	10.06479	0.00006	-	0.00014	0.00228
1 匁 (돈)	3.75	0.00375	0.000004	0.00827	0.1323
1 (근)	600	0.6	0.0006	1.3228	21.1647
1 貫 (관)	3750	3.75	0.00375	8.2672	132.28

S / T	L / T	gr	刃	斤	貫
0.000011	0.000098	15.432	0.2667	0.00166	0.000266
0.001102	0.000984	15432	266.67	1.6666	0.2666
1.1022	0.9841	-	266670	1666.6	266.66
0.0005	0.000446	7000	120.96	0.756	0.12096
0.000031	0.000028	437.4	.7.56	0.0473	0.00756
□	0.89286	-	293919	1512	241.92
1.12	□	-	262420	1693.4	270.95
-	-	□	0.01728	0.00108	0.000017
0.0000041	0.0000037	57.872	□	0.00625	0.001
0.00066	0.00059	9259.56	160	□	0.16
0.00413	0.00369	57872	1000	6.25	□

< 표 4 > 넓 이

단 위	mm <sup>2</sup>	cm <sup>2</sup>	m <sup>2</sup>	km <sup>2</sup>	in <sup>2</sup>	ft <sup>2</sup>	yd <sup>2</sup>
1 mm <sup>2</sup>	□	0.01	(0.1) <sup>6</sup>	(0.0) <sup>12</sup>	0.00155	0.0001	0.000001
1 cm <sup>2</sup>	100	□	(0.1) <sup>4</sup>	(0.1) <sup>10</sup>	0.1550	0.0011	0.00012
1 m <sup>2</sup>	10 <sup>6</sup>	10 <sup>4</sup>	□	(0.1) <sup>6</sup>	1549.99	10.764	1.1958
1 km <sup>2</sup>	10 <sup>12</sup>	10 <sup>10</sup>	10 <sup>6</sup>	□	(39370) <sup>2</sup>	(3280) <sup>2</sup>	(1090) <sup>2</sup>
1 in <sup>2</sup>	645.16	6.4516	0.00065	-	□	0.00694	0.00077
1 ft <sup>2</sup>	92903.04	929.03	0.0929	-	144	□	0.1111
1 yd <sup>2</sup>	-	8359.44	0.8361	-	1296	9	□
1 mile <sup>2</sup>	-	-	-	2,5899	(63360) <sup>2</sup>	(5280) <sup>2</sup>	(1760)
1 a	10 <sup>8</sup>	10 <sup>6</sup>	100	0.0001	155001.7	1076.4	119.58
1 ha	10 <sup>10</sup>	10 <sup>8</sup>	10 <sup>4</sup>	0.01	15500160	107640	11958
1 acre	-	-	4046.8	0.0040	6274735	43560	4840
1 坪	-	-	3.3058	0.000003	5125.58	35.583	3.9537
1 段步	-	-	991.74	0.00099	1537500	10674.9	1186.1
1 町步	-	-	9917.4	0.0099	15375000	106749	11861
1 平方尺	-	918.2	0.09182	-	142.35	0.9884	0.1098

mile <sup>2</sup>	a	ha	acre	坪	段步	町步	平方尺
-	(0.1) <sup>8</sup>	(0.1) <sup>10</sup>	-	-	-	-	0.00001
-	(0.1) <sup>8</sup>	(0.1) <sup>8</sup>	-	0.00003	-	-	0.0011
-	0.01	0.0001	0.000247	0.3025	0.001	0.0001	10.89
0.3861	10000	100	247.114	302500	1008.3	100.83	10890000
-	0.000006	-	-	0.00019	-	-	0.0070
-	0.0009	0.000009	0.000022	0.0281	0.00009	0.000009	1.0117
-	0.00836	0.00008	0.00021	0.2529	0.00084	0.00008	9.1054
□	25898.46	258.98	640	-	-	78347.597	-
0.000039	□	0.01	0.0247	30.25	0.1008	0.01008	1089
0.0039	100	□	2.471	3025	10.183	1.008	108900
0.00156	40.468	0.40468	□	1224.2	4.0806	0.4081	44071.2
-	0.0331	0.00033	0.00081	□	0.0033	0.00033	36
0.00004	9.9174	0.09917	0.2451	300	□	0.1	10800
0.0004	99.174	0.9917	2.4506	3000	10	□	108000
-	0.00091	0.000009	-	0.0278	0.00009	0.000009	□

## 1. 開發編制의 必要性

- 。全國 및 地域 經濟動向을 相互連繫 分析하여 地域間 均衡 發展計劃을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基本 資料의 確保
- 。地方自治制 實施에 對備, 地域別 景氣 및 産業活動動向을 把握을 할 수 있는 基礎資料를 提供
- 。地域 所得 推計를 爲한 鑛工業 部門 基礎資料 提供

## 2. 編制 概要

### 가. 指數의 性格

- 。各市·道 單位別로 鑛工業 部門의 主要 品目別 生産·出荷·在庫量의 變動 狀況을 每月別로 把握하여 이를 '85年度를 基準으로 한 數量指數 形態로 變換하여, 이 指數를 土臺로 市·道別 鑛工業 實績動向과 景氣의 흐름을 觀察할 目的으로 作成하는 代表的 經濟指標임.

### 나. 編制方法 및 內容

- 。地域別 鑛工業指數의 編制方法은 現在 每月別로 公表하고 있는 全國 産業 生産·出荷·在庫 指數와의 連繫分析이 可能토록 하기 위하여 全國指數 編制基準 및 方法을 대부분 準用하고 있음.
- 。基準時
  - 指數는 어떤 一定時點을 基準으로 比較時의 變化推移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地域指數도 全國指數에서와 같이 1985年을 基準으로 하여 作成하고 있음(1985=100). 다만 市·道別로는 基準時 以後에 品目 및 對象業體의 新規 發生 또는 消滅로 因한 變動狀況이 多少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變化는 開發編制時點에서 調整 反映하였음.
- 。代表品目
  - 鑛工業指數는 個別品目의 움직임을 綜合하여 指數化하게 됨으로 指數 作成을 爲한 個別品目(代表品目)의 選定이 매우 重要함.
  - 鑛工業指數는 每月의 變化를 迅速하게 나타내기 爲하여 作成되는 것이므로 鑛工業 部門의 全事業體를 對象으로 모든 製品을 總網羅하여 把握하기는 現實의으로 어려운 反面, 이 指數가 景氣動向을 敏感하게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鑛工業의 總合的인 動向은 물론, 細部業種別 動向 分析도 可能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서는 業種別로 代表性이 充分히 確保될 수 있도록 比重이 높은 品目들은 可及的 包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兩面性을 考慮하여 指數 作成의 基礎가 되는 品目은 各市·道業 種別 總生産額의 85% 内外를 차지할 수 있는 範圍까지 擴大 選定하였음.

市·道別 代表品目

全	生	出	在
國	產	荷	庫
서	665	665	550
翁	406	402	303
山	362	362	261
大	219	219	168
邱	384	382	292
仁	131	130	98
川	534	533	421
光	106	106	71
州	146	144	105
京	230	229	181
畿	155	153	118
江	151	148	114
原	273	272	217
北	460	457	367
全	38	38	20
南			
慶			
南			
州			

(個)

註) 全國指數에서는 電氣業이 追加되나 여기서는 除外하였음.

加重值

代表品目들은 大部分 數量으로 把握되는 關係로 調査單位가 서로 相異할 是 아니라(個, 臺, kg, m, G/T 등) 個別品目들이 鑛工業 部門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各각기 다르므로, 이를 綜合하여 總合指數를 作成하기 爲하여는 一定한 加重值 體系가 必要하게 됨.

代表品目들의 鑛工業上 比重을 나타내는 加重值는 原則的으로 基準時의 構造에 따라 다음 基準에 의해 萬分比로 擴大 作成하였음.

- 生産指數 : 附加價値額 構成比  
 - 出荷指數 : 出荷額 構成比  
 - 在庫指數 : 年平均 在庫額 構成比

市·道別 主業種(生産比重基準)

(鑛工業總合=100.0%)

	主業種	%		主業種	%
全國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30.3			
서	纖維·衣服·가죽 製品	27.6	忠北	飲食料品 및 담배	20.3
翁	石油·化學·고무·플라스틱	30.2	忠南	纖維·衣服·가죽 製品	28.4
山	纖維·衣服·가죽 製品	61.3	全北	飲食料品 및 담배	33.5
大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36.7	全南	石油·化學·고무·플라스틱	48.5
仁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28.5	慶北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34.6
光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38.9	慶南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51.6
京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60.3	濟州	飲食料品 및 담배	67.8
江	石炭鑛業				

。指數算式

- 基準時点 固定 加重算術 平均方法(Laspeyres 算式)을 使用함.
- 代表品目들의 指數를 먼저 求한 後, 이를 一定한 加重值 體系에 따라 積算하여 業種別 및 鑛工業總合指數를 算出함.

。標本事業體

- 代表品目を 生産하고 있는 從業員 10人以上 19,300個 業體를 市·道別로 區分한 後, 從業員數가 100人 以上이거나, 從業員數가 그 未滿이라도 品目別 出荷額 規模가 큰 事業體는 모두 全數調査하고, 出荷額 規模가 작은 小規模 業體는 系統 標本 抽出하여 調査함.

市·道別 標本事業體

(個)

	全 國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標本業體	9,108	1,515	1,060	598	597	190	1,832	341	276	544	385	436	552	692	91

。編制指數의 種類

- 鑛工業 生産·出荷·在庫指數(總合指數, 業種別指數, 品目別指數)
- 財別 分類指數(生産財, 消費財別 生産·出荷·在庫指數)

。編制時点

- 1985年 1月分 以後의 指數를 每月別로 編制

。編制 對象 地域

- 서울特別市를 비롯한 14個 市·道 單位로 編制
- 大田直轄市는 現在 忠南 道에 包含하여 編制하고 있으나 '89年中 分離 豫定임.

。資料蒐集 體系

- 全國 및 地域指數 作成에 共通의으로 包含되는 品目(665個) : 調査統計局 地方統計事務所에서 調査
- 特定 市·道 指數 作成에만 反映되는 品目(99個) : 該當 市·道에서 調査

。集計 및 指數 編制

- 調査統計局에서 一括 集計 및 指數 作成.
- 市·道別 與件이 갖추어지는대로 段階的으로 移管할 計劃임.

。全國指數와의 關係

- 市·道別 特性上 代表 品目, 加重值 構造 등이 서로 相異할 수 밖에 없으므로 市·道指數를 總合하여 全國指數를 算出하는데는 無理가 따름.
- 따라서 全國指數와 市·道別指數와는 分離하여 各各 獨立的으로 編制 하되, 編制基準·方法 등을 統一·連繫 시킴으로써 相互 有機的 分析이 可能토록 하였음.

### 3. 編制結果

#### 가. '88年中 鑛工業動向 概況

- 。'88年中 國內 鑛工業 生産은 電氣電子, 運輸裝備 및 其他化學製品 業種等を 主軸으로 '87年 對比 13.5%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市·道別로는 全南(33.2%), 京畿(32.7%), 慶北(22.8%), 忠北(20.8%), 慶南(16.9%), 仁川(15.1%)에서 全國 平均 增加率을 上廻하는 伸張勢를 보인反面, 忠南(12.7%), 光州(12.7%), 서울(8.3%), 大邱(8.1%), 全北(4.7%), 江原(1.8%), 釜山(1.0%)에서는 比較的 낮은 伸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濟州道の 경우는 飲食料品 産業의 不振 影響으로 前年對比 -5.3%로 나타나 鑛工業 部門은 負(-)의 成長을 보였음.
- 。한편 生産者 出荷도 京畿(26.8%), 全南(26.8%), 慶北(22.4%), 忠北(21.1%)에서 20% 以上の 매우 높은 增加率을 보였고, 서울, 大邱, 仁川, 光州, 忠南, 慶南 等도 10%~20% 内外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釜山, 江原, 全北에서는 5% 内外의 낮은 增加率을 보였으며 濟州道の 경우는 -1.7%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 。生産 및 出荷 增加率이 '87年에 비해 多少 鈍화된 가운데 年平均 在庫 增加勢는 一部 市·道(서울, 大邱, 光州, 全北, 慶北)를 除外하고는 대체적으로 擴大 樣相을 나타내었음.

地域別 生産·出荷·在庫 增減率

(比前年(分期), %)

	生 産						出 荷		在 庫	
	'87	'88					'87	'88	'87	'88
		1/4	2/4	3/4	4/4	年間				
全 國	18.4	20.5	7.1	16.2	11.4	13.5	18.1	13.1	9.9	13.6
서 울	16.6	10.8	6.0	6.3	10.2	8.3	18.1	10.3	29.1	13.2
釜 山	11.5	11.8	-0.3	-0.7	-5.8	1.0	9.9	1.5	12.5	16.4
大 邱	11.0	15.0	7.7	6.8	3.9	8.1	14.7	10.8	50.4	-10.8
仁 川	20.9	19.8	0.4	11.6	29.8	15.1	21.7	18.9	11.0	24.8
光 州	18.0	26.4	-2.9	21.6	8.4	12.7	22.6	16.5	21.3	-6.2
京 畿	33.4	40.9	29.9	34.7	27.2	32.7	31.3	26.8	41.2	53.6
江 原	0.1	2.5	-3.5	7.4	1.7	1.8	1.7	5.2	9.0	13.2
忠 北	20.8	22.2	26.5	19.1	15.9	20.8	16.9	21.1	-7.5	41.5
忠 南	14.6	17.7	11.5	17.0	5.9	12.7	13.2	15.9	13.4	18.1
全 北	15.1	9.2	3.8	2.6	3.6	4.7	17.6	5.4	8.6	0.4
全 南	11.9	29.9	28.1	32.9	40.8	33.2	8.1	26.8	2.2	4.9
慶 北	20.2	26.1	17.6	26.5	21.6	22.8	19.3	22.4	19.9	7.9
慶 南	12.4	27.1	-2.4	27.8	18.3	16.9	12.2	16.4	12.5	32.3
濟 州	10.3	27.9	14.2	-1.7	-27.3	-5.3	18.7	-1.7	-6.8	7.8

나. 市·道別 動向

(1) 서울 特別市

。'88年中 鑛工業 生産은 '87年 對比 8.3%, 出荷는 10.3% 增加하였으나, 그 增加勢는 '87年에 비해 크게 鈍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로는 電氣電子 製品的의 國內外 需要 增加에 따라 電氣電子 業種이 生産·出荷 各 26.6%, 26.5%씩 增加한 것을 비롯, 日刊新聞, 一般印刷物 等이 增加함에 따라 印刷出版業이 各 13.7%, 11.4%씩의 伸張勢를 보였으며, 그 밖에도 其他 化學製品(18.0%, 29.7%; 印刷잉크, 醫藥品 等 增加) 및 衣服製造業(14.4%, 7.3%; 女性用화운데이션, 女子用外衣 等 增加)에서 比較的 높은 伸張勢를 보인 反面, 원貨切上에 따른 輸出 不振 影響으로 纖維 (-12.1%, -8.6%; 메리야스外衣, 純本絹織物 等 減少) 및 其他 製造業 (-20.7%, -19.5%; 貴石 및 半貴石, 人形 및 장난감 等 減少) 등에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業	'87		'88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業	16.6	18.1	8.3	10.3
鑛業	-29.8	-46.1	-93.8	-91.9
其他鑛業(-93.8)				
製業	16.8	18.3	8.5	10.5
· 飲食料品 및 담배	4.4	6.4	-0.1	0.2
· 纖維 · 衣服 · 가죽	20.2	20.1	3.2	0.2
· 나무 · 家具	20.6	19.1	10.0	11.9
· 종이 · 印刷出版	7.8	13.2	12.8	12.0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12.6	11.9	9.0	12.1
· 非金屬 鑛物 製品	16.3	22.7	-4.7	13.0
· 第1次 金屬	24.1	35.3	21.0	39.7
· 組立 金屬 · 機械 裝備	23.8	24.4	19.5	20.2
· 其他 製造業	20.3	19.0	-20.7	-19.5
· 食料品(-1.9), 飲料品(10.1)				
· 纖維(-12.1), 衣服(14.4)				
· 나무(-9.1), 家具(27.4)				
· 종이(7.2), 印刷出版(13.7)				
· 産業用化合物(14.1), 其他化學(18.0)				
· 其他非金屬 鑛物(-7.4), 유리(2.7)				
· 鐵鋼(29.5), 非鐵金屬(-15.2)				
· 機械(11.2), 電氣電子(26.6)				

(2) 釜山直轄市

。聯合鐵鋼紛糾의 長期化, 大韓造船公社 傘下工場의 罷業, 原料切上에 따른 衣服, 運動化 業種의 不振 등 隘路 要因이 겹쳐 '88年中 鑛工業 生産 및 出荷는 前年對比 各各 1.0%, 1.5%의 매우 낮은 增加에 그쳤음.

。業種別로는 産業用化合物의 生産·出荷가 높은 增加率(32.6%, 21.0% ; 폴리우레탄, 酸素 等 增加)를 보인 것을 비롯 機械(12.8%, 11.9% ; 研削機, 프레스機 等 增加), 其他化學(11.2%, 15.8% ; 페인트, 신너 等 增加)業種 等에서는 比較的 높은 增加勢를 나타내었으나, 原料切上으로 輸出 採算性이 惡化된 運動化(3.0%, 4.3% 增加)를 포함한 고무製品 製造業이 낮은 增加率(3.2%, 4.1% 增加)을 보이는데다가, 勞使紛糾 等 影響으로 鐵鋼(-15.0%, -19.8% ; 亞鉛鍍鋼板, 冷延薄板 等 減少), 組立金屬(-4.9%, -8.8% ; 陸上金屬構造物, 스텐레스製 食器 等 減少), 運輸裝備(-1.5%, -0.9%) 業種 等이 減少를 보였으며 衣服業種(-8.4%, -9.7% ; 既成洋服, 既成셔츠類 等 減少)에서도 原料切上 影響으로 生産·出荷가 매우 不振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7		' 88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11.5	9.9	1.0	1.5	
。鑛 業	3.2	6.0	-12.9	-28.4	其他鑛業(-13.7)
。製 造 業	11.5	9.9	1.0	1.5	
・飲食料品 및 담배	4.2	3.7	1.4	-1.3	食料品(0.6), 飲料品(7.1)
・纖維·衣服·가죽	15.1	12.0	-0.1	1.8	纖維(5.4), 衣服(-8.4)
・나무·家具	13.3	13.5	22.9	14.4	나무(9.8), 家具(115.6)
・종이·印刷出版	7.9	11.7	1.1	5.8	종이(7.7), 印刷出版(-7.8)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12.0	11.7	5.2	10.2	産業用化合物(32.6), 고무(3.2)
・非金屬鑛物製品	2.1	6.0	7.3	9.0	其他非金屬鑛物(7.4), 유리(5.7)
・第1次金屬	7.3	7.9	-12.9	-17.9	鐵鋼(-15.0), 非鐵金屬(13.5)
・組立金屬·機械裝備	11.1	8.2	-1.0	-0.4	組立金屬(-4.9), 運輸裝備(-1.5)
・其他製造業	22.4	22.8	-2.1	0.3	



(4) 仁川直轄市

- 。石油精製, 電氣電子, 組立金屬製品 및 家具·裝置物業種 等에서의 높은 增加에 따라 生産은 前年對比 15.1%, 出荷는 18.9% 伸張하였음
- 。業種別로는 國內外 需要 增加로 京仁에너지의 生産 能力이 擴充됨에 따라 石油精製(42.0%, 51.9% ; 輕油, 방카C油 等 增加)業種이 크게 增加한 것 을 비롯, 電氣電子 (76.3%, 56.0% ; 코넥터, 비디오테이프 等 增加), 家具 및 裝置物(42.4%, 37.6% ; 올림픽 特需 等으로 寢臺, 서랍장 및 音響器機臺 等 增加), 組立金屬製品(21.7%, 22.2% ; 熱交換機, 家庭用보일러 等 增加), 飲料品(48.2%, 47.3% ; 合成炭酸飲料, 果汁飲料 等 增加)業種 等에서는 높은 增加勢를 보였으나, 大宇電子 生産라인 一部の 光州 移轉 및 一部 大企業體의 勞使分糾 等 影響으로 機械(-11.8%, -8.9%; 가스레인지, 컴퓨터 및 周邊器機 等 減少)業種에서 前年對比 減少한 것 을 비롯 運輸裝備(-10.9%, -1.8% ; 非商業用特殊船舶, 合成樹脂船 等 減少), 衣服(-12.8%, -13.9% ; 女子用既成外衣, 既成普通外衣 等 輸出 減少)業種 等에서는 減少를 보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 7		' 8 8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20.9	21.7	15.1	18.9	
。鑛 業	8.0	5.7	14.1	0.7	其他鑛業(14.4)
。製 造 業	20.9	21.7	15.1	19.0	
· 飲食料品 및 담배	12.1	13.0	8.4	4.3	食料品(2.8), 飲料品(48.2)
· 纖維·衣服·가죽	1.6	-4.1	6.5	11.9	纖維(8.0), 가죽신발(52.0)
· 나무·家具	7.6	7.6	22.0	17.7	나무(4.2), 家具(42.4)
· 종이·印刷出版	19.6	22.0	8.7	9.5	종이(21.6), 印刷出版(-37.2)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9.2	8.1	25.4	30.5	産業用化合物(11.6), 石油精製(42.0)
· 非金屬鑛物製品	19.6	21.1	13.5	11.0	其他非金屬鑛物(13.5), 유리(15.9)
· 第1次金屬	31.9	28.5	8.8	15.1	鐵鋼(9.8), 非鐵金屬(-0.2)
· 組立金屬·機械裝備	29.1	35.5	15.2	15.8	電氣電子(76.3), 組立金屬(21.7)
· 其他製造業	18.6	19.3	20.5	19.1	

(5) 光州直轄市

○ 自動車 産業 및 電氣電子 産業 등에서 好調을 보임에 따라 '87年 對比 生産・出荷가 各 12.7% 및 16.5% 増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 業種別로는 自動車 産業의 好調을 反映, 運輸裝備(24.7%, 22.1%; 小型 버스, 大型트럭 등 増加) 業種에서 크게 増加한 것을 비롯하여 고무製品 14.2%, 13.7%; 自動車타이어, 自動車타이어 등 増加, 電氣電子(33.3%, 49.0%; 電子레인지, 乾電池 등 増加) 業種에서는 높은 伸張勢를 보인 反面, 全南紡織의 織物 生産라인 靈敏移轉 등의 事由로 纖維(-1.5%, 2.2%; 綿織物, 合成纖維織物 등 生産 減少) 業種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도 담배(-2.7%, 15.2%; 再乾燥인담배 등 生産 減少), 組立金屬製品(-12.6%, -12.8%; 스텐레스製家庭用品, 갓시門 및 窓等 減少) 業種 등에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増減率

(比前年, %)

産 業	'87		'88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18.0	22.6	12.7	16.5
鑛 業	24.8	1.8	-17.4	29.8
製 造 業	18.0	22.6	12.7	16.5
・ 飲 食 料 品 및 담배	1.3	11.4	-0.1	14.0
・ 纖 維 ・ 衣 服 ・ 가죽	5.9	8.2	0.7	2.8
・ 나무 ・ 家具	30.4	28.9	19.9	20.1
・ 종이 ・ 印刷出版	14.9	14.0	-4.0	-4.2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12.4	20.2	13.4	12.4
・ 非金屬 鑛物 製品	34.7	35.2	5.6	4.2
・ 第1次 金屬	42.8	36.9	22.4	11.1
・ 組立 金屬 ・ 機械 裝備	33.1	36.4	22.4	25.5
・ 其他 製造 業	24.8	24.8	68.6	68.6
食料品(5.0), 담배(-2.7)				
纖維(-1.5), 衣服(17.5)				
나무(0.4), 家具(35.7)				
종이(-8.7), 印刷出版(-3.3)				
고무(14.2), 其他化學(100.1)				
其他非金屬鑛物(5.6)				
鐵鋼(9.2), 非鐵金屬(38.0)				
電氣電子(33.3), 運輸裝備(24.7)				

(6) 京畿道

。主業種인 電氣電子, 運輸裝備, 其他化學製品 業種 등을 中心으로 前年에 이어 繼續 높은 伸張勢를 보임에 따라 生産은 '87年 對比 32.7%, 出荷는 26.9%의 매우 높은 增加率을 示顯

。業種別로는 電氣電子(50.6%, 38.3%; VTR, 칼라TV 등 增加)를 비롯, 運輸裝備(92.5%, 101.0%; 大型乘用車, 輕型乘用車, 高速型버스 등 增加), 機械(31.9%, 31.7%; 車輛用에어콘, 컴퓨터 및 周邊器機 등 增加), 組立金屬製品(29.1%, 23.9%; 병마개, 飲料用캔 등 增加), 其他化學製品(28.0%, 26.7%; 醫藥品, 化粧品 등 增加), 飲料品(66.3%, 61.3%; 果汁飲料, 合成炭酸飲料 등 增加) 業種 等에서는 큰 幅 增加를 보였으나, 元貨切上 등으로 輸出 採算性이 惡化된 가죽製品(-8.9%, -3.6%; 가방, 핸드백 등 減少) 業種과 印刷出版業(-9.1%, -1.0%; 앨범, 書籍 등 減少)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 7		' 8 8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33.4	31.3	32.7	26.8	
。鑛 業	7.2	17.8	0.5	-1.1	金屬鑛業(31.4), 其他鑛業(-4.9)
。製 造 業	33.5	31.4	32.8	26.9	
· 飲食料品 및 담배	26.3	20.7	34.4	26.2	食料品(14.0), 飲料品(66.3)
· 纖維 · 衣服 ·  가죽	18.8	19.8	5.6	3.8	纖維(2.8), 衣服(22.6)
· 나무 · 家具	46.6	42.9	38.6	45.1	나무(7.5), 家具(49.7)
· 종이 · 印刷出版	19.9	23.3	16.3	20.8	종이(20.7), 印刷出版(-9.1)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26.0	25.8	20.2	14.5	産業用化合物(10.3), 其他化學(28.0)
· 非金屬鑛物製品	12.4	15.6	10.2	21.2	其他非金屬鑛物(5.9), 유리(29.6)
· 第1次金屬	17.0	18.8	13.4	27.9	鐵鋼(8.8), 非鐵金屬(16.5)
· 組立金屬 · 機械裝備	46.2	43.1	47.9	37.8	電氣電子(50.6), 運輸裝備(92.5)
· 其他製造業	19.6	16.7	-0.8	4.7	

(7) 江原道

製造業 部門에서는 其他非金屬礦物製品, 其他石油·石炭製品 및 電氣電子 業種 等에서의 増加로 前年 對比 生産6.3%, 出荷 8.2%의 増加를 보였으나, 이 地域 鑛工業 生産 部門의 約 60%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石炭鑛業에서 的 減少 影響으로 鑛工業 部門 全體로는 生産 1.8%, 出荷 5.2%의 낮은 增加率에 그쳤음.

製造業 部門에서는 其他非金屬礦物製品(15.8%, 11.1%; 시멘트, 콘크리트 電柱 等 増加), 其他石油·石炭製品(15.4%, 13.9%; 아스콘, 石炭코크스 等 増加), 電氣電子(30.4%, 29.2%; 蓄電池, 換風機 等 増加) 業種 等に 比較的 높은 增加를 보였으나, 原料 切上 等 影響으로 衣服(-56.5%, -15.7%; 女子用 既成 外衣 等 減少) 業種 및 其他製造業(-29.9%, -30.7%; 人形 및 장난감, 小型공 等 減少) 等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採炭事情의 惡化와 油價 下落에 따른 燃料 消費 費 削減의 變化로 無煙炭 需要가 크게 減少 함으로써 石炭鑛業 (-1.2%, -2.3%)이 不振을 보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 7		' 8 8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0.1	1.7	1.8	5.2
鑛 業	-2.9	-3.0	-1.0	-0.8
製 造 業	5.2	4.2	6.3	8.2
· 飲 食 料 品 및 담배	0.2	-8.1	2.7	8.4
· 織 維 · 衣 服 · 가 죽	-8.1	-4.5	-21.3	8.4
· 나무 · 家 具	7.4	4.5	-24.4	-19.1
· 종이 · 印 刷 出 版	20.8	25.7	4.7	19.4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13.6	12.9	13.4	6.3
· 非 金 屬 礦 物 製 品	7.6	6.8	15.9	11.2
· 第 1 次 金 屬	17.4	-1.3	20.4	26.0
· 組 立 金 屬 · 機 械 裝 備	32.4	20.1	28.6	33.8
· 其他 製 造 業	13.7	6.1	-29.9	-30.7
其他化學(63.5), 其他石油·石炭(15.4)				
陶·瓷·土器(74.2), 其他非金屬礦物				
鐵鋼(20.4), 機械(24.8), 電氣電子(30.4)				
(15.8)				
나부(-24.4), 종이(12.4), 印刷出版(-2.0)				
食料品(8.5), 담배(0.5) 衣服(-56.5), 가죽신발(-68.7)				

(8) 忠清北道

。營農機械化의 進展에 따라 農業用 機械 製造 部門의 큰 幅 伸張과 아울러 其他化學製品, 纖維, 其他非金屬鑛物製品 業種 등에서 높은 成長을 보임에 따라 前年 對比 生産 20.8%, 出荷 21.1% 增加.

。業種別로는 機械 製造業에서 營農機械化 趨勢의 擴散으로 콤바인, 移秧機 等의 生産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生産 및 出荷가 各各 209.1%, 244.0% 씩 增加한 것을 비롯, 其他化學製品(46.4%, 43.5%; 化粧品, 合成洗劑 等 增加), 纖維(28.3%, 28.2%; 合成纖維織物, 綿織物 等 增加), 印刷出版(297.1%, 421.7%; 造幣公社 沃川工場 新設로 一般印刷物 等 增加) 및 其他非金屬鑛物製品(14.8%, 15.5%; 시멘트, 生石灰 等 增加) 等 業種에서 높은 增加勢를 보였으나, 가죽製品(-14.5%, -18.0%; 쇠가죽 減少), 其他石油·石炭製品(-4.9%, -3.6%; 煉炭, 아스콘 等 減少), 陶·瓷·土器(-7.4%, -7.8%; 陶瓷食器 減少) 및 組立金屬製品(-8.9%, -6.3%; 陸上金屬構造物, 建物用鐵物 等 減少) 業種 等에서는 減少를 보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 7		' 8 8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20.8	16.9	20.8	21.1	
。鑛 業	8.1	6.0	6.1	4.3	石炭鑛業(-9.1), 其他鑛業(12.6)
。製 造 業	21.0	17.3	21.6	21.6	
· 飲 食 料 品 및 담 배	8.9	8.3	6.3	4.3	食料品(1.4), 飲料品(20.5)
· 纖 維 · 衣 服 · 가 죽	13.2	3.6	24.4	19.3	纖維(28.3), 가죽(-14.5)
· 나 무 · 家 具	-1.3	1.8	-17.4	-16.3	나무(9.1), 家具(-47.6)
· 종 이 · 印 刷 出 版	25.1	16.5	138.3	146.8	종이(62.1), 印刷出版(297.1)
· 化 學 · 石 油 · 고무 · 플 라 스틱	22.4	17.5	18.8	18.3	産業用化合物(31.4), 其他化學(46.4)
· 非 金 屬 鑛 物 製 品	14.1	15.2	12.6	14.2	其他非金屬鑛物(14.8), 陶·瓷·土器(-7.4)
· 第 1 次 金 屬	7.9	36.1	66.6	94.8	鐵鋼(67.0), 非鐵金屬(24.8)
· 組 立 金 屬 · 機 械 裝 備	45.5	47.0	32.3	43.7	電氣電子(4.8), 機械(209.1)
· 其 他 製 造 業	3.6	8.2	-13.2	-15.6	

(9) 忠清南道(大田直轄市 包含)

。主産業인 纖維・衣服・가죽製品 製造業에서는 원貨切上 影響 등으로不振을 보였으나, 飲食料品 및 담배, 化學, 電氣電子 等 業種에서 높은 成長率을 보임에 따라 '87年 對比 生産 12.7%, 出荷 15.9% 增加.

。業種別로는 電氣電子(34.8%, 65.6%; 國內外 需要 增加로 비디오테이프, 蓄電池 等 增加), 고무製品(34.8%, 30.1%; 自動車타이어, 再生타이어 等 增加), 其他化學製品(22.9%, 18.8%; 醫藥品, 合成洗劑 等 增加), 食料品(14.9%, 16.3%; 畜肉鹽, 乳酸菌飲料 等 增加), 담배(21.4%, 17.8%) 業種 등에서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主産業인 纖維製造業(4.2%, 9.4%; 綿絲, 綿織物 等 增加)에서 낮은 增加를 보인것을 비롯, 衣服(-14.2%, -16.2%; 既成셔츠類, 既成普通外衣 等 減少), 가죽製品(-24.2%, -21.5%; 쇠가속, 핸드백 等 減少), 印刷出版(-4.4%, -8.4%; 造幣公社 印刷工場 移轉으로 一般印刷物 等 減少) 業種 등에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増減率

(比前年, %)

産 業	'87		'88	
	生産	出荷	生産	出荷
。 鑛 工 業	14.6	13.2	12.7	15.9
。 鑛 業	10.0	10.3	10.1	0.1
。 製 造 業	14.8	13.2	12.8	16.2
・ 飲食料品 및 담배	10.2	11.6	17.3	17.0
・ 纖維・衣服・가속	13.1	8.0	-1.7	-0.4
・ 나무・家具	13.6	12.6	-12.1	-5.3
・ 종이・印刷出版	14.9	22.0	6.4	13.6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14.8	15.1	23.8	19.2
・ 非金属鑛物製品	13.3	13.3	9.1	13.1
・ 第1次金屬	15.6	20.1	17.8	11.3
・ 組立金屬・機械裝備	24.2	16.7	25.2	44.8
・ 其他製造業	11.1	9.3	36.9	34.1
主要 生産 増減 業種(産業小分類)				
				食料品(14.9), 담배(21.4) 衣服(-14.2), 가속(-24.2) 나무(-7.6), 家具(-23.8) 종이(13.0), 印刷出版(-4.4) 其他化學(22.9), 고무(34.8) 其他非金属鑛物(11.1), 陶・瓷・土器 (3.4) 鐵鋼(18.2), 非鐵金屬(17.6) 電氣電子(34.8), 機械(19.8)

(10) 全羅北道

- 。主産業의 하나인 纖維·衣服·가죽製品 製造業이 輸出 採算性 惡化로 不振하고 食料品과 담배 製造業種에서도 小幅 增加에 그침에 따라 生産·出荷 各各 4.7%, 5.4% 增加로 대체적으로 沈滯 樣相을 보였음.
- 。業種별로는 比重이 높은 纖維(0.2%, -1.7% ; 매리야스內衣類 生産이 小幅 增加에 그친데다가 綿織物, 純本絹織物 等이 減少)와 衣服類(-40.4%, -34.7% ; 女子用既成外衣, 가죽 및 毛皮장갑 等 減少)가 크게 不振을 보였으며, 역시 原料切上 影響으로 其他製造業(-11.4%, -8.6% ; 이리 工團 內 貴石 및 半貴石 減少)에서도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反面, 自動車 産業에서의 需要 增加로 유리業種(22.0%, 21.9% ; 安全유리 增加)이 큰 幅 增加를 보인 것을 비롯, 其他非金屬鑛物製品(23.1%, 23.8% ; 建築景氣 活性化로 레미콘, 裝飾用石製品 等 增加), 飲料品(20.3%, 26.6% ; 淸酒, 酒精, 燒酒 等 增加), 産業用化合物(11.2%, 10.1% ; 폴리에스터纖維, 過酸化水素 等 增加) 및 종이産業(6.6%, 11.2% ; 新聞用紙, 골板紙原紙 等 增加)에서는 增加하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 7		' 8 8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15.1	17.6	4.7	5.4	
。鑛 業	-7.6	-10.9	13.0	-2.4	其他鑛業(15.9)
。製 造 業	15.5	17.9	4.6	5.4	
· 飲食料品 및 담배	10.1	15.4	7.5	9.1	飲料品(20.3), 담배(4.5)
· 纖維·衣服·가죽	20.8	24.9	-4.3	-6.3	纖維(0.2), 衣服(-40.4)
· 나무·家具	17.2	15.3	-1.0	-7.2	나무(-0.9), 家具(-3.8)
· 종이·印刷出版	13.1	13.4	6.3	11.1	종이(6.6), 印刷出版(0.1)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18.1	17.9	10.4	9.1	産業用化合物(11.2), 其他化學(20.5)
· 非金屬鑛物製品	12.5	15.4	22.0	22.3	유리(22.0), 其他非金屬鑛物(23.1)
· 第1次金屬	-4.3	-1.4	-5.3	-4.1	鐵鋼(-5.3)
· 組立金屬·機械裝備	12.8	14.4	7.2	13.0	電氣電子(20.7), 運輸裝備(235.9)
· 其他 製造業	32.6	28.1	-11.4	-8.6	

(11) 全羅南道

○ 光陽製鐵所 第2期 設備 新規增設 稼動으로 鐵鋼産業이 큰 幅의 新張勢를 보임과 아울러 石油化學 業種에서도 높은 成長을 이룸에 따라 前年 對比 生産 33.2%, 出荷 26.8%의 高伸張勢를 나타냄.

○ 業種別로는 鐵鋼業(77.4%, 88.7% ; 銑鐵, 슬랩, 熱延帶鋼 등 增加)이 高伸張勢를 보인 것을 비롯, 石油精製(24.2%, 29.4% ; 輕油, 나프타, 방카 C油 등 增加), 産業用化合物(20.7%, 16.5%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酸素 등 增加), 其他化學製品(22.1%, 29.6% ; 고무老花防止劑, 카본블랙 增加) 및 纖維(71.8%, 32.4% ; 全南紡織 靈巖工場 吸收 增設로 綿絲, 合成纖維絲 등 增加) 業種 등에서 높은 增加率을 나타냈으나, 고무製品(-9.4%, -10.6% ; 運動靴 減少) 組立金屬製品(-0.9%, 2.3% ; 鐵製門, 家庭用보일 러 등 生産 減少) 및 運輸裝備(-7.5%, -0.3% ; 木船, 鐵鋼漁船 등 減少) 등 業種에서는 不振을 보였음.

業種別 生産 · 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87		'88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11.9	8.1	33.2	26.8
鑛 業	-3.9	-2.6	15.2	7.3
製 造 業	13.0	8.3	34.0	27.0
· 飲食料品 및 담배	-1.6	3.1	4.6	9.5
· 纖維 · 衣服 · 가죽	23.5	23.9	66.6	28.9
· 나무 · 家具	20.8	31.4	33.9	25.6
· 종이 · 印刷出版	81.6	84.8	44.0	39.0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7.6	5.6	22.4	24.2
· 非金属 礦物 製品	11.5	16.5	10.1	10.7
· 第1次 金屬	39.5	44.6	77.4	88.7
· 組立 金屬 · 機械 裝備	-6.8	-7.3	-7.3	-2.2
· 其他 製造 業	-7.8	1.7	0.6	0.1
主要 生産 增減 業種 (産業 小分類)				
食料品(5.1), 飲料品(3.3)				
纖維(71.8), 衣服(23.4)				
나무(20.9), 家具(406.8)				
종이(44.0)				
産業用化合物(20.7), 石油精製(24.2)				
陶 · 瓷 · 土器(5.6), 其他非金属 礦物				
鐵鋼(77.4)				
機械(-32.5), 運輸裝備(-7.5)				
(11.9)				

(12) 慶尙北道

。電氣電子, 機械業種 등에서 큰 幅 增加함에 따라 前年 對比 生産 22.8%, 出荷 22.4%의 伸張勢를 나타냄.

。業種別로는 가장 比重이 높은 電氣電子(45.0%, 49.9% ; 칼라TV, VTR, 車輛用 前照 및 警光燈 等 增加)를 비롯, 機械(41.6%, 46.5% ; 콤파인, 컴퓨터 및 周邊器機 等 增加), 纖維(10.8% , 9.9% ; 綿絲, 合成纖維絲, 合成纖維織物 等 增加), 其他非金屬鑛物製品(16.4% , 16.7% ; 不定型耐火物, 滑石粉, 裝飾用石製品 等 增加), 産業用化合物(18.6%, 20.6% ; 폴리에스터 纖維, 無水프탈酸 等 增加) 業種 등에서 比較的 높은 增加를 보였으나, 組立金屬製品(-22.0%, -22.0% ; 三星重工業 浦項工場의 昌原市 移轉으로 陸上金屬構造物 等 減少), 衣服(-29.5%, -27.1% ; 既成셔츠, 既成下衣 等 減少), 其他製造業(-35.2%, -36.4% ; 人形 및 장난감 等 減少) 等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主要 業種인 鐵鋼 産業은 浦鐵의 第 2熱延爐의 新銳化 工事로 生産은 前年 對比 -0.1% 減少하였으며, 出荷는 2.6% 小幅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 · 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 7		' 8 8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20.2	19.3	22.8	22.4	
。鑛 業	12.4	12.6	1.6	1.2	金屬鑛業(6.5), 其他鑛業(13.3)
。製 造 業	20.5	19.4	23.6	22.7	
· 飲食料品 및 담배	10.8	19.7	8.8	11.0	食料品(7.0), 飲料品(12.0)
· 纖維 · 衣服 · 가죽	8.1	4.2	9.8	9.3	纖維(10.8), 衣服(-29.5)
· 나무 · 家具	4.0	2.5	-21.2	-21.0	나무(-22.1), 家具(-16.0)
· 종이 · 印刷出版	19.3	26.1	17.3	23.7	종이(27.0), 印刷出版(-2.4)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15.9	15.5	22.5	21.4	産業用化合物(18.0), 플라스틱(58.8)
· 非金屬鑛物製品	11.7	13.7	14.3	15.1	유리(21.7), 其他非金屬鑛物(16.4)
· 第 1 次 金屬	9.6	10.2	1.9	3.4	鐵鋼(-0.1), 非鐵金屬(32.1)
· 組立金屬 · 機械裝備	33.0	34.7	39.9	44.5	電氣電子(45.0), 機械(41.6)
· 其他 製造業	98.8	107.2	-35.2	-36.4	

(13) 慶尙南道

。主宗産業인 運輸裝備, 石油精製業을 中心으로 '87年 對比 生産・出荷가 各各 16.9%, 16.4%의 높은 增加勢를 나타냄.

。業種別로는 運輸裝備(19.1%, 15.4%; 油槽船, 大型 및 中型乘用車, 車軸 等 增加), 機械(22.4%, 29.0%; 콤바인, 모더, 지게車 等 增加), 電氣電子 (24.2%, 12.5%; 電氣冷藏庫, 電子레인지, 칼라TV용브라운관 等 增加), 石油精製(14.0%, 21.6%; 방카C油, 輕油, 휘발油 等 增加), 産業用化合物 (15.8%, 26.4%; 말레프탈酸, 폴리프로필렌 等 增加), 飲料品(99.3%, 92.9%; 果汁飲料, 麥酒 等 增加) 業種 等에서는 큰 幅 增加를 보인 反面, 衣服 (-17.7%, -20.1%; 원자切上 等 影響으로 既成셔츠, 既成競技服 等 減少), 組立金屬製品(-6.6%, -7.1%; 現代重工業 勞使粉料 影響 等으로 陸・海上 金屬構造物 等 減少), 科學・精密器械(-8.1%, -5.6%; 카메라, 光學렌즈 等 減少) 業種 等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増減率

(比前年, %)

産 業	'87		'88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12.4	12.2	16.9	16.4
。鑛 業	9.9	15.4	25.0	25.0
。製 造 業	12.4	12.2	16.9	16.4
。其他 製造業 ・ 第1次金屬 ・ 組立金屬・機械裝備 ・ 非金屬礦物製品 ・ 化學・石油・ 고무・ 플라스틱 ・  종이・印刷出版 ・ 나무・家具 ・ 纖維・衣服・가죽 ・ 飲食料品 및 담배 ・ 나무・家具 ・ 종이・印刷出版 ・ 化學・石油・ 고무・ 플라스틱 ・ 非金屬礦物製品 ・ 第1次金屬 ・ 組立金屬・機械裝備 ・ 其他 製造業	20.5	19.2	30.8	22.4
	21.6	18.4	-2.0	-4.9
	18.2	20.2	413.5	419.8
	9.5	9.8	1.7	-0.4
	8.2	9.7	15.2	22.3
	13.0	19.1	14.7	18.0
	21.1	18.9	4.6	4.4
	11.5	11.1	15.7	13.2
	24.0	27.0	-4.0	-32.0
	20.5	19.2	30.8	22.4
21.6	18.4	-2.0	-4.9	
18.2	20.2	413.5	419.8	
9.5	9.8	1.7	-0.4	
8.2	9.7	15.2	22.3	
13.0	19.1	14.7	18.0	
21.1	18.9	4.6	4.4	
11.5	11.1	15.7	13.2	
24.0	27.0	-4.0	-32.0	

(14) 濟州道

。主 産業인 飲食料品 製造業이 原材料 供給 不足으로 크게 減少함에 따라 鑛工業 部門의 生産(-5.3), 出荷(-1.7%)가 各各 負(-)의 伸張勢를 나타내 었음.

。業種別로 보면 飲料品 製造業이 오랜지 原液의 生産 減少(가뭄으로 인해 갑갑 作況이 不振하여 原材料 確保 隘路)로 生産·出荷 各各 -21.6%, -17.9%의 減少를 보인 것을 비롯, 食料品(-5.0%, -9.4%; 고구마 確保가 어려움에 따라 澱粉 生産 減少, 採算性 惡化와 大豆油로의 需要 代替로 油菜油 生産 減少, 原材料 擴保의 隘路로 加工海藻類 生産 減少等) 業種 과 印刷出版業(-17.3%, -15.9%; 日刊新聞, 一般印刷物 減少) 및 組立金 屬(-28.6%, -29.3%; 鐵製門, 金屬탱크 및 容器等 減少) 業種 등에서 減 少를 보였으나 其他非金屬鑛物製品(13.2%, 13.5%; 濟州 觀光 開發 事業 等으로 레미콘, 콘크리트블럭 등 增加), 其他플라스틱製品(45.7%, 39.1% ; 스티로폴 需要 增加) 및 産業用化合物(81.2%, 85.0%; 有機質肥料 等 增加) 業種 等에서는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産 業	' 8 7		' 8 8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生産	出荷	生産	出荷	
。鑛 工 業	10.3	18.7	-5.3	-1.7	
。鑛 業	54.8	71.7	30.1	21.7	其他鑛業(30.1)
。製 造 業	9.6	18.1	-6.1	-2.1	
· 飲食料品 및 담배	-2.0	4.7	-13.4	-11.8	食料品(-5.0), 飲料品(-21.6)
· 纖維·衣服·가죽	7.7	13.8	-3.8	-8.8	纖維(-5.5), 衣服(4.1)
· 나무·家具	6.8	7.2	44.2	47.9	나무(54.9), 家具(-48.0)
· 종이·印刷出版	21.6	18.4	-10.5	-0.8	종이(6.1), 印刷出版(-17.3)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12.9	9.2	24.2	13.0	産業用化合物(81.2), 플라스틱(45.7)
· 非金屬鑛物製品	61.0	65.2	13.2	13.5	其他非金屬鑛物(13.2)
· 第1次金屬	-	-	-	-	
· 組立金屬·機械裝備	15.9	20.1	-48.6	-40.1	組立金屬(-28.6), 運輸裝備(-82.8)
· 其他 製造業	-	-	-	-	

## < 附 錄 >

< 圖 1 > 全國, 市・道別 鑛工業 生産・出荷・在庫指數 動向

< 圖 2 > 全國, 市・道別 鑛工業 生産・出荷・在庫 増減率 動向

< 圖 3 > 全國, 市・道別 業種別 生産 動向

< 圖 4 > 全國, 市・道別 鑛工業 構造

< 表 1 > 市・道別 主要 業種別 比重(生産加重値)

< 表 2 > 市・道別 生産 加重値 上位 品目

圖1  
 — 生產  
 - - - 出荷  
 ····· 在庫

全國，市，道別 鑛工業生產，出荷，在庫指數 動向

原指數(19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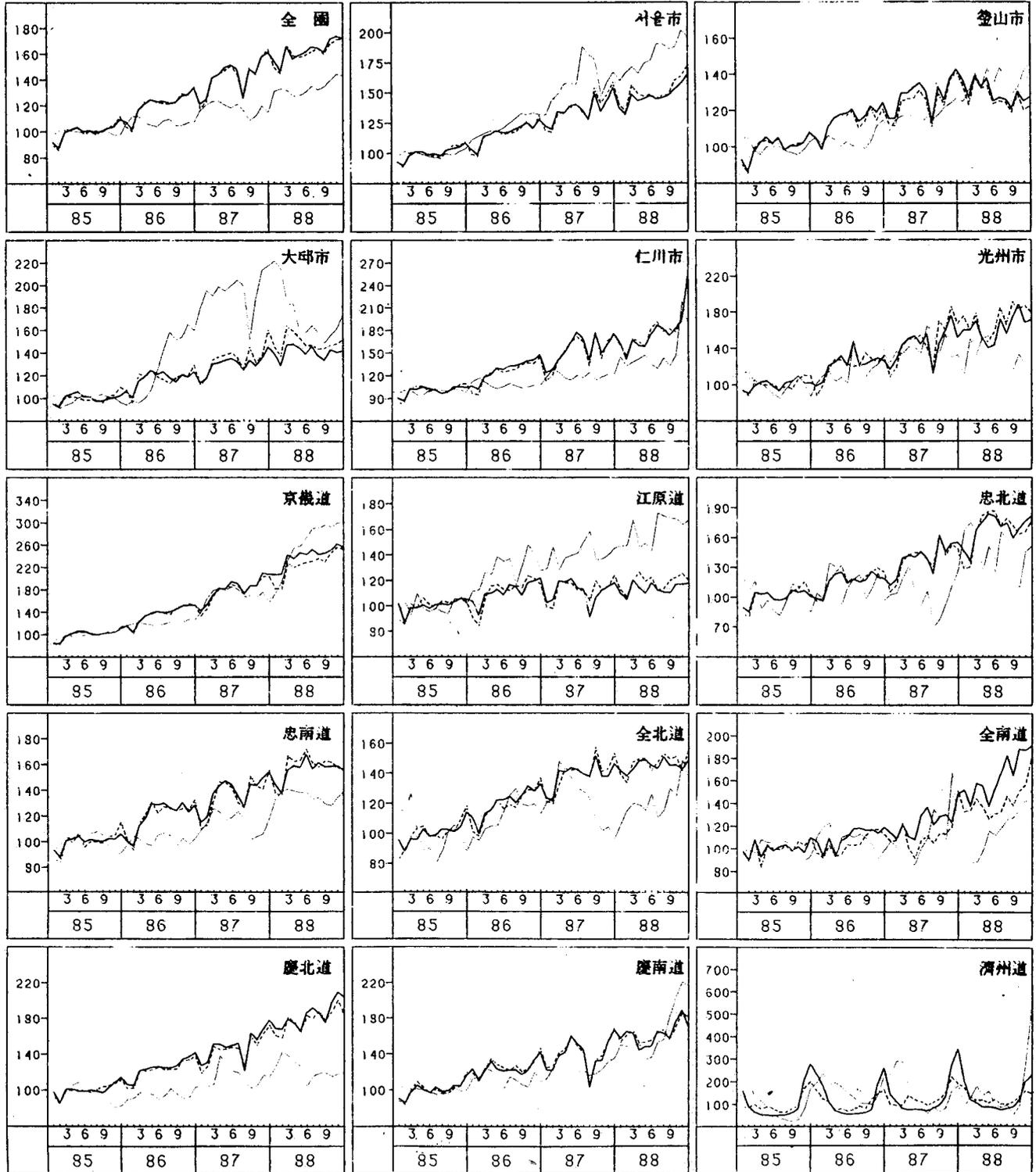


圖2 ——— 生產  
 - - - 出荷  
 ····· 在庫

全國、市、道別 鑛工業生產、出荷、在庫增減率 動向

原指數，前年同月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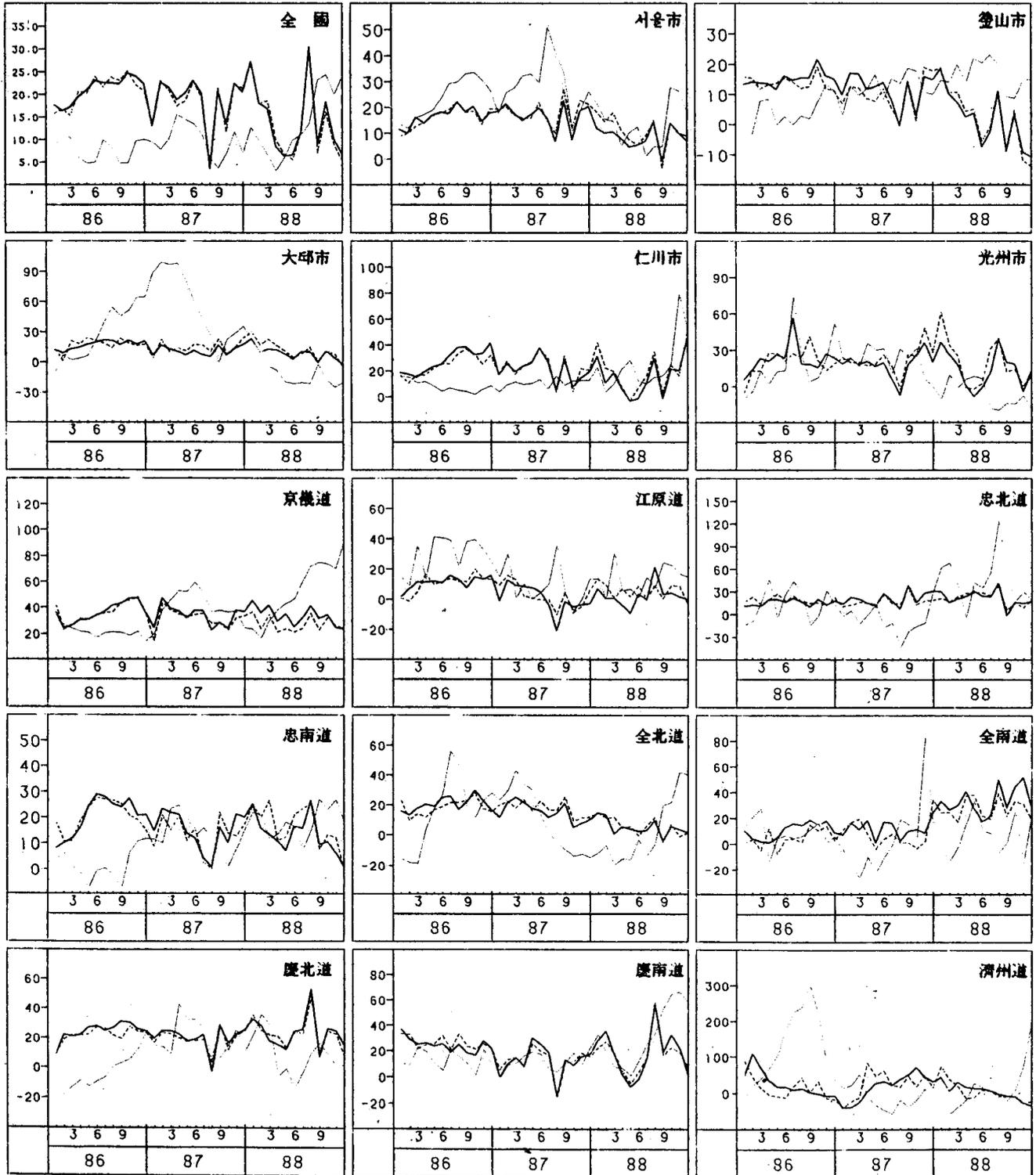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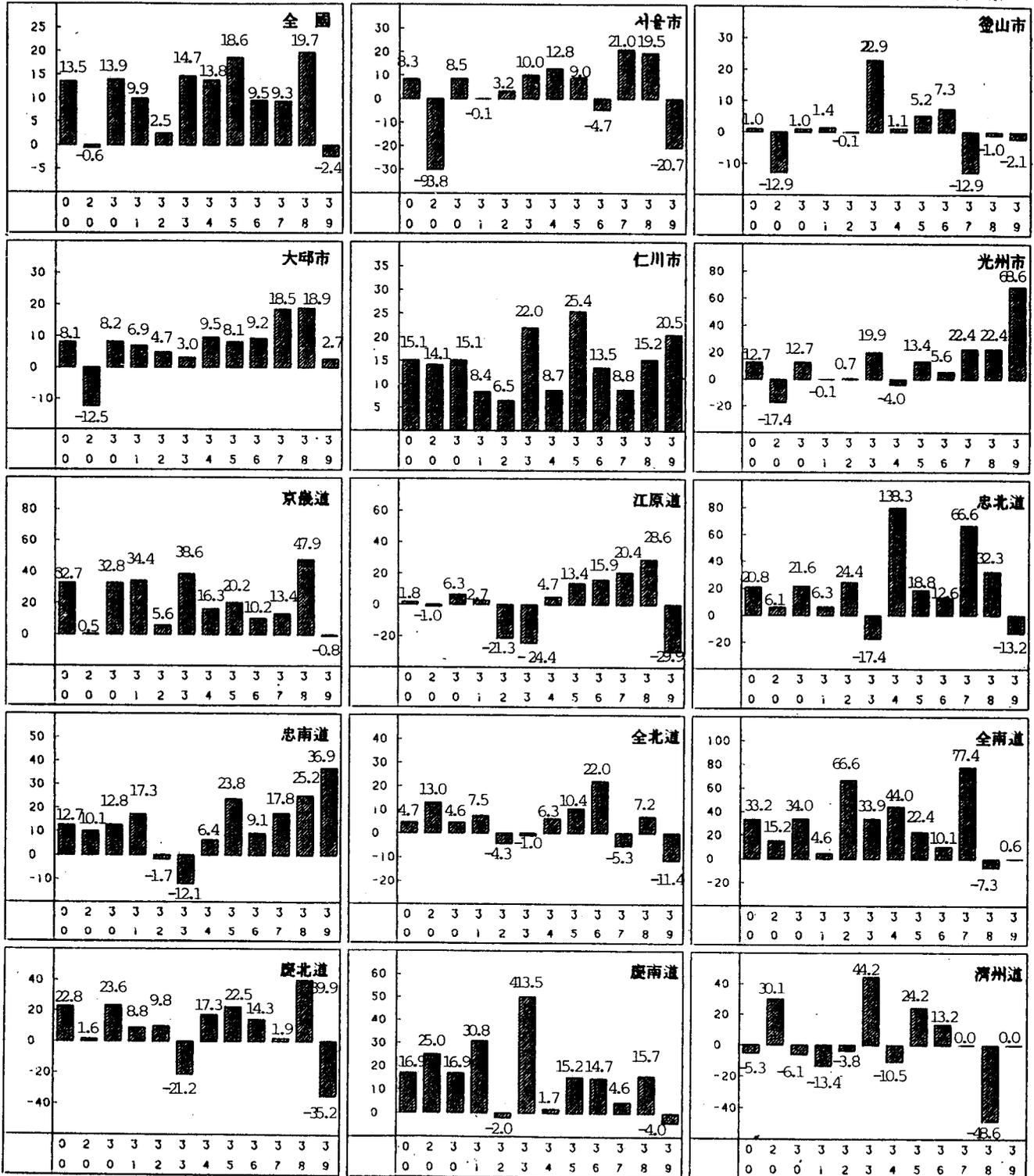


圖3

全國, 市, 道別 業種別生產 動向

前年累計比 (88/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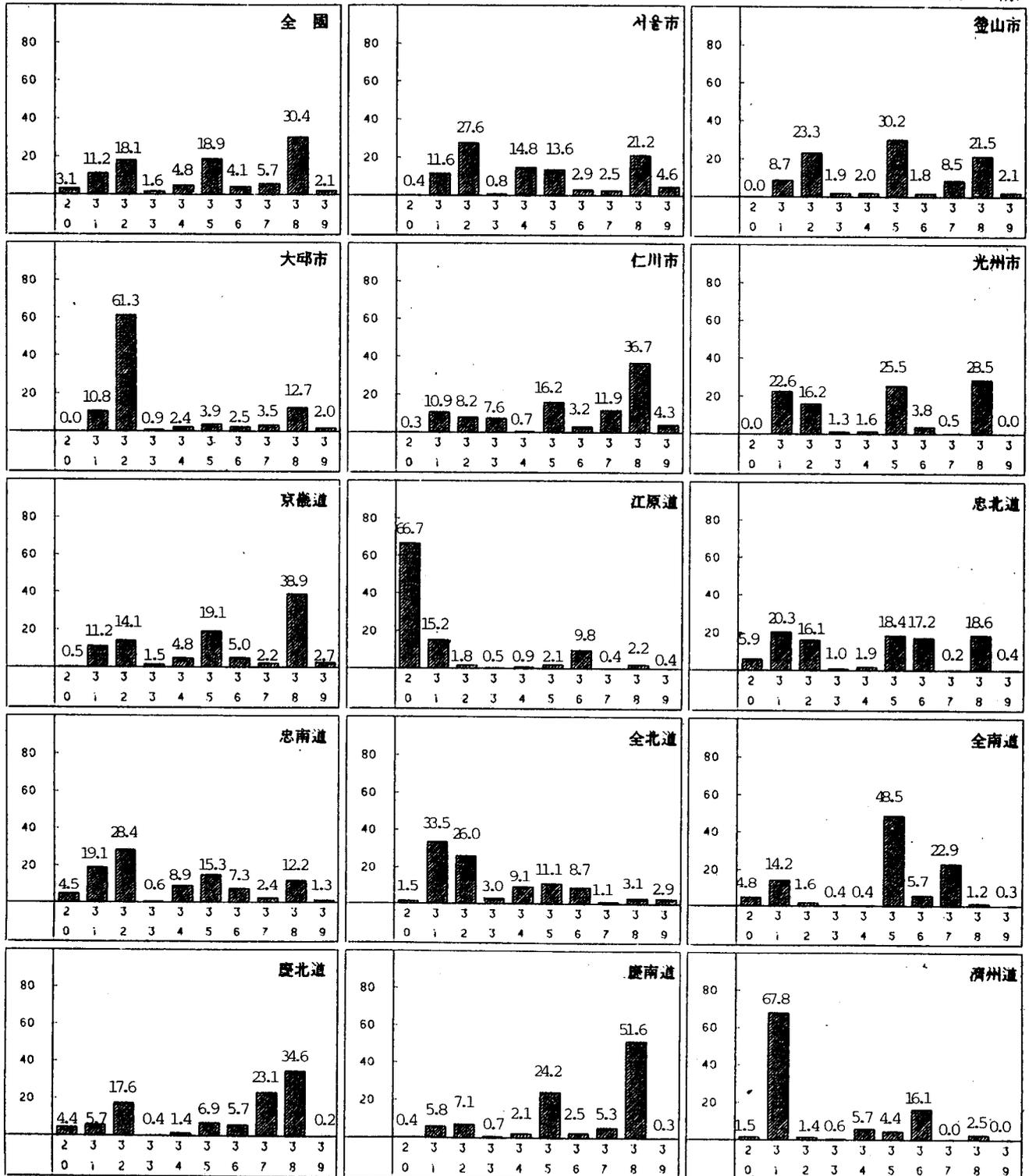


\* 20:광업, 31:음식료·담배, 32:섬유·의복·가죽, 33:나무·가구, 34:종이·인쇄, 35:석유·화학·고무, 플라스틱, 36:비금속광물, 37:제1차금속, 38:조립금속·기계·전자·운수장비, 39:기타 제조업

圖 4

全國, 市, 道別 鑛工業 構造

附加價值基準 (%)



\* 20: 광업, 31: 음식료·담배, 32: 섬유·의복·가죽, 33: 나무·가구, 34: 종이·인쇄, 35: 석유·화학·고무, 플라스틱, 36: 비금속광물, 37: 제1차금속, 38: 조립금속·기계·전자·운수장비, 39: 기타제조업

< 表 2 > 市・道別 生産 加重値 上位品目(附加價值 基準)

(全代表品目 : 100.0 基準)

順位	全 國 1)	서 울	釜 山
1	醫 藥 品 (2.7)	醫 藥 品 (5.2)	運 動 靴 (15.8)
2	合 成 纖 維 織 物 (2.4)	日 刊 新 聞 (4.8)	既 成 셔츠 類 (5.3)
3	一 般 貨 物 船 (2.2)	메 리 야 쓰 外 衣 (4.4)	既 成 普 通 外 衣 (2.2)
4	無 煙 炭 (2.0)	女 子 用 既 成 外 衣 (3.8)	鐵 筋 (2.0)
5	合 成 纖 維 絲 (1.8)	書 籍 (3.3)	一 般 貨 物 船 (2.0)
6	運 動 靴 (1.6)	가 죽 및 毛 皮 衣 服 (2.6)	運 動 靴 部 品 (1.9)
7	染 色 加 工 織 物 (1.6)	定 期 刊 行 物 (2.4)	合 成 纖 維 絲 (1.7)
8	담 배 (1.5)	既 成 普 通 外 衣 (2.3)	冷 凍 물 고 기 (1.6)
9	칼 라 T·V 受 像 機 (1.1)	人 形 및 장난감 (2.1)	一 般 버 스 (1.5)
10	방 카 C 油 (1.1)	既 成 셔츠 類 (1.9)	自 動 車 車 體 部 品 (1.4)
11	既 成 셔츠 類 (1.0)	一 般 印 刷 物 (1.9)	밀 가 루 (1.3)
12	輕 油 (1.0)	煉 炭 (1.5)	綿 織 物 (1.2)
13	메 리 야 스 外 衣 (1.0)	化 粧 品 (1.5)	스텐레스製家庭用品 (1.1)
14	日 刊 新 聞 (0.9)	레 미 콘 (1.3)	冷 延 薄 板 (1.0)
15	化 粧 品 (0.8)	集 積 回 路 (1.3)	연승및섬유로우프 (1.0)
16	既 成 普 通 外 衣 (0.8)	染 色 加 工 織 物 (1.2)	綿 絲 (0.9)
17	女 子 用 既 成 外 衣 (0.8)	雪 糖 菓 子 (1.2)	인 스텐 트 麵 類 (0.9)
18	中 型 乘 用 車 (0.8)	合 成 纖 維 織 物 (1.1)	고 무 長 靴 및 雨 靴 (0.9)
19	陸 上 金 屬 構 造 物 (0.7)	女 性 用 화운데이션 (1.1)	配 合 飼 料 (0.8)
20	綿 織 物 (0.7)	乾 菓 子 및 스낵 類 (1.1)	洗 濯 비 누 (0.8)
21	綿 絲 (0.7)	錄 音 機 및 再 生 機 (1.1)	合 成 纖 維 織 物 (0.8)
22	配 合 飼 料 (0.7)	글루타민산 소다 (1.1)	鐵 鋼 油 槽 船 (0.8)
23	레 미 콘 (0.7)	金 型 (0.9)	金 型 (0.8)
24	人 形 및 장난감 (0.6)	自 動 車 타이어 (0.9)	染 色 加 工 織 物 (0.7)
25	煉 炭 (0.6)	男 子 用 既 成 洋 服 (0.8)	一 般 合 板 (0.7)
26	一 般 印 刷 物 (0.6)	인 스텐 트 麵 類 (0.8)	女 子 用 既 成 外 衣 (0.7)
27	自 動 車 타이어 (0.5)	가 방 (0.8)	鐵 鋼 線 (0.7)
28	書 籍 (0.5)	鋼 管 (0.8)	페 인 트 (0.7)
29	熱 延 帶 鋼 (0.5)	麥 酒 (0.7)	煉 炭 (0.7)
30	시 멘 트 (0.5)	빵 및 케 이 크 (0.6)	鋼 管 (0.7)

順位	大 邱	仁 川	光 州
1	合成纖維織物 (22.8)	鐵筋 (2.7)	自動車 타이어 (21.5)
2	染色加工織物 (17.3)	공작기 (2.6)	呂宋배 (14.7)
3	呂宋배 (5.3)	방카 C 油 (2.5)	中型 트럭 (9.6)
4	合成纖維絲 (4.9)	輕油 (2.5)	綿絲 (6.3)
5	梳毛織物 (3.9)	鋼管 (2.4)	大型 트럭 (5.6)
6	綿織物 (2.9)	피아노 (2.3)	合成纖維織物 (2.7)
7	燒酒 (1.9)	形鋼 (2.3)	市乳 (2.7)
8	綿絲 (1.1)	配合飼料 (2.0)	乾電池 (2.7)
9	刺繡織物 (1.1)	自動車用內燃機關 (1.7)	綿織物 (2.2)
10	再生纖維織物 (1.0)	角材 (1.6)	레미콘 (2.0)
11	眼鏡 (1.0)	지게車 (1.6)	小型 버스 (1.6)
12	回鑄物 (1.0)	中型乘用車 (1.6)	煉炭 (1.5)
13	알루미늄板 (1.0)	비디오 테이프 (1.5)	氷菓 (1.2)
14	시멘트 (0.9)	精糖 (1.5)	再乾燥 잎담배 (1.1)
15	클러치 디스크 (0.9)	밀가루 (1.3)	一般 버스 (1.1)
16	農藥 (0.8)	一般合板 (1.3)	高速型 버스 (1.0)
17	레미콘 (0.8)	家庭用冷藏庫 (1.2)	自動車 부드 (0.9)
18	自動車車體部品 (0.8)	合成普通外衣 (1.2)	合成纖維絲 (0.8)
19	양탄 (0.7)	陸上金屬構造物 (1.1)	汎用旋盤 (0.7)
20	煉炭 (0.7)	커피 (1.0)	一般印刷物 (0.6)
21	人形 및 장난감 (0.7)	컴퓨터 및周邊器機 (1.0)	自動車車體部品 (0.6)
22	乾菓子 및 스낵類 (0.7)	가스레인지 (1.0)	사이 다 (0.6)
23	織機 (0.7)	베어 링 (0.9)	女子용 마송洋裝服 (0.5)
24	燃絲 (0.7)	亞鉛鍍鋼板 (0.9)	建築材用石製品 (0.5)
25	梳毛絲 (0.7)	스텐레스製家庭用品 (0.9)	再生纖維絲 (0.5)
26	알루미늄製家庭用品 (0.6)	電子複寫機 (0.8)	日刊新聞 (0.5)
27	純本絹織物 (0.6)	콘테이너容器 (0.8)	既成 셔츠類 (0.4)
28	바크 (0.6)	L. P. G. (0.8)	角材 (0.4)
29	日刊新聞 (0.6)	장농 (0.8)	金型 (0.4)
30	클러 (0.5)	農藥 (0.8)	電子레인지 (0.4)

順位	京 畿	江 原	忠 北
1	醫 藥 品 ( 8.0 )	無 煙 炭 ( 60.3 )	시 멘 트 ( 9.1 )
2	化 粧 品 ( 2.4 )	담 배 ( 9.2 )	담 배 ( 5.8 )
3	V. T. R. ( 2.3 )	시 멘 트 ( 6.0 )	合 成 纖 維 絲 ( 4.2 )
4	칼라 T·V 受像機 ( 2.2 )	시 멘 트 크링커 ( 2.5 )	合 成 纖 維 織 物 ( 3.8 )
5	染色加工織物 ( 2.0 )	重 石 鑛 石 ( 2.0 )	綿 絲 ( 3.1 )
6	小 型 트럭 ( 1.6 )	石 灰 石 ( 1.7 )	磁 氣 헤 드 ( 3.0 )
7	合 成 纖 維 絲 ( 1.3 )	加 工 魚 貝 類 ( 1.3 )	플라스틱壯板, 壁紙 ( 2.9 )
8	電 子 레인지 ( 1.1 )	燒 酒 ( 1.2 )	自 動 車 用 스테레오 ( 2.8 )
9	麥 酒 ( 1.1 )	煉 炭 ( 1.1 )	回 路 遮 斷 器 ( 2.7 )
10	메 리 야 쓰 外衣 ( 1.0 )	鐵 鑛 石 ( 1.0 )	石 灰 石 ( 2.5 )
11	家 庭 用 冷 藏 庫 ( 1.0 )	市 乳 ( 0.8 )	再 乾 燥  잎담배 ( 2.3 )
12	쇠 가 죽 ( 1.0 )	脫 水 機 ( 0.6 )	滑 石 粉 ( 2.3 )
13	레 미 콘 ( 0.9 )	男 子 用 既 成 洋 服 ( 0.5 )	플라스틱包裝用器 ( 2.0 )
14	電 力 線 및 케이블 ( 0.8 )	亞 鉛 鑛 石 ( 0.5 )	化 粧 品 ( 1.9 )
15	人 形 및 장난감 ( 0.8 )	配 合 飼 料 ( 0.4 )	無 線 送 受 信 機 ( 1.7 )
16	自 動 車 機 關 用 部 品 ( 0.8 )	女 子 用 既 成 外 衣 ( 0.4 )	固 定 蓄 電 器 ( 1.7 )
17	通 信 線 및 케이블 ( 0.8 )	硅 石 ( 0.4 )	豆 乳 ( 1.6 )
18	市 乳 ( 0.8 )	濁 酒 ( 0.4 )	家 庭 用 陶 瓷 食 器 ( 1.6 )
19	錄 音 機 및 再 生 機 ( 0.8 )	動 力 소 벨 ( 0.3 )	플라스틱 필름 ( 1.6 )
20	乳 酸 菌 飲 料 ( 0.8 )	골 板 紙 및 箱 子 ( 0.3 )	齒 藥 ( 1.6 )
21	配 合 飼 料 ( 0.8 )	레 미 콘 ( 0.3 )	醫 藥 品 ( 1.4 )
22	合 成 纖 維 織 物 ( 0.7 )	一 般 印 刷 物 ( 0.3 )	市 乳 ( 1.4 )
23	既 成 普 通 外 衣 ( 0.7 )	合 金 鐵 ( 0.3 )	無 煙 炭 ( 1.2 )
24	폴리에스터 纖維 ( 0.7 )	角 材 ( 0.2 )	積 算 電 力 計 ( 1.2 )
25	골 板 紙 및 箱 子 ( 0.7 )	콘 크 리 트 벽돌 ( 0.2 )	家 畜 加 工 고기 ( 1.2 )
26	플라스틱 필름 ( 0.7 )	換 風 機 ( 0.2 )	라 미 네 이 텅 ( 1.2 )
27	燒 酒 ( 0.7 )	避 妊 用 고무 器 具 ( 0.2 )	煉 炭 ( 1.1 )
28	컴퓨터 및 周 邊 器 機 ( 0.7 )	人 形 및 장난감 ( 0.2 )	레 미 콘 ( 1.1 )
29	光 纖 維 케이블 ( 0.7 )	純 本 絹 織 物 ( 0.2 )	방 및 케이크 ( 1.1 )
30	위 스 키 ( 0.6 )	카 바 이 드 ( 0.2 )	合 成 洗 劑 ( 1.1 )

順位

1	담	메 (7.0)
2	綿	絲 (5.8)
3	綿	織物 (5.4)
4	自動車	타이어 (3.7)
5	비디오	테이프 (3.5)
6	無煙	炭 (3.2)
7	一般印刷物	(3.0)
8	既成	셔츠類 (2.3)
9	粉	乳 (2.3)
10	合成纖維	絲 (2.0)
11	合成纖維	織物 (1.9)
12	化粧	品 (1.9)
13	외가	족 (1.8)
14	家庭用	陶器 食器 (1.6)
15	配合飼料	(1.5)
16	크라프트	紙 (1.5)
17	醫藥	品 (1.4)
18	燃	絲 (1.4)
19	女性用	화우메이션 (1.3)
20	乳酸菌	飲料 (1.3)
21	合成洗劑	(1.2)
22	農藥	(1.1)
23	紅	蔘 (1.0)
24	알루미늄	샷시바 (1.0)
25	煉	炭 (1.0)
26	가죽	長靴 및登山靴 (0.9)
27	女子用	既成 外衣 (0.9)
28	石棉	슬레이트 (0.9)
29	시멘트	(0.8)
30	플라스틱	包裝用器 (0.8)

忠 南

메리야스	內衣 (17.0)
담	배 (16.4)
플라스틱	纖維 (5.7)
판유리	(3.7)
新聞用	紙 (3.4)
中質	紙 (3.1)
인스턴트	麵類 (2.3)
貴石	및半貴石 (2.1)
配合飼料	(2.1)
燒	酒 (1.7)
一般	合板 (1.7)
綿	絲 (1.3)
女子用	既成 外衣 (1.3)
過酸化	水素 (1.3)
酒	精 (1.3)
가죽	및 毛皮 掌匣 (1.2)
純本	絹織物 (1.2)
食品, 飲料	用유리병 (1.1)
위스키	(1.1)
清	酒 (1.1)
乾菓子	및스낵類 (1.0)
P. V. C.	樹脂 (0.9)
酒	(0.8)
필	프 (0.8)
레미	콘 (0.8)
클	라 (0.8)
角	材 (0.7)
煉	炭 (0.7)
유리	食器 및 陶房用品 (0.7)
鑄	鐵 管 (0.7)

全 北

熱	延帶	鋼 (18.0)
輕	방카	C油 (6.8)
플리에틸렌	(3.4)	
複合肥	料 (3.1)	
鐵	(3.0)	
나프	타 (2.4)	
燒	酒 (2.4)	
無煙	炭 (2.4)	
加工	魚貝類 (2.3)	
고무	老化防止劑 (2.1)	
P. V. C.	樹脂 (2.1)	
加工	海藻類 (2.0)	
염화	비닐 모노머 (1.9)	
揮發	油 (1.9)	
冷凍	물고기 (1.9)	
켓트	油 (1.7)	
슬	랩 (1.5)	
시멘트	(1.4)	
天	日 塩 (1.3)	
플리프로	필렌 (1.2)	
苛性	소다 (1.2)	
A. B. S.	樹脂 (1.2)	
家庭用	陶器 食器 (1.2)	
燈	油 (1.1)	
L. P. G.	(1.1)	
尿	素 肥料 (1.0)	
레미	콘 (1.0)	
配合飼料	(0.9)	
合成	고무 (0.8)	

全 南

順位	慶 北	慶 南	濟 州
1	칼라 T. V 受像機 ( 8.9 )	一 般 貨 物 船 (12.5 )	오 렌 지 原 液 (24.7 )
2	合 成 纖 維 織 物 ( 8.8 )	中 型 乘 用 車 ( 3.9 )	레 미 콘 (10.5 )
3	熱 延 帶 鋼 ( 6.0 )	방 카 C 油 ( 3.8 )	農 產 物 통조림 ( 9.9 )
4	電 話 交 換 機 ( 5.2 )	合 成 纖 維 絲 ( 3.3 )	澱 粉 ( 9.4 )
5	中 厚 板 ( 3.5 )	輕 油 ( 3.1 )	燒 酒 ( 6.7 )
6	合 成 纖 維 絲 ( 3.1 )	海 上 金 屬 構 造 物 ( 2.8 )	配 合 飼 料 ( 5.6 )
7	無 煙 炭 ( 3.1 )	船 舶 用 內 燃 機 關 ( 2.7 )	煉 炭 ( 2.8 )
8	칼라 T.V브라운관 ( 2.4 )	鐵 鋼 油 槽 船 ( 2.1 )	日 刊 新 聞 ( 2.8 )
9	컴퓨터및周邊器機 ( 2.1 )	陸 上 金 屬 構 造 物 ( 2.0 )	콘 크 리 트 벽돌 ( 2.7 )
10	黑 白 T. V 受 像 機 ( 1.8 )	特 殊 貨 物 船 ( 1.4 )	빵 및 케 이 크 ( 2.5 )
11	線 材 ( 1.8 )	物 品 取 扱 用 크레인 ( 1.1 )	冷 凍 물 고 기 ( 1.9 )
12	陸 上 金 屬 構 造 物 ( 1.7 )	家 庭 用 冷 藏 庫 ( 1.1 )	市 乳 ( 1.9 )
13	綿 織 物 ( 1.5 )	드 럼 관 ( 1.0 )	유 채 油 ( 1.8 )
14	銑 鐵 ( 1.5 )	特 殊 鋼 冷 延 鋼 板 ( 0.9 )	加 工 海 藻 類 ( 1.7 )
15	로 울 러 ( 1.4 )	L. P. G ( 0.9 )	一 般 印 刷 物 ( 1.6 )
16	通 信 線 및 케이블 ( 1.3 )	鋼 管 ( 0.7 )	콘 크 리 트 블록 ( 1.6 )
17	시 멘 트 ( 1.1 )	燈 油 ( 0.7 )	碎 石 ( 1.5 )
18	슬 랩 ( 1.1 )	아 크 릴 릿 纖 維 ( 0.7 )	골 板 紙 및 箱 子 ( 1.2 )
19	再 乾 燥 잎담배 ( 1.1 )	複 合 肥 料 ( 0.6 )	建 資 材 用 石 製 品 ( 1.1 )
20	鐵 筋 ( 1.0 )	麥 酒 ( 0.6 )	스 치 로 폴 ( 1.1 )
21	폴리에스터 纖 維 ( 0.9 )	텔 레 프 탈 酸 ( 0.6 )	木 船 ( 0.9 )
22	錫 鍍 鋼 板 ( 0.9 )	펄 프 ( 0.6 )	鐵 製 門 ( 0.8 )
23	綿 絲 ( 0.9 )	플라 스틱 壯 板, 壁 紙 ( 0.6 )	魚 幕 ( 0.7 )
24	브 라 운 管 琉 璃 ( 0.8 )	非 商 業 用 特 殊 船 舶 ( 0.5 )	메 리 야 스 外 衣 ( 0.5 )
25	耕 耘 機 ( 0.8 )	產 業 用 보 일 러 ( 0.5 )	濁 酒 ( 0.5 )
26	冷 延 帶 鋼 ( 0.8 )	타 일 ( 0.5 )	담 요 ( 0.4 )
27	熱 延 薄 板 ( 0.7 )	페 인 트 ( 0.5 )	샷 시 문 및 窓 틀 ( 0.4 )
28	鋼 塊 ( 0.7 )	키 실 렌 ( 0.5 )	有 機 質 肥 料 ( 0.3 )
29	耐 火 벽 돌 ( 0.7 )	合 成 고 무 ( 0.5 )	門 및 門 틀 ( 0.2 )
30	黑 白 T. V 브라운관 ( 0.7 )	엘 리 베 이 터 ( 0.5 )	金 屬 탱 크 및 容 器 ( 0.2 )

註 : 1) 全國에는 電氣業 發電量이 포함되나, 이를 除外하여 鑛工業部門을 10,000.0으로 하여 構成比를 再換算하였음

※生産指數는 最下單位인 品目別 生産量變化를 加重平均하여 作成하게 됨.

이때 各 品目들은 測定單位가 相異하므로 品目別 重要度(附加價值 構成比)를 加重值로 使用하게 됨.

〈表1〉市・道別로는 業種別 比重(附加價値基準 生産 加重値)

業	全 國	서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 生 産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鑛 業	313.9	36.8	1.2	2.9	26.5	4.2	54.8	6,671.2	586.1	451.9	151.9	475.1	438.0	41.6	152.2
。 炭 鑛 業	206.7	-	-	-	-	-	-	6,032.1	125.5	321.9	1.6	240.6	312.7	-	-
。 石 屬 鑛 業	16.6	-	0.1	-	0.1	-	7.2	377.6	58.1	2.0	12.0	1.8	24.1	3.3	-
。 其 他 鑛 業	90.6	36.8	1.1	2.9	26.4	4.2	47.6	261.5	402.5	128.0	138.3	232.7	101.2	38.3	152.2
。 製 造 業	9,686.1	9,963.2	9,998.8	9,997.1	9,973.5	9,995.8	9,945.2	3,328.8	9,413.9	9,548.1	9,848.1	9,524.9	9,562.0	9,958.4	9,847.8
。 飲 食 料 品 及 菸 草 製 造 業	1,114.7	1,160.4	871.6	1,077.3	1,086.6	2,262.3	1,115.8	1,519.4	2,028.9	1,912.1	3,351.2	1,420.3	567.1	577.7	6,778.9
。 織 維 衣 服 及 其 他 製 造 業	1,812.9	2,765.7	2,331.5	6,131.8	824.3	1,615.2	1,406.3	179.5	1,616.1	2,836.0	2,599.0	159.3	1,758.5	715.6	141.1
。 木 材 及 其 他 製 造 業	159.0	77.9	193.0	93.7	759.4	129.3	153.5	44.9	100.0	55.9	296.7	41.9	40.1	67.9	59.0
。 紙 及 其 他 製 造 業	479.8	1,478.7	199.6	244.1	68.0	154.9	480.0	90.9	192.5	886.8	907.6	39.3	136.9	213.2	566.7
。 印 刷 出 版 業	1,892.5	1,361.0	3,021.9	385.9	1,618.8	2,548.7	1,907.4	214.5	1,838.1	1,528.5	1,111.6	4,851.4	687.5	2,416.6	439.5
。 化 合 物, 石 油, 高 分 子 製 品 製 造 業	409.6	286.0	178.8	245.1	324.5	379.3	502.4	984.3	1,719.7	734.2	868.6	572.2	574.0	246.6	1,606.7
。 非 金 屬 礦 物 製 品 製 造 業	569.9	255.1	849.3	347.6	1,190.6	49.2	220.2	44.3	17.5	243.4	113.5	2,289.2	2,309.8	526.3	-
。 第 一 次 金 屬 製 造 業	3,034.8	2,119.9	2,150.3	1,269.6	3,667.0	2,850.8	3,892.3	215.1	1,862.5	1,217.2	311.5	121.1	3,463.8	5,164.4	255.9
。 組 立 金 屬 製 品, 機 械 及 裝 備 製 造 業	212.9	458.5	202.8	202.0	434.3	6.1	267.3	35.9	38.6	134.0	288.4	30.2	24.3	30.1	-
。 其 他 製 造 業															

註 : 1) 全國指數에는 電氣業이 追加되나, 여기서는 除外하여 萬分比로 再換算하였음.  
 ※ 業種別 比重은 各市·道에 있어서 鑛工業 部門의 全體 附加價値를 10,000.0 으로 하였을 때 各 業種들이 차지하는 比率를 나타내는 것임.  
 生産 指數에서는 이 構成比率를 加重値(Weight)로 使用하게 됨.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111-11-12

# 광공업동태조사표(I)

[일반업종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사업체					1. 대규모	1. 500명 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 이하	1. 전 입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본사					2. 중소규모		

## 1.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 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 사항	단 위	구입		동일공장내재투입 (자가소비)	출하			과부족조정	월말재고	
					생산			외부(수입포함)	관매				동일기업내타공장 출하 및 기타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국내시 관	수 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 번호	원재료및연료부호	원재료 및 연료명	유고 사항	단 위	구분 국산1 수입2	월 중 사용량					월 말 재고량						
						백 십 만	천 백 십 일										
01																	
02																	
03																	
04																	
05																	
06																	
07																	
08																	
51	9 0 1 - 0 0	무연탄·원료탄		M/T													
52	9 0 2 - 0 0	경유·중유		Kℓ													
53	9 0 3 - 0 0	방카 C 유		Kℓ													
54	9 0 4 - 0 0	전 력		천KWH													

## \* 증감내용

	품목부호	전월비 (%)	증감 부호	증감사유	●증감내용부호	
					<증 가>	<감 소>
① 생 산					01 수출(주문) 증가	11 수출(주문) 감소
					02 내수(주문) 증가	12 내수(주문) 감소
					03 설비증설	13 설비축소
					04 정상가동	14 보수·고장
② 출 하					05 지정품목생산개시	15 타품목생산
					06 타공장흡수로증가	16 원재료구입부진
					07 수요증가대비	17 휴업
					08 신제품·신기법	18 화재·파업
③ 재 고					09 도입에 따른 증가 기타	19 기타(일기불순등)

3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월말종업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인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상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자영업주·무급가족 종사자																		
임시 일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금월말상시종업원	월중조업일수	월중1일평균조업시간
□□□□ 명	□□□□ 명	□□□□ 명	□□□□ 명	□□ 일	□□□□ 시간 □□□□ 교대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상여금등)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상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시 일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 증감내용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부 호
① 입 직 자			1. 신규채용 2. 이직자충원 3. 기 타
② 이 직 자			1. 생산활동부진 감축 2. 공정개선, 자동화에 따른 감축 3. 기 타
③ 조 업 일 수			1. 생산활동호조 2. 정상가동 3. 생산활동부진 4. 휴업, 파업, 기타
④ 정 액 급 여			1. 급여인상 2. 초과근무수당증가 3. 종업원 증가 4. 종업원 감소
⑤ 특 별 급 여			1. 상여금지급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3. 기 타

응답부서	응답자	조사담당자	내검자	관리책임자
과				
전화 ( )	인	인	인	인

**당 부 말 씀**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써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생 산**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 제외:
  - 타 제조업체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생산한량

**외 부 구 입**

- 조사품목(생산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외국수입 및 국내 타 업체로부터의 구입·유통량
- 주요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타업체에 하청생산케 하여 납품받은 량
- 반품된량(폐기품 제외)

**동일기업내타공장분구입**

-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인수한 량

**동 일 공 장 내 재 투 입**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 소비된 량
- 위탁생산을 위해 하청공장에 원재료로 제공한 량
- ※ 제외: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된량

**국 내 시 판**

- 국내 타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량
- 수출용이라도 타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량

**동 일 기 업 내 타 공 장 출 하 및 기 타**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으로 이송한 량
-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출하 이송한 량
- 타업체로부터 유통받은 량의 변제
- 선물, 견본, 전사용 및 자기사용(사무실, 공장내)으로 공급된 량
- ※ 제외: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국내시판용,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도장 또는 단순 가공을 위해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지정조사품목의 자체생산분, 위탁생산분 및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출하로 계상 없음)
- ※ 제외: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량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지상통계: 111-11-12

# 광공업동태조사표 (표)

본 조사표의 목적은 광공업 동태의 실상을 파악하고,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절대 보장됩니다.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업종용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대원 12월말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기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사업체	본사						

## 1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생산		매입	내재재무입	출하		재고
				수량	단위			수량	단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번호	원재료 및 연료부호	원재료 및 연료명	유고사항	단위	구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국산	1/2	배	정	배	정
51	9 0 1	부연탄·원료탄		M/T						
52	9 0 2	경유·중유		Kℓ						
53	9 0 3	방카 C 유		Kℓ						
54	9 0 4	전력		kWh						

## ※ 증감내용

일련번호	품목부호	원재료	종감사유	◎ 증감내용부호	
				증	감
1 생 산				01 수송(주물)증가	11 수송(주물)감소
				02 배수(주물)증가	12 배수(주물)감소
				03 기타증가	13 기타감소
2 출 하				04 장선증가	14 장선감소
				05 지정구분생치증가	15 지정구분생치감소
				06 기타증가	16 기타감소
3 재 고				07 증감없음	17 증감없음
				08 증감없음·지정구분증가	18 화물·가림
				09 기타	19 기타(일기불순등)

③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월말종업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인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상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시 일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금월말상시종업원	월중조업일수	월중1일평균조업시간
□□□□ 명	□□□□ 명	□□□□ 명	□□□□ 명	□□□□ 일	□□□□ 시간 □□□□ 교내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상여금등)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상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시 일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 증감내용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 증 감 내 용 부 호	
① 입 직 자			1. 신규채용	3. 기 타
② 이 직 자			1. 생산활동부진 감축	3. 기 타
③ 조 업 일 수			1. 생산활동호조	3. 생산활동부진
④ 정 액 급 여			2. 공정개선, 자동화에 따른 감축	4. 휴업, 파업, 기타
⑤ 특 별 급 여			1. 급여인상	3. 종업원 증가
			2. 초과근무수당증가	4. 종업원 감소
			1. 상여금지급	3. 기 타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응답부서	응답자	조사담당자	내검자	관리책임자
과				
전화 ( )	(인)	(인)	(인)	(인)

당  
부  
말  
씀

-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분의 경기동향을 매일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하므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피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생 산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생산한 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 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구 입

- 사업체에서 생산중인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국외수입, 국내 사업체로부터의 구입, 유통 및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입고된 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하청공장에 위탁생산하여 납품받은 량
- 반품된량(폐기품 제외)
- ※ 제외: • 사업체의 조사품목(생산품목)이 아닌 제품의 구입량

동 일 공 장 내 재 투 입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 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 소비된 량
- 위탁 생산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재료로서 공급한 량

국 내 시 판

- 국내 타 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 량
- 수출용이라도 타 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 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량

동 일 기 업 내 타 공 장 출 하 및 기 타

- 동일 조사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이송한 량
- 동일 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출하한 량
- 타사업체로부터 유통받은 량의 반제
- 선물, 견본, 전시용 등으로 출고할 량
- ※ 제외: •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으로부터의 출하(국내시판,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또는 단순가공을 위해 일시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자체생산, 위탁생산,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량(출하로 계상 없음)
- ※ 제외: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량

작성기관: 경 제 기 획 원  
지정통계: 111-11-12

# 광공업동태조사표(Ⅲ)

[진척율 조사품목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 부호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사업체	본사						
행정구역번호	조사구 번호						1. 대규모 2. 중소규모	1. 500명 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 이하	1. 전 입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 1 품목수주·진척사항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고 사항	단 위	당 월 수 주 량				당 월 진 척 량				수 주 잔 량				당월원성품인도량							
					국 내 용		수 출 용		국 내 용		수 출 용		국 내 용		수 출 용		톤 수		척(대)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01	8410200	철강유조선		G/T																				
02	8410300	일반화물선		G/T																				
03	8410400	특수화물선		G/T																				
04	8410500	비상업용특수선박		G/T																				
05	8410600	철강어선		G/T																				
06	8410700	합성수지선		G/T																				
07	8410800	선박해체업		LDT																				
08	8410909	목선		G/T																				
09	8420100	디젤기관차		대																				
10	8420200	전동차		대																				
11	8420300	여객차및수하물차		대																				
12	8420400	화차		대																				

##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 번호	원재료 및 연료부호	원재료 및 연료명	유고 사항	단위	구분 국산1 수입2	월 중 사용량				월 말 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51	901-00	무연탄·원료탄		M/T																				
52	902-00	경유·중유		Kℓ																				
53	903-00	방카·C유		Kℓ																				
54	904-00	전력		천KWH																				

## ※ 증감내용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전월비 (%)	증 감 사 유

3)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월말종업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원수(명)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금월말상시종업원	월중조업일수	월중1일평균조업시간
[ ] 명	[ ] 명	[ ] 명	[ ] 명	[ ] 일	[ ] 시간 [ ] 교대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상여금등)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천	백	십	억	만
상 시 종업원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임 시 일 고	생 산 직															
	사 무 직·기 타															
	계															

※ 증감내용

	증감부호	증 감 사 유	● 증 감 내 용 부 호	
① 입 직 자			1. 신규채용	3. 기 타
② 이 직 자			1. 생산활동부진 감축	3. 기 타
③ 조 업 일 수			2. 공정개선, 자동화에 따른 감축	
④ 정 액 급 여			1. 생산활동호조	3. 생산활동부진
⑤ 특 별 급 여			2. 정상가동	4. 휴업, 파업, 기타
			1. 급여인상	3. 종업원 증가
			2. 초과근무수당증가	4. 종업원 감소
			1. 상여금지급	3. 기 타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응 답 부 서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내 검 자	관 리 책 임 자
과				
전화 ( )	①	①	①	①

당 부 말 씀

- ① 이 조사는 국내외 광업·제조업·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 당 월 수 주 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 또는 국내로부터 주문 받은 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폐선박 도입량(경화배수톤수)
- 당 월 진 척 량**
  - 사업체에서 건조 또는 제작중인 선박, 철도차량의 공정 진척율에 따른 환산량.  
(수주잔량×당월 진척율)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공정진척율에 따른 해체량
- 수 주 잔 량**
  - 총 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차감한 잔량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미해체량
- 당 월 완 성 품 인 도 량**
  - 공정 진척도에 관계없이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완성하여 통관 또는 주문처에 납품한 량



( )월분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 ) 사무소

① 연 번 결 호	② 사업체고유번호	③ 사 업 체 명	④ 작 성 구 분	⑤ 사 업 체 구 분	⑥ 산 업 분 류	⑦ 주 소 (행정구역 분류 번호)	⑧ 전 화 번호	⑨ 종 업 원 수	⑩ 예 측 조 사 지 정		⑪ 유 고 사 항		
									품목명및품목부호	품목명및품목부호	유고 부호	유고 년월	유 고 내 용 (적 요)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번지		( )					

※ 조사표작성구분: 1. 당해공장 2. 주공장 3. 본사 ※ 사업체구분: 1. 본사 2. 본사+공장 3. 공장 4. 단독사업체

※ 유고내용및부호: 1. 전입 2. 휴업 3. 전출 4. 신규 5. 폐업 6. 합병·합산

29-8

## 제 조 업 생 산 예 측 조 사 표 (IV)

○ 작성기관 : 경 제 기 획 원  
○ 지정번호 : 111-11-12

1 9 8    년    월 분

※ 매월 20일까지 제출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조사구번호	총종업원수	사업체유고사항
-				1. 전        임 2. 휴        업 3. 설비 및 공장신설, 휴수 4. 설비 및 공장축소, 분리

생 산 실 적 및 예 측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사 항	지 정 단 위	전 월 생 산 실 적						당 월 생 산 예 측						의 월 생 산 예 측	당월예측 증감사유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작성시 뒷면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이 조사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생산동향에 대한 단기예측을 함으로써 경기분석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귀업체에 속하는 산하공장전체를 총합하여 조사하게 됨으로 지정품목이나 산하공장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③ 귀사의 계획에 따라 당월 및 익월생산예측을 작성하여 주시는 경우에도 경기여건, 사업체의 실정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생산예측자료가 될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④ 「익월생산예측」을 다음달에 「당월생산예측」난에 다시 기재하실 때,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주십시오.
- ⑤ 이 조사에서 「생산」이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공정진척율에 의해 광공업 동태조사표를 작성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예측조사표도 공정진척율에 따라 주십시오.

응답부서	응답자
작성부서명 : 전화 :	인

조사담당자	내·검·자	관리책임자
인	인	인

29-9

원 재 료

원재료 부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원재료 부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월	국 산 (1)		수 입 (2)		월	국 산 (1)		수 입 (2)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원재료 부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원재료 부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월	국 산 (1)		수 입 (2)		월	국 산 (1)		수 입 (2)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원 재 료

원재료 부 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원재료 부 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월	국 산 (1)		수 입 (2)		월	국 산 (1)		수 입 (2)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원재료 부 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원재료 부 호		원재료 명		단 위	
------------	--	----------	--	--------	--

월	국 산 (1)		수 입 (2)		월	국 산 (1)		수 입 (2)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29-13

# 製造業 生産 豫測調査 指針書

1988.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 차 례

I. 조사개요 .....	3
1. 조사목적 .....	5
2. 조사대상기간 .....	5
3. 조사시기 .....	5
4. 조사대상 .....	5
5. 조사단위 .....	5
6. 조사품목 .....	6
7. 조사사항 .....	6
8. 조사방법 .....	6
9. 집계 및 공표 .....	7
II. 조사표 기입요령 .....	9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11
2. 조사사항란 기재요령 .....	13
가. 난외사항 .....	13
나. 생산실적 및 예측란 기재요령 .....	17
다. 생산실적 및 예측 .....	20
라. 기업체(본사)의 산하사업체(공장) 변동 .....	27
III.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29
1. 일반사항 .....	31
2. 난외사항 .....	31

3. 제품생산 .....	32
4. 조사표 제출 .....	33
<b>IV. 예측조사 중점강조사항및 사례</b> .....	37
1. 예측조사의 필요성 .....	39
2.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 및 익월예측생산량(액) .....	39
3. 조사표 기입(예) .....	40
4. 예측조사를 위한 질문요령(예).....	43
5. 예측생산량 추정방법(예).....	47
<b>V.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관리요령</b> .....	51
1. 관리개요 .....	53
2. 예측조사사업체 관리현황보고서 기입요령 .....	54
3. 예측조사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	63
<b>VI.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지정품목 분류표</b> .....	69
<b>VII. 부 록</b> .....	93
1. 주요단위 해설 .....	95
2. 도량형 환산표 .....	98

## I. 조 사 개 요

# I. 조 사 개 요

## 1. 조사목적

- 경기동향 분석을 위하여 제조업 생산활동에 대한 단기 예측자료 제공
- GNP 추계자료 제공
- 제조업부문의 업종별 경기전망 및 분석 자료 제공

## 2. 조사대상 기간

- 전월, 당월, 익월의 3개월분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조사

## 3. 조사시기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사완료
- 매월 25일까지 조사통계국에 도착

## 4. 조사대상

- 한국표준 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 고시 제 71 호)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대상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체

## 5. 조사단위

### 가. 측정단위

- 물량단위 중심조사
- 복합품목군으로서 물량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금액조사로 지정된 품목은 생산금액을 조사

예 : 의약품, 화장품

**나. 대상사업체 단위**

- 기업체 (본사) 중심조사
- 본사가 없거나, 생산계획을 공장에서 자체 수립하는 사업체는 개별 공장별로 조사
- 주공장 (사업체)에서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주공장 (사업체)에서 조사

**6. 조사품목**

- '85년 기준 생산지수대상품목 666개 중 예측이 가능하고, 가중치가 비교적 높은 260개 품목 (지수품목 258, 세분되는 품목 2)을 선정 조사

※ 세분되는 품목 : 화장수 (5230610), 플라스틱사출용금형 (8231920)

**7. 조사사항**

- 전월 생산실적량 (액), 조사당월 예측생산량 (액), 익월 예측 생산량 (액)
- 총종업원수

**8. 조사방법**

- 면접 타계식 방법과 자계식 방법을 병행
- '89년 이후는 자계식 우편조사로 전환 예정
- 매월 20일까지 조사표 수집

## 9. 집계 및 공표

-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집계, 분석 등을 거쳐 예측지수 작성
- 예측지수의 정도 추이 검토후 '89년 1월 이후 공표 여부 결정

## Ⅱ. 조사표 기입요령

## Ⅱ. 조사표 기입요령

###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영문병기)로 기재
-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할시는 횡선을 긋고, 그바로 위에 다시 기재
- 조사표상 정해진 자리수 문자(백만, 십만, 만, 천, 백, 일)와 조사 단위(%, 백만원, kg 등)와의 차이에 유의하여 기재
- 조사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조사단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사용단위와 서로 다른 경우는 지정된 조사 단위로 환산기입

※ 기입예 :

기업체 또는 사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생산한다면

- 인형 및 장난감 : 6,000,000 원      지정단위 → 백만원
- 소 모 직 물 :      42,000 m<sup>2</sup>      //      → 천m<sup>2</sup>
- 의 약 품 : 9,000,000 원      //      → 백만원
- 잘못 기입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사 항	지 정 단 위	전월생산실적(액)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9 0 4 0 1 0 0	인형 및 장난감		백만원	6	0	0	0	0	0	0
2 1 2 0 2 0 0	소 모 직 물		천m <sup>2</sup>			4	2	0	0	0
5 2 2 0 1 0 0	의 약 품		백만원					9	0	0

• 바른 기입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사 항	지 정 단 위	전월생산실적(액)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9	0	4	0	1	0	0	인형 및 장난감		백만원							6
2	1	2	0	2	0	0	소 모 직 물		천㎡							4 2
5	2	2	0	1	0	0	의 약 품		백만원							9

- 조사지정 단위 미만의 수치는 각 항목별로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반올림하여 기재, 다만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나 월별로는 반올림 규정에 따라 「1」이상이 아니고 「0」이 되는 경우라도 수개월의 누계를 반올림하여 1이월 경우는 당해월에 정수를 기재함.

※ 기입예 : 지정단위→천㎡인 경우

- 기업체 또는 사업체에서 자수직물을 다음과 같이 월별로 생산한다면

월 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소모직물	370㎡	290㎡	420㎡	430㎡	250㎡	220㎡	460㎡	470㎡	350㎡	400㎡

○ 잘못 기입

월 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조사표 기 재	0	0	0	0	0	0	0	0	0	0

○ 바른 기입

1월 + 2월 = 660 m<sup>2</sup>, 3월 + 4월 = 850 m<sup>2</sup>, 5월 + 6월 + 7월 = 930 m<sup>2</sup>...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조사표 기재	0	1	0	1	0	0	1	0	1	0

○ 생산예측조사표는 광공업동태조사표(세가지 종류)와는 달리 단일 조사표로 되어 있음

○ 광공업동태조사에서 382, 383업종 품목은 금액과 물량을 대부분 병행조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측조사는 병행조사를 하지 않고 지정된 단위로만 조사기입

※ 8310400 →배전반, 8250100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금액으로만 조사하고 병행단위(대)는 조사할 필요가 없음.

※ 「광공업 동태조사」와 「제조업생산예측조사」의 기재 사항 중 품목부호 및 품목명, 조사단위, 전·출입 처리요령 등에 차이가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유의

## 2. 조사항란 기재요령

가. 난외 사항

1) 년, 월분

- 조사표가 작성되는 당해 년, 월을 기재
- 년은 1자리 월은 2자리 숫자로 기재

※ 기입예 : ( 198 8년 04월분 )

## 2) 사업체 고유번호

- 예측사업체 명부에 등재된 사업체 고유번호(7자리)를 기입하되 중앙(산업통계과)의 변경 지시가 없는 한 절대로 바꿀 수 없음
- 신규로 조사지정된 예측사업체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모집단 고유번호를 기입(광공업 동태조사의 신규사업체 처리와 동일)

## 3) 산업분류

- 생산품목의 연간생산(출하)액을 비교할 때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해당되는 산업세분류(5단위)를 기입
- 조사표 내용에 수 개의 사업체(공장)가 포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 품목의 연간 생산(출하)액을 비교하여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분류(5단위)를 기입
- 사업체에서 새로운 지정품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을 생산하는 경우 새로운 품목이 주종 품목이 된다면 새로운 품목의 산업세분류(5단위)를 기입함.

## 4) 조사구 번호

- 광공업 동태조사에 준하여 조사구 번호를 부여

## 5) 총종업원수

### 가) 개별사업체(공장)에서 조사

- 해당 조사월 말일 현재의 총종업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되 상시, 임시 및 일고등 지위여하는 불문)수를 기입.
- 월말 총종업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말일에 가까운 급여 계

산일을 기준하여 기입(단, 수시로 종업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됨)

※ 종업원수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 30~32페이지 「월말종업원수」 파악 요령을 참고

나) 기업체(본사)에서 조사

-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산하 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와 본사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총종업원수에 기입
- 기업체(본사) 종업원수와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산하 사업체(공장) 종업원수만을 합산하기 곤란한 경우는 기업체(본사) 종업원수와 모든 산하 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총종업원수란에 기입

다) 주공장(사업체)에서 조사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하는 요령과 동일

6) 사업체 유고 사항

※ 예측조사표상 「사업체유고사항」란에는 해당 번호에 ○표를 기입

가) 전입 : 1

- 예측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체(본사) 또는 사업체(공장)가 지방사무소의 관할 경계를 달리하여 이동되는 경우 이동된 장소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만 기입

※ 주 의

- 예측조사의 전, 출입 개념과 광공업동태조사의 전, 출입 개념은 서로 다르다.
- 광공업동태조사는 시, 도별 지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 도

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므로 동일 사무소 관내라도 시·도를 달리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전입에 해당하나 예측조사는 전국 추이만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도 경계를 달리하여 이동하더라도 동일 사무소 조사 관할내에 있으면 전입, 전출로 보지 않음.

나) 휴업 : 2

- 생산시설등을 유지한 채로 1개월이상 조업을 하지 않는 업체
- 다른 품목은 생산하나 예측지수지정품목을 3개월이상 전혀 생산하지 않고 생산계획이 불투명한 업체도 휴업사업체로 간주

다) 설비 및 공장 신설, 흡수 : 3

- 동일 기업내 타공장 또는 타기업체의 공장을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 사업체 자체의 공장설비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기업체(본사)가 다른 기업체(본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라) 설비 및 공장 축소, 분리 : 4

- 사업체(공장)가 공장설비를 축소하거나 기업체 내의 다른 사업체(공장)를 폐쇄시키는 경우
- 1개의 사업체(공장)가 경영 및 회계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사업체로 분리되거나 1개의 기업체(본사)가 2개 이상의 기업체(본사)로 분할된 경우

7) 응답부서, 응답자

- 사업체(공장) 및 기업체(본사)의 생산활동을 전반적으로 통제

관할하는 부서를 선택하여 조사

- 응답자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질의 내용에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기입
- 전화번호는 응답부서의 직통전화번호를 기입할 것이며 구내 교환 전화번호를 사용할시는 구내 교환 전화번호도 병행기입

나. 생산실적 및 예측란 기재 요령

1) 조사대상제품

- 예측조사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기업체(본사) 또는 사업체(공장)에서 명부에 기록된 지정품목 이외의 예측조사 지정품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조사
- 사업체에서 사용한 제품명칭이 다르더라도 예측조사 지정품목의 포괄범위에 해당되면 조사

※ 예 : 맥콜, 보리텐 등은 「1340500→합성탄산음료」

- 예측조사 대상기업체(본사) 또는 사업체(공장)가 휴업 및 폐업상태 일지라도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 (「예측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 제출)

- 예측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외에 새로운 예측조사지정 제품을 사업체에서 신규로 생산하면 이미 조사되고 있는 품목에 첨가하여 조사표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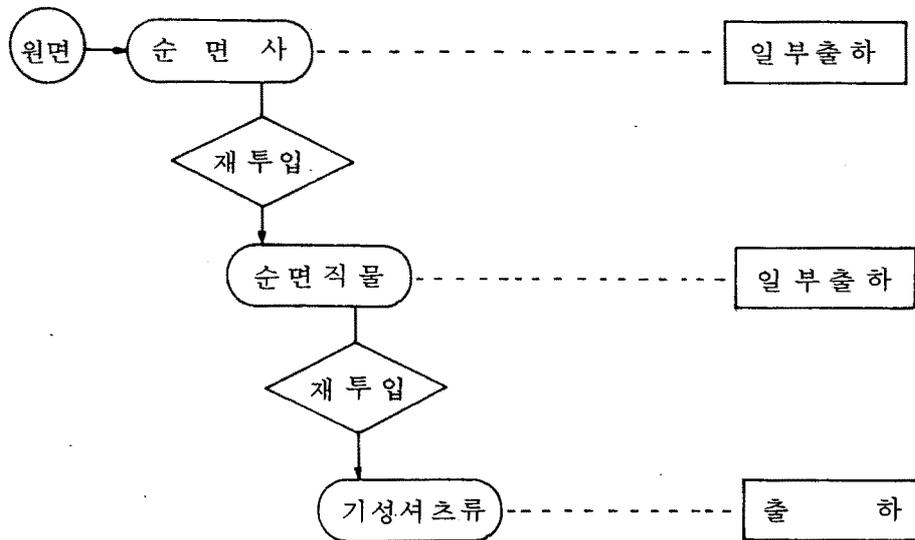
※ (「예측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 제출)

- 재공품이 아닌 중간제품을 제품원료로서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재투입하거나 기타 연료, 가공용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지정

된 품목일 경우는 각각 조사

※ 재공품이란 : 어떤 제품이 생산라인에 올려 있어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 도중에 있는 품목으로서 현상태로는 외부출하가 불가능한 제품

※ 기입예 : 단일 사업체 (공장)에서 원면을 투입하여 중간제품 단계를 거쳐 기성서츠류를 생산한다면



- 위의 경우는 모두 지정 품목이므로 세가지 모두를 제품으로 각각 조사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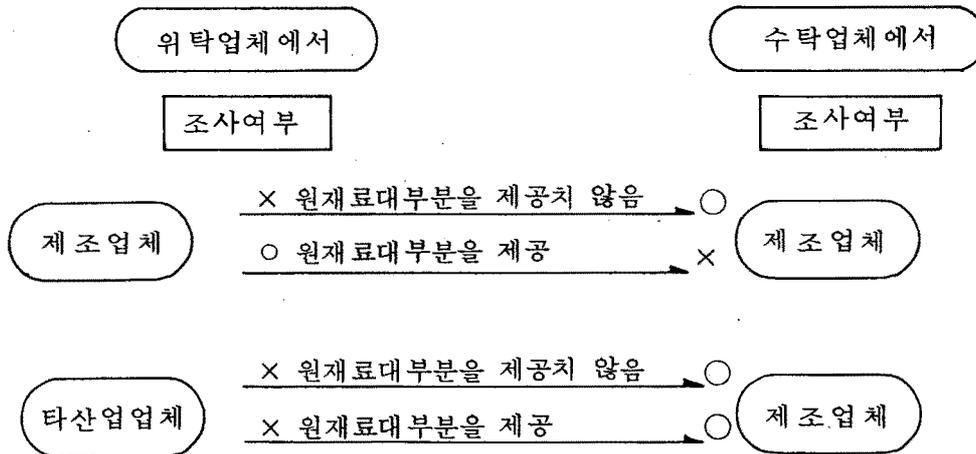
## 2) 위탁 및 수탁 관련 제품

-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 생산한 제품은 위탁업체의 생산품으로 간주하여 위탁업체에서 조사
- 원재료의 대부분을 위탁업체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원재료를 구입 사용하여 위탁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납품하는 경우는 수

탁업체의 생산품으로 조사

- 제조업이 아닌 타산업(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정품목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수탁업체의 생산품으로 조사(원재료 제공여부 불문)

※ 조사 대상여부 예시 :



### 3) 공정 진척율 조사관련 제품

- 전월 생산실적
  - 조사 전월에 진척된 공정 진척량을 기재
- 당월 생산예측
  - 진척량 환산 방법에 의거 조사당월의 예측 진척량을 기재
- 익월 생산예측
  - 진척량 환산 방법에 의거 익월의 예측 진척량을 기재

※ 진척량 환산 방법

- 수주잔량에 조사일의 공정진척율을 승하여 환산

- 총수주량에 공정진척율 누계를 승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차감하여 환산

※ 「광공업동태조사」에서 공정진척율에 의하여 조사되는 품목은 예측조사도 공정진척율에 의할 것

다. 생산실적 및 예측

1) 일련번호

- 1개 품목이상을 기재할 경우는 조사품목의 수량을 나타냄.
- 과거 생산실적을 소급 조사하는 경우는 조사품목의 소급월을 나타냄.
- 과거 생산 실적을 소급조사할 경우는 일련번호(소급월) 좌측에 해당년도를 기재하여 소급 년, 월을 표시하여야 함.

※ 기입예 :

- '88년도 3~5월까지 생산실적을 소급조사하는 경우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고 부호	지정 단위
01										
02										
03	5	2	1	0	3	0	0	페 인 트		kg
04										
05										
⋮										
12										

- '88년도 1~5월까지 생산실적을 소급 조사하는 경우

88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부 호	지 정 단 위
01	5	2	1	0	3	0	0	페 인 트		kl
02										
03										
04										
05										
⋮										
12										

※ 주의 : 소급조사표는 예측조사표 우측 상단에 「소급조사표」라고 적색싸인펜으로 기재하여 경상조사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

2) 품목부호 및 품목명

- 「제조업생산예측조사지정품목분류」에 기재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기입
- 품목부호 분류체계(7단위)는 「광공업동태조사지침서」 14페이지 참조
- 예측조사 지정품목 부호는 특별히 지정된 품목(5230610 : 화장수, 8231920 : 플라스틱사출용 금형)을 제외하고 광공업 동태조사의 지수품목 부호 품목명을 기입
- 광공업 동태조사는 1개 지수품목이 여러개의 세분품목으로 나누

어져 있는 경우(소시지는 축육과 어육, 면사는 순면사와 혼방면사, 방모사는 순방모사와 혼방모사로 세분하는 등) 세분품목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예측조사는 지수품목이 동일하거나 지수품목이 서로 다른 품목(순면사, 순방모사)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각각 세분품목으로 기재하지 말고 예측조사로 지정된 지수 품목 부호를 기입

※ 기입예 : 지수 품목부호가 같은 세분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품목 부호 및 품목명 기입

- 대상사업체에서 축육소시지(1110210)만을 생산하는 경우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부 호	지 정 단 위
	1	1	1	0	2	0	0			
01	1	1	1	0	2	0	0	소 시 지		M/T
∴										
12										

- 대상사업체에서 어육소시지(1110220)만을 생산하는 경우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부 호	지 정 단 위
	1	1	1	0	2	0	0			
01	1	1	1	0	2	0	0	소 시 지		M/T
02										
∴										
12										

- 대상사업체 축육·어육소시지 두 세분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고 부호	지정 단위
01	1	1	1	0	2	0	0	소 시 지		M/T
02										
:										
12										

※ 기입예 : 지수 품목부호가 다른 세분품목만을 생산하는 경우 품  
목부호 및 품목명 기입

- 대상사업체에서 순면사(2110210)만을 생산하는 경우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고 부호	지정 단위
01	2	1	1	0	2	0	0	면 사		M/T
02										
:										
12										

- 대상사업체에서 순방모사(2110410)만을 생산하는 경우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고 부호	지정 단위
01	2	1	1	0	4	0	0	방 모 사		M/T
02										
:										
12										

- 대상 사업체에서 지수 품목부호가 완전히 다른 순면사(2110210)와 순방모사(2110410)의 세분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 고 부 호	지 정 단 위
	2	1	1	0	2	0	0			
01	2	1	1	0	2	0	0	면 사		M/T
02	2	1	1	0	4	0	0	방 모 사		M/T
⋮										
12										

3) 사업체 유고사항

- 품목에 관련된 유고사항이 발생하면 다음에 따라 해당된 부호를 기입

- ※ 예시 : 유고사항 유고번호
- 지정 품목을 신규로 생산 ..... 1
  - 지정 품목을 생산중단 ..... 2
  - ( 품목생산휴업 )
  - 기조사 보고된 품목이 분류착오로 삭제..... 3
  -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조사누락 ..... 4

단, 유고부호가 4번에 해당되는 예측 지정품목은 소급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

- ※ 품목에 관련된 유고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예측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산업통계과)에 보고

4) 지정단위

- 「제조업 생산예측조사지정품목분류」에 기재된 조사단위를 기입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지정단위가 다를 경우 지정된 조사 단위로 정확히 환산 기입

※ 지정 조사단위 환산예 : 쇠가죽의 경우

- 사업체에서

사용단위 : 평 또는 매

월생산량 : 20,000 평 또는 500매 (40평 짜리)

- ※ 생산량을 매라고 할 때는 「몇 평짜리 몇 매를 생산」등으로 호칭됨.

쇠가죽 1평 = 사방 12인치 ( $12 \text{ in}^2$ )  
 = 사방 1피트 ( $1 \text{ ft}^2$ )  
 =  $0.093 \text{ m}^2$ 으로 환산되며

- 단위환산

40평짜리 500매일 경우

$40 \times 500 \text{ 매} = 20,000 \text{ 평}$

$20,000 \text{ 평} \times 0.093 = 1,860 \text{ m}^2$

조사단위 천 $\text{m}^2$ 이므로

조사표상 기입은 → 2라고 기입됨

- ※ 예측조사에서 단일 지정품목이 두개의 지정단위 (금액과 수량)로 병행조사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지정된 조사단위 하나만을 조사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 5) 전월 생산실적

- 조사 대상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수량(액)을 조사
- 전월분 생산실적(액)은 조사당월을 기준할 때 전월의 확정된 생

산수량(액)을 기재

6) 당월 생산예측

- 당월 생산예측량(액)은 조사표 작성일이 속하는 당월에 생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량(액)을 조사하되 제품주문상태, 원재료 상황, 기타 조업상황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월 말일까지의 생산량(액)을 예측하여 기재

7) 익월 생산예측

- 익월생산예측량(액)은 조사익월의 생산계획량(액)을 기재하되 향후경기 전망, 사업체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입
- 「익월생산예측」은 다음 조사월에는 「당월생산예측」으로 기재될 것이나 익월 생산 예측량 그대로를 단순히 이기하지 말고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기입
- 생산예측은 향후 나타날 실적치와 큰차이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며 예측의 근거를 항상 파악하여 증감(산업통계과)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함.

8) 당월예측 및 증감사유

- 전월실적에 비하여 당월예측이 현저히 증가 또는 감소하는 품목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증감사유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에 사유를 기입하여 조사표에 첨부

※ 계절적인 수요대비 또는 수요증가(감소)라고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기입예 :

- 주택공사 상계지구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문증가로 생산증가
- 광주고속에서 타이어 주문증가로 생산증가
- 증류탑 시설보수로 생산량 감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라. 기업체(본사)의 산하 사업체(공장) 변동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산하사업체(공장)에 유고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표에 기입
- 매월마다 예측조사 사업체 명부와 대조하여 예측조사지정품목 생산여부와 상관없이 산하사업체(공장)의 신규, 누락, 폐업, 주소이전 등의 변동이 있으면 「예측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측조사사업체명부가 수정될 수 있도록 중앙(산업통계과)에 보고한다.

※ 광공업동태조사의 신규사업체(종업원 100인 이상)로서 예측조사 조사항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는 경우 예측조사 신규 사업체로 조사하며 「예측사업체 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함.

###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1. 일반사항

※ 예측조사표는 매월 20일까지 해당사무소에 수집하여 내검 확인 등이 완료되어야 함.

※ 제출 기한에 임박하여 내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2. 난외사항

가. 조사표 상단의 □□월분의 난외 월이 기입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나. 사업체 고유번호기입 누락은 없으며 전월에 없었던 고유번호가 있는가?

다. 광공업동태조사와 동일 사업체인 경우 동일한 고유번호가 기입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라. 예측 조사대상업체가 아닌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에서 예측조사표를 작성하였는가?

→ 확인하여 정정

마. 기업체에서 예측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예측조사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산하사업체(공장)가 누락되었는지?

→ 확인하여 포함시킴

바. 사업체유고가 있을 경우 「사업체 유고란」에 유고사항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사. 기업체(본사), 주공장(사업체)조사 경우, 총종업원수가 바르게 집계  
되어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 3. 제품생산

가. 예측조사 지정 품목부호로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나. 세분품목(5230610 : 화장수, 8231920 : 플라스틱사출형금형)으로 지정  
된 것 이외의 품목이 지정품목부호(지수품목부호)가 아닌 세분품목  
으로 잘못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다. 전월 생산실적량(액) 당월 생산예측량(액) 익월 생산예측량(액) 모두 조  
사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라. 품목 유고사항 부호가 정확하게 부여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마. 증감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성있게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4. 조사표 제출

가.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

나. 유고 사업체인 경우 중앙(산업통계과)의 조사 중지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조사표는 계속하여 제출

※ 기타 모든 유형은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를 참조한다.

# 제 조 업 생 산 예 측 조 사 표 (IV)

통계법 제 8 조 및 제 9 조에 의거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 9 8  년  월분

○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 지정번호: 111-11-12

※ 매월 20일까지 제출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조사구번호	총종업원인수	사업체유고사항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 건 2. 휴 3. 설비 및 공장신설, 휴수 4. 설비 및 공장축소, 분리
생 산 실 적 및 예 측				

일련 번호	품 목 부 호	품 목 명	유고사항	지정단위	전월생산실적		당월생산예측		의월생산예측		당월예측 증감사유
					백 십 만	천 백 십 만	백 십 만	천 백 십 만	백 십 만	천 백 십 만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작성시 뒷면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이 조사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생산동향에 대한 단기에측을 함으로써 경기분석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귀업체에 속하는 산하공장전체를 총합하여 조사하게 됨으로 지정품목이나 산하공장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③ 귀사의 계획에 따라 당월 및 익월생산예측을 작성하여 주시는 경우에도 경기여건, 사업체의 실적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생산예측자료가 될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④ 「익월생산예측」을 다음달에 「당월생산예측」난에 다시 기재하실 때,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주십시오.
- ⑤ 이 조사에서 「생산」이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위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위탁생산량
 ※ 공정진척율에 의해 광공업 동태조사표를 작성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예측조사표도 공정진척율에 따라 주십시오.

응답부서	응답자
작성부서명: 전화:	인

조사담당자	내검자	관리책임자
인	인	인

#### Ⅳ. 예측조사 중점강조사항 및 사례

## IV. 예측조사 중점강조사항 및 사례

### 1. 생산예측조사의 필요성

- 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민간기업경영계획의 합리적 수립·추진을 위하여는 실물부문의 과거실적에 대한 평가·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실세 및 향후전망 자료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경기불안정시나 경기전환국면에 있어서는 과거 실적과 정책수립시점간의 시차성으로 인하여 과거 실적에만 의존한 평가·분석만으로는 경기대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애로가 많음.  
따라서 실물부문에 대한 정확한 단기적인 예측자료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2.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 및 익월예측생산량(액)의 개념

-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 및 익월예측생산량(액)이라 함은 조사당월 및 익월에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대상품목별 물량(금액조사대상품목은 금액)을 말함.
- 연간계획생산량 또는 월간계획생산량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업체일지라도 수요동향, 원재료수급사정, 기타 사업체의 특수사정에 따라 실제생산량과 계획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사정등을 감안하여 예측생산량을 조사하여야 함.
-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은 익월에 조사되는 실제 실적과 대비하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이상적임.  
따라서 사실상 완전일치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가장 최

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조사방법이 필요

### 3. 조사표 기입(예)

- 조사누락의 방지
  - 휴업 및 품목생산중단(재고조절, 설비보수나 변경, 다른 품목생산으로 인한 경우 등)의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금월 및 익월 예측 생산량(액)을 조사기입
- 사업체에서 예측물량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체에서 예측물량을 제공해주더라도 실제달성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사정으로 초과달성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지의 여부를 재확인 후 기입
  - 사업체에서 제공한 예측물량을 기입하는 경우, 증감사유란에 사업체에서 응답한 자료에 의한 것임을 명기

\* 기입예

품 목 명	조사 당월 예측 생산량							당월예측 증감사유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가죽 장화 등산화 및 작업화						1	2	봄철이후 수요대비로 생산량 증가계획(사 업체 응답)

- 조사자가 물량을 추산하여 기입하는 경우
  - 사업체에서 계획이 없거나, 주문상태 불확실, 원재료수급불안정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사업체에서 예측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단순히 증감을 또는 증감방향 정도만을 응답하는 경우에는 조사자가

직·간접 질문을 통해 예측생산량 추정 기입

- 과년도 실적, 현재의 휴업사정, 국내경기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추정하되, 추정근거를 증감사유란에 명기하고, 아울러 조사자가 추산한 자료임을 표시

\* 기입예

품목형	조사당월예측생산량							당월예측 증감사유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장식장					2	0	6	(장식장): 업체에서 전월대비 약 3~4%정도 증가할 것으로 응답(조사자 4%증가 추정)
식탁					1	6	3	(식탁): 업체에서 전월대비 포함수준 응답(조사자 조업일 수증가감안 3%증가 추정)

- 응답기업에 대하여는 조사목적, 비밀보호 등의 사항을 충분히 납득시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유도
- 예측이 곤란한 일부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자가 직·간접적 질문 방법을 개발하여 추정하되, 빠른 시일내에 사업체에서의 예측이 가능토록 유도
- 휴업사업체의 경우
  - 조사당월 전기간 휴업인 경우 예측생산량은 「 0 」으로 기입

- 조사당월중 일부기간만 휴업인 경우 예측생산량은 조사되어야 하고 증감사유란에 휴업기간 명기
- 휴업중이던 사업체가 조사당월에 들어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예측 생산량 조사와 함께 증감사유란에 생산재개일자 명기

\* 기입예

품 목 명	조사당월예측생산량							당월예측 증감사유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인 형							0	'88.4월말이후 계속 휴업중 당월 생산계획없음 (사업체응답)

○ 일부품목 생산중단의 경우

- 조사당월에 기존 조사품목의 생산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 예측생산량이 없으면「0」으로 기입하고, 증감사유란에 반드시 사유를 명기 (업체재고조절로 계획없음, 설비보수로 생산계획 없음, 다른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계획 없음, 주문이 거의 없어 생산계획 없음 등)

\* 기입 예

품 목 명	조사당월예측생산량							당월예측 증감사유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철제캐비닛							4	(철제의자) : 재고 과잉으로 조사당월 생산계획 없음 (사 업체 응답)
철제의자							0	
철제책상							6	

#### 4. 예측조사를 위한 질문요령 (예)

- 사업체에서 예측생산량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다음 질문요령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질문방법 및 추정방법을 개발사용하되, 가급적 빠른 기간내 사업체에서의 자료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기업체 (본사) 단위
  - 현재 극소수의 대기업체에서 예측조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는 업체계획의 비밀유지, 응답의 번잡성 등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임.
  - 조사취지, 비밀보호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협력을 요청하여 해결토록 해야 함.
- 개별사업체 단위

##### — (사례 1) 주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측곤란

##### (질문요령)

- 전월에 비해 생산증가계획인가? 감소계획인가? 그 증가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 조사일 현재까지의 주문상황은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증가인가? 감소인가? 그 증가폭은?
- 금월 작업예정일수는 전월에 비해 몇일이나 증감되는가?
- 조사일 현재까지의 생산수준은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 생산설비의 가동실태는 전월과 비교해서 어떤가?
- 전월보다 주문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가? 나빠질 것이라면 어느 정도인가?

- 작년 같은 달의 생산수준은 그 전월과 비교해서 어떠하였는가?

(사례업체)

- 대두유, 유산균음료, 배합사료 등 생산 일부업체
- 가성소다, 안료 등 산업용화학물 생산 일부업체
- 일반 인쇄물 등 일부 출판업체
- 목재 및 목재품 생산 일부업체

— (사례 2) 계절적 품목으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전월에 비해 생산증가계획인가? 감소계획인가? 그 증가폭은?
- 작년 같은 달은 그 전월에 비교하여 생산수준이 어떠하였는가?
- 조사일 현재까지의 생산은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 금월의 작업예정일수는 전월작업일수와 비교할 때 얼마나 증감될 것인가?

(사례업체)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산소 등 생산 일부업체

— (사례 3) 시설보수중(계획중)이므로 예측 곤란

(질문요령)

- 시설보수가 언제부터 진행(계획)중인가? 또 언제 끝날 예정인가? 끝나는 대로 정상가동되는가?
- 보수중에는 전혀 생산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생산이 이루어지는가? 정상생산이 아닌 경우, 정상조업에 비해 어

느정도 수준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가?

(사례업체)

- 철강 및 정유업체

— (사례 4) 설비변경(계획)으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기존 조사품목 생산이 설비변경으로 전면 중단되는가? 아니면 일부 축소되는가? 일부 축소된다면 기존설비의 몇 %정도가 변경(대체)되는가? 언제부터 변경되며, 언제 완료되는가?
- 설비변경에 따른 기존품목생산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사례업체)

- 플라스틱 관 및 봉 생산 일부업체

— (사례 5) 원재료수급불확실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조사일 현재까지의 원재료 확보상태는 전월에 비해 어떠한가? 금월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 앞으로의 원재료 확보전망이 어떠한가?
- 현재 보유중인 원재료로는 어느정도 생산가능한가?
- 원재료 공급처의 사정은 어떤가?
- 현재 상태로 보아 어느정도 생산이 감소될 것 같은가?

(사례업체)

- 철강, 화학 생산 일부업체

— (사례 6) 금액위주로 계획하므로 생산량으로 파악 곤란

(질문요령)

- 전월에 비해 금액상으로 몇% 증가 또는 감소계획인가?
- 금액으로 볼 때 생산품목별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매월 평균 구성비가 크게 달라지는 품목이 있는가?
- 품목별 평균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가?
- 금액증감율을 품목별 구성비에 따라 배분하여 전월물량수준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사례업체)

- 장농 장식장, 식탁, 침대, 싱크대 등 가구류 생산 일부업체

— (사례 7) 노사분규 및 재해 등으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노사분규중 전면파업인가 혹은 일부 파업인가?
- 정상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는 하지 않는 태업인가?
- 현재 노사타협이 진행중인가?
- 타협완료후 정상가동은 언제인가?
- 앞으로의 타결전망은 어떠한가?
- 언제 타결될 것인가?
- 현재 재해복구가 되는가?
- 타회사 노사분규로 인한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사례업체)

- 운수, 기계, 전자, 철강 등 업체

### 5. 예측생산량 추정방법(예)

- 일부 예측생산량 조사가 곤란한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방법들을 참고하여 추정방법을 개발적용하도록 하고, 막연한 수치 기입이나 빈칸으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정방법예시

— (방법 1) 「추정조업일수×1일 평균생산량(액)=월중예측생산량(액)」

- 추정조업일수 계산시는 공휴일, 사업체 자체계획 등을 참고하여 전월실제조업일수에서 적절히 가감하여야 함.
- 1일평균생산량(액) 추정은 전월생산량을 전월실제조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상황, 종업원수 사정 등을 적의 감안해야 함.

— (방법 2) 「조사시점 현재까지의 실적량× $\frac{\text{당월추정조업일수}}{\text{조사시점까지의 조업일수}}$   
= 월중예측생산량」

— (방법 3) 「 $\frac{\text{조사시점까지의 주문량}}{\text{전월같은 기간동안의 주문량}}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월중예측생산량

- 이 경우에는 남은 기간동안의 주문사정을 적절히 판단하여 가감」

— (방법 4) 「 조사당월추정 (계획) 조업일수  

$$\frac{\text{조사당월추정 (계획) 조업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text{월중예측생산량} \text{」}$$

- 이 방법은 (방법 1)과 같으나 변형된 것임.

— (방법 5) 「 조사시점까지의 원재료소비량(액)  

$$\frac{\text{조사시점까지의 원재료소비량(액)}}{\text{전월같은기간동안의 원재료소비량(액)}}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text{월중예측생산량} \text{」}$$

- 원재료 수급사항이 불안정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사당월의 잔여기간동안의 원재료 수급전망을 감안하여야 함.

— (방법 6) 「 조사시점까지의 1일평균원재료재고량(액)  

$$\frac{\text{조사시점까지의 1일평균원재료재고량(액)}}{\text{전월같은기간까지의 1일평균원재료재고량(액)}}$$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text{월중예측생산량} \text{」}$$

— (방법 7) 「 금월생산계획액  

$$\frac{\text{금월생산계획액}}{\text{전월생산액}} \times \text{전월생산량} = \text{월중예측생산량} \text{」}$$

- 물량예측은 곤란하나, 금액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품목별생산구성비가 매월 큰 변화가 없을 때 적용

— (방법 8) 「 금월생산계획액  

$$\frac{\text{금월생산계획액}}{\text{전월생산액}} \times \text{품목별전월생산량} \times (1 \pm \text{전월대비구성비 증감율}) = \text{월중예측생산량} \text{」}$$

- (방법 7)과 유사하나, 조사당월에 품목별 생산구성비가 전월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

— (방법 9)  $\left[ \frac{\text{보수로 인한 기간제외 조업예정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생산량} \right]$   
 = 월중예측생산량)

- 설비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전혀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

— (방법 10)  $\left[ \frac{\text{조사당월정상조업예정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생산량} \right] +$   
 $\left\{ \frac{\text{보수로 인한 비정상조업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생산량} \times (1 - \text{비정상 조업에 따른 생산감소율}) \right\} = \text{월중예측생산량}$

- 설비보수로 인해 일정기간은 비정상조업(생산축소), 나머지 기간은 정상조업을 한 경우에 적용

## V.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관리요령

## V.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관리요령

### 1. 관리 개요

#### 가. 관리목적

- 신규 및 휴·폐업등의 변동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예측조사 사업체의 누락, 중복을 방지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조사표 작성의 누락, 중복을 방지

#### 나. 대상사업체

- 별도 선정된 사업체 (예측조사 사업체명부 참조)

#### 다. 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변동사항을 대상

#### 라.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사무소
- 지방사무소 → 중앙 (산업통계과)
- 중앙 (산업통계과) → 지방사무소

#### 마. 관리단위

- 기업체 (본사)
- 본사가 없거나 생산계획을 공장 자체에서 수립하는 사업체는 개별 사업체 (단독사업체) 공장

#### 바. 관리사항

- 조사지정 사업체의 변동사항
  - 휴업, 폐업, 진출, 합병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변경

- 신규 및 전입, 전출 사업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체
  - 전입, 전출 사업체
- 조사상 변동사항
  - 조사관할 지방사무소 변경에 따른 변동
  - 조사중지 지시에 따른 변동

사. 관리방법

- 지방사무소 : CRT입력 및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중앙(산업통계과) :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및 총괄표에 의한 후속조치
- ※ 지방사무소간 전산망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및 총괄표는 제출하지 않음

아. 보고서식

-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자. 보고서제출

- 매월 10일까지 중앙(산업통계과)에 도착

**2.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에는 변동사항의 내용만 기입
  - 연결번호, 사업체고유번호와 사업체명은 반드시 기재하고 변동되는

내용은 해당란에만 기입

- 모든 변동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요란을 적극 활용
- 기업체(본사)의 조사표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산하사업체(공장)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기입

※ 적요란 기입예 :

- 사업체명칭 변경 : 경인산업(주) → 서울산업개발(주)로 변경
- 진출(입)사업체 : 공장시설물은 변동이 없고 조사표 작성부서(본사)만 진출(입)
- 산하사업체 변동 : 공장신설(인수등) 또는 합병, 폐업

2) 예측조사 사업체에 변동하는 내용이 없어도 「예측조사 사업체관리 현황보고서」 및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는 매월 작성 제출함.

3) 기업체(본사)의 산하 사업체(공장)변동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체(본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매월마다 예측조사 사업체 명부와 대조하여 산하사업체(공장)의 신규, 누락, 폐업, 주소이전 등의 변동이 있으면 「예측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측조사 사업체명부가 수정될 수 있도록 중앙(산업통계과)에 보고함.

4)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의 변동

-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는 매월 광공업동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어 변동사항을 기입하여야 함.

나. 관리현황 보고서 기입요령

1) 연결번호

- 기업체(본사) 단위로 묶은 번호로 기업체내 산하사업체(공장)는 모두 동일한 연결번호를 사용
- 중앙의 변경지시가 없는한 바꿀 수 없음

2) 사업체고유번호

- 예측사업체 명부에 등재된 사업체고유번호(7 단위)를 기입하되 중앙(산업통계과)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신규로 조사지정된 예측사업체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모집단 고유번호를 기입

3) 사업체명

가) 기업체(본사)명

- 기업체(본사)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 기업체(본사)에 소속된 공장명칭은 해당기업체(본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나)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 공장명

-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 공장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 사업체명부와 실제 기업체(본사)명, 소속된 공장명칭,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공장명이 상이할 때에는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

※ 예측조사표에는 사업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사업체명 기재를 생

략하였음.

#### 4) 작성구분

- 당해공장(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본사(사무실등) 또는 주공장에서 조사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는 다음 해당 부호를 기입

※ 기입예 :

- 당해공장(사업체),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에서 조사표가 작성 제출되면 ..... 1
- 주공장(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과 본사(본사와 공장이 동일 장소에 있고, 또 다른 어느곳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서 조사표가 작성 제출되면 ..... 2
- 수개의 공장이 있으나 공장에서 완전히 분리된 본사(사무소 등)에서 조사표가 작성 제출되면 ..... 3

#### 5) 사업체 구분

- 사업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를 식별하는 부호로 4가지로 구분함.
  - ① 본사 : 기업체의 본사가 공장과 완전히 다른 장소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 ② 본사+공장 : 기업체의 본사와 공장이 동일 장소에 설립되어 있고 다른 장소에 한개 이상의 공장이 또 있는 경우  
주의 : 다른 장소에 공장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단독사업체에 해당된다. (구분부호 : 4)
  - ③ 공장 : 당해공장의 본사가 다른 장소에 설립되어 있고 공장만이

존재하는 경우

- ④ 단독사업체 : 본사와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직 당해업체(공장) 하나만 있는 경우

6) 산업분류

- 지정품목들의 연간생산(출하액)을 비교할 때 품목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 조사표 내용에 포함되는 산하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일지라도 지정품목들의 연간생산(출하액)을 비교할 때 품목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 조사중인 사업체에서 새로운 지정품목(지수품목 258개,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는 경우, 새로운 품목이 주종 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목의 산업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7) 소재지 및 행정구역 분류부호

- 소재지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

※ 기입예 :

- 광공업 동태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의 기입요령과 동일
- 행정구역 분류부호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에서 송부한 행정구역 분류부호 전산제표지를 활용하여 지정된 행정구역 분류부호를 기입. 단,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 증설된 행정구역의 분류부호는 새로운 「행정구역분류부호」 전산제표지가 지방사무소에 배부되지 않는 한 종전 행정구역 분류부호를 계속 사용함.

※ 사업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조사표에는 소재지 기재를 생략하였음

8) 전화번호

- 조사표를 실제로 작성 제출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입

9) 종업원수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
  - 본사의 종업원수와 산하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를 합제한 총 종업원수를 기입
  - 산하사업체(공장)는 당해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를 기입
  - 순수본사의 종업원수는 총 종업원수 바로위에 ( )로 표시하여 기입
- 단독사업체에서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
  - 단독사업체의 종업원 수를 기입

※ 종업원수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광공업동태조사지침서」 30~32 페이지 「월말 종업원수」 파악요령을 참고

10) 예측조사 지정품목

- 중앙(산업통계과)에서 예측조사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지수품목 258개 세분품목 2개)은 광공업동태조사의 지수품목과 동일한 부호를 기재
  - 단, 2개의 품목(5230610 화장수, 8231920 플라스틱사출형금형)은 세분품목부호를 기재
-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예측조사 지정품목 이외의 다른 예측 지정품목을 신규로 생산하거나 조사했던 품목이 생산을 완전중단(폐업)하는 경우는 품목명과 품목부호를 기입하고 적요란에 유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동일 사업체에서 여러개의 예측조사 지정품목이 생산되는 경우 품목변동이 있을 때에는 난을 달리 기입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입

※ 기입예 :

예측조사지정 품목 및 품목 부호	
방 모 사	
2110400	
소 모 사	
2110500	

#### 11) 유고내용

##### 가) 전입, 전출(1,3)

- 조사표 작성을 관할하는 지방 통계사무소의 관할을 달리하여 기업체(본사)나 개별사업체(단독)의 설비가 이동되는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지방 통계사무소에선 전입이라 하고 이전하기 전 장소의 관할 지방 통계사무소는 전출이라 함.

※ 주 의

- 예측조사 전·출입 개념은 광공업동태조사의 전·출입개념과 완전히 다르므로 예측조사 사업체관리에 혼동이 없도록 함.
- 광공업동태조사는 시·도별 지수를 동시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구분

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나, 예측조사는 생산활동의 전국추이만을 전망하기 때문에 두 개념상에 차이가 있음.

- 기업체(본사)의 진출이 있는 경우는 기업체(본사)에 소속된 산하사업체명부를 1부 복사하여 전입지 사무소에 송부함.

#### 나) 휴업(2)

- 생산시설과 건물을 유지한 채로 1개월이상 전혀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 비예측품목은 계속 생산하더라도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3개월이상 전혀 생산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계획이 불투명한 업체
- ※ 계속 조사여부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에 따름.

#### 다) 신규(4)

- 중앙(산업통계과)에서 새로 조사 지시된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
- 지방사무소에서 색출한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종업원 100인이상)가 예측지수 품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면 예측조사의 신규사업체로 조사하고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
- 계속 조사여부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에 따름.

#### 라) 폐업(5)

- 사업체의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가 지금까지의 생산활동을 영구적으로 중지한 상태를 말함.
- 생산설비를 완전 매각 처분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

여 생산설비 일체를 해체한 경우

- ※ 폐업사업체가 발생하면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에 「조사중지요망」을 신청하며, 중앙의 조치를 기다림.

마) 합병, 합산(6)

- 조사대상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가 타기업체(본사) 또는 타개별사업체(단독)를 흡수하여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완전하게 하나의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로 결합되는 경우

※ 기업체(본사) 및 개별사업체(단독)가 감소됨

- 조사대상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가 타기업체(본사) 또는 타개별사업체(단독)를 흡수하였으나 경영 및 장부조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명칭변경만 발생)

12) 적 요

- 예측조사 대상기업체(본사) 또는 개별사업체에 유고내용이 발생하면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예:

— 전·출입경우: 동부사무소에서 본사만 전입

경기사무소로 진출

— 폐업: 중앙의 지시로 폐업

— 신규: 중앙의 지시로 신규

— 명칭변경: 소나무기업(주) → 우현공사(주)로 변경

— 기타: 사업체 관리에서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

### 3.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의 유고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의 내용을 집계하여 기재함.
- (2) 관리현황 보고서에 내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총괄표는 매월 작성 제출함.

#### 나. 총괄표 기입요령

##### (1) 전월말 사업체 및 조사표

- 전월말 현재 제출된 예측조사표 수와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수를 기입

##### (2) 증가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증가된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수와 예측조사표 매수를 각 항목별로 기입
- 신규
  - 중앙에서 새로이 조사 지시된 사업체 수와 그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수를 기입
  - 지방 통계사무소가 색출한 신규사업체(종업원 100인 이상)의 수와 그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수를 기입
- 전입, 전출
  -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단위 사업체가 지방 통계사무소간에 이동되어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에 증감을 가져오는 경우
  - 공장단위 사업체는 이동이 없는데 조사표만을 작성해주는 본사 등이 지방 통계사무소간에 이동되어 조사표 매수에 증감을 가

저오는 경우

(3) 감소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감소된 예측조사 대상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를 각 항목별로 기입
- 조사중지
  - 중앙에서 조사중지 지시한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 합병, 흡산
  - 합병, 흡산으로 인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의 감소와 조사표 작성 매수에 변동이 있을시에 기입
- 적요
  -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
  -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입

( ) 월분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 ) 사무소

구분 조사종류	진월말	증			감			소 전출	금월말	적	요
		신규	진입	조사중지	합병·합산	조사종지	합병·합산				
기업체(본사)사업체											
소속된사업체											
개별(단독)사업체											
합계											
조사표수											
기업체(본사)조사표											
개별(단독)조사표											
합계											

※ 전입(전출) - 여기에서 전입(전출)은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단위 사업체가 사무소간 이동되어 사업체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 실제공장단위 사업체는 이동이 없는데 조사표를 작성해 주는 본사등이 사무소간 이동되어 조사표작성 권한권 변동으로 인해 조사표수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 Ⅵ. 제조업 생산 예측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Ⅵ.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311-312 식료품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1110200	소 시 지	M/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1110210	축 육 소 시 지	"	] 1110200 " 소시지로 조사 "
1110220	어 육 소 시 지	"	
1120200	분 유	"	"
1120300	아 이 스 크 립	Kℓ	"
1120400	시 유	"	"
1120500	유 산 균 음 료	"	"
1140400	어 목	Kg	"
1150100	대 두 유	Kℓ	"
1160100	밀 가 루	M/T	"
1170100	빵 및 케 익	"	"
1170200	건 과 자 및 스넥류	"	"
1170300	설 탕 과 자	"	"
1170600	인 스 턴 트 면	"	"
1180100	정 당	"	"
1210200	글루타민산소다	"	"
1210400	혼 합 조 미 료	"	"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1220200	인 삼 차	Kg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1220600	전 분	M/T	"
1220800	과 당	"	"
1221000	커 피	Kg	"
1230100	배 합 사 료	M/T	"

• 313 음료품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1310200	소 주	Kℓ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1310300	위 스 키	"	"
1330100	맥 주	"	"
1340100	사 이 다	"	"
1340200	콜 라	"	"
1340300	과 즈 음 료	"	"
1340500	합성 탄산음료	"	"

• 314 담배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1400200	담 배	백만개비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지정품목부호	지정품목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2120510	순합성섬유직물	천m <sup>2</sup>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2120520	합성섬유직물	"	2120500 합성섬유직물로 조사 "
2120530	혼합섬유직물	"	"
2150200	양말	천켄레	"
2150300	메리야스내의	천 매	"
2150400	메리야스외의	"	"
2170100	연승밧섬유로프	M/T	"
2170110	식물성섬유로프	"	"
2170120	연승·인조섬유로프	"	2170100 연승밧섬유로프로조사 "

· 322 의복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품목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2220100	남자용기성양복	벌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2220200	기성셔츠류	천 개	"
2220700	여자용기성외의	백만원	"
2220900	여자용화운데이션밧난제리류	"	"
2221000	가족밧모피의복	백만원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2221200	가족밧모피장갑	"	"

•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2310100	쇠 가 죽	천m <sup>2</sup>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2330100	가 방	백만원	"

• 324. 신발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2400100	단 화	컬 레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2400200	가죽장화·등산화 및 작업화	"	"

○ 33.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

• 331. 나무 및 나무와 폴크제품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3110100	각 재	m <sup>3</sup>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3110200	판 재	"	"
3110400	일 반 합 판	"	"

•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3200300	장 식 장	개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3200400	장 농	"	"
3200600	식 탁	"	"
3200700	침 대	"	"
3200900	싱 크 대	"	"
3201000	서랍장 및 음향기기대	"	"

○ 34. 종이 및 종이제조업·인쇄 및 출판업

·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4110100	필 프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4110200	신문 용 지	"	"
4110300	백 상 지	"	"
4110400	중 질 지	"	"
4110500	아 트 지	"	"
4110600	크라프트지	"	"
4110900	판지및판지상자	"	"
4111000	골판지원지	"	"
4120300	위생용식품용기	K g	"
4190200	위생용종이제품	M / T	"

·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사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4210100	일간신문	천 부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4210200	정기간행물	천 권	"
4210300	서 적	백만원	"
4210600	앨 범	천 권	"

○ 35. 화합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110100	에틸렌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110700	염화비닐모너머	"	"
5111700	텔레프탈산	"	"
5112400	폴리에틸렌	"	"
5112410	저밀도 폴리에틸렌	"	5112400 폴리에틸렌으로 조사 "
5112420	고밀도 폴리에틸렌	"	
5112500	폴리프로필렌	"	"
5112600	폴리스티렌	"	"
5112800	P.V.C. 수지	"	"
5113400	S . B . R.	"	"
5120100	카바이드	"	"
5120600	가성소다	"	"
5121200	산소	천m <sup>3</sup>	"
5130200	안료	M / T	"
5130210	무기안료	"	5130200 안료로 조사 "
5130220	유기안료	"	
5130230	조제안료	"	
5140200	폴리아미드섬유	"	"
5140300	폴리에스터섬유	"	"

지정 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 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140400	아크릴릭섬유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150200	복 합 비 료	//	//
5160100	농 약	//	//
5160110	살 총 제	//	5160100 농약으로 조사
5160120	살 균 제	//	
5160130	제 초 제	//	

•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지정 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 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210300	페 인 트	Kℓ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210310	유 성 페 인 트	//	5210300 페인트로 조사
5210320	수 성 페 인 트	//	
5220100	의 약 품	백만원	//
5230300	합 성 세 제	M / T	//
5230310	세탁용합성세제	//	5230300 합성세제로 조사
5230320	주방용합성세제	//	
**5230610	화 장 수	백만원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의 화장품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화장수」만 조사
5290500	P.V.C. 안정제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353. 석유정제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300300	나 프 타	Kℓ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300600	경 유	//	//
5300800	방 카 C 유	//	//
5300900	L . P . G.	//	//
5300910	프 로 판 가 스	//	5300900 L.P.G. 로 조사 //
5300920	부 탄 가 스	//	

•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400100	연 탄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400200	운 활 유	Kℓ	//

• 355. 고무제품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510100	자동차용타이어	천 본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590200	운 동 화	백만원	//
5590500	고 무 벨 트	천 PLY	//

• 356.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600100	플라 스틱 필름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600200	플라 스틱 레저	//	//

지정 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5600300	플라스틱장판및 벽지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5600400	플라스틱관및봉	"	"
5600800	전기전자기기용 케 이 스	"	"
5601100	플 라 스 틱 포 장 용 기	"	"
5601400	라 미 네 이 팅	Km	"

○ 3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61 . 도기 · 자기제조업

지정 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6100100	가정용도자식기	천 개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6100200	위생용도기제품	개	"

• 362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지정 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6200200	판 유 리	C / S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6200500	브라운관용유리	천 개	"
6200510	흑백브라운관용 유 리	"	6200500 브라운관용 유리
6200520	칼라브라운관용 유 리	"	
6200600	식품및음료용 유 리 병	M / T	"
6200700	약 및 화 장 품 유 리 병	"	"
6200800	유 리 식 기 및 유 리 주방용 품	"	"

•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6910200	타 일	천 $m^2$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6920100	시 멘 트	천M/T	"
6920200	시멘트크링커	"	"
6930300	레 미 콘	천 $m^3$	"
6930600	흙 관 분	"	"
6930700	콘크리트전주	"	"
6930800	콘크리트파일	"	"
6940100	내 화 용 벽 돌	M/T	"
6990500	활 석 분	"	"

○ 37. 제 1 차금속산업

· 371. 철강산업

지정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7110100	선 철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7110110	제 강 용 선 철	"	] 7110100 "
7110120	주 물 용 선 철	"	] 선철로 조사 "
7110300	강 괴	"	" "
[ 7110310	압 연 용 강 괴	"	] 7110300 "
7110320	단 조 용 강 괴	"	] 강괴로 조사 "
7110500	슬 랩	"	" "
[ 7110510	보 통 강 슬 랩	"	] 7110500 "
7110520	특 수 강 슬 랩	"	] 슬랩으로 조사 "
7120200	철 근	"	" "
[ 7120210	이 형 철 근	"	] 7120200 "
7120220	원 형 철 근	"	] 철근으로 조사 "
7120300	형 강	"	" "
[ 7120310	보 통 강 형 강	"	] 7120300 "
7120320	특 수 강 형 강	"	] 형강으로 조사 "
7120400	중 후 판	"	" "
[ 7120410	후 판	"	] 7120400 "
7120420	중 판	"	] 중후판으로 조사 "
7120600	열 연 대 강	"	" "

지정 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7120610	열연광폭대강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7120600 열연대강으로 조사
7120620	열연협폭대강	//	
7120800	냉 연 박 판	//	//
7121100	강 관	//	//
7121110	무 계 목 강 관	//	7121100 냉연대강으로 조사
7121120	전기용접강관	//	
7121130	아크용접강관	//	

• 372 . 비철 금속산업

지정 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7210100	전 기 등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7230100	동봉및동합금봉	//	//
7230200	나 등 선	//	//
7230300	동 판 및 띠	//	//
7230400	동 관및중공봉	//	//
7230600	알 루 미 늬 판	//	//
7230700	알루미늄샷시바	//	//

○ 3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120100	철 제 캐 비 넷	개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120200	철 제 책 상	"	"
8120300	철 제 의 자	"	"
8130300	산업용보일러	T / H	"
8130500	육상금속구조물	M / T	"
8130600	해상금속구조물	"	"
8130900	콘 테 이 너 용 기	대	"
8140200	스 텐 레 스 제 품 가 정 용	M / T	"
8140300	병 마 개	천 개	"
8190100	금 속 캔 (식관및잡관)	"	"
8190110	통 조 립 용 관	"	] 8190100 금속캔 (식관및잡관)으로조사 "
8190120	기 타 잡 관	"	
8190200	드 럽 관	개	"
8190400	가정용보일러	대	"
8190800	나 사 제 품	M / T	"
8191100	와 이 어 로 프	"	"
8191200	쇠 못	"	"
8191300	밸 브	개	"
8191310	일 반 용 밸 브	"	] 8191300 밸브로 조사 "
8191320	특 수 용 밸 브	"	

지정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191400	금속관이음쇠	M / T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191600	용접봉	//	//

•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지정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210100	내연기관	HP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220200	경운기	//	//
8220300	농업용트랙터	//	//
8220400	이앙기	//	//
8220500	콤바인	//	//
8230200	범용선반대	//	//
8230300	밀링기	//	//
8230310	범용밀링기	//	] 8230300 밀링기로 조사 //
8230320	수치제어밀링기	//	
8231000	머시닝센터	//	//
8231100	프레스기	M / T	//
**8231920	프라스틱사출용금형	대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의 금형전체를 조사하는것이 아니고 그중「프라스틱사출용금형」만을 조사
8240500	로더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240600	굴삭기	//	//
8240800	불도저	//	//

지정 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241100	직 기	대	광공업동태 조사 지침서와 동일
8241200	편 직 기	//	//
8241500	바 디	개	//
8241900	포 장 및 충 진 기	대	//
8250100	컴 퓨 터 및 주 변 기	백만원	//
8250110	C . P . U .	//	//
8250120	DISK DRIVER	//	//
8250130	프 린 터 (PRINTER)	//	8250100
8250140	CRT MONITOR	//	컴퓨터및주변기기로조사 //
8250150	전 송 장 치	//	//
8250160	키보드 (KEY BOARD)및기타	//	//
8250300	전 자 계 산 기	대	//
8250310	휴 대 용 전 자 계 산 기	//	8250300
8250320	탁 상 용 전 자 계 산 기	//	전자계산기로 조사 //
8250600	타 자 기	//	//
8260100	자 동 판 매 기	//	//
8260200	산 업 및 상 업 용 냉 장 고	//	//
8260300	산 업 용 냉 동 기	//	//
8260400	룸 에 어 콘	//	//
8260600	페 케 이 지 형 에 어 콘	R / T	//
8260900	가 스 레 인 지	대	//

지정품목부호	지정품목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290100	산업용 펌프	HP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290700	물품취급용 크레인	M / T	"
8290900	엘리베이터	대	"
8291100	지게차	"	"
8291200	공업용재봉기	"	"
8291400	감속기	"	"
8291500	베어링	M / T	"
8291600	열처리로 및 전기로	대	"
8291700	소화기	"	"
8291800	소스프링클러	개	"
8291900	로울러	"	"

•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품목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310100	전동기	HP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310110	직류전동기	"	] 8310100 전동기로 조사 " "
8310120	교류전동기	"	
8310300	변압기	KVA	"
8310400	배전반	백만원	"
8310500	회로차단기	대	"
8310510	전력회로차단기	"	] 8310500 회로차단기로 조사 " "
8310520	누전차단기	"	

지정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320100	흑백TV수상기	대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320200	칼라TV수상기	//	//
8320210	로타리형수상기	//	8320200
8320220	터치및리모콘형수상기	//	칼라TV수상기로 조사
8320400	영상녹화재생기	//	//
8320410	영상녹화재생기	//	8320400
8320420	영상재생기	//	영상녹화재생기로 조사
8320900	녹음및재생기	//	//
8320910	일반녹음기	//	8320900
8320920	녹음재생기	//	녹음및재생기로 조사
8321100	소형전축	//	//
8322100	데크메카니즘	천 개	//
8322110	녹음기용D.M.	//	8322100
8322120	녹화기용D.M.	//	데크메카니즘으로 조사
8322130	컴퓨터용및기타D.M.	//	//
8322200	전화기	대	//
8322210	전자식전화기	//	8322200
8322220	다이알식전화기	//	전화기로 조사
8322400	키 폰	//	//
8322500	전화교환기	회 선	//
8322510	자동식전화교환기	//	8322500
8322520	전자식및기타전화교환기	//	전화교환기로 조사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323700	녹 음 테 이 프	KM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323800	비데오테이프	천 개	"
8330100	가정용냉장고	대	"
8330110	소형냉장고	"	8330100 가정용냉장고로 조사
8330120	중형냉장고	"	
8330130	대형냉장고	"	
8330200	가정용선풍기	"	"
8330300	가 정 용 전 기 세 탁 기	"	"
8330600	전 자 레 인 지	"	"
8340200	칼 라 TV 용 브 라 운 관	개	"
8340500	트 랜 지 스 터	천 개	"
8340510	S 트 랜 지 스 터	"	8340500 트랜지스터로 조사
8340520	P 트 랜 지 스 터	"	
8340700	집 적 회 로	"	"
8341100	고 정 축 전 가	"	"
8341500	변 성 기	"	"
8341510	중 간 및 고 주 파 변 성 기	"	8341500 변성기로 조사
8341520	전 원 변 성 기	"	
8341530	입 출 력 변 성 기	"	
8341540	고 압 변 성 기	"	
8341700	인 쇄 회 로 기 관	개	"

지정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341710	페놀인쇄회로판	개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341700 인쇄회로기판으로 조사 "
8341720	에폭시인쇄회로판	"	
8390100	통신선및케이블	M / T	"
8390200	전력선및케이블	"	"

· 384. 운수장비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 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410100	선박용내연기관	HP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410200	철강유조선	G / T	"
8410300	일반화물선	"	"
8410700	합성수지선	"	"
8420200	전동차	량	"
8430100	소형승용차	대	"
8430200	중형승용차	"	"
8430300	대형승용차	"	"
8430500	소형버스	"	"
8430600	일반버스	"	"
8430800	소형트럭	"	"
8430900	중형트럭	"	"
8431000	대형트럭	"	"
8440100	자전거	"	"
8440300	모터사이클	"	"

·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8520200	광섬유케이블	Km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520500	사 진 기	대	"
8520600	전 자 복 사 기	"	"
8520800	안 경 테	천 개	"
8530100	손 목 시 계	개	"
8530200	벽 시 계	"	"
8540200	수 도 미 터	"	"
8540300	적 산 전 력 계	대	"
8540400	전 자 계 측 기	백만원	"

○ 39. 기타 제조업

• 390. 기타 제조업

지정품목부호	지정 품 목 명	조사단위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9020100	피 아 노	대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9020200	기 타	//	"
9030500	낙 시 대	개	"
9030600	낙 시 용 릴	//	"
9040100	인형 및 장난감	백만원	"
9040110	인 형	//	"
9040120	어린이승용물	//	9040100 인형 및 장난감으로 조사 "
9040130	기 타 장 난 감	//	"
9050200	가 발	천 개	"
9090100	볼 펜	//	"
9090900	영 구 및 반 영 구 라이 터	개	"
9091200	지 퍼	Km	"
9091400	바 늘	백만원	"

## Ⅵ. 부 록

## Ⅶ. 부 록

### 1. 주요단위해설

1) ppm :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데니어임.

3) 'S (번수·番數) : 견사 1 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 840 야드는 1 'S 면사 길이 )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 560 야드는 1 'S 소모사의 길이 )

$$(3) 4,3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 256 야드는 1 'S 방모사의 길이 )

소모사는 영국식으로 560 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 번수라 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32 S, 쌍사(雙絲)의 경우는 2/32 'S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淸紡機), 연사기(撚絲機) 등 스피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링” 정방기는 매일 16시간 가동으로 20 번수를 0.5 파운드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율,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4 파운드로 생산함.

- 5) D/W ( Dead Weight )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 6) G/T ( Gross Tonnage )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길이×높이의  $f^3$ , 100  $f^3$  를 1 G / T으로 한다.
- 7) 노트 ( Knot ) : 배가 1시간에 1해리 ( 1,853 m )를 달리는 속력
- 8) S / F  $\frac{1}{8}$  ( Square Feet  $\frac{1}{8}$  inch )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oot × 1 foot ×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9 m^3$ 이다.

[ 주 ]

1.1 才	.....	1 치 × 1 치 × 12 차
2.1 石	.....	180 L
3.1 斤	.....	1.3 Lbs
4.1 實	.....	8.2 Lbs
5.1	.....	400 Lbs
6.1 坪	.....	3.3 $m^2$
7.1 木材	.....	3 分板 1 평은 9 才
		4 分板 1 평은 12 才
		5 分板 1 평은 15 才

9) R / T ( 냉동톤 ) : 1 R / T = 12,000 BTU/H

1 BTU/H : 1 pound 의 물을 1°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10) T/H : 물 1 Ton 을 1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열량

11) 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 :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  
서의 선박 자체의 무게, 즉 중량톤을 말한다.

## 2. 도 량 형

〈표 1〉 길 이

단 위	<i>mm</i>	<i>cm</i>	<i>m</i>	<i>km</i>	<i>in</i>	<i>ft</i>
1 <i>mm</i>	□	0.1	0.001	(0.1) <sup>8</sup>	0.03937	0.00328
1 <i>cm</i>	10	□	0.01	(0.1) <sup>5</sup>	0.3937	0.0328
1 <i>m</i>	1,000	100	□	(0.1) <sup>3</sup>	39.37	3.2808
1 <i>km</i>	10 <sup>6</sup>	10 <sup>5</sup>	1.000	□	39,370	3280.8
1 <i>in</i>	25.4	2.54	0.0254	0.000025	□	0.0833
1 <i>ft</i>	304.8	30.48	0.3048	0.000304	12	□
1 <i>yd</i>	914.4	91.44	0.9144	0.00091	36	3
1 <i>mile</i>	-	160930	1609.3	1.6093	63360	5280
1 尺 (자)	303.03	30.303	0.303	0.00030	11.93	0.9932
1 間 (간)	1818.2	181.82	1.818	0.0182	71.582	5.965
1 町 (정)	10909.1	10909.1	109.091	0.1090	4294.9	357.91
1 里 (리)	-	-	3927.27	3.927	154619	12885
1 寸 (치)	30.303	3.0303	0.0303	0.00003	1.1930	0.0994

환 산 표

yd	mile	尺	間	町	里	寸
0.00109	0.0000006	0.0033	0.00055	0.000009	-	0.033
0.0109	0.000006	0.033	0.005	0.00009	-	0.33
1.0936	0.00062	3.3	0.55	0.009	0.00025	33
1093.6	0.62137	3300	550	9	0.25	33000
0.0278	0.000015	0.0838	0.0140	0.0002	-	0.8382
0.3333	0.00019	1.0058	0.1676	0.0028	0.00008	10.058
Ⅰ	0.00057	3.0175	0.5029	0.0083	0.0002	30.175
1760	Ⅰ	5310.8	885.12	14.752	0.4098	53108
0.3314	0.0002	Ⅰ	0.1667	0.0028	0.00008	10
1.9884	0.011	6	Ⅰ	0.0167	0.0005	60
119.304	0.0678	360	60	Ⅰ	0.0278	3600
4295	2.4403	12960	2160	36	Ⅰ	129600
0.0331	0.00002	0.1	0.01667	0.00028	0.000008	Ⅰ

〈표 2〉 부 피

단 위	㎤	㎡	in <sup>3</sup>	ft <sup>3</sup>	yd <sup>3</sup>
1 ㎤	□	(0.1) <sup>6</sup>	0.06103	0.00003	0.00001
1 ㎡	10 <sup>6</sup>	□	61027	35.3147	1.3080
1 in <sup>3</sup>	16.3872	0.000016	□	0.00057	0.00002
1 ft <sup>3</sup>	28316.8	0.02831	1728	□	0.03703
1 yd <sup>3</sup>	764511	0.76451	46656	27	□
1 gal(美)	3785.43	0.00378	231	0.1337	0.00495
1 gal(英)	4545.9	0.00455	277.42	0.1605	0.00595
1 ℓ	1000	0.001	61.027	0.03531	0.0013
1 合(舊)	180.39	0.00018	11.0041	0.0066	0.00023
1 升(舊)	1803.9	0.0018	110.041	0.0637	0.0023
1 斗(舊)	18039	0.01803	1100.41	0.6371	0.0236
1 石(舊)	180391	0.1803	11004.1	6.3704	0.2359

gal (美)	gal (英)	ℓ	合	升	斗	石
0.00026	0.00022	0.001	0.00554	0.00055	0.00005	0.000005
264.186	219.97	1000	5543.52	554.325	55.435	5.5435
0.00432	0.0036	0.01638	0.0908	0.00908	0.00091	0.00009
7.4805	6.228	28.3169	156.966	15.6966	1.5697	0.15697
201.974	168.18	764.511	4238.09	423.81	42.381	4.2381
□	0.8327	3.7854	20.983	2.0983	0.2098	0.02098
1.2009	□	4.5459	25.206	2.5206	0.2521	0.02521
0.2642	0.21997	□	5.5435	0.5544	0.0554	0.00554
0.04765	0.03968	0.18039	□	0.1	0.01	0.0001
0.4765	0.3968	1.8039	10	□	0.1	0.001
4.7657	3.6981	18.039	100	10	□	0.1
47.6567	39.681	180.39	1000	100	10	□

〈표 3〉 무게

단 위	g	kg	t (噸)	L / B	O Z
1 g	□	0.001	(0.1) <sup>6</sup>	0.002204	0.03527
1 kg	1000	□	0.001	2.20459	35.273
1 t (噸)	10 <sup>6</sup>	1000	□	2204.59	35273
1 L / B	453.592	0.45359	0.00045	□	16
1 O Z	28.8495	0.02835	0.000028	0.0625	□
1 S/T (미톤)	907200	907.2	0.9072	2000	32000
1 L/T (영톤)	1016000	1016	1.016	2240	35840
1 gr	10.06479	0.00006	-	0.00014	0.00228
1 匁 (돈)	3.75	0.00375	0.000004	0.00827	0.1323
1 (근)	600	0.6	0.0006	1.3228	21.1647
1 貫 (관)	3750	3.75	0.00375	8.2672	132.28

S / T	L / T	gr	刃	斤	貫
0.0000011	0.0000098	15.432	0.2667	0.00166	0.000266
0.001102	0.000984	15432	266.67	1.6666	0.2666
1.1022	0.9841	-	266670	1666.6	266.66
0.0005	0.000446	7000	120.96	0.756	0.12096
0.000031	0.000028	437.4	7.56	0.0473	0.00756
□	0.89286	-	293919	1512	241.92
1.12	□	-	262420	1693.4	270.95
-	-	□	0.01728	0.00108	0.000017
0.0000041	0.0000037	57.872	□	0.00625	0.001
0.00066	0.00059	9259.56	160	□	0.16
0.00413	0.00369	57872	1000	6.25	□

〈표 4〉 넓 이

단 위	mm	cm	m	km	in <sup>2</sup>	ft <sup>2</sup>	yd <sup>2</sup>
1 mm	□	0.01	(0.1) <sup>6</sup>	(0.0) <sup>12</sup>	0.00155	0.0001	0.000001
1 cm	100	□	(0.1) <sup>4</sup>	(0.1) <sup>10</sup>	0.1550	0.0011	0.00012
1 m	10 <sup>6</sup>	10 <sup>4</sup>	□	(0.1) <sup>6</sup>	1549.99	10.764	1.1958
1 km	10 <sup>12</sup>	10 <sup>10</sup>	10 <sup>6</sup>	□	(39370) <sup>2</sup>	(3280) <sup>2</sup>	(1090) <sup>2</sup>
1 in <sup>2</sup>	645.16	6.4516	0.00065	-	□	0.00694	0.00077
1 ft <sup>2</sup>	92903.04	929.03	0.0929	-	144	□	0.1111
1 yd <sup>2</sup>	-	8359.44	0.8361	-	1296	9	□
1 mile <sup>2</sup>	-	-	-	2.5899	(63360) <sup>2</sup>	(5280) <sup>2</sup>	(1760)
1 a	10 <sup>8</sup>	10 <sup>6</sup>	100	0.0001	155001.7	1076.4	119.58
1 ha	10 <sup>10</sup>	10 <sup>8</sup>	10 <sup>4</sup>	0.01	15500160	107640	11958
1 acre	-	-	4046.8	0.0040	6274735	43560	4840
1 坪	-	-	3.3058	0.000003	5125.58	35.583	3.9537
1 段步	-	-	991.74	0.00099	1537500	10674.9	1186.1
1 町步	-	-	9917.4	0.0099	15375000	106749	11861
1 平方尺	-	918.2	0.09182	-	142.35	0.9884	0.1098

mile <sup>2</sup>	a	ha	acre	坪	段 步	町 步	平方尺
-	(0.1) <sup>8</sup>	(0.1) <sup>10</sup>	-	-	-	-	0.00001
-	(0.1) <sup>6</sup>	(0.1) <sup>8</sup>	-	0.00003	-	-	0.0011
-	0.01	0.0001	0.000247	0.3025	0.001	0.0001	10.89
0.3861	10000	100	247.114	302500	1008.3	100.83	10890000
-	0.000006	-	-	0.00019	-	-	0.0070
-	0.0009	0.000009	0.000022	0.0281	0.00009	0.000009	1.0117
-	0.00836	0.00008	0.00021	0.2529	0.00084	0.00008	9.1054
□	25898.46	258.98	640	-	-	78347.597	-
0.000039	□	0.01	0.0247	30.25	0.1008	0.01008	1089
0.0039	100	□	2.471	3025	10.183	1.008	108900
0.00156	40.468	0.40468	□	1224.2	4.0806	0.4081	44071.2
-	0.0331	0.00033	0.00081	□	0.0033	0.00033	36
0.00004	9.9174	0.09917	0.2451	300	□	0.1	10800
0.0004	99.174	0.9917	2.4506	3000	10	□	108000
-	0.00091	0.000009	-	0.0278	0.00009	0.000009	□

# < 광공업 통계 조사 >

1. 조사 요청서
2. 자료처리 요청서
3. 결 과 포
4. 산업 및 품목분류포
5. 조사포 접수대장
6. 취사 전출사명체명부
7. 광공업 통계 조사포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

# 조 사 요 령 서

1988. 5.

경 제 기 획 원

# 차 례

<b>I. 조사개요</b> .....	3
1. 조사목적 .....	3
2. 조사의 법적근거 .....	3
3. 조사연혁 .....	3
4. 조사체계 .....	3
5. 조사기간 .....	3
6. 조사대상 .....	4
7. 조사단위 .....	7
8. 조사표의 종류 .....	8
9. 조사사항 .....	8
10. 조사방법 .....	9
11. 조사표 내검, 질의조회 및 조사표 제출 .....	9
12. 조사결과 공표 .....	9
<b>II. 조사요원의 임무</b> .....	10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	10
2. 조사원의 임무 .....	10
3. 지도원의 임무 .....	14
<b>III. 조사표 작성요령</b> .....	16
1. 일반적 유의사항 .....	16
2. 항목별 작성요령 .....	17
가. 조사표〔 I 〕의 작성요령 .....	17
나. 조사표〔 II 〕의 작성요령 .....	46
<b>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b> .....	48
1. 일반적인 사항 .....	48
2. 연관항목별 심사요령 .....	48

가. 조사표〔Ⅰ〕	48
나. 조사표〔Ⅱ〕	50
<b>V. 관련자료 작성요령</b>	51
1. 요계표 작성	51
2. 조사용 사업체명부 정리 및 보완	54
3.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작성	57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58
5. 합산조사 사업체명부 작성	58
<b>Ⅵ. 조사요령 요약 (Ⅰ표 기준)</b>	60
<b>부록 1. 사업체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b>	62
<b>부록 2.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b>	65



## 6. 조사대상

### 가. 조사대상 사업체

국내에 실재하는 사업체로서

- 1) 한국 표준산업분류중 “대분류 2, 3”인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이며
- 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여
  - 가) 1987.12.31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이거나
  - 나) 1987년 조업한 기간중의 월평균 종업원이 5인이상인 사업체

### 나. 광업과 제조업의 정의

#### 1) 광업

광업이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단한 손질 및 품질개선의 활동을 포함한다.

#### 2) 제조업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다. 광공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 1) 겸업사업체

가) 겸업사업체는 광공업 활동실적만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사대상기간 중 연간 총수입(생산액 또는 출하액)이 많았던 산업을 주산업으로 본다.

예 : 연간 총수입이 광공업 > 타산업.....조사대상

“ 광공업 < 타산업.....제 외

나) 상기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해당활동의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해 산업을 결정한다.

## 2) 농림, 수산업과의 관계

- 가) 농가, 어가에서 주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나) 어선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다) 벌목업(伐木業)과 단순한 목재 절단업은 임업으로 분류되며 조사대상이 아니다.

## 3) 건설업과의 관계

- 가) 제조된 부분품을 조립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조립 설치하는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는 제외된다.(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트, 알미늄 샷시 창틀설치 등)
- 나)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광상의 탐사, 개발 및 준비작업과 시굴작업은 건설업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도·소매업과의 관계

- 가) 빵제품 등을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기타 도·소매업자 등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나,接客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로 구내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소규모 의류제품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한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타사업체로부터의 구입(기성품) 판매분이 자가제조 부문보다 클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 포장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라)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에게 지

급하여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시판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하청받아 생산한 업체가 제조업체)

마) 알미늄 샷시바를 타사로부터 구입하여 창틀을 직접 조립 또는 가공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조사하나, 구입상품을 단순절단 또는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비중이 조립판매분보다 클 때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건재상 등)

#### 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과의 관계

가) 주로 가정 용구(난로,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그러나 선박수리, 산업용 보일러수리, 방적기수리, 산업용 장비 등 산업용 기계장치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조사대상이다)

나) 의류와 직물 등을 표백, 염색하는 업체는 직접 직조하여 염색하든, 임가공료만 받고 염색하든 관계없이 조사대상이 되나 개개의 가정 소비자로부터 위탁받아 표백, 염색, 정리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6) 인쇄 출판업과의 관계

가) 학교, 각종협회, 종교단체 등의 산하소관부서에서 발간하여 단체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조업으로 본다.

#### 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① 콩나물 공장
- ② 표백 및 염색활동을 겸한 세탁소(개개인 상대)
- ③ 제과, 제빵점 중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로 구내 판매할 경우
- ④ 양품점(의류), 양장, 양복, 양화점 중 구입판매분이 자체 제조판매분보다 클 경우
- ⑤ 서류복사업(용역업)
- ⑥ 알미늄 샷시바 판매점(건재상 등에서의 단순절단판매 등)
- ⑦ 자동차, 자전거 수리점
- ⑧ 의복류 위탁제조판매업체

- ⑨ 사진현상 및 인화 (서비스업)
- ⑩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 ⑪ 공공단체, 학교의 실습장, 연구소, 시험소
- ⑫ 종교단체, 학교, 각종협회에서의 인쇄·출판 활동부서 (비매품)

마. 광공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 ① 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 ③ 수탁사업체 :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제조하여 준 대가로 가공임 (수주가공임) 을 받는 사업체
- ④ 도정업 : 도정업체는 임가공료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물 (사료) 수입은 제품으로 조사한다.
- ⑤ 도살업 : 도살업은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산물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한다.
- ⑥ 방위산업 사업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체외에는 모두 조사한다. (군으로부터의 수탁여부 불문)
- ⑦ 연초제조창과 담배원료공장

7.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가.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상점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사업체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게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1) 동일 장소 (구역) 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는 경우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

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사업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사업장소가 동일 구역내의 여러 장소에 분리되어 있어도 임금대장 및 경영장부가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어서 구분조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나. 보조단위의 처리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 즉 창고, 차고, 수선소, 연구개발 및 실험실, 발전부서 등과 같은 것은 그 사업체의 내부부서로 간주해서 포함조사하고, 본사와 같은 총괄적인 행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보조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고 보조하고 있는 주된 사업체의 산업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8. 조사표의 종류

가. 사업체용 조사표 [ I ] : 공장, 광산 등의 사업체에 적용

나. 본사용 조사표 [ II ] : 사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본사가 산하 사업체와 별도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공장)를 가지고 있는 다공장기업의 본사가 그 중 어느 한 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9. 조사사항

가. 조사표 [ I ] : 21개 항목

①공장명 및 소재지 ②본사소재지 ③소속모기업명 ④창설년월 ⑤결산기 ⑥경영조직 ⑦자본금 ⑧부지 및 건물면적 ⑨주요 사용원재료명 ⑩주요생산공정 ⑪종업원수 ⑫연간급여액 ⑬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⑭연간주요생산비 ⑮내국소비세액 ⑯재고액 ⑰연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⑱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⑲건설가계정 ⑳유형고정자산 ㉑동일기업내 타공장명 및 소재지

나. 조사표 [ II ] : 15개 항목

①본사명 및 소재지 ②소속모기업명 ③창설년월 ④결산기 ⑤경영조직

- ⑥자본금 ⑦종업원수 ⑧연간급여액 ⑨상품매출액 및 임대수입액 ⑩재고액
- ⑪유형고정자산 ⑫건설가계정 ⑬사업체의 공장별 조사표작성가능여부
- ⑭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⑮동일그룹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10. 조사방법**

조사담당자가 관할구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 조사대상여부를 확인한다.

1) 광공업 사업체인가?

2) 조사기준일('87.12.31) 현재 또는 월평균 종업원이 5인이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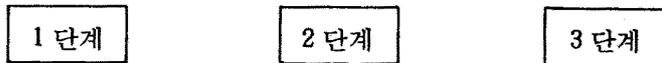
※ 사업체 명부는 조사의 편의를 위한 보조자료로서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된 사업체라 하더라도 위 1), 2)항 어느 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체 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하지 않는 반면, 사업체 명부에는 누락되었지만 실존하는 사업체는 조사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의 조사표 작성 능력 여부에 따라서 자계식 조사(사업체에서 작성)와 타계식조사(조사원이 작성)를 병행한다.

단, 자계식에 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 항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을 완전히 보완한 후에 조사표를 회수한다.

**11. 조사표 내검, 질의조회 및 조사표 제출**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표가 접수되는 대로 단계별로 내검 및 질의조회를 한다.



동·읍·면 ————— 구·시·군 ————— 시·도(시·도 책임내검 완결 후 조사표 제출)

※ 질의조회는 조사표 접수단계별 역순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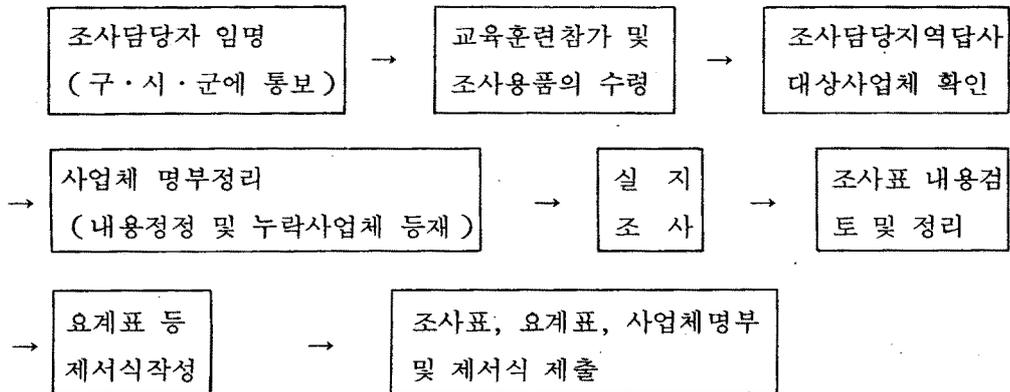
**12. 조사결과 공표**

시·도로부터 직접 중앙에 접수된 조사표는 전산처리하여 중간속보 및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발간, 공표한다.

## Ⅱ. 조사요원의 임무

조사담당자는 시·도, 구·시·군의 지휘 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담당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제로 실사에 반영하는 조사요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며,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 2. 조사요원의 임무

#### 가. 조사준비

##### 1) 교육훈련

조사원은 반드시 해당 구·시·군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조사용품을 수령한다.

##### 2) 조사용품수령

##### 가) 조사용품

- ① 조사표〔Ⅰ〕,〔Ⅱ〕
- ② 조사협조 의뢰공문
- ③ 조사요령서
- ④ 각종 작성 서식 : 요계표, 조사표접수대장(구·시·군 및 시·도용)  
합산 사업체명부, 추가 및 전출 사업체명부

⑤ 산업 및 품목분류표 (사업체 배부용 포함)

⑥ 사업체 명부

나) 수령체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조사원)

3) 조사대상 사업체 확인 및 명부의 정리

가) 조사원은 실사전에 담당지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여부 (공업 또는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5인 이상인가) 를 확인하여 사업체 명부를 보완한다.

나) 조사용 사업체명부는 단지 조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부이므로 동 명부에 없는 사업체라도 '87 년도의 실적이 있는 조사대상업체가 발견되면 명부에 등재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88 년도에 신규 창설한 신규사업체가 발견되면 사업체 명부에 등재하되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 전출 (행정구역 착오 및 개편에 의한 경우도 포함) 사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동·읍·면 및 구·시·군에 통보하여 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조사협조 공문서 전달

가) 사업체 방문당일 조사원은 협조공문서 (수신처명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명기후) 를 휴대, 해당사업체에 접수시킨다.

나. 조사표류배부

조사용 사업체 명부 확인과 동시에 사업체에서 자계식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 으로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표를 배부한다.

1) 공장, 광산 등의 사업체에는 조사표 [I], 산하공장과 별도의 장소에 있는 본사 (본점) 에는 조사표 [II],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있는 사업체에는 조사표 [I] 과 [II] 를 각각 배부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본사에서 산하공장과는 별도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 [I] 과 [II] 를 동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장에서는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타지역의 본사 또는 공장에서 작성되어야 할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부한다.

3) 조사표 기입은 반드시 조사표 이면의 「조사표 작성요령」 을 참조하여 작

성하도록 설명한다. 특히, 「17항의 품목분류」는 사업체 명부상의 전년도에 조사된 출하품목분류의 타당성 여부를 사업체 담당자와 확인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분 기입하도록 조사표 배부시에 분류번호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 때 금년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일부 개편작성되었음을 유의한다.

- 4) 분철된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배부하는 업체(대규모, 다품종 생산업체)에는 특히 업종(산업분류)을 달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사표류 배부시에 분류번호를 결정하도록 한다.
- 5) 조사표 회수 가능일자 및 작성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 다. 실지조사

자계식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에 대한 조사표 배부가 끝나면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산장부를 확인, 면접조사(타계식)한다.

#### 라. 조사표 회수

자체적으로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사업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표를 회수한다. 단, 회수시에는 반드시 결산장부에 의해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 마. 조사표 작성상 문제점 해결

##### 1) 유고사업체

사업체 방문시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 명부상의 우측여백에 그 사유를 기입한 후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단, 현재 휴업한 사업체라도 '87년도 실적을 조사표에 기재할 수 있는 경우는 조사표를 작성한다.

##### 2) 조사응답 거부 사업체

조사의 취지, 목적 및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계속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구·시·군 또는 순회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 방위산업 사업체

방위산업체에 대하여는 협조를 구하고, 방위산업 품목에 한하여 제품명을 「기타 품목」으로 처리한다. 특히 방위산업 사업체의 비밀이 조사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예”

35292200 [ 무기용 화약 ( 무연화약, 혼성추진약 등 ) ] → 35299179 기타공업용 화학제품
38298100 [ 총포 ( 권총, 소총, 대포, 고사포 ), 총탄, 포탄, 폭발물 발사기, 장갑차 등 관련장비 및 부품 ] → 38299979 기타산업용 기계
38323900 ( 군수용 무선통신장비 ) → 38329179 기타전화 장치
38451100 ( 항공기 ) → 38490970 기타운송장비
38452100 ( 항공기부품 ) → 38490979 기타운송장비 부품

4) 조사불능 사업체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사업체는 참고가 될 각종 서류나 구술자료에 의거 작성하고, 그 사유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5) 다공장소유 기업의 본사가 어떤 한 공장과 함께 있는 경우( 조사표 [I], [II] 동시작성 사업체)

본사 조사표에는 1~6, 13~15항만을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은 함께 있는 공장( 조사표 [ I ] )에 포함하여 기입한다.

6) 현지공장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체( 공장 )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가 본사 또는 조사표작성이 가능한 주된 사업체에 요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한다.

7) 타공장과 구분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자료의 부속자료가 출하액, 생산비 등의 주요 조사사항이 타공장과 도저히 구분 작성할 수 없도록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하액의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사업체( 공장 )에서만 조사된 사업체로 처리하고 기타 사업체에서는 각각 그 조사표 사본을 회수하되 별첨조사표로 첨부한다.

이때 주된 사업체에서는 조사표의 전 항목에서 합산된 모든 사업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합산된 사업체에서는 당해 사업체분이 합산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8) 결산마감일이 12월이 아닌 사업체

결산마감일이 12월이 아닌 사업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란에 사유를 기입한다.

9) 덕대제 광업사업체(조광권자)

덕대제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따라서 광업권자는 직영광산분만을 조사하고 덕대가 직접 출하하였거나 광업권자에게 인도한 것은 모두 덕대 사업체의 출하로 조사한다.

바. 조사표 내검 및 관련자료 작성

1)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과 「관련자료 작성요령」참조

2) 조사표는 [ I ], [ II ], 별첨조사표로 구분하여 간지를 첨부 합철한다.

사. 조사표류 제출

작성 정리된 조사표류를 수령 체계의 역순으로 제출한다.

### 3. 지도원의 임무

가. 구·시·군 지도원

1) 사업체 명부의 조정배부

행정구역 개편지역(분동, 분구, 통합지역)은 구·시·군에서 사업체 명부를 사전에 분할 배부하되 사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사업체 및 동별 사업체수를 분명히 파악하여 조사후에 면밀히 점검한다.

2)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적정량의 조사표를 동·읍·면 조사원에게 배부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 관계자료와 함께 동·읍·면별로 접수하여 합철한다.

3) 조사요령 교육참석 및 조사원 훈련실시

시·도에서 실시하는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조사원을 직접 훈련시킨다.

4) 실사순회지도

실사기간 중 각 동·읍·면을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

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5) 조사표 내검

동·읍·면에서 작성, 제출하는 조사표를 내용검토하여 확인 및 보완한다.

6) 관련자료작성 및 제출

동·읍·면에서 작성된 요계표를 근거로 구·시·군 요계표를 작성하고, 조사표 접수대장을 작성하며, 조사표를 비롯하여 사업체명부, 합산사업체명부 등 각 서식을 동·읍·면별로 편철하여 시·도에 제출한다.

나. 시·도 지도원

1)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적정량의 조사표류를 산하 구·시·군에 배부하되 행정구역 개편지역(분구·통합등)은 사전에 사업체명부를 조정하여 배부하고 조사완료된 각종 자료를 구·시·군별로 접수, 분류하여 제출한다.

2) 훈련, 순회지도

구·시·군 지도원에 대한 교육실시, 조사원 훈련시의 관내 순회지도(적격 조사원의 훈련여부, 훈련과정의 충실 등을 확인)

3) 실사순회지도

실사기간 중 관내를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4) 조사표 내검

구·시·군에서 작성 또는 제출한 조사표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5) 질의조회 및 확인조사

구·시·군에게 제출한 조사표를 내검하여 미비점 또는 착오사항을 동·읍·면에 질의하거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수정한다.

6) 시·도 관련자료 작성

요계표, 조사표 접수대장 등 시·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각종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 Ⅲ. 조사표 작성요령

####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본 조사표는 '87.1.1 ~ 12.31 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한다.
- 나. 21개 조사항목 중 특히 「17항 품목별 출하액, 13항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4항 연간 주요생산비, 16항 재고액」등을 중점 조사한다.
- 다. 제품의 품목구분과 품목번호 기입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책자 중 각 산업별로 분류 예시한 품목분류표 본문과 가·나·다 순에 따라 분류한 「품목색인표(부록)」를 병용하면 효과적이다.
- 라. 조사표 작성시 일부 항목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일치되도록 한다.
- 마.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횡선(=)으로 수정하며 칼로 긁거나 수정액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바.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며 금액단위의 각란에 맞도록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사업체에 조사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도 「잉크」나 「볼펜」을 사용토록 요청할 것)
- 사.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에 의한 정수로 기입한다.
- 아. 각 수량 및 금액단위는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금액단위는 「백만원」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5입(반올림)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한다.(단, 17항(5)단위당 출하가격은 “원”임을 유의한다)
- 자. 조사표상의 수량단위 바로 앞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중앙에서의 부호기입란임)
- 차. 숫자가 음수(마이너스)일 때는 숫자앞에 △표시를 한다.  
(예) 부가가치세)
- 카. 다공장 소유기업체의 공장을 조사할 경우에 조사표의 전항목에 대하여 당해 공장분만 조사되도록 하고 부득이 일부 항목에 타공장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한다.

## 2. 항목별 작성요령

### 가. 조사표 [ I ]의 작성요령

★사업체 명부상 부호	행정구역분류번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	산업분류
	.....-.....		.....	.....	.....	.....

#### (1) 행정구역 분류번호

사업체 명부상의 행정구역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 (2)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상에 기재된 번호를 기입하며, 명부상 누락 사업체나 전입 사업체의 경우는 각 동·읍·면별로 기존명부상의 마지막 일련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

#### (3) 사업체 고유번호

##### ㉠ 동·읍·면에서 기입할 때

사업체 고유번호는 조사용 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기입한다. 단, 사업체 명부상 누락사업체의 고유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시·도에서 기입)

##### ㉡ 구·시·군에서 기입할 때

조사용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중 동일 구·시·군내의 동·읍·면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에 대하여 이전(移轉)전 소재지의 사업체명부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하여야 한다.

##### ㉢ 시·도에서 기입할 때

새로 발견된 사업체명부상의 누락사업체, 타 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의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최종 기입한다. 명부상 누락사업체와 타 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에 대하여는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를 취합하여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사업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서울은 남부통계사무소에서 사업체 관리) 관내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이전전 소재지의 사업체 명부에서 고유번호를 찾아 그대로 기

입한다.

(4) 기업체번호 및 그룹번호

한 기업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2개 이상의 공장·광산을 운영하거나 공장(광산)과 다른 장소에 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체번호를, 또한 그룹에 속해있는 계열기업인 경우 각 사업체마다 그룹번호를 각각 사업체명부에 부여하였다.

사업체 명부에 기재된 기업체(또는 소속그룹)명이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는 명부상의 기업(또는 그룹)번호를 그대로 이기하나, 명부내용과 상이하거나 명부상 누락사업체의 경우는 관내 명부에서 알 수 있을때만 기입하고, 그렇지 않는 사업체는 그대로 둔다.

(5) 산업분류(조사완료후 기입)

- 조사표 17항(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의 산업 및 품목분류번호로부터 주된 산업분류(분류번호의 앞 5자리 숫자)를 기입하며 임가공(수탁제조)업체는 18항(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의 품목분류 번호로부터 산업분류를 기입한다.

\*산업분류 결정방법

- ① 품목분류번호가 1개뿐인 경우 : 품목분류번호의 앞 5자리숫자  
(산업분류)
  - ② 품목분류번호가 2개이상일 경우 : 품목분류번호의 앞 5자리숫자중 출하액이 큰 5자리 숫자. 또, 동일한 산업분류는 출하액을 합계하여 산업분류를 결정.
- 선박, 산업용장비 등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체는 수리품의 주된 산업을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확인하여 기입한다.

###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공장(사업체)명 \_\_\_\_\_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구·시·군    구·로·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1) 공장(사업체)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한다.

<예시> : 「××공업주식회사 울산공장」

「주식회사××산업 창원공장」

(2) 일정한 공장(사업체)명칭이 없을 경우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을 기입한다.

(3) 공장(사업체)의 소재지(주소)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는 바, ××빌딩, ××상가, ××공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표에 인쇄되어 있는 행정단위 명칭에 “○”표를 한다.

(예 : 경기    시    수원    구  
          ⊕            ⊕  
          도            군

(4) 전화번호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 2. 본사(본점)소재지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구·시·군    구·로·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1)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2)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소재지란에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대표자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대표자명 우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3) 본사가 없거나, 서울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는 서울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의 전화번호도 상단여백에 기입한다.

**3. 소속모기업 (그룹)명 ( )**

모기업이란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자본, 혈연관계 등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결합된 2개이상의 기업군중 지도적(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을 말하며 조사표상의 사업체가 속해 있는 그룹(모기업)명을 기입한다.

(1) 이러한 기업집단을 일반적으로 「××그룹」이라고 부를 경우는 그룹명을 기입하고 <예시 : 1 >

(2) 「××그룹」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는 계열기업군은 모기업명을 기입한다.  
<예시 : 2 >

<예시 : 1 > { 제일모직(주), 삼성전자(주), 전주제지(주)→삼성  
(주)금성사, (주)럭키, 금성통신(주)→럭키금성

<예시 : 2 > { 동아제약(주), 라미화장품(주), 동명산업(주)→동아제약  
(주)대성산업, 대성광업개발(주), 창원기화기공업(주)→대성산업

[ 주요 그룹(모기업)명 ]

현대, 럭키금성, 선경, 삼성, 쌍용, 대우, 효성, 대림, 한진, 한국화약, 대한전선, 두산, 롯데, 코오롱, 한양,삼미, 한일합섬, 동양시멘트, 진로, 동아제약, 동부, 동아, 신동아

**4. 창설년월**  
( 현 사업체의 가동월 또는 개점월 )  
19            년            월

- (1)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월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 사업체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가동월 또는 개점월)을 기입한다.
- (2)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사업체(공장)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 (3)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4) 동일 업종으로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 (5) '87년 창설업체는 16항(1) 연초 재고액이 없고 20항 유형고정자산의 (01) 신규나 (02) 중고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단, 유형고정자산을 임차 사용중일 경우에는 예외)

5. 결산기(결산마감월) ( )월

결산대상기간(예: 1~12월)이 아니고 결산마감월(예: 12월)을 말한다.

<예시> 결산이 연 1회(결산기간 1~12월)인 경우와 연 2회(결산기간 1~6월, 7~12월)인 경우의 기재방법은 각각(12월), (6, 12월)로 기입한다.

6. 경영조직(해당란에 ○표)  
 (1) 회사법인( ) (2) 기타법인( ) (3) 개인( )

- (1) 회사법인이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 (2) 기타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법인격(法人格)을 부여받은 조합등을 포함하며,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3)개인에 포함된다.
- (3) 개인이란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지 않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7. 자본금 또는 출자금(회사법인에 한함)  
 '87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1) 4항의 경영조직 중 「회사법인」에 한하여 '87.12.31 현재의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을 기입한다.

- (2)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 공장에서는 본사의 자본금 총액을 각각 기입한다.

<b>8. 부지 및 건물면적 (광업은 제외)</b>	
○ 1평 ≙ 3.3㎡	
○ 임차사용분 조사하고 임대분은 제외	
① 부 지	(㎡)
② 건물밀면적	(㎡)
③ 건물연면적	(㎡)

본 항목은 제조업체에 한하여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의 부지와 건물의 밀면적 및 연면적을 조사하며(임차사용분 포함하나 비업무용 및 임대해 준 것은 제외한다) 광업은 조사하지 않는다.

(1) 부 지

㉠ 광업과 연계되어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광업부문은 제외하고 제조업 부문만 조사한다.(예 : 시멘트공장의 석회석광산 부지는 제외)

㉡ 사택, 기숙사, 운동장 등 복리후생시설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포함하고 별도의 장소에 있거나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건물밀면적

부지와 접한 건물 바닥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3) 건물연면적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유의사항>

㉠ 2층 이상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 및 건물밀면적은 제 1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하고 건물 연면적은 실제 사용중인 건물 연면적을 사업체별로 조사한다.

예) 부지 100평, 각층 30평인 3층 건물에 A(1층), B(2~3층) 두 사업체가 임차사용하고 있을 경우

• A사업체

① 부 지	330 $m^2$
② 건물밀면적	99 $m^2$
③ 건물연면적	99 $m^2$

• B사업체

① 부 지	-
② 건물밀면적	-
③ 건물연면적	198 $m^2$

(내) 일반적으로 부지가 있고 건물 밀면적과 건물 연면적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① 빌딩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② 벽돌·블록 제조업체일 경우

(대) 건물 연면적은 건물 밀면적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태) 부지는 건물 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배) 단위는 「 $m^2$ 」이므로 평(坪)은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1 \text{ 평} \approx 3.3 \text{ } m^2$$

(해) 광업은 기입하지 않는다.(석탄, 채석장, 염전, 석회석 등의 광업체)

(사)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9. 주요 사용 원재료명**

①

②

③

원재료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 중 비중이 큰 것 3가지만 기입한다.



종사자가 있을 수 없으며 (3)개인사업체는 적어도 1인 이상은 있음에 유의한다.

(2) 피고용자(被雇傭者)

가) 생산직 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생산종업원을 말하며, 생산공정의 특정단계를 기록하거나 촉진하는 기록원, 감독원과 생산활동에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트럭운전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서 제외한다.

나)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전화교환원, 간호원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3)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1987.12.31 일 현재의 실제 종업원수를 말하며, 남·녀별로 구분 기입하고 12월중에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휴업, 계절업종 등)에는 종업원수를 기입하지 않고 “△” 표시만 한다.

(4)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

휴업을 했거나 생산중단 등 실제 조업을 하지 않은 달(月)은 제외하고 조업을 한 각 월말 종업원수의 누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월평균 종업원수를 말한다.

<예시> 얼음제조업체인 “갑”이라는 회사가 아래의 표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5개월 조업하였다면 월평균 종업원수는?

월	5	6	7	8	9
종업원수	35	50	60	60	40

※ ( 35 + 50 + 60 + 60 + 40 ) ÷ 5 = 49

(5) 연간 조업일수

실제 조업한 달을 말하며, 최소한 월간 1주일 이상 조업을 했을 경우에 조업일수에 포함한다.

<유의사항>

- ㉠ 피고용자에는 장기결근자(3개월이상), 군복무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또한 위탁 제조시킨 경우 수탁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 광공업과 타산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광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만을 발체, 기입한다.
- ㉢ 12월말 현재와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가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적요란에 휴업한 달(月)을 기재한다.
- ㉤ 일고 종업원은 반드시 포함조사하되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그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예시> 월중 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20명씩, 그리고 다음 7일간에 15명씩, 나머지 9일간에 30명씩 근무한 경우 월평균 종업원수는?

※ 일고종업원의 월평균 종업원수

$$= \frac{\text{월중 연근무인원수}}{\text{조업일수}} = \frac{575(\text{명})}{26\text{일}} = 22\text{명}$$

$$\text{월중 연근무인원수} = (10\text{일} \times 20\text{명}) + (7\text{일} \times 15\text{명}) + (9\text{일} \times 30\text{명}) = 575(\text{명})$$

		12. 연간급여액					
		상여금, 제수당포함					
		천	백	십	억	천	만
①	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	×	×	×	×	×
②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 및 기타						
합 계							

- (1) 1987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된 것을 1987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87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한다.
- (2)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3) 급여액이 11항의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월별 급여액을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종업원 1인당 월평균급여액 = (연간급여액 합계 ÷ 월평균종업원수) ÷ 조업월수
- (4) 퇴직금(퇴직급여 총당금)과 복리후생비, 장기결근자 및 외국인, 군복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5)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은 포함한다.
- (6)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보험료, 저금, 근로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총액으로 기입한다.
- (7) 생산직급여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를, 사무 및 기타의 급여액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급료와 임금”을 참고한다.

13.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기타 수입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원
① 제품출하액(제품의 외형매출액)						
② 폐품판매액(생산과정의 폐품, 불량품)						
③ 수탁제조수입액(임가공료)						
④ 수리수입액(수리대금)						
합 계(①+②+③+④)						
⑤ 상품매출액(구입상품 재판매액)						
⑥ 상품매출원가(구입상품매출에 대한 재판매원가)						
⑦ 임대수입액: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수입액 (토지분은 제외)						

(1) 제품출하액

- ㉠ 제품출하액이란 자사(自社)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였거나 위탁생산한 모든 제품중에서 '87년 1년간 출하(수출액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 따라서 외국 또는 타사(他社)에서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출하한 결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 ㉢ 제품 출하액에 판매이윤은 포함(제품수불명세서가 아닌 매출명세서상의 금액으로 조사)되어야 하나, 내국간접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특별소비세 및 주세 과세대상 품목생산업체 특히 유의할 것)
- ㉣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수출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 ㉤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점이나 보관창고로 이송한 것,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무상 양도한 것, 건설업 등 타산업 활동부문으로 대체된 것은 대체된 금액에 외부 매출시의 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 ㉥ 광공업이 아닌 타산업부문으로부터 수탁생산(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 인도하고 그 댓가로 임가공료를 받는 경우)하여 위탁사업체에 인도한 것은 시가로 평가하여 기입한다.

(2) 폐품 판매액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철공소에서 쇠부스러기,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 불량품(불량품)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기물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3) 위탁제조 수입액

(가)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를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 공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나)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 납품한 경우는 위탁(주문)업체의 산업활동유형에 관계없이 생산업체에서 제품 출하액으로 조사한다.

(다) 광공업 이외의 타산업체(무역업, 판매업 등)로부터 위탁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위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 생산하여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① 제품출하액에 기입한다.

(라) 주산업이 위탁제조(임가공)인 도살업, 도정업, 도금업은 위탁제조(임가공)수입액만 기입하고 신문사, 출판사 등의 광고수입도 본 항목에 포함 조사한다.

(4) 수리 수입액

타인 소유의 산업용기계, 장치(선박, 산업용 보일러, 산업용 장비등)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13항 출하액 합계액이 14항 생산비 합계액에 비해 과소하거나 과도한 경우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적요란에 기재한다.

(5) 상품매출액

(가)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재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액)

내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적송품, 시용판매, 할부판매, 예약판매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일단 상품이 출고되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조사한다.

(6) 상품매출원가

연간 판매한 상품에 대한 구입원가를 기입한다.

(7) 임대수입액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취임료를 말하며 토지분에 대한 임대수입액은 제외한다.

14. 연간주요생산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원
①재료비(부재료, 보조재료 포함)								
②연료비(석유, 석탄, 방카C유 등의 연료)								
③전력비(구입전력)								
④용수비(구입용수)								
⑤위탁생산비(외주가공비)								
⑥수리유지비(수선비)								
합 계								

1987년 1년간 실제 생산에 소요된 영업비용(제조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에서 명시한 6개 비목만을 각 항목별로 기입한다.

(1) 재료비

개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87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주재료)와 부분품, 용기 등과 포장 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로서 실제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내 미사용 재료비가 포함된 구입액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대 다(多) 단계 생산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재료비는 중복 기입하지 않도록 단계정대체액은 제외하고 최초 투입재료비에 공정을 거치면서 부가된 재료비만을 포함 기입한다.

㉔ 동일 기업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료(또는 반제품)는 대체금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㉕ 광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 기입한다.

㉖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

①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는 수탁 사업체의 재료비로 계상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계상한다.

② 그러나 광공업이 아닌 타 산업의 사업체(무역업, 판매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공받은 재료를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탁업체에서 기입하여야 한다. 단, 도살업, 도정업은 임가공료만 조사하므로 원재료는 재료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 (2) 연료비

㉗ 1987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爐,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석탄류, 석유류, 방카C유, 기타 연료)의 금액을 기입한다.

㉘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 (3) 전력비

㉙ 전력비는 87년 1년간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을 말하며 자가발전에 사용된 연료비(석탄, 유류 등)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연료비」에 포함한다.

㉚ 개인 사업체인 경우 가정소비분과 생산소비분이 각각 구분 가능할 경우에는 생산에 사용된 부분만 조사한다.

## (4) 용수비

1987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얼음공장에서의 용수비는 (1)재료비에 포함한다)

(5) 위탁생산비 (외주가공비)

가 위탁 사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하여 수탁 사업체에 지불한 외주작업의 대가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에게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도 포함한다.

나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료」는 본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수리유지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 (수익적지출)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수선비 항목을 합하여 기입한다.

가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 (자본적 지출)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액」란에 포함 기입한다.

나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대체시킨 경우는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15. 내국소비세액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원
○	부가가치세 (매출세-매입세)											
○	부가세 (특별소비세와 주세에 부가된 방위세, 교육세) 포함											
①	부 가 가 치 세											
②	특 별 소 비 세											
③	주 세											
	합 계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중 재화와 용역의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를 발생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로 구분 기입한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발생기준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기입한다.

㉡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상의 차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한다.

※ 과세특례자는 연간 공급가액(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 중 제조업의 경우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방앗간), 양복점업 및 양장점업, 양화점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고, 그 세율은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20/1,000이다.

㉢ 신문, 전매품(專賣品), 연탄 및 무연탄, 소금 등을 제조 또는 채광하여 원료용 또는 일반소비자용으로 출하하는 것은 면세된다. 단, 주된 산업활동이 면세업종이더라도 과세사업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신문사의 광고수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등)

㉣ 출하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0의 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負)의 수치(환급세액) “-”」가 될 수 있다.(이 경우는 숫자 앞에 “△” 표시하고 환급세액을 기입한다)

㉤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체(공장) 분만을 구분 기입한다.

㉥ 부가가치세 계산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액)이란 매출액에 특별소비세와 주세,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와 교육세 등 간접세를 가산한 금액이다.

(2)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사치성품목, 소비억제품목, 고급내구성 소비재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석류, 귀금속, 모피, 골프용품, 특수화장품 등이 있다.(품목별 세율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부록 참조)

(3) 주세

각종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주류 품목별 세율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부록 참조)

16 . 재고액											
	(1)연 초재 고액					(2)연 말재 고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①완 제 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											
③원 재 료											
④연 료											
합 계											

- ① 완제품은 당해 사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조사기준시점 현재 출하(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말하며 재고액평가는 생산자 제조원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반제품 및 재공품은 당해사업체가 추가가공을 요하는 미완성제품, 즉 조사기준시점 현재 출하할 수 없는 상태의 중간제품을 말하며, 반제품의 재고액에는 사용원자재비, 노동투입비 등이 포함된다.
- ③ 원재료 및 연료에는 당해 사업체의 소유분으로 작업상 외부에 보관중인 것도 포함되며 원재료 및 연료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한다.
  - 1987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없으며 연초재고액은 전년도(86년)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재고는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고액이 출하액에 비하여 너무과다 과소할 경우에는 재확인하고 그 사유를 적요란에 기재한다.

17 . 연간제품출하액 (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제 품 명	★★	수량 단위
01							
02							
03							

(1) 본 항목에서는 「 13항① 제품출하액 」과 「 16항 (1), (2)의 ①완제품의 연

- 초·연말재고액」에 일괄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 (2) 연간 총출하액 및 수출액은 제품매출명세서상의 수량 및 금액을, 연초연말 재고액은 제품수불명세서상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3) 품목분류번호

- ㉠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반드시 「8단 위 숫자」로 기입한다.(8단위 수치중 앞의 5자리는 “산업분류번호”이고 뒤의 3자리는 “품목분류번호”임)
- ㉡ 일반적으로 동일한 품목인 것처럼 표기되고 있더라도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공정 등에 따라서 달리 분류되므로 사업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출하품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분류하여야 한다.(전년조사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분류 타당성 재검토해야 함 → 품목분류표가 일부 개편됨)

< 예 시 >

① 원재료가 다른 경우

나무의자 33201111	면장갑 32154111
철재의자 38121113	가죽장갑 32228112

② 성질이 다른 경우

흑백TV 38321111	이형철근 37121131
칼라TV 38321112	원형철근 37121132

③ 용도가 다른 경우

여자용기성외의 제조업 32223	상업용냉장고 38263111
소아용기성외의 제조업 32224	가정용냉장고 38331111

④ 생산공정이 다른 경우

열연박판(보통강) 37121331	압연용강괴(보통강) 37113111
냉연박판(보통강) 37122111	단조용강괴(보통강) 37113121

- ㉢ 품목별 출하자료는 본 분류번호에 따라 전산처리하므로 품목별 분류번호의 정확한 기입은 본 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 ㉣ 사업체의 생산품이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단위에 의하여 기입하고 품목에 대한 설명을 구체

적(원재료명, 용도 등)으로 기재한다.

(4) 제품명

㉠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사업체의 사용 명칭을 사용하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분류번호는 사업체 담당자(또는 생산부서 직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품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필요이상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① ...제품, ...용품, ...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② 제품의 부품을 규격별로 필요이상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 제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는 가급적 그 용도 등을 병기한다.

<예시>

자동차 차체 → 자동차차체(장난감용)

㉣ 제품명은 정식명칭을 기입하고 외국어나 특수품명 등 품목분류가 애매한 것은 품목설명을 명기한다.

<예시>

{	슬라브 (slab) (보통강)	{	사카린 (식용)
	슬라브 (slab) (고탄소강)		사카린 (공업용)
{	기계부품 (식료품 가공기계)	{	FeMn (망간철)
	기계부품 (섬유용 기계)		FeSi (규소철)

㉤ 타사 출하분과 내부거래분은 구분 기입하고 내부거래분은 제품명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그 내용을 부기한다.

①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 → (타공장 이송)

② 고정자산으로 대체 → (자산대체)

③ 건설부문 등 타산업 활동부문에 자가사용 → (타산업 대체)

④ 비 광공업체로부터 수탁생산하여 위탁사업체에 인도 → (타산업수탁)

㉥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품출하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입하고 행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 제품분류시 기타 품목으로의 분류가 불가피한 경우는 총 출하액의 5%

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는 출하규모를 감안 더욱 세분하여야 한다.

(5) 수량단위

- ㉠ 수량단위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단위와 서로 달라 지정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단위 환산표」에 의하여 그대로 환산하고, 단위환산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관리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정확한 환산이 되도록 한다.
- ㉡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 및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 ㉢ 산업 및 품목분류표상 수량단위가 「※」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란에는 「※」로, “수량”란에는 수량과 사업체 사용단위를 병기한다. (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 ㉣ 특히 유의할 것은 단위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로 정정하고 수량은 환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예 시〉

- ① 1분병이 190 ml인 콜라 219,000 상자(C / S : 24 분)를 지정단위(kl)로 환산하면,

$$190(ml) \times 24(분) \times 219,000(상자) = 998,640,000(ml)$$

$$\text{그런데 } 1kl = 1,000\ell = 1,000,000ml$$

$$\text{따라서 } 998,640,000(ml) \div 1,000,000(ml) = 999(kl)$$

- ② 연탄(22공탄) 5,560,000장을 지정단위(M / T)로 환산하면, 22공탄 278장 = 1 M / T (25공탄 208장, 31공탄 133장 = 1M / T)

$$\text{따라서 } 5,560,000(장) \div 278(장) = 20,000(M / T)$$

- ③ 합성섬유직물(폭 36인치) 500,000yd(야아드)를 지정단위(천㎡)로 환산하면,

$$m^2 = yd(길이) \times inch(폭) \times 0.0254(m) \times 0.9114(m)$$

$$= 500,000 \times 36 \times 0.0254 \times 0.9114 = 418,050(m^2) \rightarrow 418(천m^2)$$

$$\left\{ \begin{array}{l} 36\text{인치 } 1yd = 0.8361m^2 \\ 44\text{인치 } 1yd = 1.0219m^2 \end{array} \right.$$

<참고> 주요단위 설명

- M / T (메트릭톤) = 1,000 kg    ○ 1 L / B (파운드) ≒ 0.454 kg
- 족(足) = 켄레                    ○ C / S = 상자    ○ 착(着) = 벌

(1)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 (수출액 포함)								
수	량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가)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의 합계액은 13항 ①의 제품출하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나)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은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합한 금액이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2) 품목별 제품의 수출액								
수	량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가) 자기명의 수출, 위탁수출 및 비광공업부문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제품의 수출을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금액은 “원” 화로 기입하여야 한다.  
(외화 금액표시의 경우는 수출 당시의 외화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나) 국내의 제조업체 (수출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 반제품 및 부품을 공급했을 경우 수출액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참고>

- (가) 자기명의 수출  
수출입업 허가업체가 외국상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내) 위탁수출

자기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허가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타업체(수출입업 허가업체 : 수출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출한 경우의 수출면장(또는 내국신용장) 금액을 말한다.

(대) 내국신용장 수출

자사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타 수출업체(비광공업체에 한함)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제 2, 3 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의 공급액을 기입한다.

(태) 기타 약정에 의한 수출

-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임가공 및 기타 약정에 의거 비광공업체에 공급한 수출용 제품의 공급액을 기입한다.(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② 계약서상 수출용품이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자사제품이 수출품임을 공급자가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 ①항에 준하여 수출용품으로 간주한다.

(3) 품목별 제품의 연초재고액							
수	량	천	억	백	억	십	억

(개) 연초재고액의 합계는 16 항 (1)의 ① 완제품의 연초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내) 제품수불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4) 품목별 제품의 연말 재고액							
수	량	천	억	백	억	십	억

(개) 연말재고액의 합계는 16 항 (2)의 ①완제품의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내 제 품 수 불 명 세 상 의 금 액 을 기 입 한 다.

(5) 단위당 출하가격(원)	
최 저 단 가	최 고 단 가

개 금 액 을 수 량 으 로 나 누 ( 평 균 출 하 가 격 ) 은 단 위 당 출 하 가 격 의 최 저 단 가 와 최 고 단 가 범 위 내 의 가 격 이 어 야 한 다.

내 수 량 과 금 액 의 관 계 와 단 위 당 출 하 가 격 이 어 느 정 도 타 당 하 더 라 도 지 정 된 수 량 단 위 를 사 용 하 지 않 았 을 경 우, 품 목 별 전 체 물 량 을 집 계 분 석 하 는 데 큰 착 오 가 발 생 되 니 단 위 당 출 하 가 격 은 반 드 시 지 정 단 위 에 대 한 가 격 이 어 야 한 다.

18. 수탁제조(임가공)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제 품 명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원
01									
02									
03									

- (1) 본 항목은 「 13 항 ③의 수탁제조(임가공)수입액 」을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 (2) 품목분류는 별책 「 산업 및 품목분류표 」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반드시 8.단위 숫자로 기입한다.
- (3) 동일 품목이라도 제품을 매출하는 경우와 임가공 생산하는 경우의 「 산업 및 품목분류 」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예 시 >

{	쌀(제품출하) . 31161111	{	서적(출판) . 34213111
	쌀(임가공도정) 31192100		서적(임가공인쇄) 34221100

19 . 건설가계정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백만원					
① 연 간 증 가 액						
② 연 간 감 소 액						
③ 연 말 잔 액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기계 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① 연간증가액

1987.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제 경비 등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1년간 합계액을 기입한다.

② 연간감소액

1987.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③ 연말잔액

1987.12.31 현재 건설중인 공사에 대한 원가 또는 비용의 누계액으로서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 연간 감소액은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액」과 「중고취득액(토지제외)」합계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 건설가계정(시설가계정, 미착기계계정 등 포함)이 설정된 사업체만 조사한다.

20 . 유형고정자산										
	(01) 연간 신규취득액		(02) 연간 중고취득액		(03)연간처 분및손해액		(04) 연간 감가상각액		(05) 연 말 총액 (미상각잔액)	
	천백십 억	천백 억 만 원	천백십 억	천백 억 만 원						
①토 지	x	x	x					x	x	x
②건물및구축물										
③기계장치, 공 구,기구, 비품										
④차량, 선박및 운 반 구										
합 계										

- (1)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선박 및 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이상의 내구성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 (2) 기존 고정자산의 경제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증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자본적 지출),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나 수선은 제외한다.(수익적 지출)

①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 사택대지,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립(埋立)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다.

②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조선대(造船臺), 송유관 등을 말한다.

③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와 반사로, 가열로, 용광로

와 공구·기구·비품 등을 포함한다.

④ 차량·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철도궤도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傳馬船),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 운반구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01) 연간 신규 취득액

연간 신규 취득액이라 함은 1987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신규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02) 연간 중고 취득액

신규 취득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하며 토지의 취득은 중고 취득으로 간주한다. 외국으로부터 중고품취득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한다.

(토지에서는 정지, 매립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도 포함)

(03) 연간 처분 및 손해액

1987년 1년간에 매각, 양도(讓渡), 재해, 도난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가격의 감소는 제외된다.

(04) 연간 감가 상각액

반드시 1987년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 기입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액누계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累計額)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05) 연말총액

1987.12.31 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 잔액을 말한다.

<유의사항>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 임차 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해 준 것은 포함한다.

㉢ 87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의 중고 또는 신규취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만, 임차사용하는 경우는 적요란에 임차상황을 기입한다.

㉣ 유형고정자산의 (01)연간 신규 취득액과 (02)연간 중고 취득액(토지 취득은 제외)의 합계액은 19항 건설가계정의 (2)연간감소액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해 (01) + (02) - (03) - (04) ≤ (05)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해 유형고정자산의 연초총액은 조사하지 않는다.

21. 동일기업내 타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일련 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타공장(사업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			
02	.....			
03	.....			

동일기업내에 산하공장(사업체)이 2개이상 있을 경우에 각각의 공장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되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 사업체 고유번호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 명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만 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둔다.

<예시>

“금강산업주식회사”의 산하공장이 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있고 각 공장에서 본 항목을 기입할 경우의 예시를 보면

(1) 서울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일련 번호	사 업 체 고유번호	타 공 장 (사업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2202455	대 구 공 장	대구 북구 침산1동 69	763-4953
02	3404282	대 전 공 장	충남대전 중구 도마동 35	45-5133
03	2301241	광 주 공 장	광주 동구 지원동 26-3	23-7635

(2) 대구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일련 번호	사 업 체 고유번호	타 공 장 (사업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1113245	서 울 공 장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3	696-2209
02	3404282	대 전 공 장	충남 대전 중구 도마동 35	45-5133
03	2301241	대 구 공 장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1동 69	763-4953

(3) 대전, 광주공장에서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1) 본 조사표에 합산여부		(2) 공 장 별 종업 원 수 (명)	(3) 공 장 별 출하액 (백만원)
① 합 산	② 제 외		

(1) 본 조사표에 합산여부

당해 공장분만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② 제외란에 각각 “○” 표시하고 구분작성이 불가능하여 타공장을 합산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①합산란에 각각 “○” 표시한다.

(2) 공장별 종업원수

공장(사업체)별로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업원수를 기입한다.

(3) 공장별 출하액

공장(사업체)별로 출하액을 기입한다.

적요 : 적자요인, 품목분류의 문제점, 위탁사업체명, 합산작성 내용등의 참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본란은 조사표상의 조사내용이 일반적인 조사원칙이나 사업체의 결산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차후 조사표 내검 및 전년도와의 수준대비 등의 자료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용도, 원재료, 성질 등의 사항

(2) 품목의 수량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에 환산방법

(3) 조사자료가 전년도와 수준증감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요인

- (4) 적자일 경우 그 요인
- (5) 수탁생산의 경우 위탁사업체명
- (6) 유형고정자산의 임차상황, 부지 및 건물면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
- (7) 외국어나 전문용어로 기입한 제품의 설명(원재료, 용도, 성질, 생산공정 등)
- (8) 사업체 경영에 있어 전년도와의 큰 변화사항(시설확장, 생산증대 및 감축, 종업원의 실태 등)
- (9) 타공장분을 합산 작성한 경우 각 공장별 생산제품명 및 담당공정
- (10) 기타 그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나. 조사표〔Ⅱ〕의 작성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 ㉠ 본사조사표(Ⅱ)는 본사가 산하 공장과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타지역에 1개이상의 관할 사업체(공장)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 ㉡ 조사내용은 본사(본점)분에 한해서 작성하며, 산하공장분을 포함 합산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이 없는 사업체라도 조사표〔Ⅰ〕에 의하여 조사해야 한다.

(2) 항목별 작성요령

※ 조사표(Ⅰ)과 공통항목은 조사표(Ⅰ)의 작성요령에 준한다.

**13. 사업체(공장별)의 조사표 작성가능 여부**

(해당란에 ○표)

①	공장에서만 가능	
②	본사에서만 가능	
③	모두 가능	

본 항목은 조사표〔Ⅰ〕 즉 공장(사업체)용 조사표의 작성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어느 한곳에서만 “○” 표 한다.

14. 동일그룹 (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일련 번호	★★기업체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경제활동 (업종)	비고
01						
02						
03						

- (1) 동일그룹(기업군)에 속한 계열기업을 모두 기입한다.(주력기업은 비고란에 표시)
- (2) 개별사업체(공장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기업체에 관한 사항임에 유의한다.
- (3) 계열기업체 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4) 주된 경제활동은 주요업종을 기입한다.(예, 건설업, 무역업, 의류제조업등)
- (5) 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표의 뒷면에 이어서 기입한다.

15. 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일련 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 제품명
01					
02					
03					

(1) 종업원수(명)	(2) 제품출하액 (백만원)	(3) 상품매출액 (백만원)	(4)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백만원)	비고

- (1)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공장에 대한 사항을 기입한다.
- (2)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 명부에 있는 것만 그대로 이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둔다.
- (3) 제품·상품매출액은 구분하여 기입한다.
- (4)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은 각 공장별 유형고정자산의 1987.12.31 현재의 장부상 미상각 잔액을 기입한다.

##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 1. 일반적인 사항

- (1) 사업체 별로 정확하게 조사표〔Ⅰ·Ⅱ〕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 (2) 연관항목의 계수가 일치하는지, 적자경영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 (3) 조사표상의 행정구역 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와 일치시킨다.
- (4) 누락 및 타 시·도로부터의 전입사업체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누락 및 전입사업체 명부를 별도로 작성,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에 통보, 신규번호를 부여받아 기입한다.
- (5) 조사표는 동·읍·면별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순으로 철하되 본사용 조사표(Ⅱ) 및 별첨 조사표(합산조사된 사업체의 조사표 사본)는 뒷부분에 간지를 넣어 구분 합철한다.

### 2. 연관항목별 심사요령 (조사표〔Ⅰ〕기준)

#### 가. 조사표〔Ⅰ〕

- (1) 4항 창설년이 '87년이면 16항 (1)연초 재고액은 있을 수 없으며 20항 유형고정자산 (1)신규나 (2)중고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단, 임차 사용중일 경우에는 없을 수 있음)
- (2) 6항 경영조직이 ①회사법인일 경우에는 7항의 자본금(또는 출자금)이 있어야 하고, 11항 ①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③개인일 경우에는 위 자본금이 없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②기타 법인은 자본금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모두 없어야 한다.
- (3) 12항 연간급여액은 11항 종업원수란의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와 대비하여 급여액 수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①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연간급여액 / 합계 ÷ 월평균 종업원수 ÷ 조업월수  
② 월평균 급여액 수준은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수준이 타당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 (4) 14항 연간 주요 생산비중 ①재료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13항, 17항의

제품출하액이 있어야 하고, ⑤위탁 생산비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생산품도 제품출하로 간주하여야 한다.

- (5) 19 항 건설가계정의 ②연간 감소액은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01) 신규와 (02) 중고(토지취득액은 제외) 취득액과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
- (6) 8 항 부지 및 건물면적에서 ①부지가 있고 ②건물 밀면적과 ③건물연면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7) 13 항 ①제품출하액이 있을 때는 17 항의 품목별 내역이 있어야 하며, ③수탁제조 수입액이 있으면 18 항 수탁제조(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이 있어야 한다.
- (8) 17 항 (1) 품목별 제품 총출하액의 합계는 13 항 ① 제품출하액과, 17 항(3) (4) 품목별 제품 연초·연말 재고액의 합계는 16 항 (1) 연초재고액 및 (2) 연말 재고액의 ① 완제품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 (9) 17 항의 (3) 품목별 제품의 연초재고액은 (1)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과 (4) 품목별 제품의 연말재고액의 합계보다 많아서 안된다.
- (10) 15 항 부가가치세액은 13 항 합계액의 1~8% 이내가 타당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免稅)업종(연탄, 소금, 전매품, 신문), 0세율(零稅率)을 적용받은 수출업체인가를 확인한다.
- (11) 17 항의 품목별 내역에서 각 품목의 단위당 평균 출하액은 (5) 단위당 출하가격 범위내의 가격이어야 한다. 특히 수량 단위가 지정단위와 달라 정정할 때에는 단위만 정정하지 말고 반드시 수량도 지정단위에 맞게 환산하여야 한다.
- (12) 17 항 (2) 품목별 제품의 수출액은 (1) 품목별 제품총출하액과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
- (13) 17 항의 품목분류가 「~제품」 「~류」 「기타품목」 등 너무 포괄적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
- (14) 수입부문인 13 항 합계와 16 항 완·반제품의 재고증감액(16 항 재고액 증(2)의 ①+②의 금액에서 (1)의 ①+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비용부문인 14 항 연간주요생산비 합계와 12 항 연간급여액의 합계 및 20 항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의 합계를 합한 금액보다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착오요인이 없는지 확인 보완한다.

(가) 수입부문 (출하액)

- ① 매출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매출원가로 기입한 경우
- ②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③ 직매점이나 보관용 창고로 이송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④ 고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⑤ 건설업등 타산업 활동부문으로 대체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⑥ 일부 제품출하분을 누락시킨 경우

(나) 비용부문 (생산비)

- ① 실제생산에 투입된 사용액이 아니고 구입액을 기입한 경우 ( 미사용 원재료 포함)
- ② 다단계 생산공정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의 중간 원가계산 재료비가 중복 산입된 경우 (제조원가 보고서상 원재료 타계정 대체액)
- ③ 관세환급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④ 조사표에 명시된 6개항목 이외의 비용 (영업외 비용등) 을 포함한 경우

나. 조사표 [Ⅱ]

- (1) 조사표 [Ⅱ] 에 의한 조사가 타당한 사업체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2) 조사표 [Ⅰ] 의 심사요령에 준한다.

2) 유고 부호 및 종류

부호	02	03	04	06	08	09	10	11	12	14
내용	전출	휴업	기준 미달	소재 불명	폐업	대상의	조사 불능	합산	명부상 중복	기타

- ① 기준미달 : “'87년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및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 모두 4인 이하인 사업체
- ② 대 상 의 : 광업, 제조업 사업체가 아닌 타산업(건설업·운수업 등)인 경우
- ③ 합 산 : (동일기업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존재할 경우) 장부 미비치 등으로 부득이 동일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포함 조사되는 경우로서 합산한 조사표의 사본을 반드시 회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휴업과 폐업의 구분 : 생산설비의 완전 철거 등으로 재가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만 폐업으로 정리, 가동은 하지 않으나 생산설비가 남아 있다면 휴업으로 처리해야 함.
- ⑤ 명부상 중복 : 사실상의 1개 사업체가 명부에 2개 이상으로 기입된 경우.

- 3) 전출사업체의 처리(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동일 요령으로 처리)  
 동·읍·면, 구·시·군, 시·도는 관내의 전출 사업체를 파악하여 해당 동·읍·면(동일구·시·군내의), 구·시·군(동일시·도내의), 시·도로 통보하고 차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구·시·군, 시·도는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이전 사업체가 빠짐없이 조사되도록 조치하고 조사표류 접수시 조사여부 및 고유번호 이기 상태등을 확인한다.

라. 추가(전입, 누락 및 신규) 사업체 등재

추가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용 사업체 명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도 작성하여 상급기관에서 고유번호 확인 기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추가사업체란 ① 전입사업체는 '87년 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로서

타 행정구역에서 전입되어 온 경우이며, ② 누락사업체는 역시 '87년 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로서 명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이고, ③ 신규사업체는 '88년도에 신규창설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체는 빠짐없이 발굴하여 명부 하단 여백이나 간지를 첨부하여 양식에 따라 등재한다.

특히, 전입사업체의 경우 비고란에 전입전 소재지를 필히 기입하고 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전입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전입과 누락사업체는 조사표작성을 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체는 사업체명부에만 등재한다.

2) 사업체 고유번호

전입사업체의 경우는 통보된 자료에 의하고 누락 및 신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해당 경제기획원 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시·도에서 기입한다

3) 일련번호

명부에 이미 부여된 일련번호 맨끝 번호에 이어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전입사업체의 유고발행

일단 전입으로 추가 기입한 후 유고 처리한다. 부호는 최종 유고 번호를 기입하고 사유를 명기한다.

5) 변동 부호

전입의 경우 '01', 신규의 경우 '05', 누락의 경우 '13' 을 명부의 유고 부호란에 맞도록 기입한다.

마. 행정구역 개편 및 착오에 의한 타 동·읍·면 소재 사업체 처리

행정구역 개편(시 승격지역, 분동지역)으로 인하여 명부상 실제 행정구역이 다른 사업체가 혼재한 경우에는 구·시·군에서 개편된 행정구역별로 조정 배부하고, 그외 착오 등으로 다른 동·읍·면 소재 사업체가 등재된 경우는 전출로 처리하되 명부를 발취 기입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바. 정리 및 보완요령

- 1) 타 사업체에 착오 기입하거나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 변동사항의 정정은 변경된 부분만 횡선으로 긋고 상단여백에 정정한다.
- 3) 전입·누락, 신규등의 사업체 추가는 흑색(청색)을 사용한다.
- 4) 유고사업체는 적색으로 유고년월과 유고부호, 비고란만 정리한다.

[참 고]

명부항목 중 “조직”과 “구분”은 다음 사항을 표시한 것임.

(경영)조직	1. 회사법인	(사업체)구분	1. 본사(공장과 분리된)
	2. 기타법인		2. 본사·공장(통합)
	3. 개인		3. 공장(본사와 분리된)
			4. 단독업체

3.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작성

가. 전입(01)과 전출(02), 신규(05), 누락(13)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읍·면에서 작성.

나. 사업체 고유번호

1) 전입사업체

동일 구·시·군내에서 동·읍·면간에 전출입한 경우 동·읍·면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에서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경우는 시·도에서 이전 전 소재지의 사업체 명부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하여야 한다.

2) 누락 및 신규사업체

새로 발견된 누락 및 신규업체는 시·도에서 일괄 기입한다. 이때, 시·도에서는 본 추가사업체 명부를 취합하여 해당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다. 생산품명

조사표상의 「제품명」란의 주요생산품명을 제품출하가 없는 수탁생산(임가공) 업체는 임가공품목을 각각 1~2개 기입

라. 구 분

전입, 전출, 누락, 신규의 해당란에 “○” 표 한다.

마. 비 고

전입(전출) 사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전(전출후) 소재지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 가. 작성기관

구·시·군, 시·도

##### 나. 기입요령

###### 1) 행정구역명

구·시·군 작성시는 동·읍·면명을, 시·도 작성시는 구·시·군명을 기입한다.

###### 2) 조사표수

가) 조사대상 사업체 중 유고사업체를 제외한 실제로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체의 조사표수를 [ I ] [ II ]로 구분 기입한다.

나) 1개 사업체에서 조사표 [ I ]과 [ II ]가 동시에 작성된(본사 조사표 일부만 작성) 경우에는 조사표 [ II ]는 별첨 조사표로 기입

###### 3) 조사대상 사업체수

명부상 대상 사업체와 누락, 전입 등 추가사업체수를 합한 수이며 동·읍·면별 사업체 명부표지상의 대상 사업체 수의 합과 같다.

###### 4) 유고 사업체수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 중 유고 사업체로서 유고 유형별로 구분 기입한다.

###### 5) 별첨 조사표수

타 사업체에 합산된 사업체의 경우 합산한 조사표(조사표 [ I ]의) 사본이나, 1개 공장에서 조사표 [ I ]과 [ II ]를 동시에 작성(조사표 [ II ]는 불완전 조사표)한 경우의 조사표 [ II ]와 기타 조사된 조사표로 계산할 수 없는 조사표수를 기입한다.

#### 5. 합산조사 사업체명부 작성

##### 가. 작성기관

동·읍·면

##### 나. 편 찰

구·시·군에서는 동·읍·면 분류 부호순, 시·도에서는 구·시·군부호순으로 편찰

다. 기입요령

합산 조사한 사업체 관할 동·읍·면 뿐만 아니라 합산 조사된 사업체 관할 동·읍·면에서도 각각 작성한다.

- (1) 행정구역 분류번호, 명부상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 명부에서 이기하고 관외의 사업체에 관하여는 알 수 있는 항목만 기입한다.
- (2) 조사표 작성여부  
관내의 사업체가 타사업체를 합산하여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만 “○” 표시한다.
- (3) 소재지  
합산한 사업체는 물론 합산된 사업체의 소재지도 조사 기입한다.
- (4) 조치내용
  - ㉠ 합산조사 사업체 명부작성의 목적은 조사표 작성시 다공장 소유기업의 산하 공장분의 중복작성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시·군, 시·도에서는 관내의 합산조사 사업체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합산 조사된 조사표의 처리
    - ① 장부조직상 사업체별 구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하액의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체 소재지역에서 조사된 것으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유고(합산된 사업체)로 처리한다.(유고처리한 사업체 관할 동·읍·면에서는 합산작성된 조사표 사본을 회수하여 별첨조사표로 첨부)
    - ② 공장별 구분 작성이 가능하면 각 공장별로 분리 작성한다.  
(예) A 공장 : B 공장분 합산 작성, B 공장 : B 공장분만 작성했을 경우, (A 공장-B 공장)하여 A 공장분만 작성한다.

## Ⅵ. 조사요령 요약 (〔I〕표기준)

### 1.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 (1) 조사는 조기에 착수하여 기간내에 완료한다.
- (2) 본 조사는 조사항목이 복잡하므로 대규모 사업체는 자계식(사업체에서 직접 작성), 소규모 사업체에는 타계식(조사원의 면접조사 작성)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 (3) 조사 순서는 본사등 타 지역에서만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난 다음, 자계식으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조사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면접조사 가능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기 배부 사업체의 조사표를 회수한다.
- (4) 특히 「17항 연간 출하제품의 품목구분」에 관하여는 조사표 배부시에 사업체 담당자와 사업체 명부상의 전년조사 품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현행 산업 및 품목분류 기준에 적합하게 구분, 기입하도록 한다.
- (5) 본 조사표 작성 담당부서는 사업체의 경리, 또는 기획부서이며, 부록1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를 참조한다.
- (6) 본 조사의 1차 우선순위는 품목별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등이다.
- (7) 본 조사는 조사단위를 개개 사업체(공장 또는 광산)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에서 산하 사업체분을 작성할 때는 각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 (8) 품목분류번호 및 수량단위는 반드시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9)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 누락된 사업체도 발굴, 조사하여야 한다.
- (10) 조사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전의 기입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한다.(칼로 긁거나 수정액 사용 불가)

### 2.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 (1) 본 조사항목의 개념과 사업체의 사용개념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조사개념에 의하여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행정구역 분류번호,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는 사업체명부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 (3) 금액단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므로 「자리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단위미만은 4사5입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 기입한다.
- (4) 각 항목별 연관계수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 (5)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을 기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 3.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 (1)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모든 품목의 분류번호는 8단위로 기입한다.
- (2) 단위가 「※」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란에는 「※」로, “수량”란에는 수량과 사업체 사용단위를 기입한다. (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 (3) 수량은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조사하고 규격 또는 품위의 차이가 큰 품목은 가급적 분리하여 기입하며 그 규격 또는 품위를 명시한다.
- (4) 분류의 일반원칙은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과정에 따라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유의한다.
- (5) 품목분류번호를 찾기 어려울 때는 품목명칭을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부록인 「색인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6)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번호는 사업체명부의 분류번호를 참고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책자에 의해 분류 기입한다.

### 4. 조사표 검토요령

- (1) 조사 누락된 사업체가 없는지 검토한다.
- (2)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조사표〔Ⅰ〕 또는 〔Ⅱ〕를 바르게 선택하여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조사표 배부방법 참조)
- (3) 조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한다.
- (4) 각 항목의 연관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5)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과 부록 2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 부록 1 >

사업체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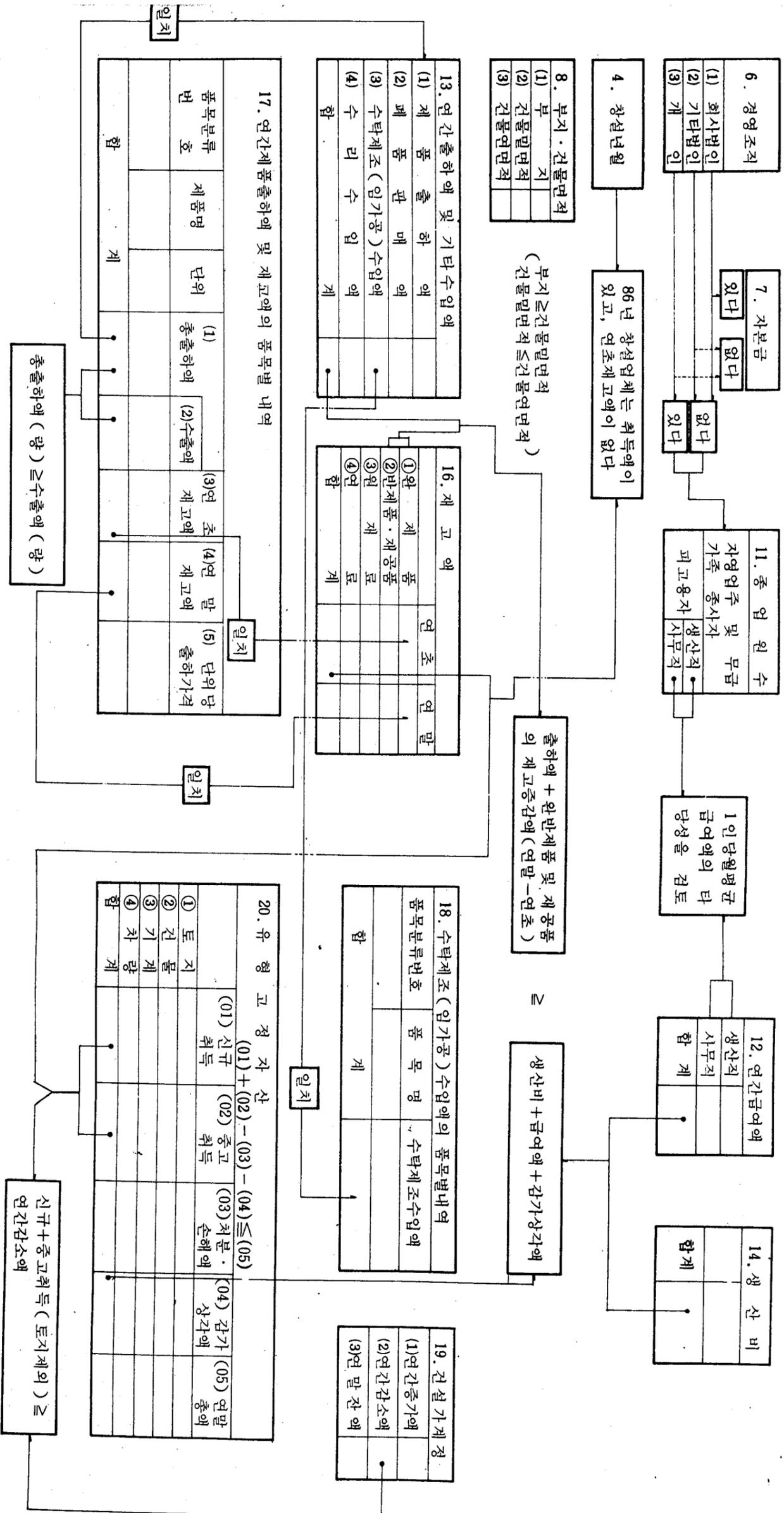
사업체 결산서 항목	조사항목
<b>I. 대차대조표</b>	
1. 유동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좌자산</li> <li>— 재고자산 .....</li> <li>— 기타유동자산</li> </ul>	16 항 연초·연말 재고액
2.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고정자산 .....</li> <li>— 무형고정자산</li> </ul>	20 항 유형고정자산
3. 이연자산	
4.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li> <li>— 잉여금</li> </ul>	7 항 자본금
5.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부채</li> <li>— 유동부채</li> </ul>	
<b>II. 손익계산서</b>	
1. 매출액 (매출원가+매출이익) .....	13 항 출하액
※ 매출원가=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고액-기말재고액	※ 재고액=완제품재고액+반제품· 재공품재고액
① 제품매출액 .....	13 항 ① 제품출하액
② 상품매출액 .....	13 항 ⑤ 상품매출액
③ 폐품판매액 .....	13 항 ② 폐품판매액
④ 수탁제조 (임가공) 수입액 .....	13 항 ③ 수탁제조 수입액
⑤ 수리수입액 .....	13 항 ④ 수리수입액
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보수·급료·임금·수당·상여금...	12 항 급여액 (사무직)
② 감가상각비 .....	20 항 유형고정자산(04)감가상각액
③ 용수비·전력비·연료비·외주	

사업체 결산서 항목	조사 항목
가공비·수선비 .....	14 항 생산비
④ 기타비용	
3. 영업이익 = 매출이익 -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4. 영업외수익	
① 수입임대료 .....	13 항 출하액 ⑦ 임대수입액
② 기타 영업외수익	
5. 영업외비용	
6. 경상이익 = 3 + 4 - 5	
7. 특별이익	
8. 특별손실	
9.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 = 6 + 7 - 8	
10. 당기순이익 = 9 - 법인세 · 사업소세 · 주민세 · 방위세 등	
Ⅲ. 제조원가보고서	
1. 재료비 (원재료, 부재료, 보조재료비)	14 항 생산비
2. 노무비 (급료 · 임금 · 수당 · 상여금)	12 항 급여액 (생산직)
3.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4. 제조비용	
① 전력비 .....	14 항 생산비 ③ 전력비
② 수도료 .....	" ④ 용수비
③ 광열비, 연료비 .....	" ② 연료비
④ 감가상각비 .....	20 항 유형고정자산 (04) 감가상각액
⑤ 외주가공비 .....	14 항 생산비 ⑤ 위탁생산비
⑥ 수선비 .....	14 항 생산비 ⑥ 수리유지비
⑦ 기타 제조비용 .....	
5. 당기총제조비용 = 1 + 2 + 3 + 4	
6. 타계정 대체액	
7. 당기제품 제조원가 = 5 - 6 + 기초재 공품재고액 - 기말재공품재고액	

사업체결산서항목	조사항목
IV. 부속명세서	
1. 임금대장·근무상황표 .....	11 항 종업원수
2. 상품매출명세서 .....	13 항 ⑥ 상품매출원가
3. 재고자산명세서 .....	16 항 재고액
4. 제품매출명세서 .....	17 항 연간제품의 품목별 출하액 (량)
5. 제품수불명세서 .....	17 항 품목별 재고액 (량)
6. 고정자산명세서 .....	20 항 유형고정자산
	19 항 건설가계정
7. 감가상각 총당금 명세서 .....	20 항 유형고정자산 (04) 감가 상각액

# 조사표 I 실시요령도

<부록 2>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

# 자료처리요령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차 례

I. 자료처리 개요 .....	3
1. 목 적 .....	3
2. 기본방향 .....	3
3. 처리과정 및 일정표 .....	4
II. 과별 처리요령 .....	5
1. 산업통계과 .....	5
가. 조사표류 접수 .....	5
나. 합산사업체명부 조치 .....	6
다. 요계표 검토 .....	7
라. 조사표류 인계 .....	7
2. 자료처리과 .....	7
가. 사업체명부 정리 및 조사표 정리보완 .....	7
나. 요계표 집계 .....	9
(1) 내용검토 .....	9
(2) 천공 및 검공 .....	9
(3) 전산내검 .....	10
(4) 수준점검표 및 결과표 제표 .....	11
다. 조사표 집계 (조사표 I 기준) .....	11
(1) 내용검토 .....	11
(2) 편 철 .....	11

(3) 부호기입 .....	12
(4) 천공 및 검공 .....	12
(5) 전산내검 .....	12
(6) 수준점검표 제표 .....	29
(7) 결과표 제표 .....	29
라. 자료처리 및 내용심사용 부대자료 준비 .....	33

Ⅲ. 결과표 양식(별책)

부호일람표 .....	35
-------------	----

## I. 자료처리 개요

### 1. 목 적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완료한 1987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조사표 및 관련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집계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용하고자 한다.

### 2. 기본방향

- 가. 본 업무에 관여하는 실무담당자(기획 및 분석, 조사관리, 프로그램, 천공 및 심사부문 등)는 본인이 수행할 업무내용 및 각 부문에서 수행되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므로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다.
- 나. 자료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므로서 연내 자료처리를 완료하여 조기집계 공표한다.
- 다. 품목별 조사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자료의 정도를 제고한다.
- 라. 각 과정별 자료처리일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처리과정 및 일정표

	조 사 표	요 계 표
조 사 표 류 접 수	6.20 ~ 7.2	6.20 ~ 7.2
내 용 심 사 · 정 리 및 조 사 표 편 철	6.20 ~ 7.9	-
부 호 기 입	7.11 ~ 7.23	-
천 공 및 검 공	7.25 ~ 9.24	7.11 ~ 7.16
전 산 내 검	7.25 ~ 9.30	7.11 ~ 7.23
수 준 점 검 표 제 표	10.4 ~ 10.8	7.25 ~ 7.30
수 준 점 검	10.10 ~ 12.31	8.1 ~ 9.10
결 과 표 제 표	1.4 ~ 1.21	-
결 과 분 석	1.23 ~ 2.18	9.12 ~ 9.30
공 표 · 보 고 서 발 간	88.2.20 ~ 3.31	10.4 ~ 10.29

## Ⅱ. 과별 처리요령

### 1. 산업통계과

#### 가. 조사표류 접수

- (1) 각 시·도로부터 접수하는 조사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사표〔Ⅰ, Ⅱ〕
  - ② 사업체명부
  - ③ 요계표〔Ⅰ〕
  - ④ 조사표접수대장
  - ⑤ 합산사업체명부
  - ⑥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 ⑦ 내용심사 총괄표
- (2) 행정구역별로 조사표표지, 사업체명부, 조사표접수부, 요계표를 대조하여 사업체수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3) 조사표 표지에 기입된 조사표매수와 실제조사표 매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4) 사업체명부 표지의 조사현황란과 사업체명부 내용을 대조하여 유고사업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출사업체에 대하여는 전출지 행정구역을 확인하여 미조사되었으면 즉시 재조사 조치한다.
- (5) 추가(누락 및 전입) 사업체의 고유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사업체명부, 조사표, 요계표)
- (6) 유고사업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조사결과 요계표는 자료처리과에

즉시 인도하여 우선적으로 잠정집계하도록 조치한다.

나. 합산사업체명부 조치

동·읍·면에서 작성한 「합산조사 사업체명부」상, 「합산조사한 사업체(A)」의 조사표와 「합산조사된 사업체(B)」의 사업체명부를 각각 검토하여,

- (1) A조사표에 B가 합산되어 있고, B사업체소속 행정동(읍·면)에서 B사업체를 조사하지 않고 “합산”으로 유고처리하였으면, 합산사업체명부 B사업체조치 내용란에 “A에 합산”으로 기입한다.
- (2) A조사표에 B가 합산되어 있고, B사업체소속 행정동(읍·면)에서 B사업체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면,
  - ① B사업체 조사표에 B사업체만 조사되었으면 A-B하여 A사업체만을 구분 작성하고, 요계표도 수정하며, 합산사업체명부 조치내용란에 “조사표분리”라고 기입함.
  - ② B사업체 조사표에 A사업체가 합산 조사되었으면(분리작성 불가능한 경우) 출하액 비중이 작은 사업체의 조사표를 삭제, 별첨 조사표로 처리하고 해당 행정동(읍·면)의 사업체명부, 요계표, 접수대장 등을 정리하고 합산사업체명부 조치내용란에 “A(또는 B)사업체에 합산”으로 처리한다.
- (3) A의 조사표에 B가 실제로 합산되어 있지않고 B조사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면 B를 즉시 재조사 조치하고 조사표를 접수하도록 하며, A의 조사표에는 21항의 「동일기업내 타공장명 및 소재

지」란의 (1) 본조사표에 합산여부란의 “제외”에 ○표한다.

- (4) A의 조사표에 B가 실제로 합산되어 있지않고 B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A조사표의 21항(1)의 “제외”에 ○표시하고 합산사업체 명부에서 삭제한다.

**다. 요계표 검토**

- (1) 조사표〔 I 〕의 매수와 요계표〔 I 〕에 기입된 사업체수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2) 별첨조사표는 요계표에 집계되어서는 안된다.

**라. 조사표류 인계**

- (1) 조사표〔 I 〕,〔 II 〕
- (2) 요계표〔 I 〕
- (3) 사업체명부를 자료처리과에 인계한다.

**2. 자료처리과**

**가.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 정리보완**

산업통계과로부터 인수한 조사표〔 I 〕,〔 II 〕, 별첨조사표를 사업체명부와 대조하여 사업체명부 또는 조사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 및 보완한다. 별첨조사표중 집계대상조사표를 선별하여 조사표에 포함하고 요

계표에도 추가 기입한다.

(1)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가 기준이므로 명부상의 고유번호와 조사표상의 고유번호가 다르면 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로 통일 수정한다. 단, 전입 및 누락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상과 추가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대조 확인후 적용한다.

(2) 기업체번호, 그룹번호

사업체명부에 번호가 있는 사업체에 한하여 조사표상의 번호를 명부와 일치시킨다.

(3) 기타항목

사업체 고유번호 이외의 각 항목은 조사표상의 사항과 일치되도록 사업체명부를 보완한다.(품목분류번호와 명칭은 제외)

(4) 유고사업체

- ① 유고사업체는 사업체명부의 유고사항란에 바르게 기입 (유고내용과 유고번호 일치)되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조사표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조사표가 있으면 유고사업체는 조사된 사업체이어야 하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② 전출사업체는 유고사유란의 전출지 주소를 추적하여 전입지에서 같은 고유번호로 조사가 되었는지 검토하고 고유번호가 다르면 최초의 명부상 고유번호로 정정하고 조사표, 요계표도 동시에 정정한다.

③ 유고번호

유고내용	전 출	휴 업	기준미달	소재불명	폐 업	대상의	조사불능	합 산	명부상 중 복	기 타
유고번호	02	03	04	06	08	09	10	11	12	14

확인된 실존사업체중 조사표를 작성 못한 사업체(합산제외)는 조사불능(10)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요계표 집계

(1) 내용검토

(가) 행정구역 분류부호,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가 조사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나) 요계표[ I ]에 조사표[ I ]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2) 천공 및 검공

(가) 동·읍·면에서 작성한 사업체별 요계표상의 모든 내용(행정구역 분류부호와 ①, ②, ④~⑭항)을 천공 및 검공한다.

(나) 다만 ①, ②, ③, ⑦항만이 적색볼펜으로 기입된 사업체(유고사업체)는 천공하지 아니한다.

(3) 전산내검

<기호별 전산내검 및 착오사항 처리요령>

기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AA	행정구역분류부호(6자리)는 행정구역 Master file 과 일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확인 일치수정한다. (사업체명부, 조사표와 대조확인)
BB	사업체 고유번호는 중복이나 누락이 없어야 한다.	''
DD	산업분류는 산업분류 Master file 과 일치하여야 한다.	조사표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EE	$0.3 \leq \frac{\text{생산비}}{\text{출하액}} \leq 0.7$ 이어야 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한다.
FF	$2 \leq \frac{\text{출하액}}{\text{종업원수}} \leq 50$ 이어야 한다.	''
GG	$0.5 \leq \frac{\text{유형고정자산}}{\text{종업원수}} \leq 10$ 이어야 한다.	''
WW	$120\text{만원} \leq \frac{\text{급여액}}{\text{종업원수}} \leq 1,200\text{만원}$ 이어야 한다.	''
HA	⑥연간급여액 + ⑨생산비 < ⑩출하액 + ⑫연말재고액(완·반제품) - ⑪연초재고액(완·반제품)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기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MM	종업원수 ≥ 5 이어야 한다.	반드시 확인 수정한다.
★	④, ⑦, ⑧, ⑨, ⑩, 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안된다.	〃

(4) 수준점검표 및 결과표 제표

- ① 수준점검표는 전산내검이 완료된 후 결과표 중의 「1. 수준점검표」중에서 (1), (2), (3), (4), (5), (13) 및 (14)표를 제표한다. 제표시마다 (3) 및 (14)표는 각 1부 (1), (2), (4), (5) 및 (13)표는 각 2부씩 제표한다.
- ② 결과표는 전산내검이 완료된 후 「1. 수준점검표」중에서 (1), (2), (3), (4), (5), (13) 및 (14)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을 제표한다.
- ③ 작성시 유의사항은 「(7) 결과표 제표시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다. 조사표 집계

(1) 내용검토

- ① 사업체 고유번호,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② 품목 분류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③ 기타항의 누락이 없는지 검토한다.

(2) 편 철

- ① 행정구역별로 조사표 I, II, 별첨조사표 (I 또는 II)를 분리한다.

- ② 조사표 I 은 시·도별 사업체 고유번호 순으로 사업체 고유번호 300 또는 400 번 단위(조사표 약 200매 기준)로 분철한다.
- ③ 조사표 II는 시·도단위로 사업체고유번호순으로 약 200매 기준으로 분철한다.
- ④ 별첨조사표는 시·도단위로 사업체고유번호순으로 합철한다.

(3) 부호기입

- ① 부호기입은 조사표 I의 ★★란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조사표 I ★★란에 수량단위 부호를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지정단위에 따라) 「부호 일람표(별첨)」에 의해 적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4) 천공 및 검공

- ① 조사표 I 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와 4~8, 11~21항을 천공 및 검공한다.(1~3, 9~10, 17항의 (5)는 천공하지 않음)
- ② 조사표 II는 1,2,13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별도 천공한다.

(5) 전산내검

(가) 전산내검은 제 1,2,3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사항을 중점 실시한다.

- ① 제 1 단계 (2회)
  - ㉠ 조사표 천공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 ㉡ 기호별 전산내검 요령의 모든 사항을 실시한다.
- ② 제 2 단계 (2회)
  - ㉠ 제 1 단계 전산내검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항목의 합계를 일치 삽입하고,

㉔ 사업체별 주산업분류는 제 17 항 및 제 18 항의 세세분류산업 ( 5 자리 ) 중 출하액이 가장 많은 산업분류를 프로그램으로 삼입한 후 기호별 전산내검 요령의 모든 항목을 전산내검 한다.

㉕ 제 2 단계 제 2 회 전산내검시는 ★표시 착오사항에 한해 실시 한다.

③ 제 3 단계 ( 2 회 )

㉖ 제 1, 2 단계 요령으로 반복 실시한다.

㉗ 수준 점검결과 사업체별 자료의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수준점검결과와 같은 요령으로 필수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의 착오가 없을 때까지 반복 실시한다.

㉘ 제 1, 2 단계 전산내검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일부 기호별 전산내검사항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전산내검 프로그램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전산내검표는 사업체 고유번호순으로 제표한다.

② 용어의 정의 및 산식은 「결과표 제표시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③ 조사표상의 부의수치 ( - )는 15 항 ①부가가치세와 내국 소비세액 합계에 한하여 있을 수 있다.

(다) 전산내검결과 심사시 유의사항

① 전산내검 결과 심사는 제 1 단계 제 1 차 심사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조사표 천공누락 또는 천공착오 사항을 중점 확인 수정한다.

- ② 기호별 착오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천공착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착오인 경우에는 조사표상의 연관사항을 검토하여 기호별 착오사항 처리요령에 따라 확인 수정한다.
- ③ 합계착오인 경우, 세항목(내역)의 천공착오여부를 확인하고 세항목의 천공착오가 아니면 합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 ④ 조사표상의 제 17항 및 제 18항의 품목별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므로 인하여 제 2단계 전산내검결과 ZA, ZB, ZC, ZE, ZF와 HA 착오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수정한다.
- ⑤ 조사착오사항을 수정할 시에는 조사표와 전산내검표에 동시에 수정한다.
- ⑥ 전산내검은 출하액이나 종업원수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점 심사한다.
- ⑦ 기호별 전산내검 사항중 ★표시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착오사항은 착오내용의 경중에 따라 그 타당성을 확인 수정하여야 한다.
- ⑧ 제 2단계 전산내검시에는 합계가 자동적으로 일치 삽입되므로 특히 내역의 수정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호별 전산내검 사항 및 처리요령

★ 표시의 착오사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기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AA ☆	4.16.20 항 4 항 창설년이 1987년이면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1) 신규 취득액의 합계 또는 (2) 중고취 득액의 합계가 있어야 하며 16 항 재고액의 (1) 연초재고액의 합계가 없어야 한다.	(1) 창설년도가 87년이 확실한가 를 우선 확인하여 착오인 것 은 착오년도를 일치 정정한 다. (2) 87년이 창설이 확실하면서 유형고정자산 취득이 없으면 확인 기입한다. (단, 임차사용이면 없음:적 요란 확인) (3) 87년 창설이면서 연초재고액 이 있으면 창설년을 확인 수 정한다. (경영조직 변경은 예 외)
AB ☆	6.7.11 항 6 항 경영조직이 (1) 회사법인이 면 7 항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1) 6 항의 경영조직과 1 항의 사 업체명, 2 항의 본사명을 확인

기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p>11 항 종업원수의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없어야 한다.</p>	<p>하여 착오인 것은 경영조직 부호를 정정한다.</p> <p>(2) 회사가 확실하면 7 항의 자본금과 11 항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검토하여</p> <p>㉞ 두항목이 모두 있으면 11 항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삭제하고 사무 및 기타 종업원수에 포함한다.</p> <p>㉟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 기입한다.</p>
<p>AC ☆</p>	<p>6.7.11 항 6 항 경영조직이 (3) 개인이면 7 항 자본금이 없어야 하며 11 항 종업원수의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p>	<p>(1) 1 항의 사업체명 2 항 본사명을 확인하여 6 항의 경영조직이 착오인 것은 경영조직 부호를 정정한다.</p> <p>(2) 개인이 확실하면 6 항의 자본금과 11 항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의 종사자를 검토하여</p>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㉔ 두항목이 모두 있으면 자본금을 삭제한다. ㉕ 두항목이 모두 없으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명을 기입하되 대표자명을 참조하여 남·여 해당란에 기입한 후 합계란을 수정한다.
A D ☆	6,7,11 항 6 항 경영조직이 (2) 기타 법인이면 7 항 자본금과 11 항의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모두 없어야 한다.	(1) 1 항과 2 항을 확인하여 경영조직이 착오인 것은 경영 조직부호를 수정한다. (2) 기타 법인이 확실하면 자본금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모두 삭제한다.
S A ☆	8 항 8 항의 (3) 건물연면적은 (2) 건물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1) 제조업에 한하며 광업은 해당 없다. (2) 확인 수정한다.
S B ☆	8 항의 (1) 부지면적은 (2) 건물 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3) 건물임차는 부지 또는 밀 면적이 없고 연면적만 있다.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단, 1 층을 포함하여 임차한 경우는 부지와 밀면적이 있어야 한다 )
S C	8 항 (1) 부지 (2) 건물밀면적 (3) 건물연면적의 각각의 수치는 10 ~ 300,000 ㎡이내 이어야 한다.	(4) 해태제조업, 멸치건조업인 경우는 부지건물이 없을 수 있다. (5) 벽돌, 블록제조인 경우는 건물면적이 없을 수 있다.
S D ☆	광업은 8 항의 (1) (2) (3)이 없어야 한다.	(6) 광업이면 삭제한다.
B B ☆	19,20 항 20 항 유형고정자산중 토지를 제외한 (1) 신규와 (2) 중고취득액의 합계는 19 항 건설가계정의 (2) 연간 감소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1) 소액 (천만원미만)의 건설가계정은 대부분 없다. (2) 취득액이 없고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액이 있을 때는 취득액으로 옮겨쓴다.
B C ☆	20 항의 (01) + (02) - (03) - (04) ≤ (05) 의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	(1) 확인 수정한다. (2) = 등식은 87년 창설업체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E A	11,12 항 11 항 종업원수와 12 항 급여액에서 생산종업원 1인당 월	(1) 생산종업원수는 있으나 생산종업원 급여액은 없고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p>평균 급여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p> <p>※ 1인당 월평균급여액 = (급여액 ÷ 월평균 종업원수) ÷ 조업월수</p>	<p>사무 및 기타 종업원은 없으나 사무 및 기타 종 업원 급여액이 기록된 경우 사무종업원 급여액을 삭제 하여 생산종업원 급여액에 이기한다.</p> <p>(2) 11항의 피고용자란 어느 곳에도 종업원수가 없으나 생산종업원 급여액이 있으 면 재조사 기록한다.</p> <p>(3) 11항의 피고용자란 ①②에 모두 종업원수가 있으나 12항의 생산종업원 급여액 이 없으면 재조사 기록 처 리한다.</p> <p>(4)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 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의 급여액이 바뀌어 기록되지 않았는지 검토한 다.</p>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EB	11,12 항 사무 및 기타 종업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EA에 준한다.
ET ☆	11 항 월평균 종업원수가 5인 미만 일 때	① 12월말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면 5인으로 수정한 다. ② 12월말 종업원수가 5인미 만이면 조사표를 삭제한다.
HA	12,13,14,16,20 항 13항합계 (①~④) + 16항(2)의 ② - 16항(1)의② ≥ 12항합계 + 14 항합계 + 20항(04)합계의 부등 식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경우는 OK 처리 한다. ㉠ 적요란에 합리적인 적자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비료제조업 (3515 ~ 3516) 과 같이 정부보조로 적 자를 보전하는 경우 ② 위 ㉠㉡ 이외의 경우에는 확인 처리한다.
HB	13,14 항 13항 ① 제품출하액이 있으 면 반드시 14항의 연간 주요	제품출하액이 있으면서 재료비 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한다.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생산비 ① 재료가 있어야 한다.	(1) 광업체(석회석, 모래채취등)는 없을 수 있다. (2) 얼음공장도 없을 수 있다. (3) 기타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HF	13,16,17,18 항 13 항 ①의 제품출하액이 없고 13 항 ③의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이 기록된 경우는 수탁 제조업이므로 16 항 제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①완제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 17 항의 품목별 제품 출하액, 수출액 및 재고액이 모두 없어야 한다. 그리고, 18 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13 항 ③의 수탁제조 수입액을 ① 제품출하액으로 이기하거나 또는 16 항 ①완제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과 17 항을 모두 삭제하고, 17 항의 내용을 18 항에 이기한다.
PT	13 항 13 항 ⑤상품 매출액은 13 항 ⑥상품매출 원가액보다 커야 한다.	⑤와 ⑥이 서로 바뀌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PU ☆	13 항 13 항 ⑤+ 13 항 ⑦ < 13 항 ①의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PW	13 항, 20 항 13 항 ⑦임대수입액이 20 항 (05) 연말총액 합계보다 클 때	임대수입액은 토지의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액이므로 토지나 유형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수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ZA ☆	13,17 항 13 항의 ①제품출하액은 17 항의 (1)품목별 제품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7 항의 합계액은 전산에 의하여 삽입하였으므로 반드시 품목별 내역의 천공착오나 중복기입 등의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내 용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때에는 13항의 ①제품출하액을 17항 합계액과 일치 수정한다.
Z B ☆	16,17 항 16항 (1)의 ①금액과 17항 (3)의 품목별 제품 연초재고액 합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항목에 기준하여 맞춘다.
Z C ☆	16항 (2)의 ①금액과 17항 (4)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
Z D ☆	17 항 17항 (1)제품출하액 + 17항(4)제 품연말재고액 $\geq$ 17항 (3) 제품의 연초재고액 합계의 관계가 각 품목별로 성립하여야 한다.	다른 품목과 비교 검토하여 확인 수정한다.
Z E ☆	ZD와 똑같은 부등식의 관계가 수량에서도 성립하여야 한다.	(1) 다른 품목과 비교 검토하 여 확인 수정한다. (2) 출하단가에 맞게 수량이 환산되었나 확인하고 수정 한다.

가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내 용
Z F ☆	13 항의 ③수탁제 조수입액의 금 액과 18 항의 합계액은 일치하 여야 한다.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항목에 기준하여 수정한다.
J A ☆	17 항 17 항 (1)품목별 제 품출하액≥ 17 항 (2)품목별 제 품수출액 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반드시 출하액이 커야 한다.
J B ☆	17 항 17 항 (1)품목별 제 품출하수량≥ 17 항 (2)품목별 제 품수출수량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출하단가에 맞추어 수출수량을 수정한다. 그리고 단위 환산이 잘못된 것도 수정한다.
K G	13,15 항 15 항 ①부가가치세는 13 항 합 계 (①~④) 의 2~9% 범위 여야 하며 출하액은 1억 이 상인 사업체에 한한다.	(1) 면세업종(소금, 신문, 무연 탄, 연탄, 담배 등 전매품) 은 예외 (2) 17 항에서 수출액이 많은 업체는 환급세액이 있어야 한다.( - 발생 ) (3) 소액의 영세사업체는 1% 미만일 수도 있다.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KH	15,17 항 15 항② 특별소비세는 17 항의 품목분류 번호가 31, 32, 332, 35235, 35300, 35402, 36206, 383, 384, 385, 39 의 분류에 한 하여 조사된다.	(1) 17 항의 품목명과 품목분류 번호가 맞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2) 품목분류표의 부록(3)을 확인한다.
KJ	15,17 항 15 항 ③주세는 17 항 품목분류번호가 313 에 한하여 위 분류에 해당하면 반드시 주세가 있어야 한다.	(1) KH에 준한다. (2) 비알콜성 음료인 경우는 OK
QA ☆	17,18 항의 각 품목분류번호가 품목 Master File 과 일치되어야 한다.	품목분류표와 대조 수정한다.
QB ☆	17 항의 품목분류번호의 수량단위는 품목 Master File 의 수량단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품목분류표와 대조, 확인하여 수정하고 수량은 단가에 적정하게 환산하여 수정한다.
QC ☆	17,18 항 임가공 품목분류번호가 17 항에 조사될 때	해당 사업체가 수탁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탁업체가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p>맞으면 17 항의 내용을 18 항에 이기하고 수탁업체가 아니면 품목분류번호를 맞게 수정한다.</p>
Q D	<p>17,18 항 품목분류번호가 ~9, ~900 인 품목의 출하액이 500백만원 이상일 때</p>	<p>품목분류표를 확인하여 타당한 품목분류번호를 기입한다.</p>
Q S ☆	<p>17,18 항 17 항이나 18 항의 품목분류번 호에서 산업이 38298, 38451, 38452 이거나 품목이 35292219, 38298100, 38451100, 38452100, 38323900 으로 조사될 때</p>	<p>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번호를 바꾸어 준다. 38451, 38452 → 38490 38298 → 38299 35292219 → 35299179 38298100 → 38299979 38323900 → 38329179 38451100 → 38490970 38452100 → 38490979</p>
NURAK	<p>4,5,6,8,11,12,13,14,20 항의 누 락이 있어서는 안된다. ( 단, 경영조직이 (1)회사, (2)기</p>	<p>(1) 4,5,6,8 항은 전년도 조사 표를 참고한다. (2) 11 항에서 실제조업을 해야</p>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p>타 법인이면 11항 (1)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없다)</p>	<p>종업원수가 기재되므로 일시적, 계절적 휴업일은 조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얼음, 벽돌, 염전, 광산 등 유의)</p> <p>(3) 11항이 있으면 12항이 있어야 한다.</p> <p>(4) 8항은 부지만 있거나(벽돌제조)건물 연면적만 있거나(상가, 빌딩임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하며 건물 밀면적만 있는 것은 잘못이다.</p> <p>(5) 14항에서 광업이나 수탁업체도 일부의 재료비는 있을 수 있다.</p> <p>(6) 20항은 임차사용부분은 제외하고 업체소유분만 기입한다.(전부 임차사용일 경우 공란)</p>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항 처리 요령
**	11,12,13,14,15,16,17,18,20 항 의 각각의 합계는 그 세항목 의 합과 일치하여야 한다.	천공착오여부를 확인 및 내역 과 합계를 일치시킨다.
* ☆	시·도부호는 11,21,22,23,24, 31,32 ... 39이내이어야 한다.	확인 수정한다.
WA ☆	사업체 고유번호가 중복되거나 7자리를 초과할 때	사업체명부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한다.
WB ☆	17항과 18항중에서 최다 출 하액의 산업분류(동일세세분류 는 합계)와 사업체의 산업분 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17항(혹은 18항)에서 최다 출하액 산업분류로 한다.
WC ☆	4항 창설년은 87년이내이어야 한다.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WD ☆	5항 결산기는 01~12이내이 어야 한다.	타당성 검토
WE ☆	6항 경영조직은 1~3이내이 어야 한다.	사업체명칭을 보고 분류한다.
WF	7항 자본금은 100,000백만 (1,000억원)이내이어야 한다.	대규모 사업체일 경우에는 OK한다.

기 호	전 산 내 검 사 항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WG ☆	17 항중에서 수량단위가 99가 아닌 품목이 금액만 있고 수량이 없어서는 안된다.	단위환산하여 기입하고 단위미만은 “ 1 ”을 기입한다.
WH ☆	20 항 ①토지는 (01)신규취득액 및 (04)감가상각액이 없어야 한다.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규취득액은 중고취득액으로 기입하고 감가상각액은 처분 및 손해액으로 처리한다.
WI ☆	17,18 항에서 일련번호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면 안된다.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공란을 두지 않도록 한다.
WJ ☆	20 항 (04) 감가상각액 합계가 (05) 연말총액 합계보다 커서는 안된다.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WI	21 항 합산여부란에 합산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산업통계과에 질의한다.



- ⑤ 모든 결과표는 표의 윗부분에 한글표명 및 항목명을 프린트한다.

(나) 보고서 수록용결과표 작성상 유의사항

- ① 결과표는 수준점검이 완료되면 제 3 단계 전산내검을 실시하여 착오사항이 없으면 제표한다.
- ② 또한 산업분류가 2인 광업체는 부지 및 건물 연면적을 삭제하고, 조사표 17항 품목별 출하액란에서는 수량단위가 ※(99)인 품목은 수량을 삭제하고 제표한다.
- ③ 보고서는 사진판 인쇄방법에 의해 발간되므로 보고서용 결과표의 활자를 명확하게 프린트한다.
- ④ 모든 결과표의 산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Ⅲ표(품목편)의 산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는 활자(한글, 영문, 숫자)를 더블펀치(고딕체)하여 프린트한다.
- ⑤ 산업, 품목명, 시도명, 수량단위명 등은 한글, 영문 모두 프린트한다.
- ⑥ 모든 표에서 분류단위별로 사업체수가 2개 미만인 때에는 사업체수를 제외한 모든 관련수치를 "X"로 제표한다.
- ⑦ 특수품목 및 산업은 다음에 지정하는 품목 및 산업으로 합계한 후 제표한다.







② 국·영문 명칭

(다) 사업체고유번호 일람표 (6월 작성)

(라) 기업체 및 복합기업명부 (9월 작성)

1986년 기업체명부를 기초로 1987년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마) 가나다 순위별 사업체명부 (8월 작성)

내부자료용 결과표 (6)표 - 1부 (기업체명부 보완작성용)

(2) 내용심사용 자료

(가) 구·시·군별 산업별 집계표

수준점검표 (14)표 - 2부 (조사표 접수단계 심사참고용)

(나) 광공업통계·동태조사결과 사업체별 연간집계표

내부자료용 결과표 (5)표 - 3부 (조사표 접수단계 심사참고용 및 집계결과 점검용)





# 結 果 表

'87基準 鑛工業統計調查(第17次)分

1988. 4.

產 業 統 計 課

차 례

1. 수준점검표 ..... 3

2. 내부자표용 결과표 ..... 15

3. 사업체 명부에 대한 결과표 ..... 19

4. 보고서 발간용 결과표 ..... 25



(11) 품목별 사업체별 동·정태 비교 .....	10
(12)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의 수준비교 .....	11
(13) 품목 및 사업체별 임가공 수입액의 수준점검표 .....	11
(14) 다공장 기업체별 총괄 .....	12
(15) 구·시·군 및 산업중분류별 비전년 수준비교 .....	12
(16)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규모별 내국소비세액, 임대수입액, 건설가계정 및 상품매출액 .....	13
(17) 산업세세분류 및 사업체 고유번호순 내국소비세액, 임대수입액, 상품매출액 및 건설가계정 .....	13
(18)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규모별 유형고정자산 및 생산비 .....	14
(19) 산업세세분류 및 사업체 고유번호순 유형고정자산 및 생산비 .....	14



































































































































































































































































































































































































































































































































